2024.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검토보고(부처별 II)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 CONTENTS

## 기 획 재 정 위 원 회


❖ 기획재정부 ····· 3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4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

**Ⅱ. 사업별 검토 ····· 18**

**【총 괄】 ····· 18**

1. 국세수입: 국세수입 전망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 18
2. 세외수입: 세외수입 전망의 적정성 논의 필요 ····· 23
3.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필요 ····· 27
4. 공급망안정화기금: 국가보증채권의 철저한 관리 필요 ····· 32

**【일반회계】 ····· 35**

**<세 입> ····· 35**

5. 정부출자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증액조정 여부 검토 필요 ····· 35
6.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대규모 물납주식의 적극적 매각노력 필요 ····· 39

<세 출> ····· 42

7. 예비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조정 필요 ····· 42
8.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필요 ·· 46
9.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신규): 수출금융 지원 필요성과 현물출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51

【대외경제협력기금】 ····· 54

<지 출> ····· 54

10.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한 사업관리 필요 ····· 54
11.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EDCF 아카데미 학위과정 등 조정 필요 ····· 57

【기후대응기금】 ····· 62

<총 괄> ····· 62

12.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 필요 ····· 62

<지 출> ····· 66

13.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농촌진흥청):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이관에 대한 검토 필요 ····· 66
14. 녹색전환보증 사업(환경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69
15.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신규)(환경부): 기후대응보증 사업 지원대상과 유사·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한 사업설계 필요 ····· 73

【공공자금관리기금】 ····· 77

<지 출> ····· 77

16.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국고채 금리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감액조정 검토 필요 ····· 7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80

<지 출> ····· 80

17.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신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보완 필요 ····· 80

【국유재산관리기금】 ····· 83

<총 괄> ····· 83

18.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83

❖ 국세청 ····· 87

Ⅰ. 개 관 ····· 87

1. 예산안 개요 ····· 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89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89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90

Ⅱ. 사업별 검토 ····· 91

【총 괄】 ····· 91

1. 국세수입 체납정리실적 제고 필요 ····· 91

【일반회계】 ····· 96

<세 출> ····· 96

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자발적 감정평가 확대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 필요 ····· 96

3.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여부 검토 필요 ····· 101

4.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일원화 필요 ····· 105

5. 승소장려금 사업: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108

❖ 관세청 ····· 110

Ⅰ. 개 관 ····· 110

1. 예산안 개요 ····· 11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12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13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4

Ⅱ. 사업별 검토 ····· 115

【일반회계】 ····· 115

<세 출> ····· 115

1.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신규): 관세박물관 신축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115

2.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신규): 기본경비 내의 업무유공 포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필요 ····· 120

3.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신규): 해외사업 분야의 통합 검토 필요 · 124

❖ 조달청 ····· 129

Ⅰ. 개 관 ····· 129

1. 예산안 개요 ····· 12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31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32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33

Ⅱ. 사업별 검토 ····· 134

【조달특별회계】 ····· 134

<세 입> ····· 134

1. 시설계약 사업수입: 연례적 미수납액 발생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134

2. 기타전입금: 회전자금 내 연말 예상잔액의 세입 계상 필요 ····· 138

<세 출> ····· 141

3.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협약체결 기간을 고려한 사업추진 철저 필요 등 ····· 141

4.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개통 지연에 따른 적정 예산소요 반영 필요 ····· 147

5.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신규): 유사 수출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150

6. 혁신제품 임차 사업(신규): 임차계약을 통한 총 지급소요액 추계 및 사업계획 보완 필요 ····· 153

❖ 통계청 ·····157

Ⅰ. 개 관 ····· 157

1. 예산안 개요 ····· 15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59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59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0

Ⅱ. 사업별 검토 ····· 161

【일반회계】 ·····161

<세 출> ····· 161

1.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업무 이관 신속 추진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방안 모색 필요 ····· 161

2.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태블릿 PC 활용계획 수립 필요 ····· 165

3.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 유사한 연구용역의 연례적 반복 편성 지양 필요 169

4. 개도국 양자 통계혁신 사업: ODA 사업 집행 지연을 반영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173

교 육 위 원 회

❖ 교육부 ·····179

Ⅰ. 개 관 ····· 17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7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82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84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85

Ⅱ. 사업별 검토 ····· 186

【총 괄】 ····· 186

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 186
2. 유보통합 추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191
3. 기타재산이자수입: 수입 전망 및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 예산 증액 조정 필요 ····· 197
4.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필요 ····· 200

【일반회계】 ····· 203

<세 출> ····· 203

5.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신규):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 검토 필요 ····· 203
6.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안정적 건립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06
7.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디지털교육체계 안착 노력 및 교원연수 내실화를 위한 관리 필요 ····· 209
8.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사업: 기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현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214

9.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ODA): 신규사업단 사업관리 철저 및 수요를 반영한 청년인턴 프로그램 운영 필요 ····· 218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222**

**<세 출> ····· 222**

10.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신규): 예산 산출 근거 미흡 ····· 222
11. 청년인턴 사업: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편성 지양 필요 ····· 225
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당초 RISE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228
1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장기적 재정 소요 전망 등을 고려한 편성 필요 등 ····· 236
14.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 우수한 의대 전임교수 확보를 위한 면밀한 채용계획 필요 ····· 241
15. 의대여건 개선 사업(신규):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과 면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 ····· 245
16.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조정 필요 ····· 249
17.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공유 콘텐츠 확보 노력 필요 ····· 252

**【사학진흥기금(사학지원계정)】 ····· 256**

**<지 출> ····· 256**

18.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 의대 융자 집중으로 인한 일반 사립대 융자금액 축소 문제 ····· 256

19.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신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등 ····· 2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264

<수 입> ····· 264

20. 토지대여료: 감정재평가를 반영한 지료 수입 증액 조정 필요 ····· 264

❖ 국가교육위원회 ····· 266

Ⅰ. 개 관 ····· 266

1. 예산안 개요 ····· 26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68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68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69

Ⅱ. 사업별 검토 ····· 270

【일반회계】 ····· 270

<세 출> ····· 270

1.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 27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77

Ⅰ. 개 관 ····· 27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7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81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90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2

Ⅱ. 사업별 검토 ····· 294

【총 괄】 ····· 294

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대상 회계연도 일치 예외 규정'의 재검토 필요 294

2.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계획에 따른 대안 보완 필요 ····· 299

3.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요 R&D 사업 자문회의안 변경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 307

【일반회계】 ····· 313

<세 출> ····· 313

4.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 사업일정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313

5.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른 차년도 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등 ····· 316

6. 개인기초연구(R&D) 사업: 협약체결 일정 및 신규과제 공고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 320

7.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활용(R&D) 사업: 해외국가와 일정 협의가 지연된 글로벌 R&D 과제의 순연 방지 필요 ····· 325

8. 실험실창업지원(R&D) 사업: R&D 지출구조조정 이후 회복된 과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28
9. 한계도전R&D프로젝트(R&D) 사업: 신규과제 선정 지연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등 ····· 333
10.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협약체결 일정 및 신규과제 공고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필요 ····· 339
11.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사업단 실제 운영시기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343
12.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사업: 사업단 지연 출범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과제 관리 필요 ····· 3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349**

**<세 출> ····· 349**

13. 강소특구 육성 사업: 회계연도 일치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4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53**

**<세 출> ····· 353**

1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신규): 면밀한 수요조사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53

**【우편사업특별회계】 ····· 357**

**<세 출> ····· 357**

1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우편요금 인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예탁 규모의 적정수준으로 조정 검토 필요 ····· 357

**【정보통신진흥기금】 ····· 361**

**<지 출>** ····· 361

16. AI 혁신펀드 사업(신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등 ··· 361

❖ 방송통신위원회 ·····365

**Ⅰ. 개 관 ····· 365**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6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68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69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70

**Ⅱ. 사업별 검토 ····· 371**

**【일반회계】 ·····371**

**<세 출>** ····· 371

1.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KBS-EBS 간 갈등 해소를 통한 UHD 방송 제작장비 교체 비용의 매몰화 방지 필요 ····· 371

**【방송통신발전기금】 ·····374**

**<지 출>** ····· 374

2.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실집행된 임차료 평균단가를 고려한 임차료 예산 조정 필요 ····· 374
3.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안 모색 필요 등 ····· 378
4.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신규):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과 중복 여부 검토 필요 ····· 381

5.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이미 구축되어 AI-Hub에 공개된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검토 ····· 385

❖ 원자력안전위원회 ·····387

Ⅰ. 개 관 ····· 38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90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92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93

Ⅱ. 사업별 검토 ····· 394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394

<수 입> ····· 394

1. 민간출연금: LS전선과의 협의를 통해 출연 협약 이행완료 촉구 필요 ····· 394

<지 출> ····· 397

2.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신규):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충실한 분석 필요 ····· 397

❖ 우주항공청 ·····401

Ⅰ. 개 관 ····· 401

1. 예산안 개요 ····· 40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03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05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06

**Ⅱ. 사업별 검토 ····· 407**

**【일반회계】 ·····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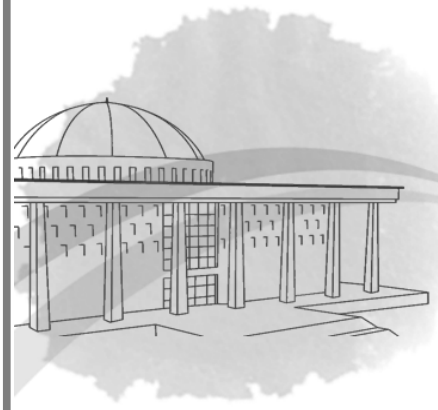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세 입> ····· 407**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과목 신설 필요 ····· 407

**<세 출> ····· 411**

2.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과제공고 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감액조정 검토 필요 등 ····· 411
3.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별도의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부적절 및 임무본부 홍보비 예산의 감액조정 검토 필요 ····· 418
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23
5.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사업: 사업 추가지연 방지 및 자문·평가·홍보관련 예산 감액조정 검토 필요 ····· 428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 Ⅰ. 개 관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395조 1,2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2,630억원(6.0%) 증가함. 예산은 384조 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 6,437억원(6.0%) 증가하고, 기금은 11조 1,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192억원(5.9%) 증가함.[1)]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3,623,748 | 3,840,185 | 216,437 | 6.0 |
| 기 금 | 104,876 | 111,068 | 6,192 | 5.9 |
| 총수입 | 3,728,624 | 3,951,253 | 222,630 | 6.0 |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42조 3,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792억원(4.1%) 증가함. 예산은 5조 7,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82억원(10.4%) 증가하고, 기금은 36조 6,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411억원(3.2%)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예 산 | 51,993 | 57,375 | 5,382 | 10.4 |
| 기 금 | 355,202 | 366,613 | 11,411 | 3.2 |
| 총지출 | 407,195 | 423,988 | 16,792 | 4.1 |

## 나. 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81조 6,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조 8,403억원(6.1%)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4,408,102 | 4,677,838 | 269,736 | 6.1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30,422 | 139,089 | 8,666 | 6.6 |
| 합 계 | 4,538,524 | 4,816,927 | 278,403 | 6.1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3조 8,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6,219억원(36.1%) 증가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320,317 | 438,575 | 118,258 | 36.9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2,039 | - | △2,039 | 순감 |
| 합 계 | 322,355 | 438,575 | 116,219 | 36.1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67조 7,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조 765억원(△14.1%) 감소함.

[2025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공공자금관리기금 | 3,226,667 | 3,226,667 | 3,092,991 | △133,676 | △4.1 |
| 국유재산관리기금 | 32,705 | 32,705 | 34,820 | 2,115 | 6.5 |
| 기후대응기금 | 23,918 | 23,918 | 26,224 | 2,306 | 9.6 |
| 대외경제협력기금 | 22,087 | 22,087 | 23,895 | 1,808 | 8.2 |
| 복권기금 | 83,580 | 83,580 | 88,685 | 5,104 | 6.1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8,133 | 8,133 | 8,019 | △114 | △1.4 |
| 외국환평형기금 | 2,051,201 | 2,051,201 | 1,402,894 | △648,308 | △31.6 |
| 합 계 | 5,448,292 | 5,448,292 | 4,677,527 | △770,765 | △14.1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73개(5,531억 1,3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3개 사업은 타부처로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임.[2)]

‘한국수출입은행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은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비롯하여 일반 경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은 21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비 | 86 |
| 2 | 한국수출입은행출자(금융시장안정화) | 100,000 |
| 3 | OECD 동남아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 799 |
| 4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1,874 |
| 5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공급방기획관) | 21 |
| 6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공급망기획관) | 375 |
| 7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 2,143 |
| [복권기금] | | |
| 8 |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 | 5,000 |
| 9 |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1,285 |
| 10 |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 876 |
| [국유재산관리기금] | | |
| 1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시설 취득 | 196 |
| 12 | 대법원 법원공무원 제3생활관 신축 | 390 |
| 13 |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신축 | 1,169 |
| 14 |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조성 | 113 |
| 15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매입 | 1,000 |
| 16 |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 24,209 |
| 17 |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리모델링 | 21,763 |
| 18 | 법무부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신축 | 390 |
| 19 | 법무부 대검찰청 별관 증축 | 881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20 | 관세청 청사시설 리모델링 | 19,878 |
| 21 | 국세청 경기광주세무서 청사신축 | 427 |
| 22 | 경찰청 청·관사시설 리모델링 | 683 |
| 23 | 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 87 |
| 24 | 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신축 | 350 |
| 25 | 경찰청 강원인제경찰서 신축 | 158 |
| 26 | 경찰청 강원청 경찰특공대 신축 | 260 |
| 27 | 경찰청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축 | 243 |
| 28 |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 4,224 |
| 29 |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부지매입 | 130 |
| 30 |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정보서비스센터 신축 | 178 |
| 31 | 영등포 복합창업허브 신축 | 233 |
| 32 |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 714 |
| 33 |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 512 |
| 34 |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 1,200 |
| [기후대응기금] | | |
| 35 |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R&D) | 5,700 |
| 36 |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R&D) | 4,275 |
| 37 | AI기반미래기후기술개발원천연구사업(R&D) | 3,100 |
| 38 | 대용량청록수소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사업(R&D) | 3,000 |
| 39 | 고강도무시멘트콘크리트재료 및 설계시공기술개발(R&D) | 2,100 |
| 40 |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기술개발사업(R&D) | 1,500 |
| 41 |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배터리기술개발사업(R&D) | 2,500 |
| 42 |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청정연소기술개발(R&D) | 3,500 |
| 43 | 글로벌진출형탄소순환바이오산업소재 제품 개발 및 실증(R&D) | 2,670 |
| 44 |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사업(R&D) | 4,410 |
| 45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차세대 CCUS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R&D) | 2,500 |
| 46 | 탄소저감형해양플랜트 전환기술개발및실증(R&D) | 3,400 |
| 47 |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조성(R&D) | 4,150 |
| 48 |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및 에너지 믹스 기술개발(R&D) | 2,500 |
| 49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R&D) | 7,836 |
| 50 | 녹색전환보증 | 140,000 |
| 51 | (혁신도전형) 소재혁신 양자시뮬레이터 개발(R&D) | 9,367 |
| 52 | DACU 원천기술개발(R&D) | 6,776 |
| 53 |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개발(R&D) | 6,200 |
| 54 |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R&D) | 10,300 |
| 55 | H2 NEXT ROUND(R&D) | 6,800 |
| 56 | C1가스리파이너리밸류업기술개발(R&D) | 6,000 |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57 | 한국형 GreenNCAP평가기술개발(R&D) | 7,380 |
| 58 | 수소도시용수소배관망국산화 및 실증기술개발(R&D) | 3,918 |
| 59 | 미활용 자원 기반 바이오매스 플랜트 실증 기술개발(R&D) | 5,000 |
| 60 | 대도시권수요응답형광역모빌리티서비스실용화기술개발(R&D) | 2,150 |
| 61 | 그린수소기반 농업시설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R&D) | 1,427 |
| 62 |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 | 40,987 |
| 63 |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 2,667 |
| 64 | 세라믹분야 스마트그린 제조혁신 지원사업(R&D) | 1,233 |
| 65 |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활용방안기술실증(R&D) | 2,270 |
| 66 | 전기로 제강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기술 개발(R&D) | 2,584 |
| 67 |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 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R&D) | 6,345 |
| 68 |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R&D) | 17,186 |
| 69 | 내항선박 연료전환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R&D) | 8,751 |
| 70 |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R&D) | 4,480 |
| 71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파력발전 상용화 기술개발(R&D) | 6,974 |
| 72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 4,230 |
| 73 | 해양탄소재순환가치사슬 실현을 위한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 개발(R&D) | 5,100 |
| 총지출 | | 553,113 |

주) 51~73 : 2025 예산안부터 타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

한편,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복권사업비’ 사업 등 총 119개 사업임.[3)]

[2025년도 기획재정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기후행동강화지원(ODA) | 8,200 | 11,340 | 3,140 | 38.3 |
| 2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 | 2,732 | 3,732 | 1,000 | 36.6 |
| 3 |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 8,571 | 12,937 | 4,366 | 50.9 |
| 4 | 대외경제협력강화 | 1,080 | 5,040 | 3,960 | 366.7 |
| 5 | 통상연계형경협사업 | 499 | 699 | 200 | 40.1 |
| 6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 2,823 | 5,589 | 2,766 | 98.0 |
| 7 | 예비비 | 4,200,000 | 4,800,000 | 600,000 | 14.3 |
| [복권기금] | | | | | |
| 8 | 지방자치단체지원 | 169,863 | 190,639 | 20,776 | 12.2 |
| 9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 179,600 | 190,825 | 11,225 | 6.3 |
| 10 | 복권사업비 | 4,323,397 | 4,555,768 | 232,371 | 5.4 |
| 11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 15,000 | 30,640 | 15,640 | 104.3 |
| [공공자금관리기금] | | | | | |
| 12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 | 28,259,942 | 30,477,898 | 2,217,956 | 7.8 |
| [대외경제협력기금] | | | | | |
| 13 | 기금관리비(ODA) | 3,901 | 5,454 | 1,553 | 39.8 |
| 14 | 아시아차관(융자)(ODA) | 849,890 | 881,400 | 31,510 | 3.7 |
| 15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 608,861 | 800,215 | 191,354 | 31.4 |
| 16 | 경협증진자금이차보전(ODA) | 525 | 2,308 | 1,783 | 339.6 |
| 17 | 경협증진자금사업진행컨설팅(ODA) | 945 | 1,545 | 600 | 63.5 |
| 18 | 사업진행컨설팅(ODA) | 30,182 | 45,746 | 15,564 | 51.6 |
| 19 | 사업심사평가연구(ODA) | 4,027 | 5,278 | 1,251 | 31.1 |
| 20 | 개발협력증진(ODA) | 2,506 | 4,928 | 2,422 | 96.6 |
| [기후대응기금] | | | | | |
| 21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D) | 5,915 | 8,727 | 2,812 | 47.5 |
| 22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 993 | 3,858 | 2,865 | 288.5 |
| 23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 | 90,300 | 213,204 | 122,904 | 136.1 |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24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 31,908 | 53,967 | 22,059 | 69.1 |
| 25 | 탄소중립그린도시 | 2,280 | 17,880 | 15,600 | 684.2 |
| 26 | 폐자원활용에너지전환실증기술 개발사업(R&D) | 4,698 | 7,710 | 3,012 | 64.1 |
| 27 |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 | 30,102 | 47,145 | 17,043 | 56.6 |
| 28 | 비이산화탄소온실가스저감사업 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 1,649 | 2,933 | 1,284 | 77.9 |
| 29 | 자원에너지회수형고농도하폐수 처리공정기술개발(R&D) | 6,373 | 11,115 | 4,742 | 74.4 |
| 30 | 생태계기후대응통합관리체계구축 | 4,300 | 5,780 | 1,480 | 34.4 |
| 31 | 습지생태계가치평가및탄소흡수 가치증진기술개발사업(R&D) | 4,080 | 10,691 | 6,611 | 162.0 |
| 32 | 에너지인력양성(R&D) | 58,921 | 71,457 | 12,536 | 21.3 |
| 33 | 청정수소인증기반구축사업 | 2,275 | 4,106 | 1,831 | 80.5 |
| 34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산업부) | 109,500 | 152,527 | 43,027 | 39.3 |
| 35 | 시멘트원료(석회석)대체순환자원 확대기술개발(R&D) | 2,743 | 3,955 | 1,212 | 44.2 |
| 36 | 에너지저감공정촉매재자원화기 술개발(R&D) | 4,709 | 6,321 | 1,612 | 34.2 |
| 37 | 저탄소고부가전극재제조혁신기 술개발(R&D) | 2,608 | 4,108 | 1,500 | 57.5 |
| 38 |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 | 82,366 | 128,652 | 46,286 | 56.2 |
| 39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중기부) | 7,700 | 10,950 | 3,250 | 42.2 |
| 40 | 지식재산 기반 탄소중립 지원 | 600 | 1,209 | 609 | 101.5 |
| 41 |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중기부) | 2,410 | 7,423 | 5,013 | 208.0 |
| 42 |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 | 1,150 | 1,850 | 700 | 60.9 |
| 43 | 해양해운목표관리제 | 630 | 3,105 | 2,475 | 392.9 |
| 44 |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 기술개발(R&D) | 873 | 3,432 | 2,559 | 293.1 |
| 45 | 건축물에너지디지털진단및설계 (R&D) | 1,122 | 2,585 | 1,463 | 130.4 |
| 46 |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R&D) | 2,444 | 4,856 | 2,412 | 98.7 |
| 47 | 탄소중립 수송부문 감축전략 고도화 기술개발(R&D) | 3,000 | 3,905 | 905 | 30.2 |
| 48 | 탄소자원화플랫폼화합물제조 기술개발(R&D) | 6,494 | 8,494 | 2,000 | 30.8 |
| 49 |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 (R&D) | 5,551 | 9,228 | 3,677 | 66.2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50 |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 400 | 1,703 | 1,303 | 325.8 |
| 51 |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 480 | 9,860 | 9,380 | 1954.2 |
| 52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국토부) | 2,320 | 4,330 | 2,010 | 86.6 |
| [국유재산관리기금] | | | | | |
| 5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시설 취득 | 13,765 | 26,636 | 12,871 | 93.5 |
| 54 |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 9,419 | 12,800 | 3,381 | 35.9 |
| 55 |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 5,440 | 19,009 | 13,569 | 249.4 |
| 56 |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 | 212 | 1,296 | 1,084 | 511.3 |
| 57 | 행정안전부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 | 199 | 1,660 | 1,461 | 734.2 |
| 58 | 통계청 관사시설 취득 | 63 | 353 | 290 | 460.3 |
| 59 | 인권위 인권교육원 신축 | 5,380 | 8,543 | 3,163 | 58.8 |
| 60 | 통계청 기타시설 취득 | 2,904 | 7,419 | 4,515 | 155.5 |
| 61 | 대통령경호처 기타시설 신축 | 5,899 | 12,935 | 7,036 | 119.3 |
| 62 |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취득 | 1,543 | 2,040 | 497 | 32.2 |
| 63 | 비축토지매입 | 80,000 | 100,000 | 20,000 | 25.0 |
| 64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 5,386 | 12,543 | 7,157 | 132.9 |
| 65 | 법무부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 7,089 | 14,778 | 7,689 | 108.5 |
| 66 | 법무부 원주교도소 이전 | 38,044 | 51,521 | 13,477 | 35.4 |
| 67 | 농촌진흥청 기타시설 취득 | 495 | 1,273 | 778 | 157.2 |
| 68 |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 524 | 1,349 | 825 | 157.4 |
| 69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취득 | 10,114 | 18,338 | 8,224 | 81.3 |
| 70 |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신축 | 3,979 | 10,893 | 6,914 | 173.8 |
| 71 |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신축 | 167 | 1,575 | 1,408 | 843.1 |
| 72 | 국가보훈부 청사시설 취득 | 4,021 | 10,665 | 6,644 | 165.2 |
| 73 |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 1,110 | 6,894 | 5,784 | 521.1 |
| 74 | 국세청 김해세무서 청사 재건축 | 214 | 501 | 287 | 134.1 |
| 75 | 국세청 북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 211 | 493 | 282 | 133.6 |
| 76 | 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 138 | 323 | 185 | 134.1 |
| 77 | 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청사 재건축 | 177 | 413 | 236 | 133.3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78 |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 3,039 | 5,200 | 2,161 | 71.1 |
| 79 | 국세청 관사시설 취득 | 311 | 726 | 415 | 133.4 |
| 80 |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 10 | 952 | 942 | 9420.0 |
| 81 | 경찰청 인천남동 경찰서 신축 | 12,455 | 17,133 | 4,678 | 37.6 |
| 82 |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청사시설 취득 | 2,746 | 6,051 | 3,305 | 120.4 |
| 83 | 경찰청 경찰관 기동대 청사시설 취득 | 1,294 | 4,682 | 3,388 | 261.8 |
| 84 |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 591 | 2,064 | 1,473 | 249.2 |
| 85 | 경찰청 서울경찰훈련센터 증축 | 307 | 820 | 513 | 167.1 |
| 86 | 경찰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 | 118 | 198 | 80 | 67.8 |
| 87 | 경찰청 방배경찰서 신축 | 8,121 | 18,597 | 10,476 | 129.0 |
| 88 | 경찰청 인천검단경찰서 신축 | 358 | 562 | 204 | 57.0 |
| 89 | 경찰청 광명경찰서 신축 | 3,404 | 7,107 | 3,703 | 108.8 |
| 90 |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 | 423 | 581 | 158 | 37.4 |
| 91 | 경찰청 거제경찰서 신축 | 367 | 547 | 180 | 49.0 |
| 92 |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 764 | 2,386 | 1,622 | 212.3 |
| 93 | 경찰청 제주 동부경찰서 재건축 | 240 | 889 | 649 | 270.4 |
| 94 | 경찰청 충북 제천경찰서 재건축 | 1 | 1,118 | 1,117 | 111700.0 |
| 95 | 경찰청 경북청 경찰특공대 신설 신축 | 470 | 679 | 209 | 44.5 |
| 96 | 경찰청 경남 남해경찰서 신축 | 185 | 461 | 276 | 149.2 |
| 97 | 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신축 | 355 | 564 | 209 | 58.9 |
| 98 | 울산 중부경찰서 이전 신축 | 308 | 990 | 682 | 221.4 |
| 99 | 강원 철원경찰서 이전 신축 | 144 | 384 | 240 | 166.7 |
| 100 | 경찰청 충남 부여경찰서 신축 | 153 | 404 | 251 | 164.1 |
| 101 | 경찰청 대구청 제1기동대 신축 | 60 | 598 | 538 | 896.7 |
| 102 | 경찰청 충남청 경찰특공대 신축 | 123 | 417 | 294 | 239.0 |
| 103 | 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신축 | 1,618 | 3,165 | 1,547 | 95.6 |
| 104 | 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신축 | 1,115 | 3,156 | 2,041 | 183.0 |
| 105 | 경찰청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 577 | 2,580 | 2,003 | 347.1 |
| 106 | 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 1,210 | 3,845 | 2,635 | 217.8 |
| 107 |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 12,108 | 16,336 | 4,228 | 34.9 |
| 108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후생복지관 신축 | 194 | 442 | 248 | 127.8 |
| 109 | 경찰청 대구경찰수련원 신축 | 253 | 4,101 | 3,848 | 1520.9 |
| 110 | 경찰청 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 1 | 2,259 | 2,258 | 225800.0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111 |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 1,446 | 5,250 | 3,804 | 263.1 |
| 112 |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임차시설 대체 신축 | 625 | 1,139 | 514 | 82.2 |
| 113 | 해양경찰청 특수기록관 신축 | 2,901 | 6,852 | 3,951 | 136.2 |
| 114 | 천안통합청사 신축 | 3,000 | 7,360 | 4,360 | 145.3 |
| 115 |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 713 | 4,491 | 3,778 | 529.9 |
| 116 | 의정부 통합청사 신축 | 4,000 | 9,720 | 5,720 | 143.0 |
| 117 | 용인통합청사 신축 | 414 | 713 | 299 | 72.2 |
| 118 | 안양세관통합청사 신축 | 473 | 654 | 181 | 38.3 |
| 119 |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 43 | 234 | 191 | 444.2 |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5조 9,533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3,424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3,319억원 전출하고,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로부터 2,403억원을 전입받았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4조 2,782억원을 전입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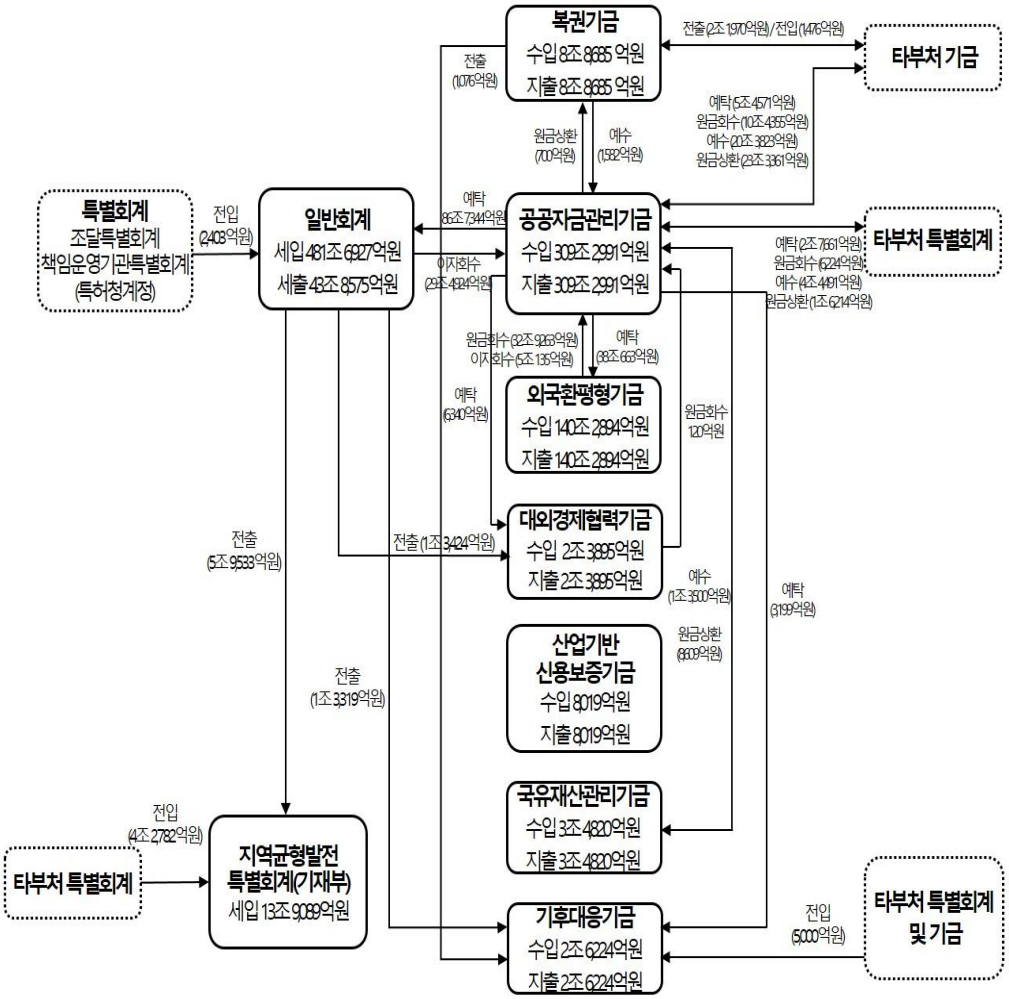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86조 7,344억원, 외국환평형기금으로 38조 663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5조 4,571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 2조 7,661억원 등 총 133조 9,777억원을 예탁하고,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32조 9,263억원,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0조 4,355억원 등 총 44조 1,679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하였음.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3,5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1,582억원,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20조 3,823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4조 4,491억원 등 총 26조 3,397억원을 예수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8,609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3조 3,361억원 등 총 25조 8,884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하였음.

복권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1,076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조 1,970억원을 각각 전출하고,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476억원을 전입받았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82억원을 예탁하였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8조 663억원을 예수받고, 예수원금 32조 9,263억원, 예수이자 5조 13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3,500억원을 예탁하였고, 기후대응기금은 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5,000억원을 전입받았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은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SOC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인프라펀드를 조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4.2 → 4.8조원)를 제외하면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618억원)하였으며, 복권기금은 2024년 5.2조원에서 2025년 5.5조원으로 증액되었음.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에도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국세수입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세수 재추계 결과 대비 44.7조원(13.2%)이 증가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셋째, ‘정부출자수입’은 2025년 예산안과 유사한 규모의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년 예산을 9,823억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당액은 1조 6,033억원이 수납된 것을 고려하면, 2025년 예산안은 과소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증액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3.7조원 규모의 ㈜NXC 주식의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세외수입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섯째, ‘예비비’는 코로나19 이전의 예비비는 3조원 규모였으며, 2023년 예비비 4.6조원 중 3.3조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예비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교육 사업 및 경제교육 지원 사업과 일부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추진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은 수출기업의 정책금융 소요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정부가 보유한 현물출자 여력 및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이 저조하고, 일반회계전입금 등 외부재원 의존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자체재원 확보방안 등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은 2024년 7월 국고채 평균금리는 3.02~3.209%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9월에는 2.83~3.011% 수준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5년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국세수입: 국세수입 전망의 실현가능성 검토 필요

### 가. 개 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한 382.4조원이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1.8조원(4.4%), 특별회계 10.6조원(△5.1%)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도 결산 | 2024년도 본예산 | 2025년도 예산안 | 2024년 예산 대비 | |
|---|---|---|---|---|---|
| | | | | 증감액 | % |
| **총 국 세** | **3,440,711** | **3,673,140** | **3,824,296** | **151,156** | **4.1** |
| **[ 일반회계 ]** | 3,339,396 | 3,561,182 | 3,718,050 | 156,868 | 4.4 |
| ◇ 내 국 세 | 3,060,595 | 3,216,136 | 3,381,292 | 165,156 | 5.1 |
| ㅇ 소 득 세 | 1,158,330 | 1,257,605 | 1,280,066 | 22,461 | 1.8 |
| ▪ 근로소득세 | 591,442 | 620,327 | 647,310 | 26,983 | 4.3 |
| ▪ 종합소득세 | 214,368 | 230,552 | 225,941 | △4,611 | △2.0 |
| ▪ 양도소득세 | 175,560 | 224,165 | 206,011 | △18,154 | △8.1 |
| ▪ 배당소득세 | 40,623 | 39,038 | 46,757 | 7,719 | 19.8 |
| ㅇ 법 인 세 | 804,195 | 776,649 | 885,013 | 108,364 | 14.0 |
| ㅇ 상속증여세 | 146,341 | 146,566 | 127,879 | △18,687 | △12.7 |
| ㅇ 부가가치세 | 737,749 | 814,068 | 880,201 | 66,133 | 8.1 |
| ㅇ 개별소비세 | 88,209 | 101,945 | 96,663 | △5,282 | △5.2 |
| ㅇ 증권거래세 | 60,803 | 53,829 | 38,454 | △15,375 | △28.6 |
| ㅇ 인 지 세 | 7,969 | 8,505 | 9,085 | 580 | 6.8 |
| ㅇ 과년도수입 | 56,999 | 56,969 | 63,931 | 6,962 | 12.2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08,436 | 153,258 | 151,048 | △2,210 | △1.4 |
| ◇ 관 세 | 72,883 | 89,065 | 84,093 | △4,972 | △5.6 |
| ◇ 교 육 세 | 51,516 | 61,625 | 60,402 | △1,223 | △2.0 |
| ◇ 종합부동산세 | 45,965 | 41,098 | 41,215 | 117 | 0.3 |
| **[ 특별회계 ]** | 101,314 | 111,958 | 106,246 | △5,712 | △5.1 |
| ◇ 주 세 | 35,686 | 35,759 | 32,093 | △3,666 | △10.3 |
| ◇ 농어촌특별세 | 65,628 | 76,199 | 74,153 | △2,046 | △2.7 |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을 보면, 소득세는 전년 대비 2.2조원(1.8%) 증가한 128.0조원, 법인세는 전년 대비 10.8조원(14.0%) 증가한 88.5조원이 편성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6.6조원(8.1%) 증가한 88.0조원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분이 2025년 15.1조원의 국세수입 예산안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증가가 전망되고, 반도체 업황 회복 등 주요기업 실적의 개선에 따라 법인세 증가가 예상되며,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물가 상승에 따라 2024년 대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첫째,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국세수입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대비 44.7조원(13.2%)이 증가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4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본예산 367.3조원 대비 29.6조원(△8.1%)이 부족한 337.7조원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56.4조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 결산액 344.1조원[4]에 비해서도 6.4조원 적은 수준임.[5]

[2024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 구 분 | 2023년 실적(A) | 2024년 | | 전년대비 | | 예산대비 | |
|---|---|---|---|---|---|---|---|
| | | 예산(B) | 전망(C) | (C-A) | 비율 | (C-B) | 비율 |
| ○ 총 국 세 | 344.1 | 367.3 | 337.7 | △6.4 | △1.9 | △29.6 | △8.1 |
| - 일반회계 | 333.9 | 356.1 | 327.2 | △6.7 | 2.0 | △28.9 | △8.1 |
| (소득세) | 115.8 | 125.8 | 117.4 | 1.6 | 1.4 | △8.4 | △6.6 |
| (법인세) | 80.4 | 77.7 | 63.2 | △17.2 | △21.4 | △14.5 | △18.6 |
| (부가세) | 73.8 | 81.4 | 83.7 | 9.9 | 13.4 | 2.3 | 2.8 |
| - 특별회계 | 10.1 | 11.2 | 10.5 | 0.3 | 3.4 | △0.7 | △6.5 |

자료: 기획재정부

4) 2023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51.9조원, 본예산 400.5조원 대비 △56.4조원 결손되었음.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2024.9.26.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결손에 대하여 ①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②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2023년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고, 부동산 거래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임.[6)]

[세목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 조원, %)

| | 2023년 실적 | 2024년 예산 | 2024년 재추계 | 2023년 실적 대비 | | 2024년 예산 대비 | |
|---|---|---|---|---|---|---|---|
| | | | | 증감 | % | 증감 | % |
| **총 국 세** | 344.1 | 367.3 | 337.7 | △6.4 | △1.9 | △29.6 | △8.1 |
| **[ 일반회계 ]** | 333.9 | 356.1 | 327.2 | △6.7 | △2.0 | △28.9 | △8.1 |
| ◇ 내 국 세 | 306.1 | 321.6 | 299.5 | △6.5 | △2.1 | △22.1 | △6.9 |
| ㅇ 소 득 세 | 115.8 | 125.8 | 117.4 | 1.6 | 1.4 | △8.4 | △6.6 |
| ■ 종 합 소 득 세 | 21.4 | 23.1 | 19.0 | △2.4 | △11.3 | △4.0 | △17.5 |
| ■ 양 도 소 득 세 | 17.6 | 22.4 | 16.6 | △1.0 | △5.5 | △5.8 | △26.0 |
| ■ 근 로 소 득 세 | 59.1 | 62.0 | 61.7 | 2.6 | 4.4 | △0.3 | △0.5 |
| ㅇ 법 인 세 | 80.4 | 77.7 | 63.2 | △17.2 | △21.4 | △14.5 | △18.6 |
| ㅇ 상 속 증 여 세 | 14.6 | 14.7 | 14.1 | △0.5 | △3.5 | △0.5 | △3.7 |
| ㅇ 부 가 가 치 세 | 73.8 | 81.4 | 83.7 | 9.9 | 13.4 | 2.3 | 2.8 |
| ㅇ 개 별 소 비 세 | 8.8 | 10.2 | 9.0 | 0.2 | 2.1 | △1.2 | △11.6 |
| ㅇ 증 권 거 래 세 | 6.1 | 5.4 | 5.0 | △1.1 | △18.2 | △0.4 | △7.7 |
| ㅇ 인 지 세 | 0.8 | 0.9 | 0.9 | 0.1 | 7.0 | 0.0 | 0.3 |
| ㅇ 과 년 도 수 입 | 5.7 | 5.7 | 6.3 | 0.6 | 9.9 | 0.6 | 10.0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0.8 | 15.3 | 11.2 | 0.3 | 3.2 | △4.1 | △27.0 |
| ◇ 관 세 | 7.3 | 8.9 | 7.0 | △0.3 | △4.4 | △1.9 | △21.8 |
| ◇ 교 육 세 | 5.2 | 6.2 | 5.4 | 0.3 | 5.1 | △0.7 | △12.1 |
| ◇ 종합부동산세 | 4.6 | 4.1 | 4.1 | △0.5 | △9.8 | 0.0 | 0.9 |
| **[ 특별회계 ]** | 10.1 | 11.2 | 10.5 | 0.3 | 3.4 | △0.7 | △6.5 |
| ◇ 주 세 | 3.6 | 3.6 | 3.3 | △0.3 | △8.6 | △0.3 | △8.8 |
| ◇ 농어촌특별세 | 6.6 | 7.6 | 7.2 | 0.6 | 9.9 | △0.4 | △5.3 |

자료: 기획재정부

6)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022) 84.0 → (2023) 46.9 <전년 대비 △44.2%>
순수토지매매량(만필지) : (2023.1 ~ 7월) 29.4 → (2024.1 ~ 7월) 27.7 <전년 동기 대비 △5.9%>

최근 10년간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결산 오차율을 보면,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에는 △14.1%의 오차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국세수입 진도율이 저조하여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였고,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본예산 대비 29.6조원(△8.1%)의 오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규모 국세수입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2014~2023회계연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결산 오차율]

(단위: 조원, %)

| 구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예산 | 본예산(A) | 216.5 | 221.1 | 222.9 | 242.3 | 268.1 | 294.8 | 292.0 | 282.7 | 343.4 | 400.5 |
| | 추경예산(B) | 216.5 | 215.7 | 232.7 | 251.1 | 268.1 | 294.8 | 279.7 | 314.3 | 396.6 | 400.5 |
| 결산(C) | | 205.5 | 217.9 | 242.6 | 265.4 | 293.6 | 293.5 | 285.5 | 344.1 | 395.9 | 344.1 |
| 오차율 | 본예산 대비 [(C-A)/A] | △5.1 | △1.5 | 8.8 | 9.5 | 9.5 | △0.5 | △2.2 | 21.7 | 15.3 | △14.1 |
| | 추경 대비 [(C-B)/B] | △5.1 | 1.0 | 4.2 | 5.7 | 9.5 | △0.5 | 2.1 | 9.5 | △0.2 | △14.1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후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시까지의 경제상황 및 2025년 주요 경제지표의 예측치를 반영하여 세수를 추계하였고, 2023년 대비 33.1조원(△8.3%)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였음.

그러나 2024년 예산안도 29.6조원의 결손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4년 대비 15.1조원(4.1%), 세수 재추계 결과 대비 44.7조원(13.2%) 증액 편성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실질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환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보면, 2024년의 경우 경상성장률 5.5%, 실질성장률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6% 및 환율 1,350(원/$) 등을 전제하였고, 2025년 전망치는 경상성장률 4.5%, 실질성장률 2.2%, 소비자물가상승률 2.1% 및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하였음.[7)]

7) 관계부처 합동,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 구 분 | 2024년 전망 | 2025년 전망 |
|---|---|---|
| 경상성장률(%) | 5.5 | 4.5 |
| 실질성장률(%) | 2.6 | 2.2 |
| GDP 디플레이터 | 2.9 | 2.3 |
| 민간소비증가율(%) | 1.8 | 2.3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 2.1 |
| 취업자증감(만명) | 23 | 17 |
| 명목임금 상승률(%) | 3.1 | 2.9 |
| 수출 증가율(%) | 9.0 | 6.0 |
| 수입 증가율(%) | 2.0 | 4.5 |
| 환율(원/$) | 1,350 | 1,380 |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전제로 사용한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는 2024년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7월 이후 국내외 주요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2025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각각 2.4%·2.2%, 한국은행이 2.4%·2.1%, KDI가 2.5%·2.1% 등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체로 2024년은 정부의 2.6%보다 0.1~0.2%p 낮게 전망하고 있고, 2025년은 ADB를 제외하고 정부 전망치 2.2%보다 0.1%p 낮거나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4·2025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 구 분 | 정부 (2024.7) | NABO (2024.10) | 한국은행 (2024.8) | KDI (2024.8) | OECD (2024.9) | IMF (2024.7) | ADB (2024.9) |
|---|---|---|---|---|---|---|---|
| 2024 | 2.6% | 2.4% | 2.4% | 2.5% | 2.5% | 2.5% | 2.5% |
| 2025 | 2.2% | 2.2% | 2.1% | 2.1% | 2.2% | 2.2% | 2.3% |

주) 각 기관 및 투자은행이 발표한 최신 전망치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 세외수입: 세외수입 전망의 적정성 논의 필요

## 가. 개 요

2025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5조원(10.0%) 증가한 269.4조원이 편성되었고,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5조원(67.2%) 증가한 18.7조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9조원(5.1%) 증가한 17.9조원, 기금은 전년 대비 16.1조원(7.4%) 증가한 232.8조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세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안(B) | 전년대비 (B-A) | 비율 |
|---|---|---|---|---|---|
| □ 세외수입 | 2,295,748 | 2,449,007 | 2,693,953 | 244,947 | 10.0 |
| ○ 예 산 | 284,882 | 281,959 | 365,867 | 83,908 | 29.8 |
| - 일반회계 | 125,736 | 111,947 | 187,128 | 75,181 | 67.2 |
| - 특별회계 | 157,346 | 170,012 | 178,739 | 8,728 | 5.1 |
| ○ 기 금 | 2,010,866 | 2,167,048 | 2,328,086 | 161,039 | 7.4 |

자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항목별 편성근거를 보면,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을 반영한 잉여금[8] 증가 등으로 재산수입이 전년 대비 2조 5,762억원 증가하였고, 과태료[9]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이전수입이 1조 1,895억원 증가하였으며, 국세 물납주식 매각 계획 등을 반영하여 관유물매각대[10]가 4조 3,830억원 증가하였음.

기금수입의 경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국민연금기금[11]이 7조 8,943억원 증가하였고, 주택도시기금[12]은 융자지원 상환 예상금액 증가 등으로 2조 3,9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13]은 기여금 증가 등으로 2조 8,823억원 증가하였음.

---

8)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한국은행잉여금(억원): (2024) 16,300 → (2025 예산안) 42,000 (+25,700)

9) 경찰청 일반회계 과태료(억원) : (2024) 11,341 → (2025 예산안) 13,243 (+1,902)

10)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국세물납주식매각대(억원) : (2024) 534 → (2025 예산안) 37,532 (+36.999)

11) 국민연금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억원) : (2024) 265,229 → (2025 계획안) 336,637 (+71,408)

12) 주택도시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억원) : (2024) 184,273 → (2025 계획안) 200,904 (+16,631)

13) 고용보험기금 사회보장기여금(억원) : (2024) 177,482 → (2025 계획안) 206,072 (+28,590)

[2025년도 세외수입 예산안 내역별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 본예산 | 2024년 본예산 | 2025년 예산안 | 2024년 대비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세외수입 합계 | 2,252,181 | 2,449,007 | 2,693,953 | 244,947 | 10.0 |
| □ 예산수입 | 249,519 | 281,959 | 365,867 | 83,908 | 29.8 |
| ㅇ 일반회계 | 97,192 | 111,947 | 187,128 | 75,181 | 67.2 |
| ■ 재산수입 | 25,949 | 28,827 | 55,536 | 26,709 | 92.7 |
| ■ 경상이전수입 | 56,708 | 69,133 | 80,726 | 11,593 | 16.8 |
| ■ 재화용역판매수입 | 11,018 | 10,418 | 10,543 | 125 | 1.2 |
| ■ 수입대체경비수입 | 2,307 | 2,270 | 2,131 | △140 | △6.2 |
| ■ 관유물매각대 | 1,206 | 1,295 | 38,188 | 36,893 | 2,848.9 |
|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3 | 4 | 4 | 1 | 25.0 |
| ㅇ 특별회계 | 152,327 | 170,012 | 178,739 | 8,728 | 5.1 |
|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68,869 | 80,736 | 83,370 | 2,634 | 3.3 |
| ■ 재산수입 | 2,776 | 8,506 | 7,650 | △856 | △10.1 |
| ■ 경상이전수입 | 42,770 | 46,039 | 46,340 | 301 | 0.7 |
| ■ 재화용역판매수입 | 17,671 | 18,055 | 18,046 | △9 | △0.0 |
| ■ 수입대체경비수입 | 44 | 112 | 94 | △18 | △16.1 |
| ■ 관유물매각대 | 11,139 | 7,974 | 14,820 | 6,846 | 85.9 |
|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9,059 | 8,590 | 8,419 | △171 | △2.0 |
| □ 기금수입 | 2,002,662 | 2,167,048 | 2,328,086 | 161,039 | 7.4 |
| ㅇ 사회보장성 | 1,146,455 | 1,237,930 | 1,356,258 | 118,327 | 9.6 |
| ■ 국민연금기금 | 812,556 | 878,979 | 957,922 | 78,943 | 9.0 |
| ■ 고용보험기금 | 176,832 | 184,245 | 213,068 | 28,823 | 15.6 |
| ■ 산재보험기금 | 96,610 | 107,381 | 111,858 | 4,477 | 4.2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60,457 | 67,325 | 73,409 | 6,084 | 9.0 |
| ㅇ 사회보장성 外 | 856,207 | 929,118 | 971,829 | 42,711 | 4.6 |
| ■ 주택도시기금 | 219,442 | 235,078 | 259,014 | 23,936 | 10.2 |
| ■ 공무원연금기금 | 198,006 | 219,841 | 231,365 | 11,524 | 5.2 |
| ■ 복권기금 | 68,274 | 73,630 | 77,645 | 4,015 | 5.5 |
| ■ 중소벤처창업진흥기금 | 46,026 | 49,790 | 54,847 | 5,057 | 10.2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29,584 | 31,040 | 32,517 | 1,477 | 4.8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28,525 | 32,763 | 37,347 | 4,584 | 14.0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26,184 | 42,810 | 38,198 | △4,612 | △10.8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검토의견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예산안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등의 실현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25년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15.1조원(4.1%) 증가를 예상하면서 세외수입은 24.5조원(10.0%)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7.9조원), 고용보험기금(+2.9조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이 11.8조원이 증가하였고, 국세 물납주식 매각 계획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관유물 매각대 수입이 3.7조원 증가하였으며, 한국은행잉여금이 2.6조원 증가하였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021~2023년 결산 기준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2024년은 전년 대비 6.7% 증가하고 있어, 2025년 세외수입 증가율 10.0%는 최근 5년 내에서 가장 큰 증가율임.

[2021~2025년도 세외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안(B) | 전년대비 (B-A) | 비율 |
|---|---|---|---|---|---|---|---|
| □ 세외수입 | 2,263,599 | 2,215,420 | 2,295,748 | 2,449,007 | 2,693,953 | 244,947 | 10.0 |
| ○ 예 산 | 305,313 | 307,860 | 284,882 | 281,959 | 365,867 | 83,908 | 29.8 |
| - 일반회계 | 142,112 | 163,200 | 125,736 | 111,947 | 187,128 | 75,181 | 67.2 |
| - 특별회계 | 163,201 | 144,661 | 157,346 | 170,012 | 178,739 | 8,728 | 5.1 |
| ○ 기 금 | 1,958,286 | 1,907,560 | 2,010,866 | 2,167,048 | 2,328,086 | 161,039 | 7.4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획재정부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14]

14) [국민연금기금 -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편성근거]

(단위: 백만원)

| 2024년 계획 | 2025년 계획안 | 증감 |
|---|---|---|
| 26,522,893 | 33,663,653 | 7,140,760 |
| ■ 채권(직접) : 8,524,049<br>■ 주식(직접) : 9,767,598<br>■ 대체투자 : 7,989,362<br>■ 유가증권 대여수입 : 71,213<br>■ 단기상품 이자수익 : 169,406<br>■ 일일예치금 이자 : 1,265 | ■ 채권(직접) : 9,809,381<br>■ 주식(직접) : 13,108,316<br>■ 대체투자 : 10,488,186<br>■ 유가증권 대여수입 : 76,042<br>■ 단기상품 이자수익 : 180,578<br>■ 일일예치금 이자 : 1,150 | - |

등(+7.9조원), 고용보험기금 기여금 증가(+2.9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8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5년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액과 증가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크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 분류 | 2021 본예산 | 2022 본예산 | 2023 본예산 | 2024 본예산 | 2025 예산안 |
|---|---|---|---|---|---|
|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 994,633 | 1,048,115 | 1,146,455 | 1,237,930 | 1,356,258 |
| 전년 대비 증감액 | 36,891 | 53,482 | 98,340 | 91,475 | 118,328 |
| 전년 대비 증감률 | 3.9 | 5.4 | 9.4 | 8.0 | 9.6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획재정부 일반회계의 국세 물납주식 매각 계획을 고려하여 관유물매각대 3.7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NXC[15] 주식 매각을 시도하려는 것을 반영한 것이나, 매각의 성사 여부를 담보할 수 없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세외수입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함.

따라서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예산안의 증가액과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및 국세 물납주식 매각 등 실현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25년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16]

15) ㈜NXC(NeXon Corporation), 2022년 넥슨그룹 회장 별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세 중 4.7조원을 주식으로 물납함(2023.5).

16) 정부 매각분 전체를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상속세 물납 이후에도 창업주 일가의 지분율이 67.67%), ㈜NXC는 비상장회사여서 쉽게 주식을 매각할 수도 없으며, 상장계획도 없는 상태임.

# 3.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필요

## 가. 개 요

조세지출이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17]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8조원으로 2022년 63.5조원 대비 6.2조원 증가하였고, 2024년과 2025년은 전년 대비 각각 1.7조원, 6.6조원 증가한 71.4조원 및 78.0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음.[18]

[2023~2025년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 구분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 국세감면액 (A) | 697,664 | 100.0 | 714,305 | 100.0 | 780,178 | 100.0 |
| • 조특법상 조세지출 | 368,668 | 52.8 | 371,213 | 52.0 | 416,598 | 53.4 |
|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 325,311 | 46.6 | 340,560 | 47.7 | 360,989 | 46.3 |
|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 3,685 | 0.5 | 2,533 | 0.4 | 2,591 | 0.3 |
| ○ 국세수입총액[주1] (B) | | 3,703,803 | | 3,949,465 | | 4,122,410 |
| ○ 국세감면율 [A/(A+B)] | | 15.8 | | 15.3 | | 15.9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주2] | | 14.3 | | 14.6 | | 15.2 |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2025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17)「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2021) 57.0, (2022) 63.5, (2023) 69.8, (2024[e]) 71.4, (2025[e]) 78.0

2025년은 통합투자세액공제(+2.5조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0.3조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0.5조원) 등으로 2025년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6%p 상승한 15.9%로 전망되고 있음.

[2025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항목]

(단위: 억원, %)

| 항목 | 2024년 전망 (A) | 2025년 전망 (B) | 증 감 | |
|---|---|---|---|---|
| | | | 증감액(B-A) | 증감률 |
| 통합투자세액공제 | 17,402 | 42,883 | 25,481 | 146.4 |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69,673 | 75,095 | 5,423 | 7.8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41,183 | 43,693 | 2,510 | 6.1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9.

##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9]는 국세 수입총액[20]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2022년 대비 2.8%p 상승하여 처음으로 1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각각 0.7%p를 초과한 15.3%, 15.9%로 예상되고 있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임.

19)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 국세수입 총액: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또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국세 수입총액 감소로 인하여 2024년 국세감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임.

[2023~2025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전망]

(단위: 억원, %, %p)

| 구분 | 2023년 실적(A) | 2024년 전망(B) | 2025년 전망(C) | 증감 | |
|---|---|---|---|---|---|
| | | | | (C-A) | (C-B) |
| ○ 국세감면액 | 697,664 | 714,305 | 780,178 | 82,514 | 65,873 |
| ○ 국세수입 총액[1] (B) | 3,703,803 | 3,949,465 | 4,122,410 | 418,607 | 172,944 |
| ○ 국세감면율 [A/(A+B)] | 15.8 | 15.3 | 15.9 | 0.1 | 0.6 |
|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 14.3 | 14.6 | 15.2 | 0.9 | 0.6 |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 국세감면액 규모는 78조 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873억원(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국세감면액 전망치의 전년 대비 증가율 2.4%에 비하여 6.8%p 높은 수준이며, 국세 수입총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할 전망임.

[2018년 이후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및 국세수입액 실적과 전망치]

(단위: 억원, %)

| 구 분 | 2018 실적 | 2019 실적 | 2020 실적 | 2021 실적 | 2022 실적 | 2023 실적 | 2024 전망 | 2025 전망 |
|---|---|---|---|---|---|---|---|---|
| 조세지출규모 | 439,533 | 495,700 | 529,357 | 570,248 | 635,484 | 697,664 | 714,305 | 780,178 |
| 국세수입액 | 2,935,704 | 3,066,963 | 3,036,717 | 3,639,730 | 4,229,237 | 3,703,803 | 3,949,465[주] | 4,122,410 |
| 국세감면율 | 13.0 | 13.9 | 14.8 | 13.5 | 13.0 | 15.8 | 15.3 | 15.9 |
| 법정상한 | 14.0 | 13.3 | 13.6 | 14.3 | 14.6 | 14.3 | 14.6 | 15.2 |

주)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금액으로 2024년 9월 기준 잠정치에 해당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에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2024년은 26.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2025년 국세감면율이 법정상한을 3년 연속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감면율 법정상한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둘째, 조세지출 정책 수립 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 증가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1~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10조 4,94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5년 예산안에서는 16조 6,72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025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1]

[2021~2025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 구 분 |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 실적[주1]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 개인 | 중·저소득자 | 257,853 | 71.1 | 269,883 | 68.3 | 291,472 | 67.7 | 312,419 | 66.8 | 332,469 | 66.6 |
| | 고소득자 | 104,940 | 28.9 | 125,080 | 31.7 | 139,076 | 32.3 | 155,059 | 33.2 | 166,724 | 33.4 |
| | 계<br>(총계 대비) | 362,793 | 100.0<br>(63.6) | 394,963 | 100.0<br>(62.2) | 430,547 | 100.0<br>(61.7) | 467,478 | 100.0<br>(65.4) | 499,192 | 100.0<br>(64.0) |
| 기업 | 중소기업 | 143,594 | 70.9 | 160,895 | 68.1 | 180,546 | 68.8 | 182,886 | 75.6 | 188,983 | 68.5 |
| | 중견기업 | 6,587 | 3.3 | 9,378 | 4.0 | 10,194 | 3.9 | 9,615 | 4.0 | 9,989 | 3.6 |
| | 상호출자 제한기업 | 22,133 | 10.9 | 38,878 | 16.5 | 43,804 | 16.7 | 23,475 | 9.7 | 49,364 | 17.9 |
| | 기타기업 | 30,285 | 14.9 | 27,159 | 11.5 | 27,872 | 10.6 | 26,054 | 10.8 | 27,574 | 10.0 |
| | 계<br>(총계 대비) | 202,598 | 100.0<br>(35.5) | 236,311 | 100.0<br>(37.2) | 262,417 | 100.0<br>(37.6) | 242,031 | 100.0<br>(33.9) | 275,910 | 100.0<br>(35.4) |
| 구분곤란[주2] | | 4,857 | | 4,210 | | 4,700 | | 4,796 | | 5,075 | |
| 총 계 | | 570,248 | | 635,484 | | 697,664 | | 714,305 | | 780,178 | |

주 1) 2021~2023년은 실적치, 2024년 및 2025년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전망치임
2)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 · 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22]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2조 2,133억원에서 2023년 4조 3,804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반도체 등 영업실적 악화로 인해 2조 3,475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다시 4조 9,364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임.[23]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9%, 2022년 16.5%, 2023년 16.7%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서는 17.9%까지 증가할 전망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증가 및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늘어났고, 대기업의 경우 실적 회복에 따라 세금감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세금감면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24]

따라서 정부는 2021~2025년 기간 중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 증가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조세지출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2) 공시대상기업집단(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4조원(GDP의 0.5%) 이상인 기업

23)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24) 내일신문, “내년 국세감면 78조 역대최대, 대기업·고소득자에 특혜”, 2024.9.24. 등

# 4. 공급망안정화기금: 국가보증채권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가. 개 요

**‘공급망안정화기금’** 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023.12.26. 제정, 2024.6.27.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9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기금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체계]

| |
|---|
| - (기금운용심의회) 기재위 추천 2명, 부처 추천 4명, 수은 임직원 1명으로 구성(9.5)<br>- (선도사업자) 기재부, 선도사업자 선정·운용 지침 마련(5월) → 사업자, 공급망안정화 계획 제출<br>→ 각 부처, 선정(8월, 84개 기업) → 선도사업자 지원 개시(9월~)<br>- (기금운영) 기금운용계획 및 운영 내규(여신,리스크, 회계 등) 마련(8월) |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의 재원[25]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등이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26]

---

2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6)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5조원을 한도로 하는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024.2.29.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년 10조원을 한도로 하는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2024.9.2.)이 제출되어 있음.

## 나. 검토의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가의 재정 외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으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국가보증채권으로 언제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발행규모, 대출상환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국가보증채권으로 국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하여 신용이 부여되므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연도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규모 추산]

(단위: 조원)

| 구 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 기금지원 (A) | 9.7 | 9.7 | 9.7 | 9.7 | 9.7 |
| 대출회수 (B) | 0.3 | 4.9 | 7.3 | 8.1 | 8.7 |
| 채권상환 (C) | - | 2.5 | 5.0 | 6.9 | 6.2 |
| 필요자금 (D=A-B+C) | 9.4 | 7.3 | 7.4 | 8.5 | 7.2 |
| 유동성 대응 자금(E) | 0.5 | 0.5 | 0.5 | 0.5 | 0.5 |
| 채권한도(F=D+E) | 9.9 | 7.8 | 7.9 | 9.0 | 7.7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4.9.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도입·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운영,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및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27]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임.

2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국가보증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일반 재정사업과 달리 예·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재정지출과 효과가 다르지 않음에도 국가가 보증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가채무로 집계되지 않음.

그러나 국가보증채권은 언제든 국가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발행규모, 대출상환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11년 이후 국가보증채무 추이를 보면, 2011년 35.1조원에서 2023년 10.5조원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2024년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국가보증채무에 포함되어 2024년에 15.8조원, 2028년 38.5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임.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보증채무 | 35.1 | 32.8 | 33.0 | 29.2 | 26.4 | 24.2 | 21.1 | 17.0 | 14.8 | 12.5 | 10.9 | 10.6 | 10.5 |
| (GDP 대비) | (2.6) | (2.4) | (2.3) | (1.9) | (1.7) | (1.5) | (1.2) | (1.0) | (0.8) | (0.6) | (0.5) | (0.5) | (0.5) |

자료: 대한민국정부, 「'24~'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 2024.9.

[2024~2028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보증채무** | **15.8** | **26.5** | **32.4** | **35.9** | **38.5** |
| (GDP 대비, %) | (0.6) | (1.0) | (1.2) | (1.2) | (1.3) |
| - 한국장학재단채권 | 10.6 | 11.5 | 12.1 | 12.7 | 13.2 |
|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0.2 | - | - | - | - |
|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5.0 | 15.0 | 20.3 | 23.2 | 25.3 |

자료: 대한민국정부, 「'24~'2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4.9.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 【일반회계】

### <세 입>

# 5. 정부출자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한 예산안 증액조정 여부 검토 필요

## 가. 개 요

**‘정부출자수입’** 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및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1억 300만원(6.4%) 증가한 1조 454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정부출자수입 | 982,344 | 1,045,447 | 63,103 | 6.4 |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재무제표 등 정부배당수입 결정 기초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여건, 민간배당수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과 배당수준을 협의한 후 배당규모를 확정함.[29)]

---

28) 일반회계-정부출자수입(52-521)(국고국)

29) 「국유재산법」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정부 배당 결정과정]

| 〈1단계〉 | 〈2단계〉 | | | | 〈3단계〉 |
|---|---|---|---|---|---|
| **배당 여부 판단** |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 | | | | **최종배당성향** |
| '23년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액 - 법정적립금 > 0<br><br>→ 배당가능 | 당기 순이익 (A) | 기관별 목표배당성향 (B) | 특이사안 반영(±α) (C) | 실제배당 가능금액 (D=A×B-C) | 계량지표 반영<br>・전년 우수배당기업 (△1%)<br>・사회책임지표 등 (△0.2%)<br>→ 기업별 배당성향 확정 |
| | → 기업별 배당성향(D/A) 도출 | | | |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2024년은 2025년과 유사한 규모의 당기순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9,8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당액은 1조 6,033억원이 수납된 것을 고려하면, 1조 454억원이 편성된 2025년 예산안은 과소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증액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 실시기관은 총 13개 정부출자기관[30]으로,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7개 기관이 제외되었으며, 일반회계 정부배당 실적은 1조 6,033억원으로, 배당기관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2023년(9,412억원) 대비 6,621억원이 증가하였음.[31]

30) [배당 실시기관(13개)]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배당 제외 기관(17개)]
- 당기순손실 발생(11개):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 이월결손 보전 등(6개):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신문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합산〉
당기순이익 : (2023년) 6.4조원 → (2024년) 7.7조원 (+1.3조원)
평균 배당성향 : (2023년) 39.93% → (2024년) 39.87% (△0.06%p)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은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5조 6,165억원을 기준으로 과거 배당성향 등에 근거하여 예상 배당금 1조 454억원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

| 기 관 명 | 당기순이익주) (A) | 지분율 (B) | 배당성향주) (C) | 예상 배당금 (D=A×B×C)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4,414 | 24.56 | 20.00 | 708 |
| 중소기업은행 | 22,000 | 59.50 | 30.48 | 3,990 |
| 한국산업은행 | 8,400 | 91.34 | 37.42 | 2,871 |
| 한국주택금융공사 | 627 | 65.24 | 33.79 | 138 |
| 한국수출입은행 | 5,330 | 72.18 | 36.58 | 1,407 |
| 부산항만공사 | 285 | 87.31 | 51.53 | 128 |
| 한국자산관리공사 | 513 | 70.88 | 40.44 | 147 |
| 울산항만공사 | 328 | 87.25 | 51.60 | 148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0 | 100.00 | 35.48 | 14 |
| 한국조폐공사 | 15 | 100.00 | 42.00 | 6 |
| 한국부동산원 | 78 | 49.40 | 39.72 | 15 |
| 한국농어촌공사 | 181 | 100.00 | 32.76 | 59 |
| 한국수자원공사 | 1,291 | 93.81 | 15.79 | 191 |
| 합 계 | 56,854 | - | - | 9,823 |

주) 2023.7월말 기준 당기순이익 전망치 및 예상 배당성향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4년 예산안에서는 당기순이익 전망치 5조 6,845억원을 기준으로 9,82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당기순이익 증가로 실제 배당액은 1조 6,033억원이 수납되었고, 일반회계 평균 배당성향도 정부가 목표로 한 40.0%에 미치지 못하는 36.34%[32]를 나타낸 것을 고려하면, 2025년 예산안은 과소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증액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실적이 악화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21년·2022년 및 2024년 모두 예산 대비 초과수납되었음. 2022년의 경우 본예산은 8,582억원이었으나 1조 6,826억원이 수납되었고, 2024년 본예산은 9,823억원이었으나 1조 6,033억원이 수납되었음.

32) 2024년 일반회계 기준 배당성향으로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배당성향은 39.87%

[최근 4년간 정부출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1 | 822,239 | 822,239 | 822,239 | 915,711 | 915,711 | 111.4 | 100.0 |
| 2022 | 858,200 | 1,682,597 | 1,682,597 | 1,682,597 | 1,682,597 | 100.0 | 100.0 |
| 2023 | 1,078,749 | 1,078,749 | 1,078,749 | 941,196 | 941,196 | 87.2 | 100.0 |
| 2024 | 982,344 | 982,344 | 982,344 | 1,603,347 | 1,603,347 | 163.2 |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 6.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대규모 물납주식의 적극적 매각노력 필요

## 가. 개 요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 납입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조 6,907억 8,600만원(6,917.5%)이 증가한 3조 7,44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2025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53,354 | 3,744,140 | 3,690,786 | 6,917.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납세자가 상속세의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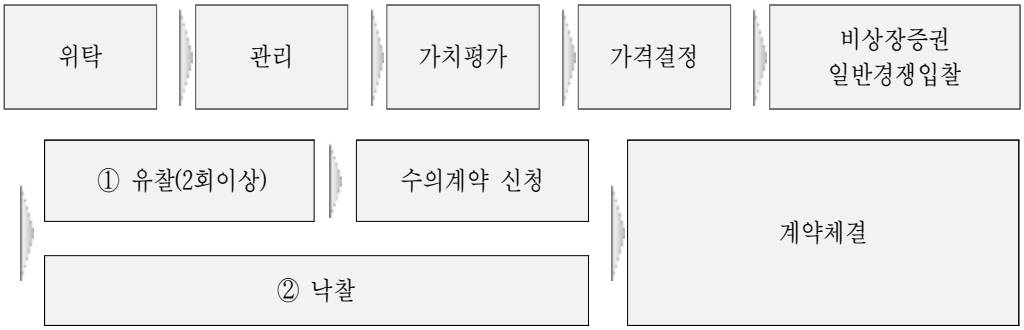
물납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후 가치평가를 거쳐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며,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함.

---

33) 일반회계-국세물납주식매각대(73-733)(국고국)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국세물납주식 매각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3.7조원 규모의 ㈜NXC 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세외수입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8월말 기준 ㈜NXC 등 비상장 물납주식을 총 310종목, 5조 7,299억원을 보유 중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 매각현황]

(단위: 억원, 건, %)

| 구분 | | 2019 결산 | 2020 결산 | 2021 결산 | 2022 결산 | 2023 결산 | 2024.8. 실적 |
|---|---|---|---|---|---|---|---|
| 자산관리공사 위탁보유 | 규모(A) | 5,502 | 5,668 | 9,265 | 9,046 | 55,469 | 57,299 |
| | 건수(a) | 338 | 345 | 335 | 325 | 325 | 310 |
| 매각되어 국고에 귀속된 규모 | 규모(B) (물납금액) | 549 | 420 | 515 | 400 | 1,340 | 204 |
| | 규모(C) (매각금액) | 676 | 373 | 531 | 606 | 1,077 | 193 |
| | 건수(b) | 11 | 11 | 19 | 19 | 13 | 11 |
| 매각률 | 규모(B/A) | 9.3 | 7.4 | 5.6 | 4.4 | 2.4 | 0.4 |
| | 건수(b/a) | 3.2 | 3.2 | 5.7 | 5.8 | 4.0 | 3.5 |
| 환가율 | C/B | 123.1 | 88.8 | 103.1 | 151.5 | 80.4 | 94.6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조 6,907억 8,600만원(6,917.5%)이 증가한 3조 7,44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NXC[35] 주식의 매각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임.

기획재정부는 ㈜NXC 주식의 매각 성사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점, 매각 시에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매각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납금액의 일부(3.7조원)만 2025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NXC 주식의 매각을 위해 2024년 중 매각주간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선정된 매각주간사를 통해 시장의 매수 의향자 접촉 및 매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3.7조원의 대규모 물납주식의 매각이 쉽게 성사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36], 매각 실패 시 3.7조원의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물납주식의 적극적인 매각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4년 예산 534억원 중 8월까지 매각실적이 193억원에 불과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보유한 주식규모 대비 매각률은 2019년 9.3% 수준이었으나 2022년 4.4%까지 감소하였고, ㈜NXC 물납 이후 매각률은 2023년 2.4%, 2024년 8월 현재 0.4%에 불과함.

35) ㈜NXC(NeXon Corporation), 2022년 넥슨그룹 회장 별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세 중 4.7조원을 주식으로 물납하였음(2023.5).

36) 정부 매각분 전체를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고(상속세 물납 이후에도 창업주 일가의 지분율이 67.67%), ㈜NXC는 비상장회사여서 쉽게 주식을 매각할 수도 없으며, 상장계획도 없는 상태임.

<세 출>

# 7. 예비비: 집행실적을 고려한 감액조정 필요

## 가. 개 요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자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00억원(14.3%) 증액된 4조 8,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4,000억원(18.2%) 증가한 2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2,000억원(10.0%) 증가한 2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예비비 | 4,200,000 | 4,800,000 | 600,000 | 14.3 |
| 목적예비비 | 2,200,000 | 2,600,000 | 400,000 | 18.2 |
| 일반예비비 | 2,000,000 | 2,200,000 | 200,000 | 10.0 |

예비비는「대한민국헌법」제55조제2항[38] 및「국가재정법」제22조[39]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며,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됨.

37) 일반회계-예비비(3069-300)(예산실)

38)「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40]이 있는 경우 예비비의 편성이 가능하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로부터 예비비를 전입받아 사용할 수 있음.[41]

## 나. 검토의견

**코로나19 이전의 예비비 규모는 3조원 수준이었으며, 2023년 예비비 4.6조원 중 3.3조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예비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8년 3조 500억원, 2019년 3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3조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5조 6,100억원, 2021년 9조 7,000억원, 2022년 5조 5,500억원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비비 편성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이후 2023년에는 4조 6,000억원, 2024년 4조 2,000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서는 4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하였음.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 2018 예산 | 2019 예산 | 2020 예산 | 2021 예산 | 2022 예산 | 2023 예산 | 2024 예산 | 2025 예산안 |
|---|---|---|---|---|---|---|---|---|
| 합 계 | 30,500 | 30,000 | 56,100 | 97,000 | 55,000 | 46,000 | 42,000 | 48,000 |
| 목적예비비 | 18,500 | 18,000 | 42,100 | 81,000 | 37,000 | 28,000 | 22,000 | 26,000 |
| 일반예비비 | 12,000 | 12,000 | 14,000 | 16,000 | 18,000 | 18,000 | 20,000 | 22,000 |

주) 2018 ~ 2022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0) (예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1)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 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재해·재난 발생 시 복구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예비비에 비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2년에는 집행률이 각각 97.1%, 95.6%, 85.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3년의 경우 4조 6,000억원의 예산 중 1조 3,091억원(28.5%)의 집행에 그치고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 구 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일반회계 | 편성액 | 30,000 | 56,100 | 97,000 | 55,000 | 46,000 |
| | 집행액 | 26,901 | 54,467 | 92,721 | 47,049 | 13,091 |
| | 집행률 | 89.7 | 97.1 | 95.6 | 85.5 | 28.5 |
| 특별회계 | 편성액 | 10 | 5 | 3 | 2 | 3 |
| | 집행액 | - | - | - | - | - |
| | 집행률 | - | - | - | - | - |
| 합계 | 편성액 | 30,010 | 56,105 | 97,003 | 55,002 | 46,003 |
| | 집행액 | 26,901 | 54,467 | 92,721 | 47,049 | 13,091 |
| | 집행률 | 89.6 | 97.1 | 95.6 | 85.5 | 28.5 |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예산안에 재해대책비 또는 재난대책비가 8,27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등 재해·재난대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 |
|---|---|---|
| 행정안전부 | 재난대책비(보조) | 360,020 |
| 환경부 | 하천재해대책비 | 232,000 |
| 환경부 | 재해대책비 | 50,000 |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대책비 | 160,000 |
| 해양수산부 | 양식등 재해대책비 | 25,000 |
| 합계 | | 827,020 |

자료: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만 심사하고, 당해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사후 승인할 수밖에 없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정부의 재량이 일반 재정사업에 비하여 큰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안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는 2022~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비비 예산을 각각 1조 1,000억원, 6,000억원, 8,000억원 감액 의결하였음.

[2022~2024년도 예비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단위: 억원, %)

| 사업명 | 정부안(A) | 국회 확정(B) | 증감 (B-A) | (B-A)/A |
|---|---|---|---|---|
| 2022년도 본예산 예비비 예산 | 50,000 | 39,000 | △11,000 | △22.0 |
| 2023년도 본예산 예비비 예산 | 52,000 | 46,000 | △6,000 | △11.5 |
| 2024년도 본예산 예비비 예산 | 50,000 | 42,000 | △8,000 | △16.0 |

자료: 연도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 8.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필요

### 가. 개 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일반국민 대상으로 학교 경제교육을 보완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융복합 경제교육을 추진하며,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재정 직무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2)]

[2025년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 - | 2,143 | 2,143 | 순증 |

이 사업은 2024년 9월 완공된 태안 정책연수원[43)]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경제교육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교육과정 운영 17억 2,400만원, 교육과정·교재 개발 5,000만원, 홈페이지 개발 1억 5,000만원, 기타 운영경비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교육과정 운영: 17억 2,400만원
- 국민(민간) 경제교육 과정 운영(3억 1,800만원), 직무기본교육 과정 운영(1억 800만원)
- 직무전문교육 과정 운영(8억 8,100만원), 융합교육 과정 운영(3억 1,400만원)
- 국제교육 과정 운영(4,100만원), 시책교육 과정 운영(6,300만원)

○ 교육과정·교재 개발: 5,000만원
○ 홈페이지 개발: 1억 5,000만원
○ 기타 운영경비 2억 1,9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42) 일반회계-미래융복합경제교육(7135-310)(기획조정실)

43) (사업부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57-43 외 2필지(47,928㎡)
(사업기간) 2020.1월 ~ 2024.9월(예정)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수원)
(개발규모) 총사업비 464억원, 연면적 12,438㎡(지하1층, 지상8층)

태안 정책연수원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464억원이 투입된 연수시설로, 2024년 10월 현재 가구·가전·침구류 등 필수물품 배치가 완료되었고, 교육 준비를 위한 점검을 거쳐 11월부터 교육 등 연수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나라키움 태안 정책연수원 사업 개요]

| 구분 | 내 용 | | | 조 감 도 |
|---|---|---|---|---|
| 토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57-43 외 2필지<br>토지면적 47,928㎡ (14,498py) | | |  |
| 건물 | 층수 B1 / 8F<br>연면적 12,438㎡ (3,762py) | | | |
| 사업비 | 464억원 | | | |
| 시설 구성 | 교육동 | 3,798㎡ | 31% | |
| | 숙소동 | 8,640㎡ | 69% | |
| | 합 계 | 12,438㎡ | 100% |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지원 사업 및 재정교육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①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학교 경제교육을 보완하여 경제지식 함양, 신규 정책 등에 대한 이해·활용도 향상 및 맞춤형 경제·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②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경제·재정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③ 부처간 협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경제분야 융복합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먼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교육지원' 사업[44]과 일부 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경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반국민

44) 일반회계, 7135-304

대상 경제교육 사업임.

[2025년도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경제교육지원 | 6,368 | 8,240 | 1,872 | 29.4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존 경제교육지원 사업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통해 강사를 교육현장(학교, 복지센터 등)에 파견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을 제공 중이나, 별도 공간이 없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경제캠프는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에서 태안 정책연수원을 활용하여 기존 경제교육 지원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025년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24) 40억 1,200만원 → ('25) 56억 6,200만원
- 센터 사업지원(3억 3,300만원×17개 지역)
② 경제교육인력양성: ('24) 8억원 → ('25) 9억 8,000만원
③ 경제교육 협력지원: ('24) 3억원 → ('25) 1억원
- 민간 경제교육 자원 체계 관리, 경제교육포럼, 대한민국경제대상 등 협력사업 진행
④ 경제이해력조사 : ('24) 1억 6,200만원 → ('25) 1억 7,700만원
- 경제이해력조사 수행(홀수연도 일반국민, 짝수년도 초·중·고 대상 조사 진행)
⑤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4) 9억 5,300만원 → ('25) 10억 6,800만원
⑥ 국제협력 강화 : (2025) 1억 4,900만원, 순증
⑦ 경상경비 : ('24) 9,600만원 → ('25) 1억 400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경제·재정 직무교육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교육' 사업[45]과 일부 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재정교육 사업은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요 재정제도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현행 재정교육은 재정분야(예산, 재정정책, 국고, 공공정책) 등 기획재정부 전체 직무 중 일부 직무에 대해서 시행 중이며,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은 기존 재정교육 사업과 교육운영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 각 소관 직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45) 일반회계, 2712-303

[2025년도 재정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재정교육 | 695 | 655 | △40 | △5.8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재정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① 재정교육 운영 : (2024) 6억 600만원 → (2025) 6억 600만원, 전년 동
- 재정교육 운영 용역: (2024) 5억 2,600만원 → (2025) 5억 2,600만원, 전년 동
- e-재정배움 유지보수 용역: (2024) 8,000만원 → (2025) 8.000만원, 전년 동

② 재정교육 관리 : (2024) 2,900만원 → (2025) 2,900만원, 전년 동

③ 재정교육 교재 개발 : (2024) 6,000만원 → (2025요구) 2,000만원, △66.7%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과 일부 중복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재정교육, 경제교육지원,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 | 재정교육 | 경제교육지원사업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
|---|---|---|---|
| 사업목적 | 직무 교육(재정분야) | 국민(민간) 경제 교육 | 국민(민간) 경제 교육,<br>공무원 등 직무 교육 |
| 법적근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교육지원법,<br>공무원인재개발법,<br>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
| 사업대상 | 기재부 직원, 공무원,<br>공공기관 직원 등 | 국민(민간) | 국민(민간), 기재부직원,<br>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
| 2025년<br>예산안<br>세부<br>편성근거 | • 총 655<br><br>• 교육과정 운영 606<br>(위탁용역 526, 사이트 유지보수 80)<br>• 재정교육 교재 개발 20<br>• 기타 운영경비<br>(수용비, 여비) 29 | • 총 8,240<br><br>•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br>(보조), 5,662<br>• 경제교육인력 양성<br>(위탁), 980<br>• 경제교육 협력 지원<br>(위탁), 100<br>• 경제이해력 조사<br>(위탁), 1,477<br>•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br>(위탁), 1,068<br>• 국제협력 강화(위탁), 149<br>• 경상경비(직접), 104 | • 총 2,143<br><br>• 교육과정 운영 1,724<br>(직접 1,484, 위탁 240)<br>• 교육과정 교재개발 50<br>• 홈페이지 개발 150<br>• 기타 운영경비 219 |
| 운영 방식<br>(집합장소) | 집합+사이버+혼합<br>(KMAC비즈니스 스쿨,<br>서울역 공간모아 등) | 방문(학교, 복지센터 등) | 집합<br>(태안 정책연수원) |
| 교육 분야 | 재정 (예산, 공공, 국고,<br>재정) | 경제 | 경제· 융복합 |
| 수행 방식 | 위탁 | 보조/ 위탁 | 직접 / 위탁 |
| 교육 성격 | • 직무 교육이나 일부 업무(재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시행 → 추후 미래융복합 경제교육사업이 국회에서 2025년 사업으로 최종 반영되고 교육여건 등이 성숙되면 통합 검토 | 국민(민간) 경제교육 | • 국민(민간) 경제교육: 경제캠프 등 기존 경제교육지원사업을 보완적으로 시행<br>• 직무교육: 재정분야외 직무 중심으로 교육 |

자료: 기획재정부

# 9.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신규): 수출금융 지원 필요성과 현물출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가. 개 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6)]

[2025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 - | 100,000 | 100,000 | 순증 |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요 재무현황을 보면, 자기자본은 2020년 14조 4,694억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6월 현재 20조 5,41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024억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7,228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6월 기준으로는 5,073억원임.

[2020~2024년 한국수출입은행 주요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6(잠정) |
|---|---|---|---|---|---|
| 자산 | 975,900 | 1,014,517 | 1,220,700 | 1,253,944 | 1,290,270 |
| 부채 | 831,206 | 860,987 | 1,066,344 | 1,074,436 | 1,084,851 |
| 자기자본 | 144,694 | 153,530 | 154,356 | 179,508 | 205,419 |
| 영업이익 | 2,706 | 7,428 | 5,695 | 10,611 | 6,148 |
| 당기순이익 | 1,024 | 5,475 | 3,869 | 7,228 | 5,073 |

자료: 기획재정부

46) 일반회계-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3236-302)(대외경제국)

정부는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이후 2024년까지 3조 7,486억원의 현금과 9조 1,392억원 규모의 현물을 합하여 총 12조 8,878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였음.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내역]

(단위: 억원)

| 현금출자 | | 현물출자 | | |
|---|---|---|---|---|
| 출자시기 | 금액 | 출자시기 | 출자내역 | 현금환산액 |
| 1976~1996 | 3.060 | 1976~1996 | - | - |
| 1997 | 250 | 1997 | 담배인삼공사 | 1,600 |
| 1998 | 1,000 | 1998 | 담배인삼공사(2,000억원),<br>한전(1,699억원),<br>한국도로공사(4,500억원) | 8,199 |
| 1999 | 1,000 | 1999 | - | - |
| | △1,536주) | 2000 | - | - |
| 2000 | - | 2000 | - | - |
| 2001 | - | 2001 | - | - |
| 2002 | 500 | 2002 | - | - |
| 2003 | 400 | 2003 | - | - |
| 2004 | 100 | 2004 | - | - |
| 2005 | 200 | 2005 | 한국도로공사 | 5,000 |
| 2006 | 100 | 2006 | - | - |
| 2007 | 30 | 2007 | - | - |
| 2008 | - | 2008 | 교보생명(2,887억원),<br>한국도로공사 (3,613억원) | 6,500 |
| 2009 | 5,500 | 2009 | 한국도로공사 | 5,000 |
| 2010 | 1,500 | 2010 | - | - |
| 2011 | 1,000 | 2011 | - | |
| 2012 | - | 2012 | 한국도로공사(5000억원),<br>한국자산관리공사(3,793억원) | 8,793 |
| 2013 | 1,000 | 2013 | - | |
| 2014 | 1,300 | 2014 | 한국토지주택공사 | 3,800 |
| 2015 | 1,300 | 2015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000 |
| 2016 | 10,200 | 2016 | - | - |
| 2017 | - | 2017 | 인천항만공사(1,250억원),<br>여수광양항만공사(1,250억원) | 2,500 |
| 2019 | 562 | 2019 | - | - |
| 2020 | 5,783 | 2020 | - | - |
| 2021 | 2,988 | 2021 | - | - |
| 2022 | 250 | 2022 | - | - |
| 2023 | - | 2023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00 |
| 2024 | 1,000 | 2024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00 |
| **합계** | **37,486** | **합계** | **-** | **91,392** |

주) 1,536억원 한국산업은행에 출자(1999.12.28)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수출기업의 정책금융 소요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현물출자 여력 및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방산, 원전 등 초대형 수주산업의 금융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 하락 방어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완충자본 확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사업임.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2023년말 14.47%, 2024년 전망은 14.71%이며, 2025년 1,000억원 출자 시 14.0%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수출입은행 자체 관리목표인 13.0% 이상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한국수출입은행 BIS 비율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전망 | 2025전망 |
|---|---|---|---|---|---|---|
| BIS자기자본 | 163,033 | 169,727 | 175,021 | 200,102 | 225,529 | 231,174주) |
| 위험가중자산 | 1,080,523 | 1,144,007 | 1,308,231 | 1,382,604 | 1,533,565 | 1,651,664 |
| BIS비율 | 15.09 | 14.84 | 13.38 | 14.47 | 14.71 | 14.00 |

주) 2025년 현금출자 1,000억원 가정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억원)

| 구분 | 전망치 |
|---|---|
| 2025년 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전망) | 1,651,664 |
| BIS 비율(14.0%)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A) | 231,233 |
| 2025년 현금출자 전 예상 자본금(B) | 230,174 |
| 추가 출자 필요액(A-B) | 1,059 |
| 2025년도 예산안 |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원전, 방산 등 초대형 수출산업에 대한 대출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현물출자 여력 및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47)]

47)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이후 2024년까지 정부는 3조 7,486억원의 현금과 9조 1,392억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하여 총 12조 8,878억원을 출자하였음.

## 【대외경제협력기금】

### <지 출>

# 10.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은 대개도국 협력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경협증진자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입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억 8,300만원(339.6%) 증가한 23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48)]

[2025년도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 525 | 525 | 2,308 | 1,783 | 339.6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경협증진자금(EDPF :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정하는 ODA[49)]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의미함.

경협증진자금 대출은 협력국에 대한 개발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양허성·비구속성 자금을 지원하며, 개별 대출조건은 협력국의 신용상태 및 소득수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 건별로 결정함.

48) 대외경제협력기금-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3337-301)(대외경제국)

49)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OECD 개발원조위원회)

2025년 예산안은 2019.8월 승인된 네팔 수력발전 사업의 이차보전액 21억 4,300만원과 2022.4월 승인된 인도네시아 도수로 사업 이차보전액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ODA)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
| ○ 네팔 수력발전 사업(2019.8월 승인) : (2024년) 418 → (2025년) 2,143, +412.7%<br>- 690억원(승인액*) x 70.4%(2025년 평균대출잔액비율) x 4.41%(이차보전율) = 2,143<br>* 5,000만불 × 1,380원/달러 = 690억원<br><br>○ 인도네시아 도수로 사업(2022.4월 승인) : (2024년) 107 → (2025년) 165, +54.2%<br>- 2,867억원(승인액*) x 2.0%(2025년 평균대출잔액비율) x 2.88%(이차보전율) = 165<br>* 2억 770만불 × 1,380원/달러 = 2,867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대출금액을 직접대출하는 사업과 달리 이차보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차보전액을 집행하고 나면 회수가 불가능한 지출이며, 최종 대출상환 시점까지 대출잔액에 대한 이차보전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규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은 대출승인 후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5~6년간 분할하여 대출이 실행되고, 최초 실행 시점부터 대출잔액에 대한 이차보전 소요가 발생하며, 이차보전율[50]은 대출기간 및 OECD 국가등급 등을 반영한 대출소요비용에서 사업별 대출이율을 차감하여 결정됨.

대출금액을 직접대출하는 사업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나, 이차보전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차보전액을 집행하고 나면 회수가 불가능한 지출이고, 최종 대출상환 시점까지 대출잔액에 대한 이차보전 재정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시중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이차보전 금리차의 확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재정지출이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50) 네팔 수력발전사업 이차보전율 : 대출소요비용 6.41% - 대출금리 2.0% = 4.41%
인도네시아 도수로 사업 이차보전율 : 대출소요비용 4.18% - 대출금리 1.3% = 2.88%

이 사업의 이차보전액 예산은 2024년 5억 2,500만원이었으나, 2025년에 23억 800만원으로 증가하고, 이후 2028년까지 24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임.

[2025년 예산안 산출근거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 연도 | 금액 | 산출근거 |
|---|---|---|
| 2024 | 5.25 | - 네팔 수력발전 : 4.18억원 (650억원(승인액) × 14.6% (2024년 평균대출잔액비율) × 4.41%(이차보전율))<br>- 인니 도수로 : 1.07억원 (2,700억원(승인액) × 1.38% (2024년 평균대출잔액비율) × 2.88%(이차보전율)) |
| 2025 | 23.08 | - 네팔 수력발전 : 21.43억원(690억원(승인액) × 70.4% (2025년 평균대출잔액비율) × 4.41%(이차보전율))<br>- 인니 도수로 : 1.65억원(2,867억원(승인액) × 2.0% (2025년 평균대출잔액비율) × 2.88%(이차보전율)) |
| 2026 | 122.84 | - 경협증진자금 기승인(5건[51]) 사업의 집행 일정을 반영하여 이차보전액 소요액 추정 |
| 2027 | 191.50 | |
| 2028 | 239.24 |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의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 및 우리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경협증진자금의 활용도 및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이차보전액은 23억원 수준이지만 2개 사업에 대한 실제 대출금액은 총 3,500억원이 넘는 규모이며, 이는 대규모 자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점과 대출금액이 회수될 때까지 이차보전액은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EDPF는 수원국 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용역 등을 조달함에 있어 제약이 없는 비구속성 자금으로 현실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사업의 적정규모를 검토하고,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1) ① 네팔 수력발전사업(PPP) (EDPF 0.5억$ / 총사업비 6.5억$)
② 인도네시아 도수로사업(G2G) (EDPF 2.1억$ / 총사업비 2.8억$)
③ 이집트 철도현대화사업(G2G) (EDPF 0.6억$ / EDCF 2.5억$ / 총사업비 5.2억$)
④ 방글라데시 교량 접속도로사업(G2G) (EDPF 0.9억$ / EDCF 7.2억$ / 총사업비 12.4억$)
⑤ 케냐 DMC 부대인프라사업(G2G) (EDPF 1.1억$ / EDCF 1.3억$ / 총사업비 2.8억$)

# 11.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EDCF 아카데미 학위과정 등 조정 필요

## 가. 개 요

**‘개발협력증진(ODA)’** 사업은 대개도국차관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현지 ODA 전문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4억 2,200만원(96.6%)이 증액된 49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52)]

[2025년도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개발협력증진(ODA) | 2,506 | 2,506 | 4,928 | 2,422 | 96.6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
|---|
| ○ 청년인식증진 : (2024) 1,240 → (2025) 1,276, +2.9% |
| ○ 통합 홍보활동 : (2024) 377 → (2025) 1,022, +171.1% |
| ○ 현지근무인력 고용 : (2024) 716 → (2025) 1,252, +74.9% |
| ○ 현지개발워크숍 : (2024) 33 → (2025) 154, +366.7% |
| ○ EDCF 아카데미 : (2025 신규) 1,224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신규 내역사업인 EDCF 아카데미 사업은 수원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므로, 별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5년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EDCF[53)] 아카데미 신설을 위해 12억 2,400만원이

52) 대외경제협력기금-개발협력증진(ODA)(3376-633)(개발금융국)

5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신규 편성되었음.

EDCF 아카데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ODA 교육이 아닌, EDCF 사업참여자 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상원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EDCF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심화 과정과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특수·학위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기획재정부는 일반과정은 EDCF 이해도 제고, 심화과정은 실제 사업관리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며, 특수 및 학위과정[54]은 EDCF 이해도 제고 및 수원국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DCF 아카데미 연간 교육계획]

| 일정 | 과정명 | 방식 | 모집 | 교육기간 | 인원 |
|---|---|---|---|---|---|
| 1월 | - | - | - | | - |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 | | |
| 2월 | 일반과정(1차) | 대면 | 1월 | 3일(16시간) | 20명 |
| 3월 | 심화과정(1차) | 대면 | 2월 | 1주(36시간) | 20명 |
| 4월 | 일반과정(2차) | 대면 | 3월 | 3일(16시간) | 20명 |
| 5월 | 심화과정(2차) | 대면 | 4월 | 1주(36시간) | 20명 |
| 6월 | 특수과정(상반기) | 대면 | 5월 | 1주 | 20명 |
| 7월 | 일반과정(3차) | 대면 | 6월 | 3일(16시간) | 20명 |
| 8월 | 심화과정(3차) | 대면 | 7월 | 1주(36시간) | 20명 |
| 9월 | 일반과정(4차) | 대면 | 8월 | 3일(16시간) | 20명 |
| | 학위과정 | 대면 | 3월~8월 | 1학기 | 20명 |
| 10월 | 심화과정(4차) | 대면 | 10월 | 1주(36시간) | 20명 |
| 11월 | 특수과정(하반기) | 대면 | 7~10월 | 1주 | 20명 |

주) 교육기간과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며,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확정 운영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 사업의 내역사업을 보면, 현지인력 채용 및 교육·개도국 ODA 연수[55]·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등은 수원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들인데, 이미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별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4) 학위과정(위탁)은 2025년 1분기 중 입찰실시 → 선정된 기관(대학교, 대학원)과 학위과정 세부협의 → 2025.9월 학기 시작예정

55) 개도국 ODA 연수 사업은 2025년 계획안에서는 EDCF 아카데미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EDCF 아카데미의 학위과정은 개도국 공무원 중 핵심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장기간(1~2년)에 걸쳐 교육하는 과정으로 기존의 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다년간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시범운영 후,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둘째, 주로 홍보 및 행사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 증액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지연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으로 인건비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5년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통합 홍보활동 사업이 전년 대비 6억 4,500만원(171.1%) 증가한 1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현지근무인력 고용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3,600만원(74.9%) 증가한 12억 5,200만원, 현지개발 워크숍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100만원(366.7%) 증가한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개발협력증진(ODA) 사업 계획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2024 계획 | 2025 계획안 |
|---|---|---|
| 청년인식증진 |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1,216 (45명x27.03)<br>- EDCF서포터즈 등: 24 (29명×0.83) | - 청년 지역전문가 육성: 1,251 (45명x27.8)<br>- EDCF서포터즈 등: 25 (29명×0.86) |
| 통합홍보활동 | - 언론활동: 129<br>- 온라인 SNS 통합 운영: 91<br>- 세미나 개최 및 참여: 36 (7회x5.1)<br>- 홍보대사: 14 (1회x14)<br>- 국・영문연차보고서: 75 (2건x27.5+1건x20)<br>- 간행물 제작: 32 (5건x4+1건x12) | - 언론활동: 129<br>- 온라인 SNS 통합 운영: 130<br>- 세미나 개최 및 참여<br>: 371 (7회x5.3 + 1회x334)<br>- 홍보대사: 14 (1회x14)<br>- 국・영문연차보고서: 80 (2건x30+1건x20)<br>- 간행물 제작: 27 (2건x6+1건x15)<br>- 홍보영상제작: 271<br>(1식(채널운영)x247+1개국(영상제작)x24) |
| 현지근무인력 고용 | - 현지근무인력 인건비: 716 (24명×29.85) | - 현지근무인력 고용: 1,252 (40명×31.3) |
| 현지인력 채용 및 교육 | - 현지근무인력 채용 교육비<br>: 11 (16개소×0.69) | 현지근무인력 고용 내역사업에 포함 |
| 개도국 ODA 연수 | - 수원국 공무원, MDB 담당자, EDCF 해외사무소 현지 근무인력 대상 ODA 연수<br>: 129(25명×5.16) | EDCF 아카데미 내역사업에 포함 |
|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 - 현지 워크숍 지원: 33 (8건x4.12) | - 현지 워크숍 지원: 154 (8건x19.25)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 2024 계획 | 2025 계획안 |
|---|---|---|
| EDCF 아카데미 | (신규) | - 일반과정: 124(4회x31)<br>- 심화과정: 240(4회x60)<br>- 특수과정(개도국협력워크숍) : 336(2회x33명x5.1)<br>- 특수과정(현지직원OJT): 120(2회x8명x7.5)<br>- 학위과정(위탁): 404 |

자료: 기획재정부

주요 증액 사항은 세미나 개최 1회 증가(3억 3,400만원), 홍보영상 제작 2억 7,100만원, 현지근무인력 고용 16명 증가(5억 3,600만원), 현지 워크숍 단가 인상(1억 2,100만원)으로, 주로 홍보 및 행사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 증액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지연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1~2023년 주요 결산사항]

| | |
|---|---|
| 2021 | - 코로나 19 지속으로 비대면 방식의 청년 인식증진 및 홍보활동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체험 위주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예산 절감<br>- 청년지역전문가의 국외 파견 제한 등으로 국외여비 일부 불용 발생<br>- 코로나19에 따른 수원국의 집합금지·이동제한 명령 등으로 신규채용 제한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인건비 일부 불용<br>- 코로나 19 지속으로 온라인 연수 방식의 개도국 협력 워크숍 실시를 통한 예산 절감<br>- 수원국의 집합제한 등에 따른 현지 개발협력 워크숍 개최 순연으로 일부 금액 불용 처리 |
| 2022 | - 청년 지역전문가 하반기 채용으로 잔여 파견기간에 대한 인건비·여비 등 이월<br>- 청년 지역전문가 해외파견 제한 및 중도 퇴사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br>-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학생캠프·언론활동 제약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br>-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제한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일부 인건비 이월 및 불용 |
| 2023 | - 예산 현액 대비 68.6% 집행<br>- 청년 지역전문가 채용비용·항공임 절감 등에 따른 일부예산 불용<br>- 매체광고 등 일부 홍보활동 계획변경·취소에 따라 일부예산 불용<br>- 온라인 SNS·홈페이지 관리용역의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일부예산 이월<br>- ODA 전문직원 신규채용 지연 및 기존직원의 중도퇴사 등에 따라 일부 인건비 불용 |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이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1년 63.2%, 2022년 64.1%, 2023년 68.6%로 60% 대에 머물러 있으며, 불용액 규모도 2021년 5억 3,600만원(당초계획액 대비 42.1%), 2022년 3억 8,900만원(20.0%), 2023년 8억 900만원(32.3%)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 전년도 이월액 | 계획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 2021 | 1,272 | 1,372 | 135 | 1,507 | 952 | 69.4 | 63.2 | 19 | 536 |
| 2022 | 1,949 | 1,974 | 19 | 1,993 | 1,279 | 64.8 | 64.1 | 325 | 389 |
| 2023 | 2,337 | 2,337 | 325 | 2,662 | 1,825 | 78.1 | 68.6 | 28 | 809 |
| 2024 | 2,506 | 2,506 | 28 | 2,534 | 1,023 | 40.8 | 40.4 | - | - |

자료: 기획재정부

# 【기후대응기금】

## <총 괄>

## 12.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수입구조 마련 필요

### 가. 개 요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2022.1.1. 시행)으로, 2025년도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2,305억 8,200만원(9.6%)이 증가한 2조 6,22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56)]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기후대응기금 | 2,391,807 | 2,391,807 | 2,622,389 | 230,582 | 9.6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57)]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기금 전체 지원분야 선정,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 조정 등 기금사업을 총괄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58)]에서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소관 세부사업들을 집행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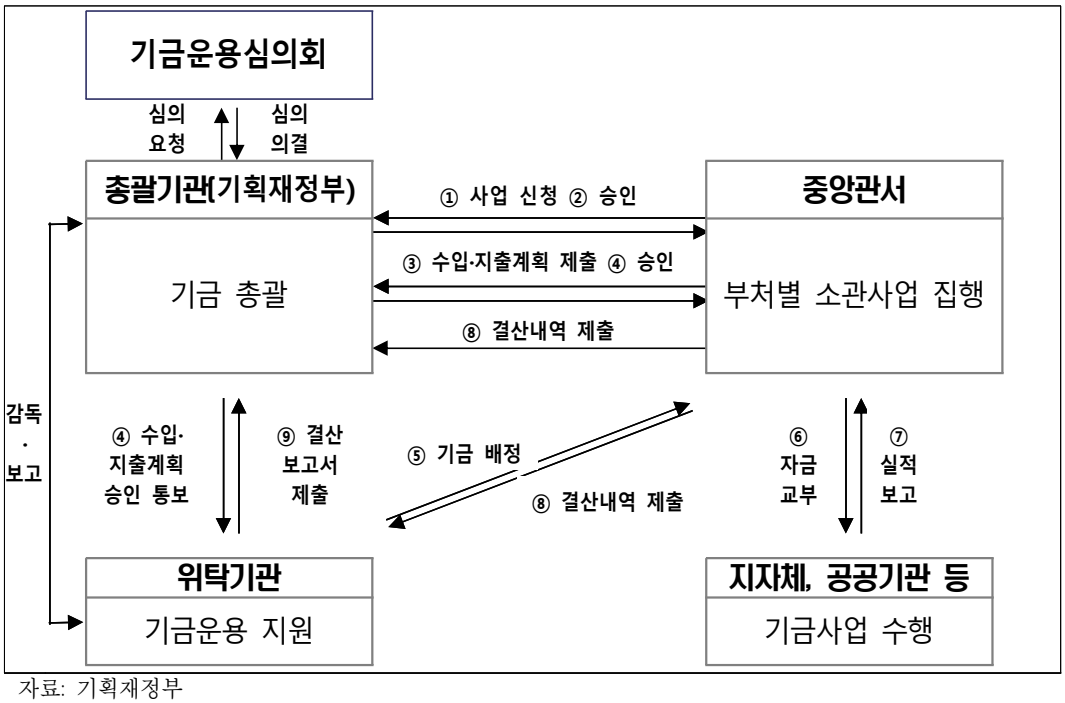
---

56) 기후대응기금(미래전략국)

5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8)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 부처) 고용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 기상청, 기재부, 농림부, 산림청, 산업부, 새만금청, 소방청, 중기부, 특허청,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기후대응기금 운용 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기후대응기금은 자체재원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이 저조하고, 일반회계전입금 등 외부재원 의존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자체재원 확보방안 등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내부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에 해당함.[59)]

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20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을 보면, 2019년 2,321억 7,400만원에서 2022년 3,167억 1,400만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 840억 8,800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2024년 9월 현재 552억 2,400만원의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음.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을 보면, 2019년 및 2020년에는 각각 113.5%, 114.9%로 계획액보다 수입실적이 많았으나, 2021년 60.1%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9월 현재 19.8% 계획액 대비 실적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9. |
|---|---|---|---|---|---|---|
|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계획액(A) | 204,600 | 215,818 | 490,325 | 730,584 | 389,340 | 279,542 |
|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실적(B) | 232,174 | 248,017 | 294,461 | 316,714 | 84,088 | 55,224 |
| 수입계획액 대비 실적비율(B/A) | 113.5 | 114.9 | 60.1 | 43.4 | 21.6 | 19.8 |

주 1) 수입실적은 총거래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2) 2023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액에는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계획액 외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있어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계획액과 차이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평균 가격 추이를 보면, 2020년 톤당 30,385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9월 현재 9,313원까지 하락한 상태로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단기간 내에 증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평균 가격 추이]

(단위: 원)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9 |
|---|---|---|---|---|---|
| 배출권 유상할당 평균 가격(톤당) | 30,385 | 26,373 | 23,243 | 10,672 | 9,313 |

자료: 기획재정부

자체수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전입금[60] 등 외부재원은 2조 905억원으로, 전체 기금수입 대비 93.9%에 이르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6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고 있으며, 2025년 계획안은 2조 6,224억원 중 2조 2,594억원(86.2%)이 외부재원으로 외부재원 의존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구조]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3 결산 | 2024 계획액 | 2025 계획안 |
|---|---|---|---|---|
| **총계(A)** | | **2,226,698** | **2,391,807** | **2,622,389** |
| 자체수입 |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수입 | 85,233 | 289,694 | 348,700 |
| | 기타수입 | 28,299 | 12,268 | 14,327 |
| | 소계 | 113,532 | 301,962 | 363,027 |
| 외부재원 | 일반회계전입금 | 1,222,255 | 1,149,413 | 1,331,859 |
| | 특별회계전입금 | 300,000 | 300,000 | 300,000 |
| | 기금전입금(복권기금, 전력기금) | 295,646 | 308,333 | 307,593 |
| | 공자기금예수금 | 272,597 | 319,910 | 319,910 |
| | 소계(B) | 2,090,498 | 2,077,656 | 2,259,362 |
| | 외부재원 비중(B/A) | 93.9 | 86.9 | 86.2 |
| 보전수입 | 여유자금회수 | 22,668 | 12,189 | - |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로, 기후대응기금은 2022년 및 2023년에 계획액 대비 수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재원 없는 이월[61] 조치를 하였으며, 2024년은 세수 재추계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예산(15.3조원) 대비 4.1조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액의 7%를 전입받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61) 2022년은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총 421억 3,900만원의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은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0억 8,600만원의 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였음.

<지 출>

# 13.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농촌진흥청):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이관에 대한 검토 필요

## 가. 개 요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 사업은 농업분야 국가정책 수요대응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내역사업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농촌진흥청 소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고, 2025년 계획안은 409억 8,700만원임.[62)]

[2025년도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R&D)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 (R&D) | - (34,101) | 40,987 | 40,987 | 100 |

주) 2024년까지 농촌진흥청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역사업(밭농업생산성증대 기술개발,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사업 등 8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이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 사업은 농업과 가축, 곤충 등 광범위한 농업분야와 관련된 R&D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편성되어 있음.

기후대응기금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등[63)]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나, 2025년 농촌진흥청 일반회계에서 기

62) 기후대응기금-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사업(R&D)(6431-451)(연구정책국)

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이 사업의 내역사업들 중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밭농업생산성증대 기술개발’ 은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시스템 구축, 농가 수량격차 경감을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경지이용률 제고 및 현장실증 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기술 및 직업적 건강보호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보임.(이하 표에서 굵은 표시 사업들의 주요 내용은 기후대응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임)

이와 같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역사업(15개 내역사업 중 8개, 계획안 409억 8,700만원 중 256억 8,300만원, 62.7%)들이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되었으므로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R&D)’ 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농업정책지원기술개발 사업(R&D) 내역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명 | 2025년 계획안 | 세부과제 주요내용 |
|---|---|---|
| **(1) 밭농업생산성증대 기술개발** | **5,519** |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 시스템 구축, 농가 수량격차 경감을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경지이용률 제고 및 현장실증 연구** |
| **(2) 곤충 기술경쟁력 강화** | **3,803** | **꿀벌 신규 외래 및 난방제 병해충 종합 방제 기술 개발, 곤충의 동물사료 사양, 사료화 효능 검정 및 생산 공정 표준화** |
| (3) 농림기반 스마트 | 900 | 농업소재의 치유요소 인자분석 및 스마트 활용기술 개발, 환경기능성 |

6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 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 · 노동 · 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 · 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 · 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 · 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 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명 | 2025년 계획안 | 세부과제 주요내용 |
|---|---|---|
|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 | 헬스케어 식물소재 규격화 기술 개발 |
| **(4) LMO환경위해성평가 기관 운영** | **1,561** | **LMO 위해성심사에 따른 위탁실험,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위해성 심사의 전문성 강화 지원 등** |
| (5) 생분해성 플라스틱 품질 향상과 실증연구 | 1,940 | 농업 부산물·폐자원을 이용한 농업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개발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대응 |
| **(6) 디지털 육묘 품질 안정 생산 연구** | **1,919** | **우량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우량묘 기준설정 및 생산 시스템개발** |
| (7) 디지털 기반 농촌공간 재생기술 개발 | 2,267 | 소멸위험에 처한 농촌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한 농촌 공간관리 기반 구축과 디지털·저탄소 지역재생 기술 개발 |
| **(8)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 기술개발** | **1,608**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제도 시행('20년)에 따른 재해예방기술 개발 및 직업적 건강보호 기반 구축** |
| (9) 꿀벌 강건성 연구 | 3,120 | 기후변화 적합 밀원숲 조성으로 꿀벌 등 화분매개자 보호, 생태계 보전 및 식량안보 증진 |
| (10) 농축산분야 탄소 저감기술 이행기반 구축 | 3,876 | 농업부문 탄소 배출·흡수통계 개선, 2030 NDC 이행 점검 및 감축기술의 현정적용 사업화 모델 개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 |
| (11) 순환농업 구현을 위한 시설재배 부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 1,066 | 지속가능한 저탄소·친환경 시설원예 산업 발전 및 폐자원 기반 구축 |
| **(12)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대응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기술 개발** | **5,473** | **품종-재배-유통 전(全)주기적 측면에서의 농축산물 수출현장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기반 마련** |
| (13) 간척지 첨단 농업기술 개발 | 2,135 | 간척지 활용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와 새만금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 촉진 및 수입 대체 작물 첨단 농업기술 개발 |
| **(14) 농축산물 수확후 관리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 **3,200** | **산지 농축산물 생산-수확-출하 과정 데이터 표준화 및 전과정 정보연계를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고도화** |
| **(15) 염소 신산업화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 **2,600** | **염소 실용축 육성과 생산·유통 전(全)주기 기술개발을 통해 개 식용 종식법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염소 산업 기반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자료: 기획재정부

# 14. 녹색전환보증 사업(환경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 보완 필요

## 가. 개 요

**‘녹색전환보증’**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및 녹색경제활동 영위 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560억원(66.7%) 증액된 1,400억원이 편성되었음.[64]

[2025년도 녹색전환보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녹색전환보증 | 84,000 | 84,000 | 140,000 | 56,000 | 66.7 |

주 1)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2024년도까지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2025년도부터 녹색전환보증으로 통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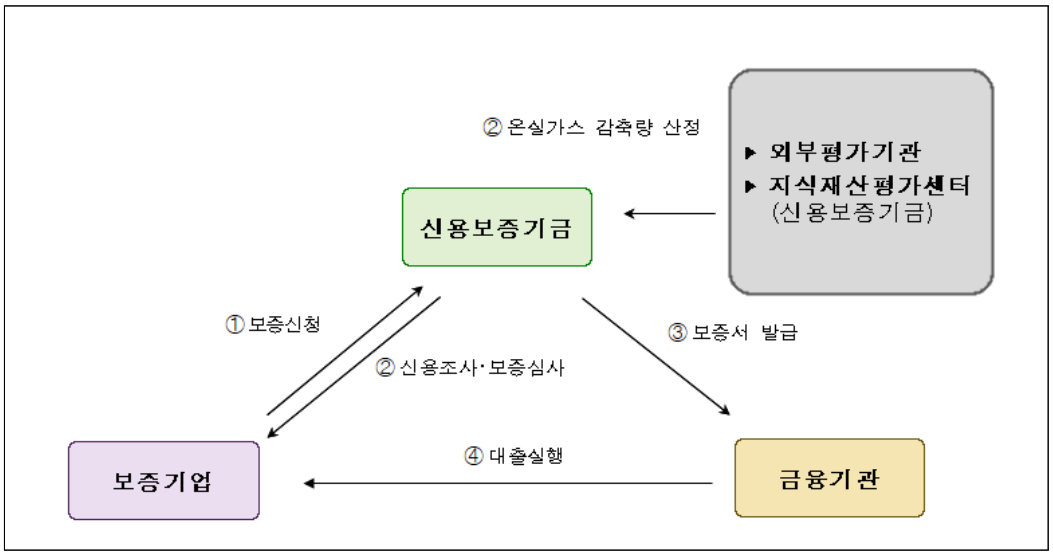
이 사업은 ① 기후대응보증(신용보증기금출연) 600억원, ② 기후대응보증(기술보증기금출연) 400억원, ③ 녹색기술산업보증 4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계획안 1,400억원은 모두 사업출연금(350-02목)임.

①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사업전환 기업, 저탄소 기술혁신 기업 및 저탄소 프로젝트 추진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활동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정부는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의 6,780억원 신규 자금 공급을 위해 운용배수 11.3배를 적용하여, 2025년도 계획안에서 보증재원 60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64) 기후대응기금-녹색전환보증(6232-505)(녹색전환정책관)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 지원구조]




②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을 외부감축기업, 자체감축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여,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등을 보증지원을 하는 것임.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 지원한도 예시]

| 400백만원CTRS (①온실가스 감축 소요자금) | + | 100백만원탄소가치평가 (②탄소가치 산출액) | = | 500백만원 ↑100백만원 (③총 보증가능금액) |
|---|---|---|---|---|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의 4,800억원 신규 자금 공급을 위해 운용배수 12배를 적용하여, 2025년도 계획안에서 400억원의 보증재원을 편성하고 있음.

③ 녹색기술산업보증은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융자·이차보전 등 융자규모를 확대하였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65]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영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보증사업임.

정부는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의 2,800억원 신규 자금 공급을 위해 운용배수 7배를

65) 녹색산업 등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여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의 예비승인은 통과하나, 담보력 부족의 사유로 은행의 여신심사에서 탈락하여 최종 지원에서 제외됨.

적용하여, 2025년도 계획안에서 400억원의 보증 재원을 계상하고 있음.

2024년까지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과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가 업무감독을 실시하는 집행부처로 기능하였음.[66]

그러나, 2025년부터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내 관련 보증사업을 세부사업 '녹색전환보증'으로 통합하며, 기후변화 대응 총괄 부처인 환경부를 집행부처로 지정하였음.

정부는 환경부가 보증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녹색분야 보증 공급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시장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 및 유망 환경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 나. 검토의견

**녹색전환보증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인데,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해당 기금에 대한 출연금 예산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소관(환경부 집행)으로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된 이 사업과 충돌되고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녹색전환보증의 3개 내역사업은 모두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67]에 따라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및 제70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보·신보로의 출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로 해석하기 어려움.[68]

---

66) 기후대응기금 지출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이나, 실제 집행부처는 개별 부처임.

67)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68) 예를 들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는 "국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출연의 근거를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녹색전환보증사업의 법적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특히,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은 정부의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편성되어 환경부가 집행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출연금의 법적 근거가 미진한 것으로 보임.[69]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출연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정부는 녹색전환보증사업에 대해 출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69) 이에 대하여 정부는 동 사업은 국가기금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자체 재정인 특별계정에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근거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주장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를 국가기금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정에 대한 출연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소관의 적절성 문제가 아닌 출연의 법적 근거 존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5.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신규)(환경부): 기후대응보증 사업 지원 대상과 유사·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한 사업설계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환경기업,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영위 기업 등에 대해 기술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신규로 400억원이 편성되었음.[70]

[2025년도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녹색전환보증 | 84,000 | 84,000 | 140,000 | 56,000 | 66.7 |
| 녹색기술산업보증 | - | - | 40,000 | 40,000 | 순증 |

주 1)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2024년도까지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2025년도부터 녹색전환보증으로 명칭변경하였음

녹색기술산업보증은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융자·이차보전 등 융자 규모를 확대하였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71]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영위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신규 추진되는 보증사업임.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으로, 환경부는 정부출연금(400억원)을 바탕으로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과 협업 하에 녹색산업에 대해 2,8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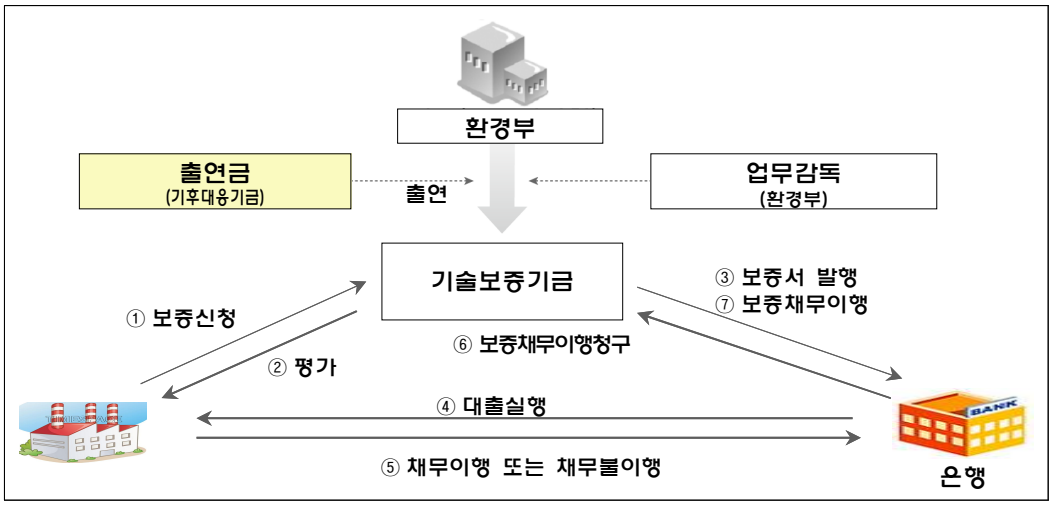
70) 기후대응기금 - 녹색전환보증(6232-505)(녹색전환정책관)

71) 녹색산업 등 지원대상에는 해당하여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의 예비승인은 통과하나, 담보력 부족의 사유로 은행의 여신심사에서 탈락하여 최종 지원에서 제외됨.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내용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용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지원 |
| 지원대상 |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수행 기업, 우수기술 보유 환경기업 |
| 운영체계 |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기관(기보) 협업 하에 녹색산업에 대한 보증공급(2,800억원 규모) |
| 사업규모 | 2,800억원규모 보증 공급 |
| 2025년도 계획안 | 400억원<br>(2,800억원÷ 7배(운용배수)) |
| 우대지원 | 보증금 산정 특례, 보증료 우대적용, 보증비율 상향* 등 적용 검토<br>* 일반적으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서 낮은 금리 적용 |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 지원체계]




환경부는 기존 보증사업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특화 보증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업종·품목만을 기준으로 보증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보증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기보에서 자체적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비용 없이[72]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은행에 제공할 계획임.

72)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는 외부기관 의뢰로 약 1,000~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높은 외부 검토비용,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기보의 자체적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의 지원대상이 기후대응보증 사업[73]의 지원대상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기후대응보증의 수혜기업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우수기술 보유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산업보증을 지원하고자 함.

그러나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후보증대응(기보출연, 신보출연) 사업의 지원대상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기후보증대응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화 기업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환경부가 지원하려는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임.

[타 부처 보증사업 지원대상 현황]

| 보증사업명 | 녹색기술산업보증 | 기후대응보증 |
|---|---|---|
| 주무부처 | 환경부 | 금융위, 중기부<br>→ 2025년부터 환경부 |
| 지원대상 | ①녹색분류체계에 따른<br>**녹색경제활동**,<br>②우수기술 보유 환경기업 |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사업화 기업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 |
|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 2025년도 계획안 | 400억원<br>(2,800억원÷운용배수 7배) | ① 신보출연: 600억원<br>(6,780억원÷운용배수 11.3배)<br>② 기보출연: 400억원<br>(4,800억원÷운용배수 12배) |

이에 대해 환경부는 녹색기술산업보증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뿐만 아니라 모든 녹색경제활동(자원순환, 물산업 등)에 대해 보증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이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74] 녹색

73) 기후대응기금-녹색전환보증(6232-505)(녹색전환정책관)

7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p.9

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따라서, 신규사업인 녹색기술산업보증사업과 기존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대상 범위가 중첩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녹색기술산업 보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기후대응보증의 수혜 기업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자금관리기금】

### <지 출>

## 16.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국고채 금리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조 2,179억 5,600만원(7.8%) 증가한 30조 4,77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75)]

[2025년도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국고채이자상환 | 28,259,942 | 28,259,942 | 30,477,898 | 2,217,956 | 7.8 |

주) 2023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7월까지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확정이자 26조 2,543억원과 2024년 7월말 이후 신규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 8,191억원 및 2025년 국고채 발행 한도 201.3조원에 대한 이자 3조 4,936억원을 합하여 산출되었음.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국고채이자상환 : 30조 4,779억원 (① + ② + ③)
-① 2024년 7월까지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확정이자(26조 2,543억원): 1,022.7조원 × 과거 확정금리
-② 2024년 7월말 이후 신규 발행분에 대한 이자(8,191억원): 25.2조원 × 3.4% × 12개월
-③ 2025년 신규 발행분 이자(3조 4,936억원): 2025년 발행 한도 201.3조원 × 3.4% × 6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75)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채이자상환(1071-780)(국고국)

## 나. 검토의견

**2024년 7월 국고채 평균금리는 3.02~3.209%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9월에는 2.83~3.011% 수준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가 전망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5년 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2024년 7월말 이후 신규 발행분에 대한 이자와 2025년 신규 발행분에 대한 이자는 3.4%의 금리를 적용하였음.

[2024년 월별 국고채 평균금리]

(단위: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국고채(1년) | 3.384 | 3.434 | 3.374 | 3.44 | 3.434 | 3.341 | 3.209 | 3.073 | 2.939 |
| 국고채(2년) | 3.338 | 3.424 | 3.377 | 3.458 | 3.458 | 3.319 | 3.141 | 3.032 | 2.929 |
| 국고채(3년) | 3.266 | 3.351 | 3.31 | 3.439 | 3.432 | 3.262 | 3.083 | 2.924 | 2.868 |
| 국고채(5년) | 3.302 | 3.388 | 3.342 | 3.495 | 3.467 | 3.284 | 3.107 | 2.948 | 2.918 |
| 국고채(10년) | 3.353 | 3.429 | 3.39 | 3.567 | 3.527 | 3.337 | 3.171 | 2.999 | 3.011 |
| 국고채(20년) | 3.291 | 3.394 | 3.374 | 3.491 | 3.462 | 3.294 | 3.138 | 2.997 | 2.963 |
| 국고채(30년) | 3.242 | 3.333 | 3.295 | 3.397 | 3.378 | 3.223 | 3.06 | 2.906 | 2.912 |
| 국고채(50년) | 3.215 | 3.309 | 3.27 | 3.375 | 3.358 | 3.207 | 3.02 | 2.839 | 2.83 |

주) 평균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조회한 금리로, 실제 국고채 낙찰금리와는 다를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러나 2024년 월별 국고채 평균금리를 보면, 2024년 7월 3.02~3.209%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9월에는 2.83~3.011% 수준으로 국고채 평균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고채(3년, 10년) 금리가 2024년 대비 하락한 2.8%, 2.9%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76)]

또한 2024.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77)]하였고, 2025년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하가 전망[78)]되고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계획안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77) 연 5.25 ~ 5.50% → 4.75 ~ 5.00%

7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계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한국경제연구원, 「2025년 주요국 경기 차별화 전망」, 2024.9. 등

참고로, 이 사업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2021년 9,000억원이 감액되었고, 2022년에는 7,602억 5,300만원, 2023년 및 2024년에는 각각 15억 1,200만원, 1,500억원이 감액되었음.

[2021~2024년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국회 감액규모]

(단위: 백만원)

| 연도 | 계획안 | 감액규모 | 국회확정 |
|---|---|---|---|
| 2021 | 21,110,096 | △900,000 | 20,210,096 |
| 2022 | 21,467,300 | △760,253 | 20,707,047 |
| 2023 | 24,813,349 | △1,512 | 24,811,837 |
| 2024 | 28,409,942 | △150,000 | 28,259,942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지 출>

## 17.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신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보완 필요

### 가. 개 요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은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9)]

[2025년도 특별인프라펀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특별인프라펀드 | - | - | 100,000 | 100,000 | 순증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특별인프라펀드 주요내용(1,000억원)

- (개요) 출자 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를 설립·운용하여 민자사업의 출자금 모집 지원
- (조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자 1,000억원 + 산업은행 출자 1,000억원 : 총 2,000억원
- (투자대상)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SPC) 출자지분
- (운용기간/방식) 최대 10년 /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투자 방식) ①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내, ②준공 시 투자금 회수, ③회수 시 적정 수준의 출자수익 지급 약정

자료: 기획재정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80)]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7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특별인프라펀드(2032-460)(재정관리국)

80) 보증지원 현황(2023년말 기준) : 218개 사업, 총 37.4조원
- 2022년 공급실적 : 대전하수처리장,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6개 사업, 2.3조원 지원
- 2023년 공급실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서울지하도로 등 6개 사업, 2.7조원 지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81]

## 나. 검토의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000억원의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를 ① 보증채무의 이행, ②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③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④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 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8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그러나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의 경우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의 법적근거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2조제5호의 위임규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과 시행령 제28조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인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펀드에 출자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의 용도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82)]

82)「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13440), 2022.09.27. 수정가결
: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24), 2021.12.09. 원안가결
: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국유재산관리기금】

## <총 괄>

## 18.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를 위해 2012년 설치되었고, 2025년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2,115억원(6.5%)이 증가한 3조 4,820억원임.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 수 입 | | | | 지 출 | | | |
|---|---|---|---|---|---|---|---|
| 구 분 | '24년 (비중) | '25년(안) (비중) | 증감 (%) | 구 분 | '24년 (비중) | '25년(안) (비중) | 증감 (%) |
| **합 계** | **32,705** | **34,820** | **2,115 (6.5)** | **합 계** | **32,705** | **34,820** | **2,115 (6.5)** |
| ○ 자체수입 | 20,572 (62.9) | 20,429 (58.7) | △143 (△0.7) | ○ 사업비 | 10,338 (31.6) | 10,826 (31.1) | 488 (4.7) |
| | | | | - 공용재산취득 | 9,338 (28.6) | 9,826 (28.2) | 488 (5.2) |
| - 국유재산매각 | 17,739 (54.2) | 17,779 (51.1) | 40 (0.2) | (계속사업) | 8,996 (27.5) | 9,681 (27.8) | 685 (7.6) |
| | | | | (신규사업) | 342 (1.0) | 146 (0.4) | △197 (△57.6) |
| - 대여료 등 | 2,833 (8.7) | 2,650 (7.6) | △183 (△6.5) | - 비축토지매입 | 1,000 (3.1) | 1,000 (2.9) | - (-) |
| ○ 정부 내부수입 | 5,588 (17.1) | 9,783 (28.1) | 4,195 (75.1) | ○ 기금운영비 | 28 (0.1) | 27 (0.1) | △1.1 (△3.9) |
| ○ 차입금 | - | - | - | ○ 공자기금예탁 | 12,500 (38.2) | 13,500 (38.8) | 1,000 (8) |
| ○ 여유자금회수 | 6,545 (20.0) | 4,608 (13.2) | △1,937 (△29.6) | ○ 여유자금운용 | 9,839 (30.1) | 10,467 (30.1) | 628 (6.4) |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주요 추진사업]

| |
|---|
| ○ 공용재산 취득사업: 9,826억원<br>- 신·증축 계속사업 : 405개 사업 8,982억원<br>- 신·증축 신규사업 : 61개 사업 136억원<br>- 리모델링 : 45개 사업 708억원<br>○ 비축토지 매입사업: 1,000억원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주요 편성기준으로 ① 계속사업은 사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소요를 반영하되, 사업지연 사업은 이월·불용 방지를 위해 최소소요 반영, ② 신규사업은 안전도·노후도·협소율 및 부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③ 리모델링을 통한 청·관사 기능 유지·향상으로 불요불급한 신축 요구를 억제하고, 가능한 경우 신축도 리모델링으로 대체, 이상 3가지를 들고 있음.

## 나. 검토의견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사업 중 2024년도 계획액의 20%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29개에 이르고 있으므로, 2025년도 계획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신·증축 계속사업은 405개 사업에 8,98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 완공소요는 우선 반영하되, 부지확보-설계-착공 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연차별 적정소요를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과다한 이월 등 집행부진 사업은 미반영 또는 최소반영함으로써 이·불용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함.

신·증축 신규사업은 61개 사업에 13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안전도 D등급 이하·노후도 30년 이상·협소율 60% 이하 건물 등을 검토하되, 통합·복합청관사를 우선 반영하였고, 철거 또는 부지매입이 불가피한 경우와 직제 제·개정 등에 따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리모델링은 2025년도 계획안에 45개 사업에 70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계획안부터 일반회계 개별 부처에서 편성하던 리모델링 사업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하였으며,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신축 요구를 억제하는 등의 편성기준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위와 같은 신·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편성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사업 중 2024년도 계획액의 20%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내역사업 기준으로 29개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 중 2024.10.22.까지 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25개로, 2024년도 예산집행의 지연으로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된 사업비가 모두 집행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2025년도 계획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예산편성 사업 중 2024년 예산의 20% 이상 이월·불용 예상 사업]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10.22. 기준 | | | 이월 예상액 | 불용 예상액 | 2025 예산안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
|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 | **구로세무서 신축** | **282** | **-** | **-** | **278** | **-** | **2,883** |
| **송파세무서 청사 재건축** | **송파세무서 청사 재건축** | **746** | **138** | **18.5** | **338** | **-** | **1** |
| **잠실세무서 청사 재건축** | **잠실세무서 청사 재건축** | **773** | **112** | **14.6** | **660** | **-** | **1** |
|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 **5,171** | **24** | **0.5** | **3,330** | **292** | **3,892** |
| **대법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 **5,843** | **289** | **4.9** | **5,440** | **119** | **19,009** |
|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별관 신축 | 11,223 | 6,880 | 61.3 | 4,343 | - | 5,894 |
| | 수원지법 안산지원 별관 신축 | 11,377 | 7,174 | 63.1 | 4,203 | - | 5,064 |
| | **제주지법 별관 신축** | **2,362** | **531** | **22.5** | **1,831** | **-** | **5,143** |
| | 법원기록관 신축 | 598 | 392 | 65.6 | 206 | - | 2,120 |
| **병무청 청사시설 취득** | **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증축공사** | **11,869** | **1,372** | **11.5** | **5,210** | **-** | **2,803** |
| **소방청 기타청사시설 취득** |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 | **18,710** | **1,505** | **8** | **9,248** | **-** | **8,647**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시설 취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정보센터 신축** | **6,925** | **17** | **-** | **1,500** | **-** | **4,174** |
| 외교부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 주프랑크푸르트(총) 청사 신축 | 2,275 | 839 | 36.9 | 660 | - | 3,525 |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2024.10.22. 기준 | | | 이월 예상액 | 불용 예상액 | 2025 예산안 |
|---|---|---|---|---|---|---|---|
| | | 예산 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
|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신축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청사 신축 | 2,621 | 9 | 0.4 | 1,354 | 0 | 4,801 |
|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 중랑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 332 | - | - | - | 332 | 217 |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신축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신축 | 1,195 | - | - | 150 | - | 340 |
| 동대구지구대복합 개발 | 동대구지구대복합개발 | 113 | - | - | - | 113 | 132 |
| 국회 헌정회관 신축 | 국회 헌정회관 신축 | 3,102 | - | - | 1,094 | 1,947 | 260 |
|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 | 옥천분소 청사 신축 | 115 | - | - | 43 | - | 717 |
|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 취득 | 제주서 추자파출소 증축 | 143 | - | - | 24 | 3 | 242 |
| | 서귀포서 서귀포 파출소 신축 | 325 | - | - | 66 | 6 | 621 |
|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 중부청 특공대 실내사격장 신축 | 820 | - | - | 174 | 7 | 551 |
| | 제주청 해양종합훈련시설 신축 | 3,336 | - | - | 728 | 2 | 1,995 |
| 해양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 태안서 청사 신축 | 513 | - | - | - | 153 | 284 |
| | 제주서 사라봉관사 신축 | 6,546 | - | - | 3,927 | 200 | 2,166 |
| 경찰청 용산경찰서 신축 | 서울 용산경찰서 재건축 | 10 | - | - | 10 | - | 952 |
|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 | 충남 논산경찰서 재건축 | 197 | - | - | - | 197 | 101 |
| 경찰청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 경기남부 수원남부경찰서 재건축 | 768 | - | - | 763 | 4 | 2,386 |
| 경찰청 부산금정경찰서 신축 | 부산 금정경찰서 재건축 | 1,241 | - | - | - | 1,200 | 3,845 |

자료: 기획재정부

# 국세청

# Ⅰ. 개 관

## 1. 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은 2,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77억원(△18.6%) 감소함.[1)]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3,641 | 2,964 | △677 | △18.6 |
| 총수입 | 3,641 | 2,964 | △677 | △18.6 |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은 2조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원(2.7%) 증가함.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19,512 | 20,040 | 528 | 2.7 |
| 총지출 | 19,512 | 20,040 | 528 | 2.7 |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677억원(△18.6%) 감소함.

[2025년도 국세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3,641 | 2,964 | △677 | △18.6 |
| 합 계 | 3,641 | 2,964 | △677 | △18.6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원(2.7%) 증가함.

[2025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19,512 | 20,040 | 528 | 2.7 |
| 합 계 | 19,512 | 20,040 | 528 | 2.7 |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고, 주요 증액 사업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조사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2개임.[2)3)]

[2025년도 국세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 4,524 | 9,592 | 5,068 | 112.0 |
| 2 | 조사활동지원 | 16,661 | 25,786 | 9,125 | 54.8 |

##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세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보전거래는 없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조사활동지원’ 사업의 증액을 통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하는 것임.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 체납액에 대한 현금정리 비율이 2020년 39.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30.6%까지 감소한 상황이므로,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은 2004년에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2025년까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는지와 개인납세자의 포인트 사용률이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승소장려금’ 사업은 지급근거 및 한도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국세수입 체납정리실적 제고 필요

### 가. 개 요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한 382.4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71.8조원, 특별회계 10.6조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3년도 결산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2024년 예산 대비 | |
|---|---|---|---|---|---|
| | | | | 증감액 | % |
| **총 국 세** | **3,440,711** | **3,673,140** | **3,824,296** | **151,156** | **4.1** |
| **[ 일반회계 ]** | 3,339,396 | 3,561,182 | 3,718,050 | 156,868 | 4.4 |
| ◇ 내 국 세 | 3,060,595 | 3,216,136 | 3,381,292 | 165,156 | 5.1 |
| ㅇ 소 득 세 | 1,158,330 | 1,257,605 | 1,280,066 | 22,461 | 1.8 |
| ▪ 근로소득세 | 591,442 | 620,327 | 647,310 | 26,983 | 4.3 |
| ▪ 종합소득세 | 214,368 | 230,552 | 225,941 | △4,611 | △2.0 |
| ▪ 양도소득세 | 175,560 | 224,165 | 206,011 | △18,154 | △8.1 |
| ▪ 배당소득세 | 40,623 | 39,038 | 46,757 | 7,719 | 19.8 |
| ㅇ 법 인 세 | 804,195 | 776,649 | 885,013 | 108,364 | 14.0 |
| ㅇ 상속증여세 | 146,341 | 146,566 | 127,879 | △18,687 | △12.7 |
| ㅇ 부가가치세 | 737,749 | 814,068 | 880,201 | 66,133 | 8.1 |
| ㅇ 개별소비세 | 88,209 | 101,945 | 96,663 | △5,282 | △5.2 |
| ㅇ 증권거래세 | 60,803 | 53,829 | 38,454 | △15,375 | △28.6 |
| ㅇ 인 지 세 | 7,969 | 8,505 | 9,085 | 580 | 6.8 |
| ㅇ 과년도수입 | 56,999 | 56,969 | 63,931 | 6,962 | 12.2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08,436 | 153,258 | 151,048 | △2,210 | △1.4 |
| ◇ 관 세 | 72,883 | 89,065 | 84,093 | △4,972 | △5.6 |
| ◇ 교 육 세 | 51,516 | 61,625 | 60,402 | △1,223 | △2.0 |
| ◇ 종합부동산세 | 45,965 | 41,098 | 41,215 | 117 | 0.3 |
| **[ 특별회계 ]** | 101,314 | 111,958 | 106,246 | △5,712 | △5.1 |
| ◇ 주 세 | 35,686 | 35,759 | 32,093 | △3,666 | △10.3 |
| ◇ 농어촌특별세 | 65,628 | 76,199 | 74,153 | △2,046 | △2.7 |

자료: 기획재정부

##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에 대한 현금정리 비율이 2020년 39.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30.6%까지 감소한 상황이므로, 국세 체납액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합한 체납액을 체납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정리하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정리보류 처리하고 있음.[4)]

정리보류는 ①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정리를 보류하는 것임.[5)]

---

4)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5) 「국세징수법」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41조(정리보류)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정리보류
제141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2019년 이후 정리대상 체납액은 2019년 28조 9,382억원에서 2020년 27조 1,86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38조 2,724억원으로, 2020년 이후 3년간 총 11조 858억원(40.1%)이 증가하였음.

[2019~2024년 국세수납액 및 체납정리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6. |
|---|---|---|---|---|---|---|---|
| 징수결정액 | | 2,800,327 | 2,856,578 | 3,355,359 | 3,729,198 | 3,445,554 | 2,438,605 |
| 수납액 | | 2,377,598 | 2,408,798 | 2,871,869 | 3,194,457 | 2,824,493 | 1,809,879 |
| 정리대상 체납액(A) | 합계 | 289,382 | 271,866 | 279,128 | 329,848 | 382,724 | 284,821 |
| | 당해연도 발생액 | 216,061 | 192,364 | 196,711 | 229,935 | 243,089 | 113,767 |
| | 전년도 이월액 | 91,394 | 92,844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 | 결정취소·결정감 | 18,073 | 13,342 | 12,867 | 14,623 | 16,038 | 6,437 |
| 체납정리 현황(B) | 합계 | 196,538 | 176,582 | 164,592 | 174,175 | 205,233 | 107,266 |
| | 현금정리 | 112,167 | 105,999 | 103,003 | 114,082 | 117,272 | 60,482 |
| | 정리보류 | 84,371 | 70,583 | 61,589 | 60,093 | 87,961 | 46,784 |
| 정리중체납 (A-B) | | 92,844 | 95,284 | 114,536 | 155,673 | 177,491 | 177,555 |

자료: 국세청

체납정리액은 2019년 19조 6,538억원에서 2021년 16조 4,592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조 5,23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다만 정리대상 체납액 대비 체납정리 비율은 2019년 67.9%, 2020년 65.0% 수준에서 2023년에는 53.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019~2023년 체납정리 비율]

(단위: 억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정리대상 체납액(A) | 289,382 | 271,866 | 279,128 | 329,848 | 382,724 |
| 체납정리액(B) | 196,538 | 176,582 | 164,592 | 174,175 | 205,233 |
| 체납정리 비율(A/B) | 67.9 | 65.0 | 59.0 | 52.8 | 53.6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이 관리하는 체납정리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한 현금정리 외에 결손처분과 유사한 정리보류까지 합하여 체납정리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제로 체납액이 수납된 현금정리에 한정하여 징수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9~2023년 현금정리 비율]

(단위: 억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정리대상 체납액(A) | 289,382 | 271,866 | 279,128 | 329,848 | 382,724 |
| 현금정리액(B) | 112,167 | 105,999 | 103,003 | 114,082 | 117,272 |
| 현금정리 비율(A/B) | 38.8 | 39.0 | 36.9 | 34.6 | 30.6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9년 이후 정리대상 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을 보면, 2019년 38.8%, 2020년 39.0%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30.6%까지 감소하고 있음.

즉,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던 2023년에는 38.3조원의 정리대상 체납액 중 11.7조원(30.6%)만 현금으로 수납되었고, 나머지 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정리보류된 것임.

2024년 정부의 세수 재추계(2024.9.)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이 세수 재추계 결과 대비 44.7조원(13.2%)이 증가한 382.4조원이 편성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코로나19 동안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있어 정리보류가 감소하여 전년이월 정리중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의 더딘 회복세로 당해연도 발생 체납액도 증가하면서 정리대상 체납액[6]이 증가하였으나, 체납업무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현금정리액[7]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8]

6) 정리대상체납 : (2021) 27.9조원 → (2023년) 38.3조원 (37.3%↑)

7) 현금정리실적 : (2021) 10.3조원 → (2023년) 11.7조원 (13.6%↑)

8) 코로나19 이후 체납업무가 정상화되면서 현금정리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리대상 체납액 증가율이 현금정리 증가율보다 높아 정리대상 체납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이 낮아짐.

참고로,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압류, 매각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고 있음.

[국세 체납액 징수 수단]

| 수단 | 법적근거 | 설명 |
|---|---|---|
| 독촉 | 「국세징수법」 제10조 |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 |
| 압류 | 「국세징수법」 제31조 외 |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재산을 매각·추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 |
| 매각·추심 | 「국세징수법」 제64조 외 |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체납국세에 충당 |
| 체납자료의 제공 | 「국세징수법」 제110조 |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체납액 5백만원 이상자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 인적사항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국세징수법」 제1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 |
| 출국금지 | 「국세징수법」 제11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 |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 「국세징수법」 제115조 | 국세를 3회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체납자 감치를 신청 |

자료: 국세청

## 【일반회계】

### <세 출>

# 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자발적 감정평가 확대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 필요

## 가. 개 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6,800만원(112.0%)이 증액된 9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 4,524 | 9,592 | 5,068 | 112.0 |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납세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2019.2.12.).[10)]

9) 일반회계-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133-303)(자산과세국)

10) (개정 전)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매매·감정·수용 등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
(개정 후) 신고기한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이 사업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11]으로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절차로 추진됨.

[2025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추진절차]

| 절차 | 내 용 |
|---|---|
| 신고서 접수 | ○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세 신고서 전산입력 및 신고서 오류 검증 실시 |
| 감정평가대상 선정 | ○ 상속·증여세 신고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정평가 검토대상 물건 추출<br>○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 |
| 조사착수 및 감정평가 실시 | ○ 신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br>○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협조안내문 발송<br>○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와 함께 감정평가 착수<br>○ 감정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완료 |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br>○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 심의 |
|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 ○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br>○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고지 |

자료: 국세청

## 나. 검토의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기 위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개인의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6,800만원(112.0%)이 증액된 9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간 예산상의 한계로 고액 부동산 위주로 감정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선정기준[12]을 낮춤에 따라 평가대상 부동산 수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안을 증액 편성

11)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12)「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하였다고 설명함.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낮출 경우 2023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은 3년 평균 건수의 40%,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은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70건의 감정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2025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예산안 |
|---|---|
| ①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예산 2,352<br>: 169건(3년 평균건수)<br>× 16.79(3년 평균수수료)× 82.9%<br>②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예산 2,172<br>: 29건(3년 평균건수)<br>× 90.34(3년 평균수수료)× 82.9% | ①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예산 4,530<br>: 269건(3년 평균건수×1.4)<br>× 16.84(3년 평균수수료)<br>②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예산 3,883<br>: 36건(3년 평균건수×3)<br>× 107.86(3년 평균수수료)<br>③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 예산 1,179<br>: 70건(예상 건수) × 16.84(3년 평균수수료) |

자료: 국세청

[2020~2023년 감정평가를 통한 가치상승액 현황]

(단위: 억원)

| 사업 연도 | 투입 예산 (①) | 당초 신고가액 (②) | 감정가액 평균 (③) | 가치 상승액주) (④=③-②) | 투입예산대비 비율 (④/①) | 신고가액대비 비율 (④/②) |
|---|---|---|---|---|---|---|
| 2020년 | 19 | 7,710 | 12,959 | 5,249 | 276.3 | 0.68 |
| 2021년 | 46 | 14,600 | 25,394 | 10,794 | 234.7 | 0.74 |
| 2022년 | 46 | 10,961 | 19,325 | 8,364 | 181.8 | 0.76 |
| 2023년 | 45 | 11,655 | 20,052 | 8,397 | 186.6 | 0.72 |
| **합계** | **156** | **44,926** | **77,730** | **32,804** | **210.3** | **0.73** |

주) 가치상승액 : 감정가액 - 신고가액

자료: 국세청

---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이 사업이 시행된 2020년 이후 4년간의 투입예산 대비 효과를 보면, 총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10배가 넘는 3조 2,804억원의 과세대상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상승하였고, 당초 신고가액에 비해서도 73%가 증가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됨.[13)]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세수확대를 위해 2025년 예산안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목적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이 사업의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를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도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확대는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도]

(단위: %)

| 성과지표 | 구분 | '23 | '24 | '25 | 2025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
|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 목표 | 19.0 | 20.9 | 20.9 | 최근 3년간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 평균값 +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비율 평균값 | 당해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신고건수 ÷ 전체 신고건수 |
| | 실적 | 20.6 | - | - | | |
| | 달성도 | 108.4 | - | - | | |

자료: 국세청

현재,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얻는 혜택은 자신이 부담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것 외에는 없음.[14)]

---

13) 가치 상승액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세율이 대부분 40~50% 세율 구간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세수효과도 큰 사업임.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또한 상속·증여세 신고 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발생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실시한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의 건당 평균 금액이 1,684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기 위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개인의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2023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건당 수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 건수 | 총수수료 | 건당 수수료 |
|---|---|---|---|
| 개인소유 | 577 | 9,700 | 16.84 |
| 법인소유 | 37 | 3,991 | 107.86 |

자료: 국세청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3.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여부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은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한 국민인지도 상승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112.5%)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 1,303 | 1,312 | 9 | 0.7 |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 200 | 425 | 225 | 112.5 |

[2024년 및 2025년도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예산안 |
|---|---|
|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200)<br>- 매체비 : (3개사×10)+영상제작비 70=100<br>- 역사 등 스크린 홍보<br>: (KTX서울역 홍보 2회×16.5) +(지하철 홍보 2회×11)=55<br>- 홍보물품 제작: 2,5000개×1,000원 = 25<br>- 리플릿・포스터 홍보: (리플릿 20만부×50원) + (포스터1만부×1,000원) =20 |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425)<br>- 매체비 : (TV송출 30+포털사이트 60) + 영상제작비 100 =190<br>- 역사 등 스크린 홍보<br>: (KTX서울역 홍보 1개월×16.5백만원) + (서울지하철 홍보 1개월×49.5)=66<br>- 지방 지하철 스크린 홍보: 66<br>- 전국 시내버스 홍보<br>: (수도권 시내버스 홍보 1개월×1.2×25대) +(6개 광역시 시내버스 홍보 1개월 ×0.6×33대)≒50<br>- 코엑스 스크린 홍보 2회×16.5 = 33<br>- 리플릿・포스터 홍보<br>: (리플릿 1만부×1,000원)+(포스터 1만부 ×1,000원) = 20 |

자료: 국세청

15) 일반회계-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납세자보호관)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4. 4월 도입되었고,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받아 아래 세금포인트 활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음.

[세금포인트 활용처]

| 도입시기 | 혜택내용 |
|---|---|
| 2004.4월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
| 2020.8월 |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 |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
| |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 |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 2022.3월 |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할인 |
| | ·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
| 2023.5월 |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1회 무상 이용 |
| 2023.9월 | ·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
| | · 행복한 백화점 물품 구매 시 할인 |
| 2024.4월 | · 경주시 사적지 등 입장료 할인 |
| 2024.9월 |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 입장료 할인 |
| 2024.10월 | · CGV 영화 관람료 할인 |

자료: 국세청

## 나. 검토의견

**2004년에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2025년까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는지와 개인납세자의 포인트 사용률이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내역을 보면, 2023년 기준 누적 총 3,733만명에게 98억 5,100만 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이 중 5,800만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용률은 0.5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법인납세자의 경우 포인트 사용률은 2.08%로 매우 낮은 수준임.

[최근 5년간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내역]

(단위: 만명, 백만점, %, 누계)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부여 인원 | 3,309 | 3,457 | 3,598 | 3,664 | 3,733 |
| 부여 포인트(A) | 5,900 | 6,663 | 7,431 | 8,768 | 9,851 |
| 사용 포인트(B) | 31 | 36 | 42 | 49 | 58 |
| 사용률(B/A) | 0.53 | 0.54 | 0.57 | 0.55 | 0.59 |

자료: 국세청

[최근 5년간 법인납세자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내역]

(단위: 만명, 백만점, %, 누계)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부여 인원 | 62 | 68 | 72 | 82 | 89 |
| 부여 포인트(A) | 558 | 626 | 694 | 772 | 920 |
| 사용 포인트(B) | 10 | 13 | 14 | 17 | 19 |
| 사용률(B/A) | 1.79 | 2.08 | 2.02 | 2.20 | 2.07 |

자료: 국세청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112.5%)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대중매체 홍보를 위해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역사 등 스크린 홍보를 위해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 시내버스 홍보를 위한 예산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대중매체 홍보 | 100 | 190 |
| 역사 등 스크린 홍보 | 55 | 165 |
| 전국 시내버스 홍보 | - | 50 |
| 포스터, 리플릿 홍보 | 20 | 20 |
| 홍보물품 | 25 | - |
| **합계** | **200** | **425** |

자료: 국세청

그러나 2004년에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2025년까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개인납세자의 포인트 사용률이 0.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16)]

세금포인트의 활용률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세청이 세금포인트에 대응하는 현금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민간이 운영하는 각종 포인트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될 수 없어 세금포인트 활용처는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할인 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는 납세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세금포인트 활용실적 개선을 위해 최근 국립자연휴양림(산림청), 국립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24.9월)·영화관(CGV)(24.10월)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광업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포인트만 존재할 뿐 이에 상응하는 대응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활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 보이므로, 장기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현재 부여된 포인트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포인트 활용을 유도하거나 청산한 후 세금포인트 제도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는 납세담보제공 면제에만 사용되었다가 2021년부터 사용처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향후 활성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협약 상대기관은 별도의 금전적 보전 없이 홍보의 목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제도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4.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일원화 필요

## 가. 개 요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및 일반건물 가격을 고시하여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8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5년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 2,886 | 2,886 | - | - |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18)]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중심 상권의 상업용 건물 등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세청은 2005.1.1.부터 토지·건물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기준시가를 매년 고시하고 있음.

이 사업은 전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개호 이상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거래 시세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17) 일반회계-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1133-301)(자산과세국)

18) 주택, 오피스텔 등 공시·고시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1.1.1.부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하고 있음.

[2025년도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사업추진 절차]

| |
|---|
| - 가격조사를 실시할 사업자 선정(5월)<br>- 사업자 선정 후 가격조사 실시(6~9월)<br>- 세무서별로 가격심의 후 납세자 사전열람 실시(10~11월)<br>-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시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심의(12월 중순)<br>- 기준시가 고시(12월말, 2025.1.1.시행) |

자료: 국세청

## 나. 검토의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2016.1.)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국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조사·평가·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으나,[19]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하여 공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별도로 조사하여 고시하고 있는 상황임.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 · 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 공시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 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2016년 마련되었음에도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국세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므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 일괄공시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개정 전 | 개정 후 (2016.1.19. 개정) |
|---|---|
| 〈신 설〉 |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 공시 등)<br>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 · 군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신 설〉 |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br>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 ·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의 국토교통부 일원화를 위해 2021년 이후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고시업무 이관을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내역]

| 일시 | 주요내용 | 회신내용 | 비고 |
|---|---|---|---|
| 2021.05. | 기준시가 고시 업무 이관 관련 의견 조회 |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준비에 상당기간 소요 | 유선 협의 |
| 2021.08.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협조 요청 | - | 공문 발송 |
| 2022.07. | 국토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 | 즉각적인 고시업무 이관은 어려우며 제도 방향에 대한 개선 후 이관 진행 필요 | 방문 설명 |
| 2023.04.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고시 업무 이관을 위한 추진계획 및 의견 요청 |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후 검토예정 | 공문 발송 |
| 2023.09.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일원화 관련 업무 진행 상황 및 추진 계획 | - | 공문 발송 |
| 2024.05.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관련 의견 요청 | - | 공문 발송 |

자료: 국세청

# 5. 승소장려금 사업: 조속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승소장려금’** 사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 지급 받는 금전적 포상금(310-03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5년도 승소장려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소송수행비용 | 8,893 | 8,893 | - | - |
| 승소장려금 | 582 | 582 | - | - |

[승소장려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승소장려금(전년수준) : 5억 8,200만원<br>- (2,379건×24.5만원) |

자료: 국세청

국세청의 승소장려금은 기본승소장려금과 특별승소장려금으로 구분되고, 기본승소장려금은 5만원(소가 3억 미만), 10만원(소가 3~10억원), 20만원(소가 10억원 이상)이 지급되며, 고액·중요소송 승소 시 40~1,600만원까지 특별승소장려금을 지급함.[21]

## 나. 검토의견

**승소장려금은 지급근거 및 한도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채 국세청 내부규정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일반회계-소송수행비용(2133-301)(징세법무국)

21) 승소장려금은 1984년부터 시행 중이며, 예산규모는 2005년 이후 동일함.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세청은 당초 국무총리훈령[22]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훈령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이 폐지(1995. 6. 23.)되었고, 이후 법무부가 승소판결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2016. 5. 29.)되었음.

현재 국세청은 법령에 승소장려금의 지급근거 및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국세청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23]에 근거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도 5억 8,200만원의 승소장려금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우수 변호사 및 직원에 대한 유인체계가 필요하고, 패소율에 대한 지적을 매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과세 유지에 기여한 직원에게 승소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며, 2024.9월 현재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등을 통해 이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승소장려금 지급이 과연 승소율의 상승 등과 같은 유의미한 성과로 귀결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매년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2)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190호)」
3. 위법부당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조치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행정청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소송수행상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고 승소판결을 받게한 소송수행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포상 및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

23)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2조(승소장려금) ①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승소금액비율과 승소노력도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세부지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승소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제60조의2(소송사무의 점검) 규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체 지급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승소장려금의 개인별 지급한도액은 연간 1,600만원으로 한다.

# 관세청

# Ⅰ. 개 관

## 1. 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은 1,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원(△16.5%) 감소함.[1)]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1,201 | 1,003 | △198 | △16.5% |
| 총수입 | 1,201 | 1,003 | △198 | △16.5% |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은 6,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0.6%) 감소함.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6,624 | 6,583 | △41 | △0.6% |
| 총지출 | 6,624 | 6,583 | △41 | △0.6% |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원(△16.5%) 감소함.

[2025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1,201 | 1,003 | △198 | △16.5% |
| 합 계 | 1,201 | 1,003 | △198 | △16.5%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6,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0.6%) 감소함.

[2025년도 관세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6,624 | 6,583 | △41 | △0.6% |
| 합 계 | 6,624 | 6,583 | △41 | △0.6% |

주) 총계 기준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관세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153억 1,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사업은 「관세법」 제3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이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3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사업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관세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 13,180 |
| 2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 2,135 |
| 총지출 | | 15,315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관세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납세자 권익보호’,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개임.[3)]

[2025년도 관세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R&D) | 500 | 1,500 | 1,000 | 200% |
| 2 |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 4,237 | 5,845 | 1,608 | 38% |
| 3 | 납세자 권익보호 | 333 | 1,273 | 940 | 282.3% |
| 4 |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 5,451 | 7,343 | 1,892 | 34.7% |

##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관세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보전거래는 없음.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폭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①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② 해외직구 물품 통관·검사장비 성능개선, ③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강화, ④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① 주요 공항만에 첨단 감시·단속 인프라 구축, ② 마약퇴치 홍보 및 마약 적발직원 보상 강화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은 총 1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관세박물관 활용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부산시가 얻는 편익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은 관세청 각 실국별, 본부별 기본경비 내에 관세청 직원에 대한 업무유공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은 기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만 분리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관세정보시스템의 해외확산 분야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출>

## 1.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신규): 관세박물관 신축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은 부산세관 옛청사를 복원하여 관세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청사시설관리 | 10,294 | 11,194 | 900 | 8.7 |
| 관세박물관 건축 | - | 900 | 900 | 순증 |

부산세관 옛청사는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밀수단속 등의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1973년 부산시 지방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으나, 1979년 부두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철거되었음.

관세청은 부산세관 옛청사를 복원하여 부산항과 세관의 역사를 전시하는 관세박물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5년 예산안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원이 편성되었음.

4) 일반회계-청사시설관리(7132-440)(기획조정관)

[복원대상 건물(부산세관 옛청사) 개요]

| | |
|---|---|
| ・명칭: 부산세관 옛청사(1911~1979)<br>・건축면적: 1동, 491.3㎡(약 148평)<br>・연면적: 1022.8㎡(약 309.4평)<br>・층수: 지상 2층(첨탑부는 지상 4층) |  |

자료: 관세청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및 사업개요]

○ 2025년 예산안: 총 9억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3억 3,600만원
- 실시설계비(420-02): 5억 6,400만원

○ 사업개요
- 위　　치: 부산세관 청사 연접 북항재개발사업 1~3구역 내 매립지
- 규　　모: 부지 1,938㎡, 건축연면적 1,344.10㎡
- 사업기간: 3년 [(2025) 설계 → (2026) 공사 및 복원 → (2027) 내부 구성]
- 총사업비: 총 159억원[설계비(2025) 9억원, 공사비 등(2026~2027) 150억원]
- 주요시설: 상설・특별전시실, 수장고, 강당, 교육실, 사무실, 카페 등

자료: 관세청

## 나. 검토의견

**첫째, 기존의 관세박물관들은 오래된 세관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거나 세관청사 내 일부를 전시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관세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관세청은 2024년 10월 현재 국립관세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립관세박물관은 서울세관 청사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 호남관세박물관은 옛 군산세관을 관세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 사업이 최초임.

[2024.10월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관세박물관 현황]

| 박물관명 | 설립연도 | 위치 | 건축방식 | 운영주체 |
|---|---|---|---|---|
| 국립관세박물관 | 2000년 | 서울세관 | 세관청사 활용 | 관세청 |
| 호남관세박물관 | 2006년(첫 개관)<br>2016년(리뉴얼 개관) | 군산세관 맞은편 | 기존세관 활용 | 군산시청, 군산세관 |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부산이 1876년에 개항한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로서 근대 교역의 중심지이며, 다양한 신문물이 부산항을 통해 유입되는 등 관세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므로 장소적으로 의미가 있고,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관세박물관 건립부지가 마련된 만큼 해양문화지구에 관세박물관을 건립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세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관세박물관들은 오래된 세관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거나 세관청사 내 일부를 전시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관세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5)]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 사업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 산 출 근 거 |
|---|---|---|
| 합 계 | 15,900 | - |
| 기본설계비 | 336 | - 공사비 81억원 × 10.37% × 40%<br>※ 제3종(복잡)중급 + 녹색건축 인증등급 일반등급 |
| 실시설계비 | 564 | - 공사비 81억원 × 10.37% × 60%<br>※ 제3종(복잡)중급 + 녹색건축 인증등급 5등급 |
| 공 사 비 | 8,100 | 연면적 1,022.8㎡ × 7,920천원/㎡ |
| 감 리 비 | 900 | - 공사비 81억원 × 11.15%<br>※ 전면책임감리비요율 (보통) |
| 기 타 | 6,000 | 역사관 내부 설치 비용 |

자료: 관세청

5) 관세청은 부산 관세박물관은 부산역·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관광객의 접근 용이성과 부산항의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세계화된 전시 공간 구성 및 관세의 역사와 제도를 종합하는 전문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서울 관세박물관은 타 도시대비 인구가 많고, 교육시설이 밀집한 도심에 자리해 있으므로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관세 교육을 제공하여 관세행정 홍보 및 관세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체험공간으로 기능을 특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둘째, 부산세관 옛청사를 복원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예술적 가치 및 관광객 증가 등의 편익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부산세관 옛청사를 복원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철거된 옛청사의 복원은 세관 역사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와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서 예술적·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며, 옛청사는 개항 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3대 근대건축물[6] 이지만, 부산역전 대화재(1953.11.)로 옛부산우체국, 옛부산역사가 소실되어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함.[7]

옛청사 복원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물의 예술적·문화재적 가치,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의 복원 및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 등 옛청사 복원의 편익은 대부분 부산시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옛청사 복원 사업은 관세청이 단독으로 추진할 예정임.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자체의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박물관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세관 옛청사의 복원을 통한 관세박물관 건립 사업은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8]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6) 부산세관 옛청사, 옛부산우체국, 옛부산역사

7) 부산항 재창조 시민 네트워크, 중구 미래포럼 등 시민단체가 모여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2024.2.26)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 및 언론보도(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 생방송 뉴스 보도(2024.3.5 등)

8)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옛청사 복원 후 주 기능이 관세청의 역사를 전시·홍보하는 관세박물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타 기관 공사 건축물에 비용 등을 지원한 사례가 없어 관세청 부지에 건립하는 관세박물관에 대해 시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보행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옛청사와 연계된 주변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부산세관 옛청사를 복원하여 관세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경우 부산의 대표적 건축물 복원에 대한 부산시민들이 얻는 심미적 가치,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경우 관광객의 증가 등 부산시가 얻게 되는 편익이 적지 않아 보이므로,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2.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신규): 기본경비 내의 업무유공 포상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은 관세청 직원들의 마약 등 불법 물품 적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근무 의욕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9)]

[2025년도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공항만감시지원 | 16,632 | 14,937 | △1,695 | △10.2 |
|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 - | 240 | 240 | 순증 |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은 마약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보분석 및 개장검사 등 세관검사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 업무가 요구되므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신설된 포상금임.[10)]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800건 × 1건당 기여자 4명 × 1인당 포상금 75,000원 = 2억 4,000만원<br>- 800건: 최근 4년간(2020~2023년) 평균 마약류 단속 건수 |

자료: 관세청

9) 일반회계-공항만감시지원(1131-305)(통관국)

10)「관세법」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 나. 검토의견

**마약류 단속 등 업무환경이 열악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하여 관세청 각 실국별, 본부별 기본경비 내에 관세청 직원에 대한 업무유공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의 최근 5년간 포상금(310-03)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포상금 예산이 13억 7,400만원이었으나, 이후 2023년 및 2024년에는 12억 2,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예산안에는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이 신규편성되면서 14억 5,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2021~2025년 포상금(310-03)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A) | 결산액(B) | 집행률(%) | 비고 |
|---|---|---|---|---|
| 2021 | 1,305 | 1,142 | 87.5 | - |
| 2022 | 1,374 | 1,436 | 104.5 | 예산현액 1,438 대비 집행률 99.9%(이용 30, 전용 34) |
| 2023 | 1,220 | 1,684 | 138.0 | 예산현액 1,696 대비 집행률 99.3%(이용 432, 전용 44) |
| 2024 | 1,221 | 838 | 68.6 | - |
| 2025안 | 1,458 | - | - | - |

자료: 관세청

2025년 관세청 전체 세부사업 중 포상금(310-03)이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공항만 감시지원, 관세탈루심사, 밀수단속 등 주요사업비 내에 편성된 포상금 외에도 본부 기본경비, 통관국 기본경비 등 실국별, 본부별 기본경비 내에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 관세청 포상금(310-03) 편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포상목적 | 포상대상 | 2024 | 2025 |
|---|---|---|---|---|---|
| 공항만감시지원 | 통관안전 강화 유공 포상금 | 마약류 등 위해물품 적발 강화 | 공무원(적발유공) | - | 240 |
| 관세탈루심사 |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 관세탈루행위를 세관에 신고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민간(신고자) | 20 | 20 |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활동지원 |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사업 | 공모전 우수작 포상 | 민간 및 공무원 | 50 | 50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포상목적 | 포상대상 | 2024 | 2025 |
|---|---|---|---|---|---|
| 밀수단속 | 밀수신고포상금 | 관세법 324조(포상)에 따른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 민간(신고자) | 506 | 506 |
|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 위험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우수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7 | 7 |
| 관세행정정보관리 (정보화) | 세관 정보화 지원 | 각종 경진대회 등 정보화 발전 기여 우수자 및 기관포상 | 민간인(공모당선자) 공무원(경진대회 우수자) | 26 | 23 |
| 본부기본경비 | | 관세행정발전 유공자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402 | 402 |
| 통관국기본경비 | | 통관업무 유공자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35 | 35 |
| 심사국기본경비 | | 심사업무 유공자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22 | 22 |
| 조사국기본경비 | | 주요 밀수단속 업무우수자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10 | 10 |
| 정보데이터정책관 기본경비 | | 정보데이터 업무 발전유공자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3 | 3 |
| 국제관세협력국 기본경비 | | 국제협력업무 유공자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12 | 12 |
| 서울본부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25 | 25 |
| 인천공항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29 | 29 |
| 부산본부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28 | 28 |
| 인천본부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15 | 15 |
| 대구본부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8 | 8 |
| 광주본부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10 | 10 |
| 중앙관세분석소 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2 | 2 |
| 관세평가분류원기 본경비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경진대회 | 경진대회 성적우수자 및 우수공무원 포상 | 민간 및 공무원 | 9 | 9 |
| 평택직할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4 | 4 |
| 인재개발원 기본경비 | | 우수공무원, 업무유공 등 포상 | 공무원(업무유공 등) | 1 | 1 |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신설 사유에 대해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특송화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통관·감시 직원들의 처리물량이 한계에 이르는 등 업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11]

11) 특송물품 통관현황(천건): (2017) 33,341 → (2019) 52,536 → (2021) 97,902 → (2023) 141,128

마약류 단속 등 업무환경이 열악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관세청 각 실국별, 본부별 기본경비 내에 관세청 직원에 대한 업무유공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3.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신규): 해외사업 분야의 통합 검토 필요

### 가. 개 요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은 「관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인건비 및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31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13]

[2025년도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 - | 13,180 | 13,180 | 순증 |

2025년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 예산안은 인건비 113억 5,500만원, 경상경비 21억 9,300만원에서 자체수입 3억 6,800만원을 감하여 총 13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113억 5,500만원
○ 경상경비 21억 9,300만원
○ 자체수입 △3억 6,800만원[14]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은 2006년 해외보급을 위한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으로 설립된 후 2008년 ‘한국전자통관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0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로 2010년 지정된 후 2024년 6월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관세법」개정을 통해 ‘한국관세정보원’이 설립되었음(2024.7.)[15]

12) 일반회계-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1441-503)(정보데이터정책관)

13)「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4) 2023년 대덕빌딩 임대·관리비 수입 (약 3,070만원/월) 기준 산정(2023.10. 취득)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연혁]

| 시기 | 법인 개편 경과 | 사업범위 | 변경사유 | 인원/조직 |
|---|---|---|---|---|
| ‘06.8.2. |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 국종망[주] 운영지원, 국종망 해외수출 | 신설 | 2본부 (48명) |
| ‘07.12.28. | 한국전자통관진흥원 | 〃 | 수출 등 수행사업 포괄 명칭변경 | 2본부 (69명) |
| ‘10.1.13.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 | 국종망 구축・운영, 국종망 해외수출 | 통관 외 국종망사업 포괄 명칭변경 | 3본부 (75명) |
| ‘23.12.31. | 〃 | 〃 | 개정「관세법」공포 | 3본부3센터 (191명) |
| ‘24.7.1. | 한국관세정보원 (신설) | 국종망 운영・관리 |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관 분리 | 3본부3센터 (146명) |
| |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 (舊 연합회) | 국종망 해외수출 | | 3본부1센터 (74명) |

주) 국종망: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약칭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
자료: 관세청

## 나. 검토의견

**2024년 7월 출범한 한국관세정보원은 기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만 분리되어 설립된 기관이므로, 장기적으로 관세정보시스템의 해외확산 분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7월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은 기관장[16] 및 3본부・3센터 조직으로 출범하였고,

15) 기존 연합회(해외보급 전담)와 분리 후 출연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공공기관 신규지정 추진 중(2025.1. 예정)

16) [2024년 기타 공공기관 및 한국관세정보원 기관장 인건비 비교]

(단위: 백만원)

| 기관명 | 기본연봉(A) ('24년 기준) | 성과연봉1) | | 급여 총계 (C=A+B) | 퇴직급여/ 4대 보험 (D=C*요율) | 인건비계 (C+D) |
|---|---|---|---|---|---|---|
| | | 지급률(r) ('23년 기준) | 금액 (B=A×r) | |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51,862 | 36% | 53,915 | 205,777 | 37,657 | 243,434 |
| 한국재정정보원 | 154,139 | 47% | 71,325 | 225,464 | 41,260 | 266,724 |
| 한국통계정보원 | 145,200 | 14% | 20,633 | 165,833 | 30,347 | 196,181 |
| 한국고용정보원 | 154,140 | 30% | 45,603 | 199,743 | 36,553 | 236,296 |
| 한국관세정보원('25년) | 154,140 | 40% | 57,186 | 211,326 | 38,674 | 250,000 |

주) 기관장 기본연봉은 2024년 공공기관장 상한액 기준 반영, 성과연봉은 B등급(40%) 기준을 적용
자료: 관세청

8월 현재 총 140명 규모로 운용 중에 있으나, 하반기에 하도급 업무를 담당할 11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으로, 2025년 인력운용 규모는 총 151명임.

[한국관세정보원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기관장 | 본부장 | 직원 | 합계 |
|---|---|---|---|---|
| 인 원 | 1 | 3 | 136 | 140 |

주) 2024년 8월말 기준, 하반기 하도급업무 11명 신규채용 예정
자료: 관세청

기존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서 한국관세정보원으로 승계된 인력은 본부장 3인을 포함한 134명이며, 기관장 1인(2024.7.1. 취임)과 퇴사·미승계 인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40명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서 승계된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한국관세정보원 승계 인원 |
|---|---|
| IT PM | 2 |
| IT품질관리 | 3 |
| 응용SW개발 | 15 |
| IT시스템관리 | 39 |
| IT시스템기술지원 | 54 |
| DB관리 | 2 |
| 보안사고대응 | 3 |
| 경영지원 | 13 |
| 본부장 | 3 |
| 기관장 | - |
| 해외사업 개발/R&D | - |
| **합 계** | **134** |

자료: 관세청

2025년 한국관세정보원에서 집행하게 될 예산안은 이 사업의 기관운영출연금 131억 8,000만원과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9억 3,600만원,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80억 4,500만원을 합하여 총 221억 6,100만원임.

[2025년도 한국관세정보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합계 | | 8,794 | 22,161 | 13,367 |
|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 | - | 13,180 | 13,180 |
|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 | 8,794 | 8,981 | 187 |
|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 - | 936 | 936 |
| |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8,794 | 8,045 | △749 |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존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17]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은 크게 ①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상담센터 운영), ② 관세정보시스템 해외사업(컨설팅, ODA 사업,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부분이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으로 분리되었고, 해외사업 부분은 여전히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舊 연합회)이 수행하고 있음.

해외사업 분야는 코로나19 시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긴 하였으나, 2022년 155억원, 2023년 16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세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해외확산은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장기적으로 해외사업 부분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관세청과 전자통관국제협력재단(舊 연합회)은 한국관세정보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바로 재검토하기는 곤란하나, 향후 사업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수출 사업의 공공기관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17)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개요]

| | |
|---|---|
| 회사명 |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 법인 | 민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
| 인원수 | 190명 |
| 출연금 | 6.6억원 / 삼성SDS, LG CNS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발 참여 11개社 공동출연 |
| 주요사업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해외수출 |
| 연혁 | “한국전자통관국제화재단” 설립(2006.8.)<br>“한국전자통관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2007.12.)<br>“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로 명칭변경 및 조직 개편(2010.1.)<br>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2010.2.) |

[최근 5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내 및 해외사업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

| 구 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국내 | **예산(A)[1]** | **9,732** | **10,254** | **11,144** | **11,260** | **11,260** |
| | (증액예산/증가률) | - | 5.2(5.3%) | 8.9(8.7%) | 1.2(1.1%) | 0.0(0.0%) |
| | (FP/업무증가률) | 13.2만(-) | 14.5만(9.8%) | 15.3만(5.0%) | 15.4만(0.6%) | 18.7만(21.7%) |
| | **집행경비(B)** | **9,938** | **9,948** | **11,133** | **12,816** | **14,535** |
| | 인건비 | 7,197 | 7,079 | 8,515 | 9,744 | 10,545 |
| | (인원/증가인원률) | 114명(-) | 118명(3.5%) | 129명(9.3%) | 131명(1.6%) | 140명(6.9%) |
| | 경상경비 | 1,367 | 1,515 | 1,388 | 2,081 | 3,110 |
| | 사업외주비 | 1,374 | 1,354 | 1,230 | 1,038 | 880 |
| | **차액(C)** | **△206** | **306** | **11** | **△1,603** | **△3,275** |
| **해외 영업이익(D)[2]** | | **8,569** | **7,115** | **3,878** | **15,503** | **16,523** |

주 1)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예산

2) 국내사업 부족액을 해외사업 영업이익(D)으로 충당 후 잔여 이익금은 관세정보시스템(UNI-PASS) 해외확산을 위한 홍보, 연구 등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에 활용

자료: 관세청

# 조달청

# Ⅰ. 개 관

## 1. 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3,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원(4.3%) 증가함.[1)]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3,620 | 3,783 | 163 | 4.3 |
| 총수입 | 3,620 | 3,783 | 163 | 4.3 |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2,466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1.7%) 증가함.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2,425 | 2,466 | 41 | 1.7 |
| 총지출 | 2,425 | 2,466 | 41 | 1.7 |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7,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원(△6.9%) 감소함.

[2025년도 조달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조달특별회계 | 8,027 | 7,475 | △552 | △6.9 |
| 합 계 | 8,027 | 7,475 | △552 | △6.9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7,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원(△6.9%) 감소함.

[2025년도 조달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조달특별회계 | 8,027 | 7,475 | △552 | △6.9 |
| 합 계 | 8,027 | 7,475 | △552 | △6.9 |

주) 총계 기준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조달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4억 7,7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 및 비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비축창고 재건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조달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조달특별회계] | | |
| 1 |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 477 |
| 총지출 | | 477 |

한편, 조달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조달전문교육 운영’,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청관사 개보수 및 임차’ 사업 등 총 6개임.[3)]

[2025년도 조달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조달특별회계] | | | | | |
| 1 |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 544 | 2,644 | 2,100 | 386.0 |
| 2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 10.097 | 15,007 | 4,910 | 48.6 |
| 3 |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 1,816 | 2,968 | 1,152 | 63.4 |
| 4 | 조달전문교육 운영 | 1,265 | 1,984 | 719 | 56.8 |
| 5 |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 257 | 353 | 96 | 37.4 |
| 6 | 청관사 개보수 및 임차 | 2,485 | 4,790 | 2,305 | 92.8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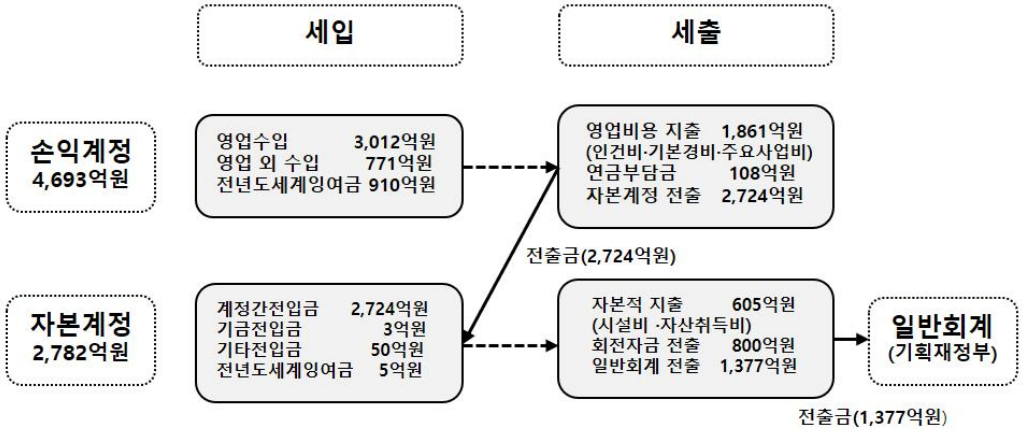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조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조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재정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계정 간 거래인 자본계정 전출 2,724억원, 회계 기금간 거래인 공무원연금부담금 108억원, 여유자금운용으로 회전자금 전출금 800억원, 회계 간 거래인 일반회계 전출 1,37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조달청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 강화를 위해 비축자금 700억원을 편성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경제안보품목의 긴급조달자금 100억원도 편성하였으며,

비축물자의 안정적인 보관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남 비축창고 신축 설계비 5억원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비축기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예산 12억원을 편성하여 공급망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음.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시설계약 사업수입은 수요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2023년에 미수납이 발생한 2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2024년에도 시설계약 사업수입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당초 계획상 2024년 7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말 기준으로도 개통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개월분 2차년도 관리용역비 적정 소요를 재산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수출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에서 수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사업 수행 시 유사 수출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조달특별회계】

### <세 입>

## 1. 시설계약 사업수입: 연례적 미수납액 발생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가. 개 요

**‘시설계약 사업수입’** 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적정성 검토, 공사원가 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억 8,300만원(29.9%) 증가한 52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시설계약 사업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시설계약 사업수입 | 40,686 | 52,869 | 12,183 | 29.9 |

4) 조달특별회계(손익)-시설계약 사업수입(45-454)(시설사업국)

[시설계약 사업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규모×평균수익률(%)
① 공사계약 : ㉠ + ㉡ = 21,737백만원
㉠ 기존 물량 15,465,800백만원 × 0.121% = 18,714백만원
㉡ LH 이관 물량 : 1,734,100백만원 × 0.121% × 80% = 1,679백만원
㉢ 기술형입찰 유찰 수의계약 대행 : 1,111,400백만원 × 0.121% = 1,344백만원
② 맞춤형서비스 : 2,200,000백만원 × 0.497% = 10,934백만원
③ 총사업비검토 : 9,000,000백만원 × 0.042% = 3,780백만원
④ 공사원가 사전검토 : 2,000,000백만원 × 0.033% = 660백만원
⑤ 설계적정성검토 : 12,700,000백만원 × 0.036% = 4,572백만원
⑥ 기술용역계약 : ㉠ + ㉡ = 11,186백만원
㉠ 기존 물량 985,200 × 0.743% = 7,320백만원
㉡ LH 이관 물량 : 650,400 × 0.743% × 80% = 3,866백만원

자료: 조달청

## 나. 검토의견

**시설계약사업수입은 수요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2023년에 미수납이 발생한 2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2024년에도 시설계약사업수입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설계약사업수입의 경우 징수결정된 시설계약사업 수입이 연도 내에 징수되지 못하고 미수납되는 비율은 2023년 8.8%로 2020년 5.6%보다 3.2%p 증가하였음.

[2020~2023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미수납액(B-C) | 미수납률((B-C)/B)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2020 | 33,788 | 33,788 | 37,801 | 35,586 | 105.3 | 2,215 | 5.6 |
| 2021 | 37,869 | 37,869 | 45,709 | 43,449 | 114.7 | 2,260 | 4.9 |
| 2022 | 38,917 | 38,917 | 46,321 | 43,023 | 110.6 | 3,298 | 7.1 |
| 2023 | 39,306 | 39,306 | 49,752 | 45,355 | 115.4 | 4,397 | 8.8 |
| 2024.8. 기준 | 40,686 | 40,686 | 32,813 | 28,569 | 70.2 | 4,244 | 12.9 |

자료: 조달청

특히 발생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수요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

액의 비율이 2020년 이후 급증하여 2023년 49.5%를 기록하였음.

[2018~2023년 미수납액 발생 사유]

(단위: 백만원, %)

| 사 유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
| 수요기관 예산부족(A) | 113 | 361 | 167 | 412 | 1,267 | 2,220 | 1,914 |
| 납기미도래 | 2,259 | 2,206 | 2,047 | 1,848 | 2,031 | 2,176 | 2,330 |
| 합 계(B) | 2,372 | 2,567 | 2,214 | 2,260 | 3,298 | 4,396 | 4,244 |
| A/B | 4.8 | 14.1 | 7.5 | 18.2 | 38.4 | 49.5 | 45.1 |

자료: 조달청

더욱이 2023년 미수납이 발생한 2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2024년에 신규로 징수결정된 수수료 등 총 12억 2,900만원을 또 다시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시설계약사업수입 미수납 발생 기관의 2024년 신규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연번 | 기관명 | 미수납액 (A) | 2024년 신규 미수납 건에 대한 현황 | |
|---|---|---|---|---|
| | | | 미수납액 | 미수납건수 |
| 1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267 | 411 | 34 |
| 2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459 | 400 | 41 |
| 3 | 문화체육관광부 | 94 | 18 | 1 |
| 4 | 법무부 | 81 | - | - |
| 5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71 | 133 | 14 |
| 6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62 | 71 | 7 |
|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8 | - | - |
| 8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6 | 91 | 6 |
| 9 | 국방시설본부 | 17 | 96 | 8 |
| 10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 15 | - | - |
| 11 | 국토교통부 | 13 | - | - |
| 12 | 전라남도 | 11 | - | - |
| 13 |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 10 | - | - |
| 14 | 전라북도 정읍시 | 9 | - | - |
| 15 | 대통령경호처 | 7 | - | - |
| 16 | 충청남도 서산시 | 6 | - | - |
| 17 | 전라북도 남원시 | 5 | 1 | 1 |
| 18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 4 | - | - |
| 19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4 | - | - |
| 20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 4 | - | - |
| 2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 | - | - |

(단위: 백만원, 건)

| 연번 | 기관명 | 미수납액 (A) | 2024년 신규 미수납 건에 대한 현황 | |
|---|---|---|---|---|
| | | | 미수납액 | 미수납건수 |
| 22 | 경상남도 밀양시 | 2 | - | - |
| 23 | 경상남도 양산시 | 1 | 1 | 1 |
| 24 |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 1 | - | - |
| 25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 1 | 7 | 3 |
| 합 계 | | 2,220 | 1,229 | 116 |

자료: 조달청

특히 국토교통부 지방청,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시설본부 등 국가기관이 조달 서비스 이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 스스로가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편성부터 조달 수수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달특별회계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요기관별 미납 현황을 파악하고 엄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수요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 기타전입금: 회전자금 내 연말 예상잔액의 세입 계상 필요

### 가. 개 요

**‘기타전입금’** 은 조달청 회전자금으로부터 조달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반납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2억 9,000만원(△94.3%)이 감액된 50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기타전입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기타전입금 | 87,300 | 5,010 | △82,290 | △94.3 |

조달청 회전자금은「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7)]에 따라 조달사업 수행을 위해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보유·운용되는 자금임.「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에 따라 회전자금의 재원은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 전입금,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지출용도는 조달물자의 구매대금을 대지급하기 위한 수요물자사업비와 비축물자 구매대금 및 물류비 지급, 여유자금 운용으로 구분됨.

조달청은 2022년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 대응 목적으로 구매자금 380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81억원의 긴급수급조절물자 자금을 신규편성하였음. 그런데 조달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요소수 구매 필요성이 사라지자 호주산 요소수 손실보전금

---

5) 조달특별회계(손익)-기타전입금(91-916)(공공물자국)

6)「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전액을 제외한 요소(수) 구매자금 379억원을 기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예산으로 자체 계획변경하여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적정 규모의 회전자금을 조달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할 것을 시정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지원 예산 481억원 중 집행계획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잔액 일부인 50억 1,000만원을 2025년도 기타전입금 세입으로 반영하였음.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기타전입금 세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 금 액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
| 2024예산 | 87,300 | 1,006억원(당초 마스크 비축자금) - 133억원(5천3백만장×250원) |
| 2025예산안 | 5,010 | 2024년말까지 예상 잔액은 87억원이나 이중 50.1억원을 2025년 세입에 우선 반영 |

자료: 조달청

##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2024년 말까지 발생 예정인 87억원 전액을 2025년 기타전입금 세입에 계상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2년도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회전자금으로 전출한 자금 481억원 중 요소수 구매에 집행한 2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79억원 중 총 392억원을 2024년 말까지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에 집행할 계획임.

[2022~2024년 긴급수급조절물자자금 집행 계획]

(단위: 억원)

| 당초 사업비 | 요소수 구매 | 잔액 | 연도별 | 품목별 집행(계약기준)계획 | | | | | | 잔액 (예상) |
|---|---|---|---|---|---|---|---|---|---|---|
| | | | | ◎◎◎ | □□□ | △△△ | ◇◇◇ | ○○○ | 계 | |
| 481 | 2 | 479 | 2022년 | 22 | 25 | - | - | - | 47 | 87 |
| | | | 2023년 | 27 | 77 | 10 | 43 | - | 157 | |
| | | | 2024년 | 93 | 15 | 10 | - | 70 | 188 | |
| | | | 계 | 142 [80일분] | 117 [67.5일분] | 20 [60일분] | 43 [90일분] | 70 [30일분] | 392 | |

주) 음영 표시한 부분은 계약이 체결되어 집행금액이 확정된 건임
자료: 조달청

그런데 조달청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의 구매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이 확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3종(□□□, △△△, ◇◇◇)으로, 그 외 ◎◎◎과 ○○○은 2024년도 구매계약이 예산편성 시점 기준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조달청은 2024년 말 기준 87억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매계약이 확정된 3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0억 1,000만원을 우선 조달특별회계로 반납하고, 남은 예상잔액 36.9억원은 구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2026년에 금액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말까지 발생한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인 2025년 반납이 완료되어야함을 고려할 때, 2024년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입예산 계상에서 누락하는 것은 세입의 과소계상을 불러오고 회전자금 내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2026년까지 보유하게 되어 자금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동 여유재원은 2022년 국회가 편성한 회전자금 전출금을 당초 편성 목적인 요소수 구매가 아닌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로 집행단계에서 사업내용을 자체변경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2024년 집행계획 상에서도 예상 잔액으로 표기되는 금액은 전액 2025년도 조달특별회계 기타전입금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임.

<세 출>

# 3.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협약체결 기간을 고려한 사업추진 철저 필요 등

## 가. 개 요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은 공공혁신수요 및 국민아이디어로 제안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제품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기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수요처 확산 및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5,200만원(63.4%)이 증액된 29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 1,816 | 2,968 | 1,152 | 63.4 |

조달청은 2023년 3월 3일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재)한국조달연구원을 조달청 소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음.[9)] 해당 고시에 따라 이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이 선정되었음.

지원대상 과제는 공공혁신수요 및 국민 아이디어로 제안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제품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R&D 수행 후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증을 지원하는 시범구매 연계형 R&D 과제와 기지정된 혁신제품 중 제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과제를 공모하여 R&D를 거쳐 국내 수요처 확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Scale-up형 과제로 나뉨.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시범구매 연계형 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 6개에 대한 6

8) 조달특별회계-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1235-338)(신성장조달기획관)

9) 「조달청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조달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을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예산 지원) 조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월분의 과제비 15억원을, Scale-up형 과제의 경우 신규 과제 2개에 대한 8개월분의 과제비 4억원을 각각 신규 과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① 연구개발연구활동비 등 : (2025 요구) 2,800백만원<br>- (요구)<br>■ 시범구매 연계형 : 공공혁신수요 및 국민아이디어로 제안된 공공혁신수요 중 미해결 과제에 대한 솔루션혁신제품 제시를 위해 2,250백만원 요구<br>* (종료) 2과제 × 500백만원 × 3개월 = 250백만원<br>(계속) 1과제 × 500백만원 × 12개월= 500백만원<br>(신규) 6과제 × 500백만원 × 6개월 = 1,500백만원<br>■ Scale- up형 : 국내외 조달시장에 적합한 기술 보완을 통해 국내 판로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550백만원 요구<br>* (종료) 1과제 × 300백만원 × 6개월 = 150백만원<br>(신규) 2과제 × 300백만원 × 8개월 = 400백만원<br>②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 : (2025 요구) 168백만원 |

자료: 조달청

##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최초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과제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협약체결 이후의 연구수행기간이 회계연도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제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시범구매 연계형에 대한 신규 과제 편성 개월 수는 6개월로 유지하였음에 반해, Scale-up 형에 대해서는 8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고 있음.

[2023~2025년 신규 과제 R&D 개월수에 대한 편성 현황]

(단위: 개월)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안) |
|---|---|---|---|
| 시범구매 연계형 | 9 | 6 | 6 |
| Scale-up형 | 9 | 6 | 8 |

자료: 조달청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현안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5~2026년 2개년도에 걸쳐 R&D를 진행하는 Scale-up형 과제를 2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연구개발 사업은 강화된 자체기준(예산편성 개월 수 축소, 단가 10% 삭감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달청은 2023년도 최초 사업을 시작할 당시 시범구매 연계형 및 Scale-up형 과제비로 각각 9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업체 선정평가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총 9개월치의 연구비 중 1개월분을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과제비 9억원 중 1억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어 교부된 바 있음.

이어서 2024년도 예산에 시범구매 연계형 R&D 신규 과제 1개와 Scale-up형 R&D 신규 과제 1개에 대하여 각각 6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였으나, 이들 과제에 대해 실제 과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시점은 각각 7월 29일, 7월 30일로 사실상 과제협약이 1개월씩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신규과제 협약체결 시점 및 국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과제명 | 협약 체결일 | 연구 종료일 | 2024년 국비 |
|---|---|---|---|---|
| 시범구매형 |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한 도시 전역 주차 관제 시스템 | 2024.7.29 | 2026.6.30 | 500 |
| Scale-up형 | AI 글로벌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탐지 서비스 개발 | 2024.7.30 | 2025.6.30 | 300 |

자료: 조달청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Scale-up형 신규 과제에 대해서 2025년 8개월분의 과제비를 편성하여 시범구매 연계형 과제에 비해 2개월분의 과제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음.

따라서 조달청은 하반기에 추진되는 동 과제의 특성상 과제협약시기를 앞당겨 추진함에 따라 차년도로 연구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구과제비 대비 6.0% 수준으로 통상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비율보다 높고, 한국조달연**

**구원은 기획평가관리비 중 평가관리업무를 2024년까지 외부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기획평가관리비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3년 최초 R&D 사업 수행 당시 과제비 14억 6,600만원에 대하여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을 책정하여 4.5%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비율을 보이다가, 2025년 예산안에는 해당 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하였음.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상 기획평가관리비는 1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023~2025년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3년 | 2024년 | 2025년(안) |
|---|---|---|---|---|
| 연구과제비 | 시범구매연계형 | 666 | 1,250 | 2,250 |
| | Scale-up형 | 800 | 450 | 550 |
| | 과제비(A) | 1,466 | 1,700 | 2,800 |
| 기획평가관리비(B) | | 66 | 116 | 168 |
| 과제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B/A) | | 4.5 | 6.8 | 6.0 |

자료: 조달청

그런데 조달청이 제출한 2023년도 한국조달연구원의 기획평가관리비 6,600만원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경비로 5,012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년 한국조달연구원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 | | 금액 |
|---|---|---|---|
| 인건비(A) | 책임연구원 1인 | | 252 |
| | 연구원 4인 | | 1,158 |
| 경비(B) | 운영평가비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4,000 |
| | 평가위원 수당 | | 1,012 |
| 출장비(C) | | | 27 |
| 기타비용(D) | | | 85 |
| 순원가(E=A+B+C+D) | | | 6,534 |
| 간접비 | | | 66 |
| 합계 | | | 6,600 |

자료: 조달청

경비 5,012만원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타 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평가관리, 선정과제관리 및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의 평가운영비가 일괄 지급되었고, 그 외 1,012만원은 평가위원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23년 조달연구원 기획평가관리비 중 경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 지급일자 | 지급처 | 지급내역 | | 경비활용 금액 | 비고 |
|---|---|---|---|---|---|
| | | 항목 | 지급액 | | |
| 2023.06.09 |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 안내,접수,공고, 평가등평가관리, 선정과제관리 및 시스템 운영비 | 40,000 | 40,000 | 평가업무 협력기관 |
| 2023.05.09 | 각 평가위원 | 평가수당 | 10,120 | 10,120 | 평가수당 개별 건별 직접 집행 |

자료: 조달청

2024년에도 조달청은 2024년 3월 또다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평가관리비 1억 1,600만원 중 4,000만원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지급하였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연구지원시스템이 한국조달연구원에 미비한 상황으로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해당 기능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였다고 설명하였음.[10)]

10) 조달청은 2025년부터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외부위탁 없이 한국조달연구원이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또한, R&D 과제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이 타 전문기관 대비 높은 것에 대하여도 R&D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기업과의 협의 및 과제 추진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핵심 기능인 평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위탁하는 등 기관의 자체적인 평가관리 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과제비 대비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규모 비율만을 2023년 4.5%에서 2025년 6.0%로 증액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개통 지연에 따른 적정 예산소요 반영 필요

## 가. 개 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기존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AI, 모바일분야 신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0.0%)이 감액된 15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 15,843 | 15,842 | △1 | △0.0 |

나라장터 시스템은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2002년에 구축되었음. 기존 시스템이 2002년 개통 이후 전면 개편 없이 장기간 사용되어 오면서, 노후화 및 장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처리속도 저하, 검색 불편, 수기입력 과다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며, 공공기관 자체조달시스템(28개)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음.

조달청은 2024년 7월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이후 유지관리를 전제로 2024년도 예산에 4차년도 구축비에 해당하는 일반연구비 73억 9,900만원을 편성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유지관리비로 6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연구비가 전액 순감되었고,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가 전년 대비 139.9% 증액된 156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1) 조달특별회계-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1131-505)(차세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 (2024) 14,018백만원→ (2025요구) 15,842원, +13.0%
- (요구) 시스템구축 완료 감안,
2024년 편성액 대비 1,824백만원 증액된 15,842백만원 요구
- (산출) 운영·유지관리비 15,842백만원

**① 일반연구비(260-01) : (2024) 7,398,953천원 → (2025요구) 0원, 순감**
② 임차료(210-07) : (2024) 93,000천원 → (2025요구) 185,000천원, +98.9%
가. 차세대나라장터 상용SW구독료(3종) 185,000천원
**③ 관리용역비(210-15) : (2024) 6,526,000천원 → (2025요구) 15,657,000천원, +139.9%**
가. 차세대나라장터 운영·유지관리비 15,657,000천원

(2)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 (2024) 1,825백만원 → (2025요구) 0원(순감)

자료: 조달청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상에는 차세대나라장터 상용SW 구독료 1억 8,500만원과 연간 운영·유지관리비 소요 156억 5,700만원이 더해진 158억 4,300만원이 2025년 이후 2027년까지 동일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음.

[2023~2027년 중기재정계획 상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중기재정계획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2023~2027 | 35,088 | 15,843 | 15,843 | 15,843 | 15,843 |

자료: 조달청

## 나. 검토의견

**조달청은 당초 계획상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2024년 7월 개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9월 말 기준으로도 개통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2개월분의 2차년도 관리용역비 적정 소요를 재산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당초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2024년도 7월 개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초기 코로나 19확산, IT업계 인력난, 공동수급사 중도탈퇴 및 개발 난이도가 높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되어 9월 말

기준으로 개통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조달청은 이와 같이 개통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9월 7일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에 7월 개통을 전제로 반영된 관리용역비 65억 2,600만원 중 25억 7,400만원을 2024년도 용역비로 집행하고, 남은 차액은 개통 지연으로 인해 기존 나라장터시스템 운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충당할 계획임.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장기계속계약 제안요청서상 연차별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과업수행기간 | 10.21.~12.31. | 1.1.~12.31. | 1.1.~12.31. |
| 장기계속계약금액<br>(제안요청서 기준) | 2,574 | 14,251 | 18,447 |
| 2025년도 예산안 기준<br>재정투입계획 | 6,526 | 15,657 | 15,657 |

자료: 조달청

2025년 예산안에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 156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만약 2025년 중에 동 시스템이 개통되지 않는다면 해당 예산은 다시 기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소요 예산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2025년에 실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비는 142억 5,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비 156억 5,700만원과 14억 6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2)]

12) 이에 대해 조달청은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 시점이 불확실하고 2025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개통지연 시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의 운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5.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신규): 유사 수출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은 해외실증 사업에 수반되는 인증·통관 등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분쟁 리스크, 언어·규제 등 수출 장벽 완화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5년도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 3,585 | 4,505 | 920 | 25.7 |
|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 - | 1,200 | 1,200 | 순증 |

조달청은 해외실증 시범구매 사업 수행 시 물품구매비 외에 해외인증, 수출통관, 물류 등의 경비 및 인증·행정비용이 추가 소요되나, 시범구매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지원이 불가하여 별도의 보조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1,200,000천원
가. 해외인증취득비 등
· 30,000,000원 × 40개 = 1,200,000,000원

자료: 조달청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실증 시범구매 참여 기업에 대해 해외인증 취득비, 통관·물류비 등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다른 사업인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의 내역사업인 ‘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출 연계 혁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애로해소가 필요한 경우 모든 기업에게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임.

13) 조달특별회계-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기획조정관)

## 나. 검토의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에서 수출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사업 수행 시 유사 수출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은 기업 맞춤형 서비스(해외지사화)로 해외무역관 전담직원 등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역할 대행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합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내수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실적이 저조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일반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 뿐만 아니라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컨설팅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수출바우처의 형태로 제공하고, 이들 기업이 바우처를 사용하

여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3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유형별 사용금액 현황]

| 대분류변환 | 서비스 건수 | 건수비중 | 바우처금액 (백만원) | 바우처 금액 비중 | 합계 : 국고금액 (백만원) | 국고 비중 |
|---|---|---|---|---|---|---|
| 조사/일반 컨설팅 | 124 | 4.2% | 942 | 4.8% | 659 | 4.8% |
| 디자인개발 | 319 | 10.7% | 2,652 | 13.4% | 1,849 | 13.5% |
| 브랜드개발/관리 | 18 | 0.6% | 182 | 0.9% | 127 | 0.9% |
| 홍보동영상 | 114 | 3.8% | 1,918 | 9.7% | 1,340 | 9.8% |
| 통번역 | 165 | 5.5% | 351 | 1.8% | 238 | 1.7% |
| 역량강화 교육 | 74 | 2.5% | 152 | 0.8% | 107 | 0.8% |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703 | 23.6% | 6,980 | 35.3% | 4,812 | 35.2% |
| 해외규격인증 | 281 | 9.4% | 1,512 | 7.6% | 1,026 | 7.5% |
| 특허/지재권 | 306 | 10.3% | 1,348 | 6.8% | 934 | 6.8% |
| 홍보/광고 | 291 | 9.8% | 2,729 | 13.8% | 1,899 | 13.9% |
| 국제 운송 | 548 | 18.4% | 829 | 4.2% | 567 | 4.1% |
| 서류대행/현지등록 | 19 | 0.6% | 40 | 0.2% | 27 | 0.2% |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16 | 0.5% | 134 | 0.7% | 93 | 0.7% |
| 무역보험보증 | 0 | 0.0% | 0 | 0.0% | 0 | 0.0% |
| 총합계 | 2,978 | 100.0% | 19,769 | 100.0% | 13,678 | 100.0%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7,000만원(8.8%)이 증액된 616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2025년 수출바우처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
| 예산규모 | 48,388 | 47,658 | 56,658 | 61,628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조달청은 사업 수행 시 유사 수출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14)]

14) 이에 대해 조달청은 여러 분야의 수출바우처가 제공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지원 서비스 사업과 달리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은 해외 인증, 통관・물류비 관련 특화된 지원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6. 혁신제품 임차 사업(신규): 임차계약을 통한 총 지급소요액 추계 및 사업계획 보완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혁신제품 임차’** 사업은 고가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방식의 시범구매 도입을 통해 신성장·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 외연 확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5년도 혁신제품 임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 10,097 | 15,007 | 4,910 | 48.6 |
|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 3,050 | 7,149 | 4,099 | 134.4 |
| 혁신제품 임차 | - | 3,500 | 3,500 | 순증 |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내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을 통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기수행하고 있음.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①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으로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② 조달청은 해당 수요를 혁신기업과 매칭하여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③ 혁신기업이 수요기관에 시범구매용 제품을 납품, ④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15)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구매사업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괄(혁신시제품 유형 2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이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구매계약을 통해 제품비 전액을 조달청 예산으로 조달하여야 했다면, 혁신제품 임차 사업을 통해 고가장비, 다기관 동시 실증, 유지관리 부담 등이 큰 제품에 대하여 임차(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구매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임.

[혁신제품 임차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 구분 | 내용 |
|---|---|
| 추진배경 | ㅇ 신성장·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 혁신제품 외연 확장을 위해 임차·구독 등 시범구매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br>* 10억원 이상 혁신제품 구매방식 전환: 임차방식2.5억원 x 14개 제품=35억<br>ㅇ 우주산업, 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도전형 R&D 결과물에 대한 시범구매 → 임차 방식으로 재정 부담 완화 |
| 기대 효과 | 임차 시범구매 도입으로 우주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 |

자료: 조달청

이에 평균 단가 10억원 상당의 혁신제품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균 4년의 기간 동안 임차를 한다고 가정하여 총 35억원의 임차료 예산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혁신제품 임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2.5억원* × 14개 제품 = 35억원
* 평균 단가 10억원의 고가장비를 4년 임차한다고 가정(10억원 / 4년 = 2.5억원)
ㅇ 임차료(210-07) : +3,500백만원

자료: 조달청

## 나. 검토의견

**첫째, 조달청은 이 사업의 도입을 통해 임차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구매대금의 지급방식이 통상의 계약이 아닌 임차·구독 계약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 중장기 재정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총 지급부채 규모를 사전에 명시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평균 단가 10억원의 고가장비를 4년간 임차한다는 가정하여 제품당 연간 임차·구독 비용 2.5억원을 산출하고, 14개 제품을 임차 시범구매 목표량으로 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35억원의 임차료를 신규 편성하였음.

이와 같은 고가 장비에 대한 장기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의 시범구매와 마찬가지로 수요기관으로 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인바, 조달청은 제품비를 단년도에 지급하였던 기존의 시범구매 방식과 달리 임차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제품 임차 방식은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단년도 지출액만 감소할 뿐, 임차기간을 통틀어 소요되는 물품 구매비는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총 140억원으로 기존의 시범구매 방식과 중장기 재정소요는 동일함. 오히려 4년간의 임차·구독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면, 기존의 시범구매 방식에 비해 재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조달청은 4년간의 임차기간을 평균으로 산출하여 총 140억원의 재정비용을 산출하였으나, 이러한 임차기간은 사업계획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차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재정부담이 예상보다 증가할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10월 현재 논의 중인 사업추진계획 상에서는, 10억원 이상의 혁신제품에만 임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10억원 이하 장비라 하더라도 그동안 시범구매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제품(다양한 환경에서 실증이 필요한 제품, 공동활용 실험·연구장비, 유지관리 부담이 큰 제품 등)에 대하여 혁신제품 임차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간 사용권만 임차하여 수요기관에 매칭하고,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조업체가 제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혁신제품 임차 방식은 제품의 구매대금을 구매계약 체결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년도에 걸쳐 지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년도 임차료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만으로는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재정의 예측가능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힌 혁신제품 임차 대상의 선정 기준과 임차 계약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사업계획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을 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 혁신제품 임차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나, 이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16] 조달청은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가 동 조항에 따른 '구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17]

그러나, 동 시행령상 조항의 근거법률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살펴보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임차가 동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임차 방식의 혁신제품 도입 및 확산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재정부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단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시범구매와 달리 임차기간, 임차기간 종료 후 소유권의 귀속, 임차기간 동안의 재정부담에 관한 기준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통계청

# Ⅰ. 개 관

## 1. 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은 3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36 | 36 | - | - |
| 총수입 | 36 | 36 | - | - |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은 5,6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5억원(32.3%) 증가함.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4,253 | 5,628 | 1,375 | 32.3 |
| 총지출 | 4,253 | 5,628 | 1,375 | 32.3 |

문의 : 김정환 예산결산조사관 na32@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6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2025년도 통계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36 | 36 | - | - |
| 합 계 | 36 | 36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5,6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5억원(32.3%) 증가함.

[2025년도 통계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4,253 | 5,628 | 1,375 | 32.3 |
| 합 계 | 4,253 | 5,628 | 1,375 | 32.3 |

주) 총계 기준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통계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음[2)]

한편, 통계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사업 등 총 6개임.[3)]

[2025년도 통계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 | 6,524 | 8,768 | 2,244 | 34.4 |
| 2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608 | 1,013 | 405 | 66.6 |
| 3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 7,740 | 10,316 | 2,576 | 33.3 |
| 4 | 경제총조사 | 764 | 1,427 | 663 | 86.8 |
| 5 | 인구주택총조사 | 26,326 | 115,826 | 89,500 | 340.0 |
| 6 | 농림어업총조사 | 2,096 | 56,447 | 54,351 | 2,593.1 |

##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통계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2026년 경제총조사 준비, 통계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통계생산 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하여 2024년 기존 통계의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단되는 등 이관이 지연되고 있어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운영위탁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통계청은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청은 2020년에 이어 2025년에도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등을 위한 태블릿 PC 소요량 29,613대를 전량 구매할 계획이나, 이 중 17,000여대에 대해서만 향후 자체 활용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므로, 향후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사한 조사 등에 사용되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업이행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아 지연이 발생한 과제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므로, 2차년도인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적정 사업 진행단계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출>

## 1.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업무 이관 신속 추진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방안 모색 필요

### 가. 개 요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위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 4,400만원(34.4%)이 증액된 87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 6,524 | 8,768 | 2,244 | 34.4 |

통계청은 디지털 전자조사 플랫폼 마련을 통해 다수의 기관에서 유사한 통계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통계시스템 활용으로 생산시간 감소, 유사·중복자료 생산을 방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은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3개년도에 걸쳐 2023년 구축완료되었으나, 2023년 말까지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이관된 구축통계는 112종에 불과하였음. 또한,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의 총사업비가 당초 465억원에서 692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에는 운영 전환을 위한 비용이 미반영되었음.

4) 일반회계-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2031-305)(통계서비스정책관)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대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으로 235종의 통계를 이관하기 위한 운영전환 비용 10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음.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전환에 따른 기존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 위탁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현황]

| 구분 | 2024년도 예산 | 2025년도 예산안 |
|---|---|---|
|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운영전환 비용 | 2024년 총사업비 재검토로 시스템 운영 전환이 일시 중단되어 미편성 | ○ **운영전환 비용 1,070백만원 (순증)**<br>* 2025년 235종 전환 비용 |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 ○ 유지보수 비용: 82백만원<br>○ 위탁운영비용: 1,912백만원 | ○ 유지보수비용: 1,129백만원<br>○ 위탁운영비용: 1,992백만원<br>* 旣이관 완료된 123종에 대한 위탁운영비 |
|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 ○ 유지보수 비용: 1,576백만원<br>○ 위탁운영 비용: 2,669백만원 | ○ 유지보수 비용: 1,576백만원 (전년동)<br>○ 위탁운영 비용: 2,616백만원 |

자료: 통계청

## 나. 검토의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하여 2024년 기존 통계의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단되는 등 이관이 지연되고 있어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통계청은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이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통계조사 이전계획 및 이전 현황에 따르면, 통계청은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조사에 따라 2024년도 이관을 보류하고, 2025년도에 285종, 2026년도에 43종의 통계를 각각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 이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연도별 통계조사 이전 계획 및 이전 현황(2023.12.기준)]

(단위: 종)

| 연도 | 통계조사 이전계획 건수 | | |
|---|---|---|---|
| | 당초 계획 | 변경 계획 (2023.12.기준) | 이전완료 |
| 2021 | 10 | - | - |
| 2022 | 22 | 33 | 33 |
| 2023 | 58 | 79 | 79 |
| 2024 | 60 | - | - |
| 2025 | 60 | 285 | - |
| 2026 | 60 | 43 | - |
| 2027 | 60 | - | - |
| 2028 | 137 | - | - |
| 합계 | 467 | 440 | 112 |

주) 통계청이 제출한 당초 계획상 2024년도 이전대상 통계는 60종이었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2024년도 이관계획이 중단되었고, 이후 물량을 2025년과 2026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이전계획을 살펴보면, 통계청은 2025년 235종의 통계를 이관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목표량이 50종 감소하였고, 해당분은 2026년에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나라통계시스템과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는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유지보수비용이 구축비의 10% 수준에서 연례적으로 편성·집행되기 때문으로,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관리대상 통계 이관에 따라 각 시스템의 위탁운영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가 매년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용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한 동일하게 지출되는 구조에 기인함.

[2023~2025년 기존 및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운영위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 | 2023 | 2024 | 2025 |
|---|---|---|---|---|---|
|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 관리대상 통계 | | 422 | 343 | 331 |
| | 위탁운영 비용 | | 3,832 | 2,669 | 2,616 |
| | 유지보수 비용 | | 1,576 | 1,576 | 1,576 |
| 차세대나라통계 시스템 | 관리대상 통계 | | 32 | 121 | 123 |
| | 위탁운영 비용 | | 462 | 1,912 | 1,992 |
| | 유지보수 비용 | 상용 SW | 80 | 82 | 90 |
| | | 응용 SW | - | - | 1,039 |

주 1) 2024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의 이관된 통계 112종과 신규 구축 9종으로 구성됨
2) 2025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관리대상 통계는 2024년 대행조사에 대한 신규 구축 통계 2종이 추가
자료: 통계청

따라서 통계청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관리대상 통계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두 시스템에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는 유지보수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태블릿 PC 활용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145억 5,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인구주택총조사 | 26,326 | 115,826 | 89,500 | 340.0 |
| 인구주택총조사 | - | 114,559 | 114,559 | 순증 |

통계청은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없는 심층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기업경영·연구 등의 기초자료제공을 위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행되는 동 조사의 특성상 2020년 예산 대비로는 19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0 예산 | 2025 예산(안) | 비고 |
|---|---|---|
| ○ 94,887백만원<br>· 조사원 인건비 61,960<br>· 기타운영비 32,927 | ○ 114,559백만원<br>· 조사원 인건비 70,112<br>· 기타운영비 44,447 | 5년 주기 현장조사 |

자료: 통계청

주된 증액 사유로는 2020년 대비 조사대상이 5.3%, 최저임금이 14.7% 증가하여 조사원 인건비가 2020년 대비 13.2% 증가하였고,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 조사원 이탈 비율을 낮추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기타운영비에 반영되었음.

기타운영비의 구성항목으로는 안전용품 구입비, 조사원 교통지원비, 홍보용역비, 태블릿 구입비 등이 있고, 편성비목은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임.

특히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등을 위한 태블릿 PC 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69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음.

5) 일반회계-인구주택총조사(3034-307)(조사관리국)

[인구주택총조사 기타운영비 구성항목별 편성 현황]

| 구분 | 항목 | 사업비 (백만원) | 예산편성 비목 | 산출근거 | | |
|---|---|---|---|---|---|---|
| | | | | 수량 | 단가 | 금액 (백만원) |
| 현장조사 지원 | 안전용품 | 1,031 | 일반수용비 (210-01) | 25,775명 | 40,000원 | 1,031 |
| | 교통지원비 | 3,402 | 일반수용비 (210-01) | 25,775명×22일 | 6,000원 | 3,402 |
| | 조사안내 | 3,465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 5백만 가구 | 770원×0.9 | 3,465 |
| | 조사용품류 (가방/지침서류/ 조사원증 등) | 6,662 | 일반수용비 (210-01) | 29,582개 | 20,000원×1.1 | 651 |
| | | | | 9,047부 | 59,250원 | 536 |
| | | | | 29,582개 | 17,000원×1.1 | 553 |
| | 콜센터 운영 | 2,312 | 일반용역비 (210-14) | 1식 | 2,312백만원 | 2,312 |
| 홍보용역 | | 12,360 | 일반용역비 (210-14) | 1식 | 123.6억원 | 12,360 |
| 태블릿 구입 | | 6,916 | 자산취득비 (430-01) | 21,613대 | 320,000원 | 6,916 |
| 기타관리운영 | | 8,299 | 일반수용비 (210-01) | - | - | 1,560 |
| | | |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 - | - | 745 |
| | | | 국내여비 (220-01) | - | - | 2,490 |
| | | | 임차료 (210-07) | - | - | 2,453 |

자료: 통계청

## 나. 검토의견

**통계청은 2020년에 이어 2025년에도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등을 위한 태블릿 PC 소요량 29,613대를 전량 구매할 계획이나, 이 중 17,000여대에 대해서만 향후 자체활용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므로, 향후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사한 조사 등에 사용되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필요한 태블릿 PC 수량은 총 29,613대로, 구체적으로 조사관리자용 2,490대, 조사원용 25,775대 등의 소요가 반영되었음. 이중 8,000대는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가구주택기초조사용 태블릿 PC 구매비를 통해 확보하였고, 남은 21,613대를 2025년에 신규로 구매하기 위한 구매비 69억 1,600만원을 기타운영비에 반영하였음.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에 반영된 태블릿 PC 구매비용]

(단위: 대)

| 구분 | | 수량 | 단가 |
|---|---|---|---|
| 2024~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태블릿 PC 소요량 | 조사관리자 | 2,490 | - |
| | 조사원 | 25,775 | - |
| | 조사업무지원 | 659 | - |
| | 교관단 및 실사지도 담당 등 | 689 | - |
| | 총 수량(A) | 29,613 | - |
| 기구매량(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활용분)(B) | | 8,000 | - |
| 신규 구매 필요량(C=A-B) | | 21,613대 | - |
| 도입 장비 대당 단가(23년 11월 출시모델, S사)(D) | | - | 320천원 |
| 2025년도 예산안상 구매비용(C×D) | | 6,916 | |

주) 통계청은 2024년 예산에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업 예산으로 236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태블릿 PC 8,000대를 구매하였음
자료: 통계청

2025년 인구총주택조사 이후 태블릿 PC의 활용과 관련하여 통계청은 자체활용 수요조사 결과, 총 7종의 조사에서 약 17,000대의 태블릿 PC를 자체 활용할 수 있다는 수요를 파악하였다고 설명하였고,[6] 남은 13,000대에 대해서는 타기관 활용수요를 파악하여 이관하거나, 공매 처분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런데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른 태블릿 PC 구입비 예산안 심의 당시, 2021~2023년 경상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에 태블릿 PC를 최대 10,000대 활용할 예정이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사회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6) 통계청이 제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구입한 태블릿 PC의 자체활용 통계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자물가조사, 농업면적에서 총 5,139대를 자체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이 밝힌 17,000여대의 자체활용계획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활용한 태블릿 PC 대수는 당초 계획보다 50% 감소한 5,139대에 그친 바 있음.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당시 수립한 2021년 이후 태블릿PC 활용계획 대비 통계청 자체 활용 대수]

| 연도 | 조사시기 | 조사명 | 필요 대수 | 최대 필요대수 | 실제 활용대수 |
|---|---|---|---|---|---|
| 2021년~ 2023년 | 매월<br>2~3월<br>4, 10월<br>5월<br>12월 | 경상조사<br>전국사업체조사<br>지역별고용조사<br>외국인고용조사<br>농어업통계조사 | 1,800대<br>10,000대<br>3,000대<br>1,000대<br>2,000대 | 10,000대 | 5,139대 |

자료: 통계청

따라서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태블릿 PC의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률을 제고하여 향후 유사한 종류의 태블릿 PC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전주기 태블릿 PC 자체활용 통계조사 현황〉

| 통계조사 | 활용 대수 | 조사주기 | 조사시기 |
|---|---|---|---|
| 지역별고용조사 | 3,100 | 반기 | 4월, 10월 |
| 경제활동인구조사 | 855 | 월 | 매월 |
| 소비자물가조사 | 174 | 순기 | 매월 순기 |
| 농업면적조사 | 650 | 매년 | 3 · 5 · 7 · 9 · 11월 |
|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등 | 360 | | |
| 합계 | 5,139대 | | |

자료: 통계청

# 3.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 유사한 연구용역의 연례적 반복 편성 지양 필요

## 가. 개 요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선진통계조사 기법 개발, 통계적 추론 방법 연구 개발 강화로 열악한 통계조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통계분석 연구를 통해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400만원(△7.7%)이 감액된 1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7)]

[2025년도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통계연구개발지원 | 1,490 | 1,376 | △114 | △7.7 |

이 사업은 자체수요 과제와 연구사업수행 과제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체수요과제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반면, 연구사업수행 과제는 신규 및 종료사업 3건에 따른 감액 소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 감액되었음.

7) 일반회계-통계연구개발지원(4031-311)(통계개발원)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1) 연구기획운영: (2024) 444 → (2025요구) 437백만원(△7백만원)**
- (요구) 연구과제 평가·관리와 학술지·심포지엄·논문공모전 등 연구성과 소통확산
- (산출) 인건비 49백만원, 연구과제 관리 및 기타운영 388백만원 (보고서 발간 △7백만원)

**(2) 자체수요과제: (2024) 362 → (2025요구) 367백만원(5백만원)**
- (요구) 통계개발개선, 통계방법론 연구 등 자체수요 과제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 (산출) 인건비 179백만원, 자문 및 발간117백만원, 기타운영비 71백만원(자문등△29백만원, AI통계분석장비+31백만원, 최저임금 반영+3백만원)

**(3) 연구사업수행: (2024) 684 → (2025요구) 572백만원(△112백만원)**
- (요구)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미래대비 연구사업 수행
- (산출) 자문 및 발간 81백만원, 연구사업 424백만원, 기타운영비 67백만원 (신규 및 종료사업 3건 △112백만원)

자료: 통계청

연구사업수행 과제의 비목별 편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구사업수행 내역사업의 2024년 및 2025년 예산안 세부내역]

| 2024년 | 2025년(안) |
|---|---|
| ○ 일반연구비(260-01) : 536백만원<br>가.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br>· 1종×155백만원=155백만원<br>나. SDG이행지원 연구<br>· 1종×94백만원=94백만원<br>다. 데이터 과학 연구<br>· 1종×70백만원=70백만원<br>라. 삶의 질 지표 세분화 연구<br>· 1종×80백만원=80백만원<br>라. 탄소중립지표체계 연구<br>· 1종×92백만원=92백만원<br>마. 인구정책지원 민관연구<br>· 1종×45백만원=45백만원 | ○ 일반연구비(260-01) : 424백만원<br>가.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br>· 1종×155백만원=155백만원<br>나. SDG이행지원 연구<br>· 1종×94백만원=94백만원<br>다. 삶의 질 지표 세분화 연구<br>· 1종×80백만원=80백만원<br>라. 인구정책지원 민관연구<br>· 1종×45백만원=45백만원<br>마. 자원자표본 연구<br>· 1종×50백만원=50백만원 |

자료: 통계청

## 나. 검토의견

**통계개발원은 연구사업수행 사업에 편성된 과제비의 대다수를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한 수행기관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위탁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

**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미래 대비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사업수행 사업에 편성된 과제를 집행하고 있음.

통계개발원은 2024년에 연구사업수행 사업 내 총 6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5개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5건의 과제 중 3건은 2022년·2023년에도 동일한 연구수행기관과 유사한 연구용역 과제로 위탁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2024년 연구용역 과제의 동일 기관, 동일 과제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용역명 | 일반 연구비 (계약 금액) | 관련 계약 개요 | | | | 동일 기관 수행 연도 |
|---|---|---|---|---|---|---|
| | | 계약명 | 계약기간 | 수행기관 | 수의 계약 여부 | |
| 한국의 사회동향 | 152 | 한국의 사회동향 2024 | 2024.03.19. ~ 2024.11.30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의 계약 | 2023, 2022 |
| SDG 이행 지원 연구 | 85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 2024.05.30. ~ 2024.11.30 | 한국환경 연구원 | 수의 계약 | 2023 |
| 데이터 과학 연구 | 69 | 인공지능 기반 행정자료 품질관리 도입방안 연구 | 2024.04.25. ~ 2024.11.15 | ㈜아일리스 프런티어 | 수의 계약 | 2023 |
| 삶의질 지표 세분화 연구 | 72 | 청년 고령자 삶의 질 지표체계 고도화 연구 | 2024.03.28. ~ 2024.11.15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수의 계약 | - |
| 인구정책지원 민관연구 | 41 |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 2024.04.02. ~ 2024.11.29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수의 계약 | - |
| 탄소중립지표체계 연구 | 79 |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국가 기후변화 지표체계 구축 및 진단연구 | 2024.04.08. ~ 2024.11.29 | 국가녹색 기술연구소 | 제한 경쟁 | - |

자료: 통계청

이에 대해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연구 및 SDGs[8] 지표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영역별 전문 집필진 참여가 필수적이고 매년 쟁점이 되는 주제로 새로운 이슈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SDGs 지표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통계청이 국제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므로 해당 보고서 작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히면서, 통계개발원에서는 국가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수요과제 및 자체과제 중심으로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는 원칙적으로 행정 및 제도개선에 긴요한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정하고,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의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따라서 통계청 및 통계개발원은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동일한 연구기관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개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를 의미함.

# 4. 개도국 양자 통계혁신 사업: ODA 사업 집행 지연을 반영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개도국 양자 통계혁신'** 사업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국제사회 지원 요청에 부응하여 개도국 자체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600만원(24.3%)이 증액된 4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개도국 양자 통계혁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개도국 양자 통계지원 | 3,804 | 4,766 | 962 | 25.3 |
| 개도국 양자 통계혁신 | 3,686 | 4,582 | 896 | 24.3 |

개도국 양자 통계혁신 사업에 포함된 내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시작한 베트남 통계역량강화 사업에 10억 800만원, 2024년부터 시작된 탄자니아 잔지바르, 튀니지,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 사업에 각각 2차년도에 해당하는 2025년 사업비 11억 4,300만원, 11억 3,100만원, 12억 1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9) 일반회계-개도국 양자 통계지원 사업(ODA)(7031-304)(기획조정관)

[2025년 내내역사업별 예산 산출 근거]

| 내내역사업명 | 2025년 사업내용 | 산출내역 |
|---|---|---|
| 베트남<br>통계역량강화<br>(2022~2025) | 베트남 통계역량강화<br>2023~2024년에 완료한 시스템 사후관리<br>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 1,008백만원<br>(생 략) |
| 탄자니아 잔지바르<br>통계역량강화<br>(2024~2025) |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DB서비스 역량강화<br>- 통계DB서비스시스템 구축<br>기자재 제공<br>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 1,143백만원<br>(생 략) |
| 튀니지<br>통계역량강화<br>(2024~2028) | 튀니지 행정자료 활용 역량강화<br>- 행정자료DB통합 관리시스템 구축<br>기자재 제공<br>통계품질관리시스템 개발계획 수립<br>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 1,131백만원<br>행정자료DB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406)<br>통계품질관리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90)<br>기자재 제공 (100)<br>전문가 파견 2회×2주×5명 (200)<br>현지교육 2회×2주×5명 (100)<br>초청연수 2회×2주×10명 (200)<br>외부전문가 자문 4회×4명 (4)<br>국내여비 5회×2명 (1)<br>업무협의 및 현지점검 2회×4명 (28)<br>수원국 업무협의 4회 (2) |
| 키르기스스탄<br>통계역량강화<br>(2024~2028) | 키르기스스탄 통계자료수집 역량강화<br>- 통계자료수집시스템 구축<br>기자재 제공<br>통계품질관리시스템 컨설팅<br>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 1,201백만원<br>(생 략) |
| ODA 사전타당성조사 | 2026년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 49백만원<br>사전타당성조사 1식 (49)<br>* 대상 : 인도네시아, 세네갈 |
| 통계ODA 평가사업 | 통계인적역량강화 사업 중간평가 | 50백만원<br>사후평가 용역 1식 (50)<br>* 대상 : 몽골, 키르기스스탄 |

자료: 통계청

## 나. 검토의견

**사업이행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아 지연이 발생한 과제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므로, 2차년도인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를 적정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2024년 예산에 탄자니아 잔지바르, 튀니지,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 사업을 각각 신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탄자니아 잔지바르 및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2024년 4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6월 사업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24년 9월 말 기준 전문가 파견 및 기자재 제공, 수원국 업무협의, 통계시스템 구축 사업 등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들이 추진 중임.

[2024년 탄자니아 잔지바르 및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 사업 용역사 선정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계약금액 | 계약시점 | 사업이행 합의서 |
|---|---|---|---|---|
| 탄자니아 잔지바르 통계역량강화사업 | 887 | 798 | 2024.4 | 6월 착수보고에서 체결 |
|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사업 | 804 | 798 | 2024.4 | |

자료: 통계청

그런데 튀니지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2024년 10월 초까지도 수원국의 사정 및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행합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이 사업 착수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청은 2024년 9월 ODA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기 위한 용역비를 과업수행기간에 따라 조정하지 않은 채 선(先)발주하였음.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8억 5,400만원 중 국내 초청연수(2회) 제외에 따른 조정만 이루어진 채 7억 3,900만원으로 발주하였고, 최종적으로 6억 4,900만원에 낙찰되었음.

[2024년 튀니지 통계역량강화 사업 용역사 선정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발주금액 | 계약금액 | 계약시점 |
|---|---|---|---|---|
| 튀니지 통계역량강화사업 | 854 | 739 | 649 | 2024.9. |

자료: 통계청

이는 다른 두 국가의 통계역량강화 사업과 달리 수원국과의 상반기 추진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10월 이후로 사업착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1차년도 과업수행기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사를 선정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에 해당할 소지가 큼.

실제로 통계청이 제출한 통계역량강화사업의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비교하여보면, 튀니지 통계역량강화사업의 경우 과업수행기간이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 사업보다 3개월 짧게 설정됨에 따라 인력을 총 13명으로 증원하고, 전문가 파견기간, 기자재 제공 단가도 높게 책정하는 등 용역비를 과다계상한 정황이 일부 나타났음.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 사업 및 튀니지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1차년도 용역비 산출내역서 비교]

| 구분 | |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강화사업 | 튀니지 통계역량강화 사업 |
|---|---|---|---|
| 인건비 | | 1급 1명,<br>2급 5명,<br>3급 2명,<br>5급 2명 등 총 10명 | 1급 1명,<br>2급 4명,<br>3급 4명,<br>4급 4명 총 13명 |
| 기준단가 환율 | | 1$=1,250원 | 1$=1,400원 |
| 전문가 파견 기간 | | 2주 | 3주 |
| 기자재 제공 | 데스크탑PC 대당 단가 | 165만원 | 200만원 |
| | 복합기 | 3,000만원 | 5,600만원 |
| 과업수행기간 | | 7개월 | 4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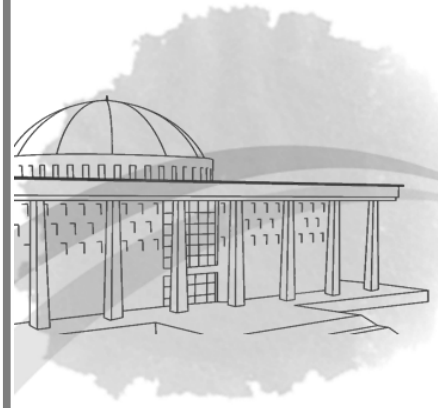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따라서 통계청은 튀니지 통계역량강화 사업의 1차년도 수행기간을 다른 두 개 ODA 사업과 마찬가지로 착수보고 후부터 최소 6개월의 사업기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사업기간 확보에 따라 1차년도 용역비의 일부가 2025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ODA 사업비를 감액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10)]

10) 이에 대해 통계청은 10월 현재 2024년 11월 중에 튀니지와의 사업이행합의서를 확정할 예정이며, 다른 두 국가의 ODA 사업 대비 용역수행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인력 및 용역비 투입을 통해 동일한 용역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임.

# 교육위원회



# 교육부

# Ⅰ. 개 관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8조 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472억원(10.3%) 증가함. 예산은 4,8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1억원(37.6%) 증가하였고, 기금은 7조 5,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41억원(8.9%) 증가함.[1)]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3,542 | 4,873 | 1,331 | 37.6 |
| 기 금 | 69,031 | 75,172 | 6,141 | 8.9 |
| 총수입 | 72,573 | 80,045 | 7,472 | 10.3 |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104조 8,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879억원(9.5%) 증가함. 예산은 98조 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833억원(9.5%) 증가하였고, 기금은 6조 7,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46억원(9.8%) 증가함.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896,146 | 980,979 | 84,833 | 9.5 |
| 기 금 | 61,742 | 67,788 | 6,046 | 9.8 |
| 총지출 | 957,888 | 1,048,767 | 90,879 | 9.5 |

주)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완료(2024.6.27.)된 예산 4조 7,726억원이 미포함된 금액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됨. 세입예산안은 4개 회계 20조 1,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795억원(4.0%) 증가함.

[2025년도 교육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3,429 | 3,717 | 288 | 8.4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38 | 51 | 13 | 31.6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 32,322 | 31,020 | △1,302 | △4.0 |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157,923 | 166,719 | 8,796 | 5.6 |
| 합 계 | 193,712 | 201,507 | 7,795 | 4.0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8조 8,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98억원(8.2%) 증가함.

[2025년도 교육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909,686 | 993,355 | 83,669 | 9.2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3,585 | 3,256 | △329 | △9.2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 32,322 | 31,020 | △1,302 | △4.0 |
|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 152,996 | 161,356 | 8,360 | 5.5 |
| 합 계 | 1,098,589 | 1,188,987 | 90,398 | 8.2 |

주 1) 총계 기준
2)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완료(2024.6.27.)된 예산 4조 7,726억원이 미포함된 금액임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4조 2,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8,243억원(6.1%) 증가함.

[2025년도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사학진흥기금 | 3,073 | 3,073 | 5,650 | 2,578 | 83.9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131,467 | 131,467 | 137,133 | 5,666 | 4.3 |
| 합 계 | 134,540 | 134,540 | 142,783 | 8,243 | 6.1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9월 말 기준임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4개(1,253억 6,1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은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 지역인재전형 확대·고도화, 입학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여 교실혁명의 주체가 되는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예비교원의 AIDT(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AIDT 구독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지막으로,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사업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20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교육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1 | 지역인재육성지원 | 1,72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2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1,877 |
| [사학진흥기금] | | |
| 3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 | 120,05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 |
| 4 | 연금드림콜센터 운영 | 1,714 |
| 총지출 | | 125,361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교육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등 총 26개임.[3)]

[2025년도 교육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보통교부금 | 66,338,469 | 69,659,572 | 3,321,103 | 5.0 |
| 2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 600,426 | 743,713 | 143,287 | 23.9 |
| 3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 200,142 | 247,905 | 47,763 | 23.9 |
| 4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33,320 | 560,839 | 27,519 | 5.2 |
| 5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2,300 | 3,100 | 800 | 34.8 |
| 6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 1,635 | 4,200 | 2,565 | 156.9 |
| 7 |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ODA) | 119,093 | 134,464 | 15,371 | 12.9 |
| 8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 1,750 | 2,450 | 700 | 40.0 |
| 9 | 온라인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활성화 지원 | 1,860 | 4,080 | 2,220 | 119.4 |
| 10 |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3,224 | 4,660 | 1,436 | 44.5 |
| 11 | 지역인재정책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390 | 595 | 205 | 52.6 |
| 12 | 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 9,077 | 12,614 | 3,537 | 39.0 |
| 13 | 영유아보육료 지원 | 2,673,100 | 3,240,039 | 566,939 | 21.2 |
| 14 | 보육사업관리 | 3,650 | 5,514 | 1,864 | 51.1 |
| 15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1,886,306 | 1,961,911 | 75,605 | 4.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16 | 국립대학 인건비 | 1,825,887 | 1,872,672 | 46,785 | 2.6 |
| 17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1,202,500 | 2,001,000 | 798,500 | 66.4 |
| 18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 511,597 | 593,048 | 81,451 | 15.9 |
| 19 | 한국장학재단 출연 | 367,382 | 407,913 | 40,531 | 11.0 |
| 20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4,720,453 | 5,313,379 | 592,926 | 12.6 |
| 21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09 | 1,092,909 | 87,600 | 8.7 |
| 22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 612,917 | 658,772 | 45,855 | 7.5 |
| 23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 351 | 1,673 | 1,322 | 376.6 |
| [사학진흥기금] | | | | | |
| 24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융자) | 69,000 | 218,063 | 149,063 | 216.0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 | | | |
| 25 | 연금급여 | 4,484,529 | 4,921,681 | 437,152 | 9.7 |
| 26 |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3,654 | 5,845 | 2,191 | 60.0 |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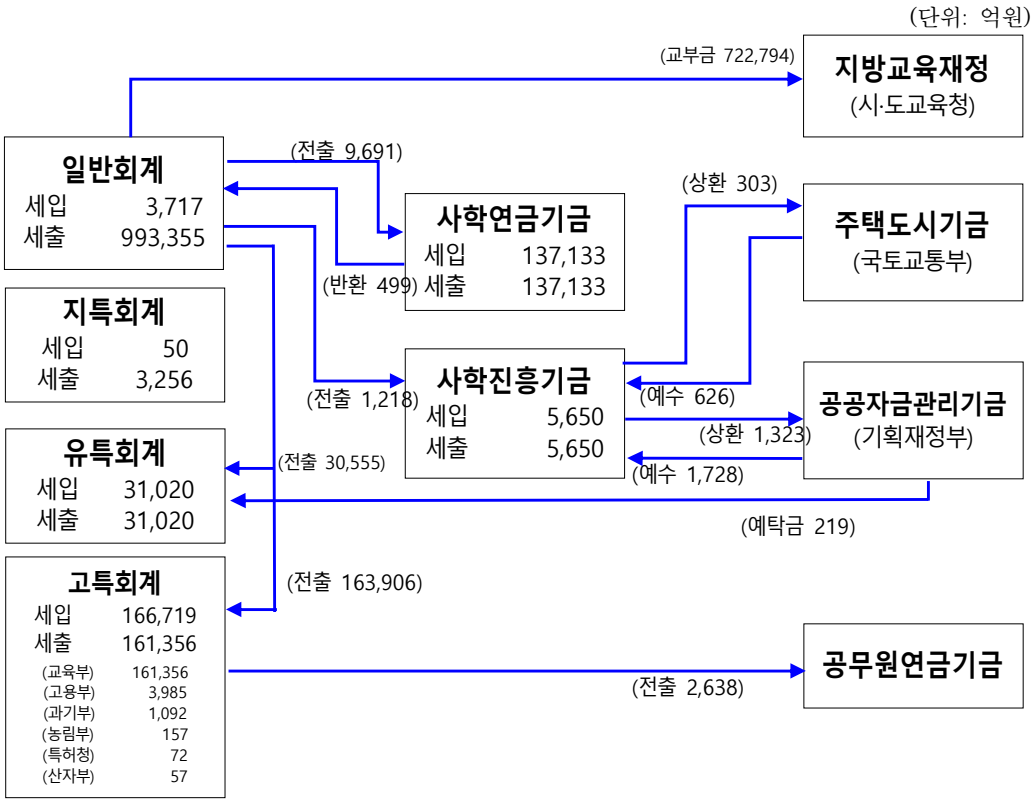
교육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개의 기금(사학진흥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554억 7,1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6조 3,905억 8,900만원, 사학진흥기금으로 1,217억 8,7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9,690억 8,9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638억 6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498억 9,700만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322억 6,800만원, 주택도시기금으로 303억원이 예수원금 및 이자로 상환되었음.

[교육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2024년 정부조직법(2024.6.27.)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와 예산(2025년 5조 3,714억 5,300만원)이 교육부로 이관되었다는 점, 의대 교육여건 개선, 국가장학금 확대 등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8,306억 2,200만원 증액되었다는 점임.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유보통합 추진 시 지역 단위의 업무·재정이관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간 충분하고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의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셋째, RISE사업은 사업 개편 취지와 다르게 목적과 용처가 정해진 사업예산이 많아 2조 10억원의 규모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는바,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RISE의 당초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용처가 정해진 사업들도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가장학금 사업은 수혜 대상 확대와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 소요 전망과 명확한 사업목적을 고려한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의대여건 개선사업은 ① 사전타당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되었다는 점, ② 대학별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공간구성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의대생 1인당 소요면적과 면적당 평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점, ③ 향후 사업비 상승 시 사업 지연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면밀한 적정성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융자는 병원 경영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정상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 가. 개 요

**‘AI 디지털교과서(AIDT: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의미함.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AI디지털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사업으로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지원’,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등 6개 사업(총 5,744억 7,800만원)이 있음.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비고 |
|---|---|---|---|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 | 1,877 | AIDT 구독료 지원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886 | 2,605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
|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 500 | 1,010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 - | 3,947 |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서책형, AIDT) |
| | 400 | - | 국립부설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 1,635 | 4,200 | 스마트 기기 구입 지원 |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33,320 | 560,839 | AIDT 교원연수 등 |
| 합계 | | 574,478 | |

주) 세부사업 기준, 예산은 AIDT 직접 관련 예산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적 변화이고 동 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으므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및 부작용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한계,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사교육비 절감 등 AI로 촉발될 교육 혁신에 주목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2023년 6월 발표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에 먼저 도입하고 초등학교는 2027년, 중고등학교는 202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29일 검정심사를 통과한 정식 AI 디지털교과서는 출시된 이후 3개월간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전격 도입될 예정임.

[AIDT 도입 발표 이후 주요 연혁 및 일정]

| 날짜 | 내용 | 비고 |
|---|---|---|
| 2023.2. |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 도입 로드맵 |
| 2023.6.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 |
| 2023.8.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기준 및 편찬 상 유의점 및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안내 | 검정기준 및 개발 가이드라인 |
| 2023.10.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법적 근거 명확화 |
| 2024.4.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 발표 | 기반 조성 |
| 2024.5. |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방안 발표 | |
| 2024.8. | 검정심사 출원접수 | 검정 심사 |
| 2024.9. | 본심사 결과 안내 | |
| 2024.10.~11. | 이의신청 및 수정보완 | |
| 2024.11.29. | 합격공고 | |
| 2024.12.~ |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 학교 선정 및 활용 |
| 2025.3.~ | 수업 활용 | |

자료: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는 AI를 통해 여러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선도하여 교육의 공정성(equity)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AI 디지털교과서는 AI를 활용한 학습진단과 분석,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4)]

둘째, AI 도입으로 교사들의 행정적, 반복적 업무가 줄어들 수 있어, 교사들이 더 가치 있는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교육 자료 개발과 학습 성과 분석 등에서 AI의 지원을 받아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5)]

셋째, 공교육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선도적으로 제공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격차와 인구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6)]

반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음.

첫째,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 AI 디지털교과서와 기존 디지털교과서와의 차이는 AI 튜터와 개인 학습자의 데이터를 통한 LMS(학습 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가 존재한다는 점인데, AI 디지털교과서 역시 AI라는 기술적 도구만 적용하였을 뿐 지식의 주입, 설명, 문제풀이 내지 학습보충[7)]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AI 튜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AI 튜터가 제공하는 솔루션의 정확성이나 효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문제로 남아 있음.[8)]

둘째,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로, 학생들의 주의력 저하,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두통과 수면 장애, 문해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9)]

셋째,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임. AI 디지털교과서 통합 게이트(포털과 같은 기능)는 교육부가 개발하고, 교과별 AIDT는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시간・문항답변・학습진도와 같은 학습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데이터처리 주체가 학교와 교사가 아닌 AIDT 개발사가 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지역별, 학교별 데이터들이 사교육 시장 또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정보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2023.6.

5) 국회미래연구원, 「AI 디지털교과서와 미래 교육: 기대와 우려 속 미래 제언」, 2024.8.

6) 국회미래연구원, 앞의 보고서

7) AI의 학습진단을 통한 심화문제 제공, 문법 오류 문장 바로잡기

8) 국회토론회,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2024.7.23.

9)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 2024.8.

는 지적이 있음.[10][11]

넷째, AI 디지털교과서 구독에 따른 재정 소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2024년 11월 29일 검정심사가 완료되면 교육부, 교육청, 출원사가 AI 디지털교과서 가격을 협의할 예정인데, 구독료 가격이 서책형(7천원)보다 5~10배(학생 1인당 연 5~9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12] 향후 보통교부금에서 구독료를 지출할 각 시·도교육청의 비용부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13]

AI 디지털교과서는 민간의 AI 기술을 국가가 공교육에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로, 지금까지의 서책형이나 디지털교과서 체제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적 접근임. AI가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는 이를 활용하여 수업방식을 개편해야 하므로 실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이처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적 변화이나, 3개월[14]이라는 검토 시간은 교육적 효과성, 효율적인 교수법, 부작용, 오류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당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일정]




자료: 교육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2023.

10) 연합뉴스, 「"사교육 시장에 학생정보 넘어갈라" …개인정보위, AI교과서 점검」, 2024.8.12.

11)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12)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Ⅷ」, 2024.8.

13) 국회입법조사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2024.10.

14) 당초 계획(2023년)에 따르면 현장적합성 검토기간은 6개월(2026.9.~2025.2.)이었으나 개발 지연으로 인해 3개월로 단축되었음.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 등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 및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2. 유보통합 추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가. 개 요

**‘유보통합’** 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 및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2024.6.27.)된 일반회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어린이집 확충’ 등 11개 사업과 기존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까지 총 12개 사업이 유보통합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비고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2,673,100 | 3,240,039 | 일반회계 |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108,075 | 77,292 | |
| 시간제보육 지원 | 25,005 | 28,018 | |
| 보육사업관리 | 3,650 | 5,514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982 | - | |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사업 | 1,314 | 1,308 | |
| 보육실태조사 | 690 | - | |
|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21,729 | 22,097 | |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1,886,306 | 1,961,911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자율) | 7,384 | 8,30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제주) | 185 | 200 |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세종) | 71 | 81 | |
| 어린이집 확충 | 41,654 | 26,684 |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3,210,631 | 3,102,013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합 계 | 7,980,776 | 8,473,466 | |

주) 기본경비 제외
자료: 교육부

정부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및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 중임.

2022년 5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고, 2023년 7월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자 공동선언」[15] 및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발표되었음.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발표와 함께,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와 조직·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었음.

[유보통합 추진 주요경과]

| 일자 | 내용 | 비고 |
|---|---|---|
| 2022.5. | 유보통합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 | |
| 2023.1.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 |
| 2023.7.14. | 「4자 공동선언」 발표(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 “재정확보, 인력 지원 등 노력, 유보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 2023.7.28.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 |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중앙-지방 순차 이관 |
| 2023.9.13. | 「우선이행과제와 실천방안」 발표 | 급간식비 추가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등 |
| 2024.6.27. | 중앙 단위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시행 |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

자료: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6.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24.6.27.)」에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주요과제]

|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교사 처우 개선 등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통합연수체계 마련 |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 |
| ◦수요 맞춤 교육·보육프로그램 강화 | ◦설립·운영기준 마련 | |

자료: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6.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15) 교육부, 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 단위의 업무·재정이관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간 충분하고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보통합의 업무·재정 일원화와 관련하여, 중앙 단위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조직·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였고, 향후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 조직·인력 및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임.

현재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유아보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가 전액 지원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가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그대로 시·도교육청으로 원활히 이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16)]

[유보통합 재정 이관 단계]

| 〈2023년〉 |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 〈통합모델 적용〉 | |
|---|---|---|---|---|---|
| **2023년** | | **이관·지원 방향** | | **개편 방향** | **비고** |
| ① 복지부 국고 | | ① 교육부로 이관 | | ①+②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br>*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 특별회계 신설 |
| ② 유특회계 | → | ② 지속 지원(~'25) | | | |
| ③ 시·도, 시·군·구 예산 | | ③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 | ③ 이관 후 지속 지원 | 유지 |
| ④ 시·도교육청 예산 | | ④ 지속 지원 | | ④ 지속 지원 | |
| | | | | ⑤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 | +α (추가 소요) |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보육 관련 업무와 재정을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일괄하여 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다만, 과거 2013년 누리과정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발생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17)] 재원의 분담과 관련한 갈

16)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2024.8. p.72.

17) 누리과정 재원부담 논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단위의 재정이관 추진 시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충분하고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의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른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는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통합연수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보통합 실행계획 5대 상향평준화 과제]

| 과제 | 현재 | 목표 |
|---|---|---|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용 시간 차이*<br>* (유치원)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2시간<br>✔ 방학기간, 휴일 돌봄 공백 우려 | ✔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br>*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br>✔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 과밀환경* 내 교육·돌봄의 질 저하<br>* (어린이집 기준) 0세1:3, 1세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기준) 3세 최대 1:24, 4세 최대 1:26, 5세최대 1:28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br>* (0세) 1:3→1:2, (0~2세) 3학급 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12→1:8 |
|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 지속<br>* (사립유) 원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
| **통합연수체계 마련** | ✔ 기관 간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br>* (공립유) 매년 60시간 이상, (사립유) 매년 약 30시간<br>(어린이집) 매 3년마다 40시간 | ✔ 교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br>*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연수문화 조성 |
|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 영아→유아, 유아→초등으로의 단계적 이행 시 지원 미흡<br>✔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br>✔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체계 미흡<br>✔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 ✔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br>✔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br>✔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br>✔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자료: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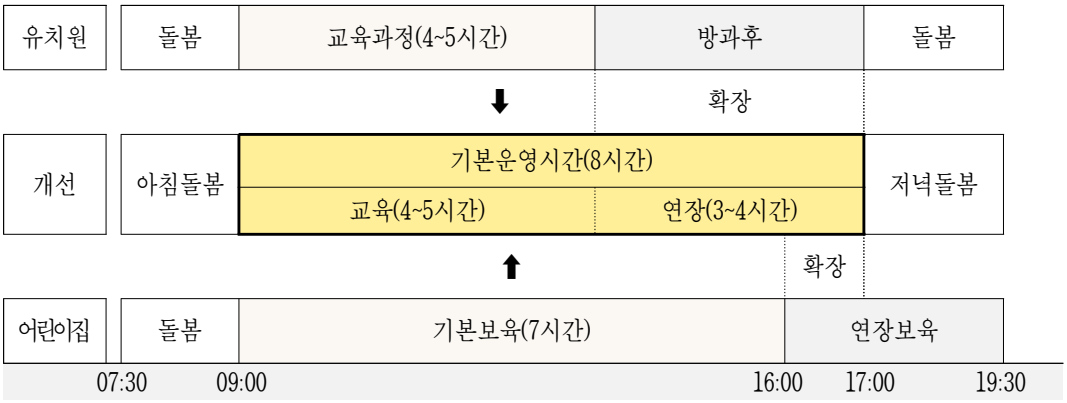
---

논란임.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앙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은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와 함께 봉합되었음.(국회입법조사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현황과 과제」, 2019. 발췌)

그런데 5대 상향평준화 과제 중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같은 과제는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로 보임.

먼저,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돌봄과 방과후 시간을 늘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본보육시간을 늘리도록 하여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장과정 교사 배치를 지원해야 하므로, 인건비·운영비, 교원 통합으로 인한 재교육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임.

[유보통합기관의 기본 8시간+추가 4시간 이용 보장 내용]




자료: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2024.6.

다음, 교육부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을 2024년 현재 어린이집 기준 0세 1:3에서 1:2 등으로 개선하는 등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감축하여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나, 이와 같이 교사 대 영유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3년 취원 영유아수 기준으로 약 58,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18]

또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까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3~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3년 취원 유아(3~5세)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19]

이처럼 5대 상향평준화 과제에는 상당 재원이 소요되는 과제들이 있음에도 「유보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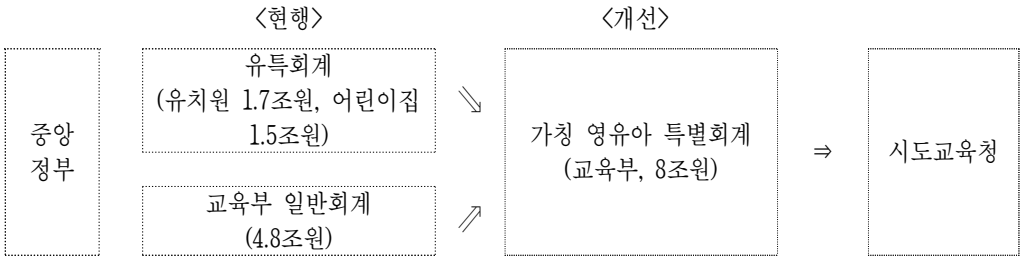
18)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보고서 p.84.

19)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보고서 p.85.

실행계획」에는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20]를 신설한다는 내용 외에 추정 예산이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2025년 예산안도 세부 사업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51.8→ 52.8%)과 인건비 단가 3% 인상 외에는 특별히 유보통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실행과제에 수반될 소요 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산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최근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부 보육예산, 유아교육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재원을 통합·운용하는 ‘(가칭) 영유아 특별회계’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자료: 교육부

# 3. 기타재산이자수입: 수입 전망 및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 예산 증액 조정 필요

##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국고보조금 및 각종 세입·세출예산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으로, 일반회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200만원(2.0%) 증가한 20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6,000만원(40.8%) 증액된 4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환급금, 과오지급금 회수 등의 수입으로, 일반회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2억 8,300만원(8.9%) 증액된 2,848억 8,9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98억 9,100만원(274.0%) 증액된 1,500억원이 편성되었음.[22)]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고특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 | 20,144 | 20,546 | 402 | 2.0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61,606 | 284,889 | 23,283 | 8.9 |
| 고특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 | 3,088 | 4,348 | 1,260 | 40.8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40,109 | 150,000 | 109,891 | 274.0 |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일반회계 | ○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 102% |
| 고특회계 | ○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 2.9% |

자료: 교육부

21)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정책기획관)

2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정책기획관)

## 나. 검토의견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실적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예산액 대비 205.6%, 231.9%로 초과 수납되고 있다는 점,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규모와 관련된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이 증액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재산이전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일반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주로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반납과 관련된 세입예산이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출연금 등의 예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임.

2023년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2024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8.9% 증가) 예산안은 소폭 늘어날 예정이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의 기타경상이전수입(274.0% 증가) 규모는 크게 늘어날 예정임.[23)]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의 예치로 발생하는데, 미집행된 예치금이 많을수록 이자수입도 늘어나게 되므로,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규모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규모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증액규모(401억 900만원→1,500억원)에 비해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30억 8,800만원→43억 4,800만원)은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음.

[회계별 기타재산이자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편성 및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4 | | 2025 |
|---|---|---|---|---|
| | | 예산 | 수납액 | 예산안 |
| 기타재산이자수입 | 일반회계 | 20,144 | 49,168 | 20,546 |
| | 고특회계 | **3,088** | 4,708 | **4,348** |
| | 합계 | 23,232 | 53,876 | 24,894 |
| 기타경상이전수입 | 일반회계 | 261,606 | 369,205 | 284,889 |
| | 고특회계 | **40,109** | 44,708 | **150,000** |
| | 합계 | 301,715 | 413,913 | 434,889 |

주) 2024.8. 말 기준
자료: 교육부

23) 국가장학금 불용으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예산액 대비 205.6%, 231.9%로 초과 수납되고 있는바, 과소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을 수입전망과 수납실적을 반영하여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2021 | 12,364 | 12,364 | 12,364 | 12,058 | 12,056 | 97.5 | 100.0 | 2 | - |
| 2022 | 19,349 | 19,349 | 19,349 | 7,416 | 7,413 | 38.3 | 99.9 | 3 | - |
| 2023 | 14,347 | 14,347 | 14,347 | 29,497 | 29,496 | 205.6 | 99.99 | 1 | - |
| 2024 | 23,232 | 23,232 | 23,232 | 53,893 | 53,876 | 231.9 | 99.9 | 17 | - |

주 1) 2024년 8월말 기준
2) 2024년은 일반회계와 고특회계를 합친 금액
자료: 교육부

# 4.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실적 등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필요

##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수입으로, 일반회계(한국어능력시험)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900만원(3.5%) 증가한 6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사능력시험)의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700만원(△5.6%) 감소한 60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고특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6,546 | 6,775 | 229 | 3.5 |
| 고특회계 | 6,402 | 6,045 | △357 | △5.6 |

## 나. 검토의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면허료 및 수수료가 연례적으로 과소편성되고 있으므로, 결산 수납실적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수반되는 경비에 편성된 세출예산보다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의미함.[25)]

---

24)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65-651)(정책기획관)

25)「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2020년을 제외하면 면허료 및 수수료에서 매년 약 44억~86억원 가량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24년 역시 8월말 기준으로 예산액(129억 4,800만원)보다 24억 400만원 초과 수납되고 있음.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이체등 증감액 |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B) | 수납액 (C) | 수납률 (C/A) | 수납률 (C/B) | 미수납액 | 불납 결손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19 | 10,104 | 10,104 | - | 10,104 | 18,757 | 18,757 | 185.6 | 100.0 | - | - |
| '20 | 15,929 | 15,929 | - | 15,929 | 15,386 | 15,386 | 96.6 | 100.0 | - | - |
| '21 | 16,553 | 16,553 | - | 16,553 | 23,342 | 23,342 | 141.0 | 100.0 | - | - |
| '22 | 15,386 | 15,386 | - | 15,386 | 19,828 | 19,828 | 128.9 | 100.0 | - | - |
| '23 | 17,680 | 17,680 | - | 17,680 | 22,152 | 22,152 | 125.3 | 100.0 | - | - |
| '24 | 12,948 | 12,948 | - | 12,948 | 15,834 | 15,352 | | | | |

주 1) 2024년은 일반회계와 고특회계 각각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합쳐서 표기함
2) 2024.8. 말 기준
자료: 교육부

2023년 결산실적을 시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에서 당초 세입예산 87억원보다 43억 7,800만원 많은 130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으며,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운영' 및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 모두 당초 세출예산액 규모에 버금가는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세 입 | | | | 세 출 | | | | | |
|---|---|---|---|---|---|---|---|---|---|
| 세입 과목 | 예산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사업명 | 예산액 | 초과지출 승인액 | 예산 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 면허료 및 수수료 | 8,980 | 9,073 | 9,073 |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운영 | 5,902 | 4,355 | 10,257 | 8,821 | 1,436 |
| | 8,700 | 13,078 | 13,078 |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 6,086 | 5,132 | 11,218 | 10,635 | 583 |
| 계 | 17,680 | 22,151 | 22,151 | | 11,988 | 9,487 | 21,475 | 19,456 | 2,019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수입대체경비는 성격 상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 없이 초과 지출되는 금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 <세 출>

## 5.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신규):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각 부처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맞는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 마련, 품질관리, 성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6)]

[2025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교육기부활성화사업 | 3,313 | 3,250 | △63 | △1.9 |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 500 | 500 | 순증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공통기준 마련 : 20백만원 |
| ○ 강사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기준 마련·적용 : 200백만원 |
| ○ 부처별 늘봄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피드백 : 30백만원 |
| ○ 늘봄프로그램 홍보, 협의체 운영 등 사업관리비 : 250백만원 |

자료: 교육부

26) 일반회계-교육기부활성화사업(1035-404)(교육복지늘봄지원국)

## 나. 검토의견

**교육기부활성화와 관련 없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 또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나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기부활성화사업’은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기부의 저변을 확대하며, 대학생 동아리・청년 교육기부자 모집・심사・선정 및 사전교육, 체육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거점대학의 선정・운영 등을 추진하는 세부사업임.

[교육기부활성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1) 교육기부 자원 발굴 : (2024) 683 → (2025안) 680백만원, △0.4% |
| ❶ 교육기부 권역별 센터 구성・운영 : 600백만원 |
| ❷ 교육기부 권역별 센터 운영・관리 : 20백만원 |
| ❸ 우수 기관 등에 대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심사・운영 : 60백만원 |
| (2) 체계적 지원 강화 : (2024) 432 → (2025안) 200백만원, △53.7% |
| ❶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 100백만원 |
| ❷ 교육기부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 : 100백만원 |
| (3)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2024) 886 → (2025안) 560백만원, △33.3% |
| ❶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 500백만원 |
| ❷ 우수 기관 등을 시상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운영 : 60백만원 |
| (4) 대학생・청년 교육기부,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 (2024) 1,362 → (2025안) 1,310백만원, △3.8% |
| ❶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활동 지원비 : 700백만원 |
| ❷ 체육예술 분야 교육기부 거점대학 구성・운영 : 390백만원 |
| ❸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운영・관리 : 20백만원 |
| ❹ 대학생 교육기부자 사전교육 : 200백만원 |
| **(5)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 (2025안) 500백만원** |
| ❶ 공통기준 마련 : 20백만원 |
| ❷ 강사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기준 마련・적용 : 200백만원 |
| ❸ 부처별 늘봄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피드백 : 30백만원 |
| ❹ 늘봄프로그램 홍보, 협의체 운영 등 사업관리비 : 250백만원 |

자료: 교육부

이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기부 권역별 센터 구성・운영,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대학생 동아리 교육

기부 활동 지원비 등 대체로 교육기부 자원의 발굴과 저변의 확대라는 세부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품질관리 기준 마련, 부처별 늘봄프로그램 성과 분석 등 늘봄학교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부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업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기부활성화 사업은 학교 밖 주체들이 제공하는 교육 기부 자원을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개별 학교와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지원과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기부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짐.

예산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편성되어야 하고, 적절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집행의 투명성 또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관련성이 없는 기존 세부사업 내에 편성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늘봄학교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편성되어 있고,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도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이라는 교부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27]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내역사업 | 사업액 |
|---|---|---|---|
| 1. 국가책임 교육·돌봄 | 03. 늘봄학교 | 거점형 돌봄 운영모델 개발 | 212,750 |
| | |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 | |
| | |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 |

자료: 교육부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6.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안정적 건립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가. 개 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부산대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원(34.8%) 증가한 31억원이 편성되었음.[28)]

[2025년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2,300 | 3,100 | 800 | 34.8 |
|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2,300 | - | △2,300 | △100.0 |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 - | - | - |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 | 3,100 | 3,100 | 순증 |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안정적 건립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은 공주대, 부산대, 한국교원대 부설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직업, 예술, 체육 등으로 유형을 달리하고 있음.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는 2024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9월 1일에 개교하였고, 부산대와 한국교원대의 경우 현재 건립사업이 추진 중임.

28) 일반회계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1231-301)(교육복지늘봄지원국)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 명, ㎡, 백만원)

| 대 학 | 유형 | 전공분야 | 학급수 | 학생수 | 연면적 | 총사업비 | 추진현황 |
|---|---|---|---|---|---|---|---|
| 공주대 | 직업교육 | 디지털, 농생명 등 | 고 18 | 126 | 11,789 | 32,448 | 공사완료('24.5.)<br>개교('24.9.1.) |
| 부산대 | 예술교육 | 음악, 미술 | 중·고 21<br>(중9, 고12) | 138명<br>(중54, 고84) | 14,588 | 50,436 | 건축협의 중<br>('27. 개교 예정) |
| 한국교원대 | 체육교육 | 체육 | 중·고 21<br>(중9, 고12) | 138명<br>(중54, 고84) | 14,178 | 56,447 | 건축협의 중<br>('27. 개교 예정) |

자료: 교육부

부산대의 경우, 당초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환경단체 민원에 따른 부지선정 지연(1년), 행정기관 협의 지연(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지연(1년)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연기된 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한국교원대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1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1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1년) 등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4년 지연되고 있음.

[부산대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총사업비 변경 경과]

(단위: 백만원)

| 구분 | 변경차수 | 변경연도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변경사유 및 내역 |
|---|---|---|---|---|---|---|
| | | | | 착수연도 | 완료연도 | |
| 부산대 | 최초 | 2020 | 37,714 | 2019 | 2022 | |
| | 1차 | 2020 | 37,710 | 2019 | 2022 | 설계용역 낙찰차액 |
| | 2차 | 2022 | 48,172 | 2019 | 2025 | 실시설계 완료 협의 |
| | 3차 | 2024 | 50,436 | 2019 | 2027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
| 한국교원대 | 최초 | 2021 | 46,405 | 2021 | 2023 | |
| | 1차 | 2021 | 46,394 | 2021 | 2023 | 건축기획 용역 낙찰차액 |
| | 2차 | 2022 | 46,305 | 2021 | 2023 | 설계용역 낙찰차액 |
| | 3차 | 2024 | 56,447 | 2021 | 2027 | 물가인상 반영 |

자료: 교육부

2025년 예산안은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에만 3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산대와 한국교원대 모두 종전에 받은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재재이월되고 있기 때문임.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사업비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2019 | 1,361 | - | 1,361 | 16 | 1,345 | - |
| | 2020 | 195 | 1,345 | 1,540 | 800 | 736 | 4 |
| | 2021 | 13,186 | 736 | 13,922 | 768 | 13,154 | - |
| | 2022 | 4,594 | 13,154 | 17,748 | - | 17,748 | - |
| | 2023 | - | 17,748 | 17,748 | - | 17,748 | - |
| | 2024 | - | 17,748 | 17,748 | - | 17,748 | - |
|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 2021 | 1,950 | - | 1,950 | 77 | 1,873 | - |
| | 2022 | 9,557 | 1,873 | 11,430 | 445 | 10,885 | 100 |
| | 2023 | - | 10,885 | 10,885 | 506 | 10,379 | - |
| | 2024 | - | 10,379 | 10,379 | - | 10,379 | - |

자료: 교육부

부산대는 202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177억 4,800만원의 예산이 재재이월되어 2025년도에 집행될 예정이며, 한국교원대 역시 2022년에 미집행된 108억 8,500만원 중 2023년에 집행되고 남은 103억 7,900만원이 2025년으로 이월될 예정임.

부산대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내 개발행위관련 실시계획 변경(산지전용허가 포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4년 9월 19일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한국교원대 역시 관계기관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4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5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향후 교육부는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및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의 안정적 건립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7.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 디지털교육체계 안착 노력 및 교원연수 내실화를 위한 관리 필요

## 가. 개 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은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5억 1,900만원(5.2%) 증액된 5,608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5년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533,320 | 560,839 | 27,519 | 5.2 |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예산안 세부내역]

| |
|---|
| ○ 내국세(338,129,200백만원)×20.79%×3.8%×(80/380) |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3년 한시로 교부·운용되는만큼 2026년까지 교원의 교수법 연구나 연수의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교육의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2023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의 일부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임.[30)]

29) 일반회계-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1502-303)(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부는 2024년 3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333억 2,000만원을 ‘교원의 AI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15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별 교부액은 아래표와 같음.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사업별 내용 및 교부액]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내용 | 교부액 |
|---|---|---|---|
|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 AIDT 교원연수 기반·질관리 체계 구축 | 시·도교육청 및 전문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력하여 AIDT 관련 교원연수 운영 및 기반 강화 지원 | 48,900 |
| | AIDT 적용 교원 연수 지원 | 시·도별 교실혁명 연수 추진단 구성, 시·도별 관내 AIDT 적용 교과 교원 연수 운영, 시도 특색 사업 등 지원 | 166,150 |
| |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 학교와 교사가 디지털 전환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지원 | 79,450 |
|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 교원연수 및 방과후학교의 안정적인 AI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 87,300 |
| | 합 계 | | 381,800 |
| 방과후 교육 활성화 지원 | 디지털새싹 운영 |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최신 SW·AI 교육(디지털새싹)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51,520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교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설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집행·활용 가능한 운영비 지원 | 100,000 |
| | 합 계 | | 151,520 |
| 총 계 | | | 533,320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교원 연수 등 디지털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음.

3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반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규모만큼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므로 지방교육자치 역량 약화의 우려도 있음.[31)]

보통교부금의 부담을 지속하는 것은 부작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 법률의 취지대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3년의 운용기간 동안 교원의 교수법 연구나 연수의 시스템 등 디지털교육의 체계를 구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평가 매뉴얼, 현업적용도 평가 도구를 개발 중이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연수 체계('24.~'26.)를 구축 중이라고 설명함.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연수 체계('24~'26)]

| | |
|---|---|
| 선도교사<br>(3.4만명) | ○ 연수강사 · 동료교사 코칭 · 학교 내에서 실천전략 수립하는 선도교사 양성<br>-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27년부터 학교별 리더그룹(2~3인)으로 활동하도록 양성·배치 |
| 모든 교원<br>(32만명) | ○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역량 중심의 성장형·인증형 맞춤연수 지원<br>- 교실혁명 교원 역량체계 → 자가진단 → 맞춤연수 → 인증(디지털배지) |
| 모든 학교<br>(1.2만교) | ○ 디지털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안착되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추진<br>- 학교 신청시 6개월~1년간 기술지원, 교육과정 평가, 학부모연수, 리터러시 교육 등 지원 |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운용이 종료된 이후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3년간 디지털교육의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특별교부금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단위사업 중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9.25. 기준 82.7%로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은 60.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9.25. 기준 'AIDT 적용 교원 연수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42.5%,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36.5%로 다소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32)] 2025년부터는 상·하반기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1)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이슈와 논점, 2024.3.8.

32)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연수의 경우 2024년 하반기 및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집행할 계획이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은 사업계약 등을 추진 중이므로 2024년 하반기 내 집행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교육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 | | | | | | 합계 | |
|---|---|---|---|---|---|---|---|---|---|---|
| | 1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 | | | | 2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 | | | |
| | ① 교원연수 기반·질 관리 체계 구축 | ② AIDT 적용 교원 연수 지원 | ③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 | ④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원 | 소계 | ① 디지털 새싹 |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소계 | | |
| | 집행액 | 집행액 | 집행액 | 집행액 | 집행액 | 집행액 | 집행액 | 집행액 | 교부액 | 집행액 |
| 서울 | 7,009 | 12,947 | 8,262 | 422 | 28,640 | 7,760 | 18,133 | 25,893 | 87,369 | 54,533 |
| 부산 | 2,923 | 1,411 | 3,949 | 165 | 8,448 | 2,937 | 5,420 | 8,357 | 29,993 | 16,805 |
| 대구 | 2,480 | 5,215 | 3,043 | 1,402 | 12,140 | 2,375 | 5,432 | 7,807 | 24,991 | 19,947 |
| 인천 | 2,575 | 2,908 | 3,631 | 164 | 9,278 | 3,033 | 971 | 4,004 | 23,609 | 13,282 |
| 광주 | 1,735 | 3,078 | 2,352 | 91 | 7,256 | 1,644 | 3,539 | 5,183 | 17,431 | 12,439 |
| 대전 | 1,744 | 2,267 | 2,169 | 1,604 | 7,784 | 1,512 | 5,072 | 6,584 | 19,651 | 14,368 |
| 울산 | 1,175 | 2,363 | 1,684 | 2,316 | 7,538 | 1,264 | 3,036 | 4,300 | 14,358 | 11,838 |
| 세종 | 669 | 413 | 651 | 1,597 | 3,330 | 599 | 1,268 | 1,867 | 7,220 | 5,197 |
| 경기 | 11,584 | 18,710 | 18,098 | 971 | 49,363 | 14,639 | 2,865 | 17,504 | 105,108 | 66,867 |
| 강원 | 1,686 | 2,976 | 3,822 | 3,762 | 12,246 | 1,414 | 121 | 1,535 | 19,536 | 13,781 |
| 충북 | 1,687 | 3,132 | 3,099 | 340 | 8,258 | 1,614 | 5,614 | 7,228 | 24,858 | 15,486 |
| 충남 | 2,316 | 2,680 | 4,735 | 3,806 | 13,537 | 2,322 | 1,833 | 4,155 | 26,870 | 17,692 |
| 전북 | 2,200 | 1575 | 4,910 | 5,490 | 14,175 | 1,815 | 4,828 | 6,643 | 26,710 | 20,818 |
| 전남 | 2,179 | 2,031 | 5,220 | 1,164 | 10,594 | 1,763 | 7,862 | 9,625 | 30,632 | 20,219 |
| 경북 | 2,744 | 2,922 | 6,205 | 1,905 | 13,776 | 2,472 | 1172 | 3,644 | 29,256 | 17,420 |
| 경남 | 3,452 | 5,893 | 6,412 | 4,507 | 20,264 | 3,576 | 2,986 | 6,562 | 34,986 | 26,826 |
| 제주 | 742 | 154 | 1,208 | 2,141 | 4,245 | 781 | 3,561 | 4,342 | 10,742 | 8,587 |
| 계 | 48,900 | 70,675 | 79,450 | 31,847 | 230,872 | 51,520 | 73,713 | 125,233 | 533,320 | 356,105 |
| 집행률 | 100.0 | 42.5 | 100.0 | 36.5 | 60.5 | 100.0 | 73.7 | 82.7 | | 66.8 |

주 1) 각 시·도 교육청에 전액 교부하였음
2) 집행률은 교부액 대비 교육청의 실집행률
3) 2024.9.25. 기준

자료: 교육부

**셋째, 시·도 교육청의 AIDT 적용 교원 연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 중 하나인 ‘AIDT 적용 교원 연수 지원’ 사업은 시·도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든 교원(AIDT 적용 교원 우선 지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수를 운영하는 내용임.

다만, 일부 교육청의 교원 연수에 대해 예산낭비·계획부실 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바,[33]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의 연수기획을 점검하여 교원 연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3) 경향신문, 「‘디지털 미래교육 연수’ 라더니 요세미티 방문?···AI 교과서 예산 모니터링은」, 2024.7.3.; 「[단독] 5성급 호텔서 13만원 코스요리, AI 교과서 ‘호화 연수’ 논란」, 2024.5.14.

# 8.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사업: 기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 현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가. 개 요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사업은 국립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체제 구축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수 정보화 인프라 도입 및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6,500만원(156.9%) 증액된 42억원이 편성되었음.[34)]

[2025년도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 1,635 | 4,200 | 2,565 | 156.9 |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AIDT 환경구축 4,185백만원 |
| - AIDT 디바이스 (3,300백만원) + 충전함 및 MDM 구매(749백만원) + 무선AP교체(136백만원) |
| ○ 노후기기 교체 15백만원 |
| - 유치원 3개원 x 5,000천원 |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학교가 최근 구매하여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4) 일반회계-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정보화)(1702-502)(디지털교육기획관)

교육부는 국립학교의 2025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학생 약 5,500명[35]에게 태블릿PC를 1대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 33억원을 편성하였음.

스마트기기 구매와 같은 자산 취득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학교별 보유현황, 내용연수, 사용상태 등을 조사하였어야 하나, 교육부는 대상 학생 전체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놓고 차후 현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여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 행태를 보이고 있음.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일정]

| 일 정 | 내 용 |
|---|---|
| 2024.9.~10. | ○ 국립학교(초・중・고・특) 정보인프라 현황점검 실시<br>- (조사방법) 서면조사(전체 학교) 및 현장방문(5개교 이상)<br>- (조사내용) AIDT 적용 학급 및 학생 현황, 학생용 디바이스 준비 현황, 무선랜 인프라 현황(AP, 인터넷 회선 등) 등 |
| 2024.10 | ○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위한 정보인프라 수요조사 실시<br>- (조사대상) 국립학교(39개교) 전체<br>- (조사방법) 서면조사 |
| 2024.11. | ○ 국립학교(초・중・고・특) 정보인프라 고도화 사업 담당자 협의회 개최<br>- (2025년도 교육부 계획 안내(예산배정 계획, 집행기준, 전년대비 변경내용 등), 국립학교 의견 청취 등 |
| 2024.12. | ○ 2025년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지원계획 수립(교육부) 및 안내 |

자료: 교육부

또한, 2024년 9월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국립학교에서 학생 수업용으로 구매한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PC)는 624대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국립학교 스마트기기 구매 내역]

(단위: 대)

| 연번 | 시도 | 학교급 | 학교명 | 노트북 | | | | 태블릿 | | | | 합계 | | | |
|---|---|---|---|---|---|---|---|---|---|---|---|---|---|---|---|
| | | | | '22 | '23 | '24 | 소계 | '22 | '23 | '24 | 소계 | '22 | '23 | '24 | 계 |
| 1 | 강원 | 초 |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 | 60 | 60 | - | - | - | 60 |
| 2 | 강원 | 고 |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경기 | 특 | 한국경진학교 | - | 2 | - | 2 | - | - | - | - | - | 2 | - | 2 |
| 4 | 경기 | 특 | 한국선진학교 | - | - | - | - | - | - | 4 | 4 | - | - | 4 | 4 |
| 5 | 경남 | 초 |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 | 104 | 104 | - | - | 104 | 104 |
| 6 | 경남 | 중 |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 - | - | - | - | - | - | - | - | - | - | - | - |

35) 「2023년 교육기본통계」 상 초1・2 (2025년 초3・4) 학생 2,387명, 중1학생 정원 993명, 고 1학생 정원 2,173명

(단위: 대)

| 연번 | 시도 | 학교급 | 학교명 | 노트북 | | | | 태블릿 | | | | 합계 | | | |
|---|---|---|---|---|---|---|---|---|---|---|---|---|---|---|---|
| | | | | '22 | '23 | '24 | 소계 | '22 | '23 | '24 | 소계 | '22 | '23 | '24 | 계 |
| 7 | 경남 | 고 |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경북 | 초 |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 | - | 10 | - | 10 | - | - | - | - | - | 10 | - | 10 |
| 9 | 광주 | 초 |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광주 | 중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광주 | 고 |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대구 | 초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 | - | - | 4 | 4 | - | - | 34 | 34 | - | - | 38 | 38 |
| 13 | 대구 | 초 |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 | 4 | 25 | 56 | 85 | 10 | - | - | 10 | 14 | 25 | 56 | 95 |
| 14 | 대구 | 중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대구 | 고 |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부산 | 초 |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 | 39 | 39 | - | - | 39 | 39 |
| 17 | 부산 | 고 |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서울 | 초 |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서울 | 특 | 서울농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서울 | 특 | 서울맹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서울 | 특 | 한국우진학교 | - | 1 | 1 | 2 | - | - | - | - | - | 1 | 1 | 2 |
| 22 | 인천 | 초 |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전남 | 초 |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전북 | 초 |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전북 | 초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전북 | 고 |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제주 | 초 | 제주대학교부설초 | 24 | 25 | - | 49 | - | - | - | - | 24 | 25 | - | 49 |
| 28 | 제주 | 중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제주 | 고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충남 | 초 |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40 | 20 | 60 | - | 40 | 20 | 60 |
| 31 | 충남 | 중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 - | - | - | - | - | 3 | 7 | 10 | - | 3 | 7 | 10 |
| 32 | 충남 | 고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 | - | - | - | - | 30 | - | - | 30 | 30 | - | - | 30 |
| 33 | 충북 | 초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 - | - | - | - | - | - | 67 | 67 | - | - | 67 | 67 |
| 34 | 충북 | 초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충북 | 중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충북 | 중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 - | - | - | - | - | - | 54 | 54 | - | - | 54 | 54 |
| 37 | 충북 | 고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충북 | 고 |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28 | 63 | 61 | 152 | 40 | 43 | 389 | 472 | 68 | 106 | 390 | 624 |

자료: 교육부

그런데 교육부가 작성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는 이 사업의 추진실적으로 2022년 태블릿 467대, 노트북 469대, 2023년 태블릿 122대 등을 지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구매내역과 지원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36)]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고도화 사업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연도 | 추진실적 |
|---|---|
| 2022 | TV 110대, 무선AP 158대, 드론 45대, 모니터 335대, 태블릿충전함 70대, 노트북 469대, 데스크톱 272대, 태블릿 467대, 3D프린터 13대 등 2,811대 지원 |
| 2023 | TV 92대, 전자칠판 61대, 무선AP 107대, 모니터 8대, 태블릿충전함 25대, 태블릿122대, 데스크톱 170대, 비디오 프로젝터 65대, 드론15대, 영상회의 19대 등 지원 |

자료: 교육부,「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향후 교육부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립학교가 최근 구매하여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6) 이에 대해 교육부는 추진실적으로 제출한 노트북 및 태블릿 수량은 교사 수업용, 교과·특별실 비치 수량 등을 포함한 수량이라고 설명함.

# 9.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ODA): 신규사업단 사업관리 철저 및 수요를 반영한 청년인턴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을 연계하여 해외 대학의 수요 맞춤형 학과 개설·개편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3,800만원(23.4%) 증액된 14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 | 26,953 | 28,964 | 2,011 | 7.5 |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 11,688 | 14,426 | 2,738 | 23.4 |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신규 지원(일반): 300백만원(3개 사업단×100백만원)

○ 신규 지원(전문대): 100백만원(1개 사업단×100백만원)

○ 계속 지원: 13,646백만원(34개 사업단×392백만원*+60명**×5.3백만원)

* 청년인턴 파견 지원 비용 포함 ** 신규사업단 인원 포함 가능

○ 사업관리비: 380백만원(1식×380백만원)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원활한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위해 사업 초기(1차년도)부터 해외 협력국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도국 대학과 협력하여 학과 신설 또는 개편, 교수 양성 등 국내 고등교육 노하우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각 국내 대학이 결성한 사업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임.

37) 일반회계-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4333-303)(글로벌교육기획관)

최근 3년간 매년 7~9개 사업단이 선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개 신규사업단을 포함한 총 38개 사업단을 지원할 예정임.

[최근 3년간 국제협력 선도대학 선정현황 및 각 대학과의 협력국 현황]

| 선정 | 협력국 | 과제명 | 주관기관 |
|---|---|---|---|
| 2022 | 네팔 |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성과기반 간호학과 교육역량 강화사업 | 선문대학교 |
| | 라오스 | 루앙프라방직업기술대학 호텔관광학부 교육역량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술 지원 | 군장대학교 |
|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육역량 강화사업 | 공주대학교 |
| | 스리랑카 | 스리랑카해양대학교 연안해양자원 관리학과 역량 강화 및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사업 | 한국해양대학교 |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 의과대학 환경 보건학과 신설 및 역량강화 사업 | 고려대학교 |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응급구조학과(Paramedicine)구축 및 지역사회 CPCR(Cardio Pulmonary Cerebral Reesuscitation), MCI(Mass Casualty Incident) Triag 교육프로그램 | 한국교통대학교 |
| | 이집트 | 이집트 Misr Inter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 첨단기술분야 교육 및 산학협력 역량 강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치과기공전공 교육역량강화 | 대구보건대학교 |
|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즈 감염대응 및 보건의료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선진화사업 | 경희대학교 |
| 2023 | 라오스 | 라오스 국립대학교 농업대학 낙농과정 구축을 위한 축산학과 리모델링 사업 | 서울대학교 |
| | 베트남 | 베트남 빈 대학교 수의학과 신설 및 축산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 사업 | 전북대학교 |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자바 및 북부발리지역의 화학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역사회 공헌 | 서강대학교 |
|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 경상국립대학교 |
| | 카자흐스탄 | 크즐오르다 주립대학 내 IT 관련학과 리모델링 및 지능정보대학 신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키르기스스탄 | 키르키스한국대학 컴퓨터사이언스 학과개설 및 역량강화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 | 필리핀 | 필리핀 바타안페닌슐라주립대학 보건의료정보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 | 명지전문대학교 |
| 2024 | 네팔 | 네팔 포카라 대학 간호학과 역량 강화 사업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 인하대학교 |
| | 라오스 | 라오스 북부농림대학 원예학과 개설 및 지역사회 개발 청년농 육성 채소 생산 시범사업 | 한국농수산대학교 |
| | 베트남 | 베트남 국립농업대학 융합생명공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식품 안전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지원 | 전남대학교 |
| | 스리랑카 | 스리랑카 콜롬보대학교 바이오분자과학및산업생명공학과 설립과 지역바이오산업 혁신센터 설립 | 성균관대학교 |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대학교 과일채소과학과의 | 한경대학교 |

| 선정 | 협력국 | 과제명 | 주관기관 |
|---|---|---|---|
| | | 리모델링을 통한 스마트원예 분야 역량 강화 | |
| |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관개농업기계화대학교(TIIAME)<br>메카트로닉스 테크니쿰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 계명문화대학교 |
| | 캄보디아 | 캄보디아 바탐방대학 국제통상·SCM 학과 개설과<br>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모델 구축 | 덕성여자대학교 |
| |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즈국립대학교 정보혁신기술학부의 SW 인력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응용학과 신설 및 기존 교과과정 리모델링 | 계명대학교 |

자료: 교육부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2023년에 실시한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경우 학과 설립이 우리나라와 달리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착수 시점부터 해외 협력국 교육 당국과 협의 진행 여부 등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대학교에 대한 컨설팅 주요 결과]

| 구분 | 컨설팅 종합의견 |
|---|---|
| 위원 1 | ○ 학과 설립이 우리나라와 달리 해당 국가의 경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1차년도부터 현지 협력대학 관계자가 아닌 ○○ 교육 당국에 학과 설립의 정확한 프로세스, 준비내용을 문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위원 2 | ○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핵심은 학과 신설에 있으며, 학과 신설에는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내규 마련, 등 필수적인 활동이 포함됨. 그러나 아직까지 전임교원과 입학정원 확보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며, 학과 개설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함.<br>○ 현재 본 사업은 학과 신설을 목표로 이제 준비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학과 신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진행사항과 관련해서도 협력 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협력대학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
| 위원 3 | ○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지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함 |

자료: 교육부

**둘째, 2025년도 예산안에는 각 사업단이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ODA 사업 성격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청년인턴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추진 시 청년인턴을 현지 협력국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청년인턴 프로그램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지원 규모 | 총 34명 이내(계속사업단 총 34개 대학별 1인) |
| 지원 예산 | 1인당 3,000만원 이내(급여, 왕복항공료, 현지주거비, 해외여행자보험, 예방접종비 등) |
| 파견 기간 | 6개월 이내 |
| 활동 내용 | 수원국 협력대학 등에 파견되어 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발, 교원 양성 등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 관련 현지 업무 지원 |
| 기타 사항 | 총 34개 대학에서 청년인턴(1인)을 선발하여 현지 파견 예정이며, 청년인턴의 소속기관 제한 여부(해당 학교 학생만 선발 등)는 미정 |

자료: 교육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 사업은 ODA 사업으로서 해당국의 필요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

해당 사업단과 관련 없는 사람이 선발되어 파견되는 것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인턴은 사업단의 구조와 과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임.

그런데 각 사업단마다 청년인턴의 파견 필요성, 파견 기간, 파견 비용,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단별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단의 특성에 맞고, 관련 직무에 적합한 청년인턴을 적절한 비용을 사용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청년인턴 파견이 이 사업의 당초 목표와 취지에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개별 사업단의 수요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 출>

# 10.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신규): 예산 산출 근거 미흡

## 가. 개 요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은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등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에 교원양성기관이 함께할 수 있도록 AIDT 구독료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8)]

[2025년도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 - | 1,877 | 1,877 | 순증 |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 |
|---|
| ○ AI 디지털 교육 지원 : 74개교 × 24백만원 |
| - 교육대학 10개교, 사범대학 45개교, 교육대학원(사범대미설치) 19개교 |
| ○ 사업관리비 100백만원 |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 인원, 공동구독 여부, 용도, 구독 기간, 동시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액을 엄밀하게 산출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2232-322)(책임교육지원실)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초·중등교육과정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영어 및 수학, 중학교 1학년 대상 영어, 수학 및 정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공통영어, 공통수학 및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

| 구 분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
| 초등학교 | 국정 | 국어 | 국어 ③, ④ | 국어 ⑤, ⑥ | - | | 특수교육 기본교육 과정 |
| | | 수학 | | 수학 ③, ④ | 수학 ⑤, ⑥ | | |
| | 검정 | 국어 | | 국어 3-1, 3-2, 4-1, 4-2 | 국어 5-1, 5-2, 6-1, 6-2 | | 공통교육 과정 |
| | | 수학 | 수학 3-1, 3-2, 4-1, 4-2 | 수학 5-1, 5-2, 6-1, 6-2 | - | | |
| | | 영어 | 영어 3, 4 | 영어 5, 6 | - | | |
| | | 사회 | | 사회 3-1, 3-2, 4-1, 4-2 | 사회 5-1, 5-2, 6-1, 6-2 | | |
| | | 과학 / 실과 | | 과학 3-1, 3-2, 4-1, 4-2<br>실과5,6 | 과학 5-1, 5-2, 6-1, 6-2 | | |
| | 인정 | 학교자율 시간(정보) | 정보 3, 4 | 정보 5, 6 | - | | |
| 중학교 | 국정 | 선택 | | | 생활영어 1, 2, 3 | 정보통신 1, 2, 3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
| | 검정 | 수학 | 수학 1 | 수학 2 | 수학 3 | | 공통교육 과정 |
| | | 영어 | 영어 1 | 영어 2 | 영어 3 | | |
| | | 정보 | 정보 | - | - | | |
| | | 국어 | | 국어 1-1, 1-2 | 국어 2-1, 2-2, | 국어 3-1, 3-2, | |
| | | 사회 | | | 사회 ①, ② | | |
| | | 역사 | | | 역사 ①, ② | | |
| | | 과학 | | 과학 1 | 과학 2 | 과학 3 | |
| | | 기술·가정 | | 기술·가정 ①, ② | | | |
| 고등학교 | 국정 | 선택 | | | 생활영어 1, 2, 3 | 정보통신 1, 2, 3 |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
| | 검정 | 수학 | 공통수학1, 공통수학2 | - | | | 공통교육과정 |
| | | 영어 | 공통영어1, 공통영어2 | - | | | |
| | | 정보 | 정보 | | | | |
| | | 국어 | | | | 공통국어1, 공통국어2 | |
| | | 사회 | | | | 통합사회1, 통합사회2 | |
| | | 역사 | | | | 한국사1, 한국사2 | |
| | | 과학 | | | | 통합과학1, 통합과학2 | |
| | | 기술·가정 | | 기술·가정 | | | |
| 합계(책) | | | 18책 | 32책 | 29책 | 17책 | |
| | | | 총 96책 | | | | |

자료: 교육부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는 2024년 8월에 검정심사 출원접수를 하여 본심사(2024.9.24. 개별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및 수정보완(2024.10.~11.)을 거쳐 2024년 11월 29일 최종 합격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임.

최종 검정 통과 후 교육부와 출원사 간 가격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재까지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은 책정되지 않았으며, 구독료와 구독방식 등도 미정인 상태임.

AI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책정 협상을 앞두고 예상 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동구독 여부, 용도(수업용 또는 체험용), 구독 기간, 동시 이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대 및 사범대 74개교에 평균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부는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액을 엄밀하게 산출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

# 11. 청년인턴 사업: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편성 지양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인턴’** 사업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200만원(1.4%)이 증가한 3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청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청년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5년도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대학창업 활성화 | 23,132 | 17,186 | △5,946 | △25.7 |
| 청년인턴 | 3,730 | 3,782 | 52 | 1.4 |
| 청년자문단 운영 | 67 | 67 | - | - |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청년인턴)

○ 급여 : 3,188백만원

- (2.1백만원 × 225명 × 6월) + (2.1백만원 × 57명 × 3월) = 3,188백만원

○ 일반수용비(행사운영) : 24백만원

○ 국내여비 : 212백만원

- 0.75백만원 × 282명 = 212백만원

○ 고용부담금 : 358백만원

- (0.235백만원 × 225명 x 6월) + (0.235백만원 × 57명 x 3월) = 346백만원

(청년자문단 운영)

○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회의 등 운영 : 67백만원

자료: 교육부

3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창업 활성화(2256-310)(지역인재정책관)

## 나. 검토의견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거나 적절한 세부사업 내에 일용임금으로 편성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세부사업인 대학창업 활성화는 학생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유망창업팀 발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대학창업 펀드 조성과 같이 대학 또는 대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런데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2023년부터, 청년인턴 사업은 2024년부터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두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체험 사업으로서 엄밀히 말해 대학의 창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임.

이와 같이 목적과 취지가 다른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① 대학창업 활성화의 투입재원과 사업성과를 판별할 때 실제 대학창업에 지원된 예산보다 과다 투입된 결과가 되어 사업효과의 왜곡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 ② 관계없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끼워넣는 예산 편성이 관례화될 경우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 현행 예산편성 체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2023년에 당초 예산 없이 전용재원으로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세부사업의 신설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2025년 예산안에도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련 없는 청년인턴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지속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다른 부처는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인사지원 등 청년인턴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타부처 청년인턴 사업 예산안 편성 사례]

(단위: 백만원)

| 부처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2025년 예산안 |
|---|---|---|---|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청년인턴 인건비 등 | 1,259 |
| 국토교통부 |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 청년정책진흥 | 3,293 |
| 국세청 | 행정지원인력운영 | - | 3,975 |
| 경찰청 | 경찰청경무인사지원 | 청년인턴 채용·관리 | 3,997 |

자료: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

따라서 대학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을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별도의 사업을 신설하거나 적절한 세부사업 내에 일용임금으로 편성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당초 RISE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가. 개 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에 기여하고 글로컬대학 등 지역의 우수대학을 육성·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985억원(66.4%) 증가한 2조 10억원이 편성되었음.[40]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1,202,500 | 2,001,000 | 798,500 | 66.4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1,202,500 | 1,704,651 | 502,151 | 41.7 |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 (201,001) | 201,001 | - | - |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 (21,000) | 21,000 | - | - |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 (14,000) | 14,000 | -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25,800) | 25,800 | - | - |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 (5,998) | 5,998 | - | - |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14,200) | 14,200 | - | - |
| 마이스터대 지원 | (15,110) | 4,750 | △10,360 | △68.6 |
|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 (9,600) | 9,600 | - | - |

4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인재정책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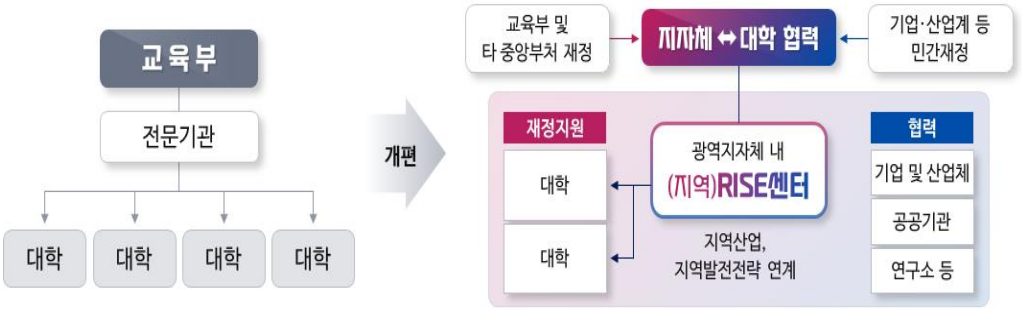
| |
|---|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 - 17개 시도 × 평균 99,980백만원 |
| - 사업관리비 5,000백만원 |
|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
|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11,100백만원 × 18개 협의체 |
| - 산학연협력통합정보망 1,201백만원 × 1식 |
|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
| - 30개교 × 700백만원 |
|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
| - 계속 6교 × 2,000백만원 |
| - 신규1교(캠퍼스혁신파크 1교) × 2,000백만원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 - (1,200백만원 × 7개교) + (2,500백만원 × 6개교) + (2,400백만원 × 1개교) |
|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
| - 일반대 5개 컨소시엄 × 750백만원 |
| - 전문대 5개 컨소시엄 × 400백만원 |
| - 사업운영관리비 248백만원 |
|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 - 17교 × 평균 823백만원 |
| - 사업관리비 200백만원 |
| ○ 마이스터대 지원 |
| - 3교 × 1,500백만원 |
| - 사업관리비 250백만원 |
| ○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
| - 1,200백만원 × 8교 |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함.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목적사업을 설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각 대학에 출연금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RISE 체계는 지역 대학·산업계 및 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 및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임.

[RISE 체제 도입에 따른 지원 체계 변화]




자료: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 2023.2.

RISE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에서는 가칭 '라이즈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관련 중앙행정기관·중앙 RISE센터(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RISE 추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지역의 수요,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반영한 5개년('25.~'29.)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RISE센터가 공모·선정·성과관리 등 사업 과정 전반을 수행·관리하게 될 예정이며 가칭 '지역라이즈위원회'가 지역의 RISE 추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거버넌스로 작동할 예정임.

## 나. 검토의견

**첫째, 사업 개편 취지와 다르게 목적과 용처가 이미 정해진 사업예산이 많아 2조 10억원의 규모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는바,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RISE의 당초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용처가 정해진 사업들도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5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조를 RISE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2024년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D)'이라는 세부사업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등 6개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편입하였고, 2025년 예산안에는 추가로 '첨단분야 혁신융합 대학' 등 8개의 사업을 편입하는 동시에 '대학혁신지원' 등 일반 재정지원 사업의 재원 일부를 이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사업 개편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년 예산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354,000 | 342,000 | 1,704,651주 |
|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3.0) | | 302,500 | |
|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3.0) | | 104,500 | |
| ·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 | 90,000 | |
|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 | 51,000 | |
|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 237,500 | |
| ·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지원 | | 75,000 | |
| 합 계 | | 1,202,500 | |
|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 | | 201,001 |
|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 | | 21,000 |
| ·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지원 | | | 14,000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 | 25,800 |
| ·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 | | 5,998 |
|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 | | 14,200 |
| · 마이스터대 지원 | | | 4,750 |
| ·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지원 | | | 9,600 |
| 합 계 | | | 2,001,000 |

주) 2024년 예산 1조 2,025억원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부터 이관된 약 3,000억원과 순수 증액된 2,000억원 가량이 추가된 예산임

자료: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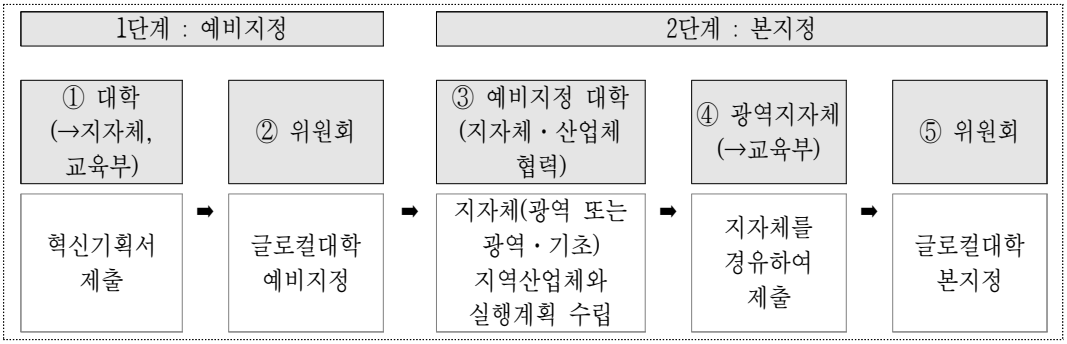
교육부는 대학·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과 예산을 주어 '상향식·지역별 맞춤형 통합재정지원'으로의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 등 2025년 예산안에 추가된 8개 내역사업은 특수목적 사업들로서 이미 사업수행자들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당초 교육부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편입된 8개 내역사업들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RISE의 안착을 위해 1년간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며, 2026년 이후 RISE로의 완전 통합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다만, 특수목적 성격의 8개 내역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조 7,046억 5,100만원이 편성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는 의대 교육혁신(551억원)과 글로컬대학(4,500억원 내외)[41]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 역시 교육부의 정책목적에 따른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당초 RISE의 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임.[42]

41) 글로컬대학이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혁신선도대학으로, 교육부가 비수도권 소재의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하여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도]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8개 특수목적 사업과 의대혁신 및 글로컬대학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교육부가 구상했던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RISE 사업 규모는 약 1조 2,000억원에 불과하여 2024년(1조 2,025억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RISE 사업은 재정구조 개편 취지와 다르게 목적과 용처가 정해진 사업예산이 많아 2조 10억원의 규모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는바,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RISE의 당초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용처가 정해진 사업들도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RISE 사업 예산안에 초등 늘봄학교 예산이 212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 및 대학혁신과 거리가 먼 사업들을 RISE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편성 행태는 지양될 필요가 있음.**

2025년 RISE 사업 예산안에 늘봄프로그램 지원 예산 212억원이 포함되었는데,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RISE 단위과제를 기획하여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해당 과제의 내용을 심사하여 확정된 지원 예산을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임.

그런데 늘봄학교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하

42) 이에 대해 교육부는 8개 특수목적사업은 산학협력 분야의 사업으로 지역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의대 교육혁신 지원은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 글로컬대학은 지역 내 대학들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RISE의 취지와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게 공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RISE 사업과는 취지가 다르고, RISE 사업이 추구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지역인재의 취·창업과 정주 생태계 조성’, ‘대학의 혁신’ 등과도 거리가 멀어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고학년으로 확대될수록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는 공급 허브가 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대학-교육청이 협력하여 늘봄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RISE 체계의 지향점과도 일치하다는 의견임.

그러나 늘봄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대학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사전에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추진방식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특수목적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RISE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늘봄학교 사업은 RISE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별도의 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셋째, 시행 초기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RISE센터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주로 한국연구재단이 오랜 기간 수행해 왔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들과 사업을 추진한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RISE 사업 초기에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업운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대학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현재 17개 시·도 모두 RISE 전담부서 지정 및 시·도별 전담기관(지역 RISE센터) 지정을 완료한 상태이나, 각 지자체의 RISE 센터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원·테크노파크 또는 연구원 등 대학재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적거나 없는 곳들이 대부분임.

이러한 기관들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산학협력을 통한 인큐베이터 역할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지역별 RISE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현황]

| 구분 | 전담조직 | | 전담기관 | | |
|---|---|---|---|---|---|
| | 조직명(RISE담당팀) | 구성현황 | 기관명(조직명) | 지정일 | 인력구성 |
| 강원 | 인재육성과<br>(산학협력팀) | 4팀 15명<br>(3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br>(강원RISE센터) | '24.4.15. | 1부 2팀 11명 |
| 경남 | 교육인재과<br>(대학지원담당) | 5팀 23명<br>(5명) |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br>(지역혁신중심대학체계센터) | '23.7.14. | 2팀 8명 |
| 경북 | 대학정책과<br>(대학정책팀) | 3팀 12명<br>(5명) | 경북연구원<br>(경상북도RISE센터) | '23.7.14. | 1팀 6명 |
| 광주 | 교육청년국<br>대학인재정책과<br>(RISE지원팀) | 3팀 14명<br>(3명) | 광주테크노파크<br>(광주광역시 대학교육혁신센터) | '24.5.23. | 3팀 6명 |
| 대구 | 대학정책국<br>대학정책과(대학정책팀) | 2과 5팀<br>40명(7명) | 대구정책연구원<br>(대구RISE센터) | '23.7.25. | 1팀 5명 |
| 대전 | 교육정책전략국<br>대학정책과<br>(대학협력팀) | 4과 14팀<br>61명 3팀<br>14명(4명) | 대전테크노파크<br>(대전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 '23.10.30. | 3팀 13명 |
| 부산 | 지산학협력과<br>(대학정책지원팀) | 4팀 22명<br>(6명)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r>(부산라이즈센터) | '24.8.26. | 1팀 7명 |
| 세종 | 청년정책담당관<br>(산학협력팀) | 4팀 14명<br>(3명) | 세종테크노파크<br>(세종지역혁신대학지원센터) | '24.5.21. | 1팀 2명 |
| 울산 | 대학청년과<br>(대학정책팀) | 3팀 14명<br>(5명) | 울산테크노파크<br>(지산학협력추진본부) | '23.12.26. | 2실 4명 |
| 전남 | 인재육성교육국<br>대학정책과(대학지원팀) | 2과 1단<br>10팀 42명<br>3팀 11명(3명)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br>(전라남도 RISE 추진단) | '23.7.25. | 1팀 7명 |
| 전북 | 교육협력추진단<br>(대학협력팀) | 4팀 25명<br>(9명) | 전북테크노파크<br>(JB지산학협력단) | '23.5.18. | 4부 17명 |
| 제주 | 미래성장과<br>(RISE추진팀) | 6팀 29명<br>(3명) | 제주테크노파크<br>(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센터)) | '23.5.18. | 1팀 7명<br>* TF로 운영 |
| 충남 | 고등교육정책담당관<br>(대학정책팀) | 4팀 17명<br>(6명) | 충남연구원<br>(충남 라이즈 센터) | '23.7.14. | 1팀 7명 |
| 충북 | 미래인재육성과<br>(지산학협력팀) | 3팀 12명<br>(4명) | 충북연구원<br>(충북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 | '23.7.14. | 3팀 13명 |
| 서울 | 대학협력과<br>(대학협력정책팀,<br>학협력사업팀) | 4팀 18명<br>(2팀 11명) | 서울연구원 | '23.9.14. | 2팀 6명 |
| 인천 | 교육협력담당관<br>(대학협력담당) | 3팀 15명<br>(5명) | 인천테크노파크<br>(전략정책팀) | '23.10.20. | 1팀 4명 |
| 경기 | 디지털혁신과<br>(산학연협력팀) | 4팀 23명<br>(5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24.1.15. | 1팀 3명 |

주) 2024.9. 말 기준
자료: 교육부

따라서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 RISE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고등교육과 지역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특수목적 사업들은 RISE 체계에서 지자체의 관심도나 사업추진 역량 미흡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성과와 취지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특수목적 사업을 일괄적으로 RISE 체제로 편입시키기보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RISE 체계에서 제외하고 현행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 등 8개 내역사업은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이 아닌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서 특화된 특수목적 사업들임.

이러한 특수목적 사업들이 RISE 체계로 편입될 경우 지자체의 관심도나 사업추진 역량 미흡으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달성하려 했던 특수목적이 형해화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은 2015년 1기 BRIDGE 사업을 시작으로, 2기 BRIDGE+, 3기 BRIDGE 3.0 사업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며 사업의 체계와 성과가 자리 잡았는데, 일부 사업들이 RISE 체계로 편입되면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성과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교육부는 2026년 이후 8개 내역사업들의 RISE로의 완전 통합을 준비하며 지역 RISE센터가 사업운영에 참여한다는 점, 각 지역은 대학이 수행해오던 각종 재정지원사업들의 성과와 대학별 강점·특성화 분야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RISE 계획을 수립하므로 기존 사업들의 성과와 취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RISE 체계의 성과나 사업효과가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성과와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수목적 사업을 일괄적으로 RISE 체계로 편입시키기보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RISE 체계에서 제외하고 현행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장기적 재정 소요 전망 등을 고려한 편성 필요 등

## 가. 개 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929억 2,600만원(12.6%) 증액된 5조 3,13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4,720,453 | 5,313,379 | 592,926 | 12.6 |
| 국가장학금 지원 | 4,097,498 | 4,485,299 | 387,801 | 9.5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469,125 | 635,774 | 166,649 | 35.5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57,626 | 57,827 | 201 | 0.3 |
|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94,184 | 97,963 | 3,779 | 4.0 |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 | 34,435 | 34,435 | 순증 |
| 운영비(인건비) | 2,020 | 2,081 | 61 | 3.0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주요 증액 내역]

○ 국가장학금 지원 4,485,299백만원

- Ⅰ유형 9구간 신규 지원(약 50만명)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635,774백만원

- 교외근로 260,968백만원 = 6.5만명×12,430원×323시간
- 교내근로 357,468백만원 = 13.5만명×10,030원×80%(20% 대학 대응 투자)×330시간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33,735백만원

- 42,169건(1학기 22,115건 + 2학기 20,054건)×200천원×4개월 = 33,735백만원

자료: 교육부

4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2645-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장학금 사업은 수혜 대상 확대와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 소요 전망과 명확한 정책방향을 고려한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 1.9조원에서 2025년 예산안 기준 5.3조원까지 약 2.79배 증가하여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국가장학금 예산 추이 및 총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비율]

(단위: 조원, %)

| 구분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5 |
|---|---|---|---|---|---|---|---|---|
| 총등록금(A) | 13.2 | 13.1 | 12.8 | 12.4 | 12.3 | 11.6 | 11.5 | 11.4 |
| 국가장학금(B) | 1.9 | 3.7 | 4.0 | 4.1 | 4.0 | 4.7 | 4.7 | 5.3 |
| 비율(B/A) | 14.6 | 28.5 | 31.4 | 33.0 | 33.0 | 40.9 | 40.4 | 46.5 |

주) 정부재원 장학금 총합(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자료: 교육부

2012년 도입 당시에는 3구간 이하만 지원하였다가 2013년에는 8구간 이하까지 지원, 2014년에는 다자녀 추가 지원, 2025년에는 9구간[44]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장학금 지원 단가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에는 다자녀 셋째 이상에 대한 일괄 전액 지원, 7구간의 지원단가는 120만원→350만원, 8구간의 지원단가는 67만 5,000원→350만원으로 상승되었고, 2024년에는 기초·차상위에 대한 일괄 전액 지원, 1~3구간 단가 상승(520만원→570만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9구간까지 대상을 넓혀 100~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하여 왔음.

44) 9구간의 평균 월소득은 714만원, 평균 재산은 4억 5,441만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변동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 |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 '21년 | Ⅰ유형 | | 520 | 520 | 520 | 520 | 390 | 368 | 368 | 120 | 67.5 |
| | 다자녀 | | 520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

| | | | | | | |
|---|---|---|---|---|---|---|
| '22년 및 '23년 | Ⅰ유형 | 첫째 | 700 | 520 | 390 | 350 |
| | | 둘째 | 전액 | | | |
| | 다자녀 | 첫째 | 700 | 520 | 450 | |
| | | 둘째 | 전액 | | | |
| | | 셋째이상 | 전액 | | | |

▼

| | | | | | | |
|---|---|---|---|---|---|---|
| '24년 | Ⅰ유형 | | 전액 | 570 | 420 | 350 |
| | 다자녀 | 첫째,둘째 | 전액 | 570 | 480 | 450 |
| | | 셋째이상 | 전액 | | | |

▼

| | |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9구간 (추가) |
|---|---|---|---|---|---|---|---|---|---|---|---|---|
| '25년 | Ⅰ유형 | | 전액 | 570 | | | 420 | | | 350 | | 100 |
| | 다자녀 | 첫째,둘째 | | 570 | | | 480 | | | 450 | | 135 |
| | | 셋째이상 | | 전액 | | | | | | | | 200 |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고물가,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으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방향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까지 국가장학금 사업의 추이를 보았을 때, 9구간도 향후 지원단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 10구간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어,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당초 사업목적을 넘어, 의무교육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더구나 정부가 2024년 9월 26일 세수 재추계를 통해 2024년 국세수입이 계획(367.3조원) 대비 29.6조원 감소한 337.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여 2023년(56.4조원 결손)에 이어 2024년도 세수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가장학금 예산도 장기적 재정 소요 전망 등을 고려한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9구간으로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 외에 저출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9구간, 10구간 모두 다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등 단순히 가구 소득에 따라서 일반 재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을 설정하여 지원대상을 특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둘째, 주거안정장학금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운영 시 지원대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 신규로 34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산출과 관련하여, ①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한 기초·차상위 학생 중 기혼 및 원격대학 재학, 타 주거 지원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수혜 규모 제외 후, ② 부모 주소지(주민등록상)와 대학 소재지의 시·도가 상이한 인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별 비율을 산출하였고, ③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 수에 120분 이상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비율(63.8%)을 곱하여 지원 규모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산출 샘플링 내역]

(단위: 명, %)

| 학기 구분 (기초·차상위 1유형·다자녀) | '25년 예상 수혜 건수 | 기혼 및 원격대학 (중복 제외) | 청년월세 등 수혜 인원[1] | 시/도 분리 진학[2] | 이동시간[3] | | | | | |
|---|---|---|---|---|---|---|---|---|---|---|
| | | | | | 60분 이하 | 60분 이상 90분 이하 | 90분 이상 120분 이하 | 120분 이상 150분 이하 | 150분 이상 180분 이하 | 180분 이상 |
| | | | | 100.0 | 6.8 | 12.7 | 16.7 | 15.1 | 11.4 | 37.3 |
| 1학기 | 96,574 | 14,932 | 5,698 | 34,662 | 2,357 | 4,402 | 5,789 | 5,234 | 3,952 | 12,929 |
| 2학기 | 87,724 | 13,598 | 5,176 | 31,432 | 2,137 | 3,992 | 5,249 | 4,746 | 3,583 | 11,724 |

주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국토부) 수혜율 5.9% ('23년 1학기 기준)
2) 부모·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시·도(광역자치단체)가 상이한 추정 인원(기혼·원격대학 및 타 사업 수혜 인원 제외 후, 부모 주소지 자료 소지자 대상으로 산출한 비율)
3) 주소지부터 대학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시간(320명 샘플링하여 비율 산출)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유사사업과의 대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과의 지원대상 중

복률을 5.9%로 산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유사사업이 있어 지원대상 중복률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거안정장학금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 예시]

| 지자체 | 사업명 | 지원 내용 |
|---|---|---|
| 서울 | - 청년월세지원 |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br>- 생애 1회 |
| 대전 | - 청년 월세 지원 |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br>- 생애 1회 |
| 세종 | -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br>- 생애 1회 |
| 울산 | -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만원 지원)<br>-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만원)<br>- 생애 1회 |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3.)

따라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수행 시 국토교통부 사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사업과의 지원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4.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 우수한 의대 전임교수 확보를 위한 면밀한 채용계획 필요

## 가. 개 요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은 국립대학(37개교)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7억 8,500만원(2.6%) 증액된 1조 8,72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45)]

[2025년도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립대학 인건비 | 1,825,887 | 1,872,672 | 46,785 | 2.6 |

인건비 증액분 467억 8,500만원은 의대교수 신규채용, 기존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금액에서 2023년 불용률 및 대학 자체수입금 결산을 고려한 감액분을 적용한 금액임.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 예산안 증액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감액 | 산출근거 |
|---|---|---|
| 의대 교수 신규채용 | 25,969 | ○ 의대교수 증원 330명 × 9,400만원* / 12개월 × 10개월<br>* 국립대학 교수 평균연봉단가 기준 |
| 정기직제 정원 증감 | 2,490 | ○ 증원: 교수 33명, 조교 9명, 4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14명<br>○ 감원: 9급 2명 |
| 기존 교직원 인건비 인상 | 51,191 | ○ 약 3% 처우개선분 등 반영 |
| 2023년 불용률 및 대학 자체수입금 결산 반영 감액 | △32,865 | ○ 23년 대학 자체수입금 결산 증가분 감액: △280백만원<br>○ 23년 불용률 반영 감액: △32,585백만원 |
| 합계 | 46,785 | |

자료: 교육부

4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인건비(2702-100)(정책기획관)

## 나. 검토의견

**첫째, 의대 전임교수 증원 자리를 긴급히 충원할 경우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 교수의 확보와 기초의학-임상의학 분야의 균형적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2025년 의과대학 신입생 증원이 계획됨에 따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사업에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259억 6,9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음.

의대 증원이 계획된 9개 국립대 의대에 총 330명의 교원정원이 가배정되었고, 향후 국회 예산 확정과 교육부의 전임교수 배정 정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별로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임.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현원 및 증원 가배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 강원대 | 경북대 | 경상대 | 부산대 | 전남대 | 전북대 | 제주대 | 충남대 | 충북대 | 합계 |
|---|---|---|---|---|---|---|---|---|---|---|
| 총정원 | 1,018 | 1,251 | 1,000 | 1,271 | 1,229 | 1,065 | 599 | 955 | 783 | 9,171 |
| 의대교수 현원 | 120 | 161 | 134 | 153 | 184 | 149 | 104 | 154 | 129 | 1,288 |
| 가배정 증원 | 23 | 44 | 44 | 50 | 43 | 32 | 18 | 41 | 35 | 330 |

주) 2024.7.1. 기준
자료: 교육부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이 존재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임교수, 기금교수 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 전임의 등이 존재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전임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를 말하고, ‘기금교수’는 대학별 「기금교수운영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 부담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를 의미하며, ‘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라 대학이 아닌 대학병원장이 채용한 교수로 대학병원 진료와 함께 의과대학에서 강의도 수행하는 의사를 의미함.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인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으로 단계적으로 1,000명까지 증원하려는 계획인데,[46] 급격한 교수 증원에 따른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6) 관계부처 합동,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2024.9.10.

최근 5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 경쟁률이 1.4:1~2:1 가량이며, 매년 전임교원(전임교수+기금교수) 접수인원이 162~20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해에 330명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우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선발 및 접수 현황]

(단위: 명, %)

| 대학명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 | | 2023년 | | | 2024년 1학기 | | |
|---|---|---|---|---|---|---|---|---|---|---|---|---|---|---|---|---|
| | | 전임교원 | | | 전임교원 | | | 전임교원 | | | 전임교원 | | | 전임교원 | | |
| | | 선발예정인원(A) | 접수인원(B) | 경쟁률(B/A) | 선발예정인원(A) | 접수인원(B) | 경쟁률(B/A) | 선발예정인원(A) | 접수인원(B) | 경쟁률(B/A) | 선발예정인원(A) | 접수인원(B) | 경쟁률(B/A) | 선발예정인원(A) | 접수인원(B) | 경쟁률(B/A) |
| 강원대 | 기초 | 2 | 10 | 5 | 1 | 2 | 2 | - | - | - | 1 | 8 | 8 | - | - | - |
| | 임상 | 9 | 9 | 1 | 12 | 13 | 1.1 | 21 | 21 | 1 | 13 | 13 | 1 | 6 | 6 | 1 |
| | 합계 | 11 | 19 | 1.7 | 13 | 15 | 1.2 | 21 | 21 | 1 | 14 | 21 | 1.5 | 6 | 6 | 1 |
| 경북대 | 기초 | - | - | - | - | - | - | 4 | 13 | 3.25 | 1 | 1 | 1 | 1 | 12 | 12 |
| | 임상 | 6 | 6 | 1 | 11 | 10 | 0.9 | 6 | 6 | 1 | 3 | 3 | 1 | 2 | 2 | 1 |
| | 합계 | 6 | 6 | 1 | 11 | 10 | 0.9 | 10 | 19 | 1.9 | 4 | 4 | 1 | 3 | 14 | 4.7 |
| 경상국립대 | 기초 | 1 | 1 | 1 | 4 | 32 | 8 | 3 | 34 | 11.3 | 2 | 15 | 7.5 | 2 | 16 | 8 |
| | 임상 | 13 | 13 | 1 | 18 | 16 | 0.9 | 10 | 10 | 1 | 18 | 14 | 0.8 | 5 | 4 | 0.8 |
| | 합계 | 14 | 14 | 1 | 22 | 48 | 2.2 | 13 | 44 | 3.4 | 20 | 29 | 1.5 | 7 | 20 | 2.9 |
| 부산대 | 기초 | 2 | 2 | 1 | 1 | 5 | 5 | 3 | 4 | 1.3 | 1 | 10 | 10 | 2 | 8 | 4 |
| | 임상 | 7 | 7 | 1 | 5 | 6 | 1.2 | 7 | 7 | 1 | 7 | 9 | 1.3 | 1 | 3 | 3 |
| | 합계 | 9 | 9 | 1 | 6 | 11 | 1.8 | 10 | 11 | 1.1 | 8 | 19 | 2.4 | 3 | 11 | 3.7 |
| 전남대 | 기초 | 2 | 4 | 2 | 1 | 8 | 8 | 3 | 8 | 2.7 | 4 | 16 | 4 | - | - | - |
| | 임상 | 18 | 36 | 2 | 16 | 32 | 2 | 20 | 40 | 2 | 15 | 29 | 1.9 | 15 | 30 | 2 |
| | 합계 | 20 | 40 | 2 | 17 | 40 | 2.4 | 23 | 48 | 2.1 | 19 | 45 | 2.4 | 15 | 30 | 2 |
| 전북대 | 기초 | 2 | 13 | 6.5 | - | - | - | 1 | 1 | 1 | 2 | 2 | 1 | 2 | 3 | 1.5 |
| | 임상 | 5 | 5 | 1 | 4 | 4 | 1 | 6 | 6 | 1 | 10 | 10 | 1 | 3 | 3 | 1 |
| | 합계 | 7 | 18 | 2.6 | 4 | 4 | 1 | 7 | 7 | 1 | 12 | 12 | 1 | 5 | 6 | 1.2 |
| 제주대 | 기초 | 1 | 9 | 9 | - | - | - | 2 | 7 | 3.5 | 2 | 2 | 1 | 1 | 1 | 1 |
| | 임상 | 3 | 3 | 1 | 4 | 4 | 1 | - | - | - | 7 | 7 | 1 | 2 | 2 | 1 |
| | 합계 | 4 | 12 | 3 | 4 | 4 | 1 | 2 | 7 | 3.5 | 9 | 9 | 1 | 3 | 3 | 1 |
| 충남대 | 기초 | 4 | 5 | 1.25 | 4 | 4 | 1 | 3 | 10 | 3.3 | 1 | 1 | 1 | - | - | - |
| | 임상 | 41 | 41 | 1 | 17 | 17 | 1 | 12 | 11 | 0.9 | 16 | 16 | 1 | 12 | 12 | 1 |
| | 합계 | 45 | 46 | 1 | 21 | 21 | 1 | 15 | 21 | 1.4 | 17 | 17 | 1 | 12 | 12 | 1 |
| 충북대 | 기초 | 1 | 3 | 3 | - | - | - | 1 | 11 | 11 | - | - | - | 3 | 13 | 4.3 |
| | 임상 | 6 | 6 | 1 | 9 | 9 | 1 | 10 | 12 | 1.2 | 9 | 9 | 1 | 2 | 2 | 1 |
| | 합계 | 7 | 9 | 1.3 | 9 | 9 | 1 | 11 | 23 | 2.1 | 9 | 9 | 1 | 5 | 15 | 3 |
| 총계 | | 123 | 173 | 1.4 | 107 | 162 | 1.5 | 112 | 201 | 1.8 | 112 | 165 | 1.5 | 59 | 117 | 2.0 |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의 기금교수, 임상교수 등 우수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이 신분 안정성이 높은 전임교수로 채용될 수 있으므로, 인력풀은 충분하다는 의견임.

[국립대병원 기금교수 등 현황]

(단위: 명)

| 기금교수 | 임상교수 | 진료교수 | 임상강사 등 | 합계 |
|---|---|---|---|---|
| 763 | 1,092 | 637 | 514 | 3,006 |

주 1) 진료교수는 교원이 아닌 진료만 하는 의사(단년계약, 촉탁 등)를 의미함
2) 2024.9.1. 기준
자료: 교육부

다만, 교육부의 의견대로 임상 분야에서는 우수한 인력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의학 분야[47]의 우수 인력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의 균형적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대학 인건비 예산의 불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의대교수 신규채용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채용 및 임용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 인건비는 과다 편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 또한 2017년 354억원, 2020년 883억원, 2023년 99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립대학 인건비의 불용을 최소화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48]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절차에 일정 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배정된 인원이 2025년 3월에 전원 채용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예산 일부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의대교수 신규채용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채용 및 임용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7) 기초의학 분야

(전통 8개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분자생물학, 약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병리학, 예방의학
(신규 기초의학) 법의학, 면역학, 융합과학, 정밀의학, 뇌과학, 분자의학, 생물리 생리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의생명, 의생명과학, 의학유전학, 임상약리학, 환경의학, 의공학 등
(의학·의료 분야) 의학교육학, 의료인문학, 의료정보학 의료경영, 의사학, 직업환경의학, 응급의학, 의학통계 등
자료: 교육부

48) 2023회계연도 교육위원회 결산 지적사항

교육부는 국립대학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주의)

# 15. 의대여건 개선 사업(신규):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과 면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의대여건 개선’** 사업은 국립대학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연구·실습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43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9)]

[2025년도 의대여건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1,005,309 | 1,092,909 | 87,600 | 8.7 |
| 의대여건 개선 | - | 143,200 | 143,200 | 순증 |

[의대여건 개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6,332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11,733백만원
○ 공사비(420-03): 106,375백만원
○ 감리비(420-04): 8,510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251백만원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의대여건 개선사업은 총 투입비용이 8,67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① 사전타당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되었다는 점, ② 대학별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공간구성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의대생 1인당 소요면적과 면적당 평균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였다는 점, ③ 향후 사업비 상승 시 사업 지연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면밀한 적정성 검토가 수반**

4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교육자치협력안전국)

**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으로,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을 신속히 확충하고자 2025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의대여건 개선 사업에 1,432억원을 편성하였음.

9개 국립대 의대에 총 21개동을 신축·개축할 계획으로, 총건립규모는 231,166㎡이고 총 사업예산은 8,678억원 가량 소요될 예정임.

[국립대 의대여건 개선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억원)

| 연번 | 대학명 | 건물명 | 건립규모 | 총사업비 | 발주방식 | 비고 |
|---|---|---|---|---|---|---|
| 1 | 충남대 | (가칭)의대신관 | 13,311 | 484.5 | 턴키 | |
| 2 | | (가칭)세종신관 | 13,311 | 484.5 | 턴키 | |
| 3 | 전북대 | (가칭)의대5호관 | 13,000 | 473.2 | 턴키 | |
| 4 | | (가칭)의대6호관 | 4,156 | 151.3 | 일반 | |
| 5 | 전남대 | (가칭)의생명교육연구동1호관 | 13,000 | 473.2 | 턴키 | |
| 6 | | (가칭)의생명교육연구동2호관 | 9,185 | 334.3 | 일반 | |
| 7 | 경북대 | (가칭)의대신관(개축) | 24,000 | 873.6 | 턴키 | 예타 면제 |
| 8 | | (가칭)해부학실습동 | 2,622 | 95.4 | 일반 | |
| 9 | 부산대 | (가칭)신축1호관 | 13,000 | 473.2 | 턴키 | |
| 10 | | (가칭)신축2호관 | 9,185 | 334.3 | 일반 | |
| 11 | 강원대 | (가칭)의학3-1호관 | 11,551 | 420.5 | 턴키 | |
| 12 | | (가칭)의학3-2호관 | 13,000 | 473.2 | 일반 | |
| 13 | 충북대 | (가칭)의대4호관 | 13,000 | 473.2 | 턴키 | |
| 14 | | (가칭)의대5호관 | 13,000 | 473.2 | 일반 | |
| 15 | | (가칭)의대6호관 | 13,000 | 473.2 | 일반 | |
| 16 | | (가칭)해부학실습동 | 5,666 | 206.2 | 일반 | |
| 17 | 경상대 | (가칭)제2의학복합관 | 13,000 | 473.2 | 턴키 | |
| 18 | | (가칭)제3의학복합관 | 13,000 | 473.2 | 일반 | |
| 19 | | (가칭)제4의학복합관 | 10,679 | 388.7 | 일반 | |
| 20 | 제주대 | (가칭)의대3호관 | 10,500 | 382.2 | 턴키 | |
| 21 | | (가칭)의대3-1호관 | 7,248 | 263.8 | 일반 | |
| 합 계 | | | 231,166 | 8,678 | | |

자료: 교육부

21개동 중 턴키(일괄입찰: 설계+공사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9개 대학의 10개동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011억원의 약 25% 규모인 1,269억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설계 후 시공) 방식으로 추진하는 8개 대학의 11개동에 대해서는 설계비의 50% 수준으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90억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국립대의대 발주 방식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 | 충남대 | 전북대 | 전남대 | 경북대 | 부산대 | 강원대 | 충북대 | 경상대 | 제주대 | 합계 |
|---|---|---|---|---|---|---|---|---|---|---|---|---|
| 확충 | 총사업비 | | 969 | 624 | 808 | 969 | 807 | 894 | 1,626 | 1,335 | 646 | 8,678 |
| | 소계 | | 291 | 142 | 150 | 27 | 149 | 136 | 166 | 160 | 121 | 1,342 |
| | 발주방식 | 턴키 | 291 | 142 | 142 | 27 | 142 | 126 | 142 | 142 | 115 | 1,269 |
| | | 일반 | - | - | 8 | - | 7 | 10 | 24 | 18 | 6 | 73 |
| 리모델링 | | | 10 | 10 | 11 | 10 | 10 | 7 | 10 | 10 | 12 | 90 |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대인증 기준 미충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50]을 추진하는 등 의대증원에 따라 이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사업은 총 투입비용이 8,67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51]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사업비 산출 측면에서, 의과대학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학생 1인당 평균

5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일부 발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함

51)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대상 사업 : 국가가 설립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축 시설사업
- 공공청사 등 국유기금 대상시설, 국방시설, R&D시설, 공공기관 시설 등은 제외

3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대상 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타당성평가 요구
- 2025년도부터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요구시 부처의 사전용역 결과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용역 제출된 사업에 한해서 사전타당성평가 실시

공간 면적에 증원규모와 면적당 단가를 곱하여 일률적으로 총사업비를 도출하였는데, 각 대학의 공간 효율성과 부지선정 상황, 고도나 층수 등 여러 사항이 정밀하게 검토되지 못하여 향후 설계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의대여건 개선 사업 총사업비 산출 과정]

| |
|---|
| 49.3㎡(1인당 평균 면적) × 4,836명(증원규모) × 364만원/㎡(단가) |

자료: 교육부

마지막으로, 각 대학별 신설되는 건물당 총사업비가 대부분 450~500억원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향후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52]를 실시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지연의 우려도 있음.

따라서 의대여건 개선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과 면밀한 적정성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어 보임.

52) 「국가재정법」 상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 실시함.

# 16.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조정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실습 및 술기 교육을 통한 의료기술 숙련도 향상 및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의료 실습 및 의료 경험 제공을 위한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3억 7,600만원(30.4%)이 증가한 230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53)]

[2025년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립대병원 지원 | 111,369 | 117,057 | 5,688 | 5.1 |
| 정책사업 | 24,022 | 26,988 | 2,966 | 12.3 |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17,672 | 23,048 | 5,376 | 30.4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시설확충 및 보수 (74,566,000천원)

○ 장비구입 및 교체 (15,503,000천원)

○ 정책사업 (23,048,000천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2~'26, 경북대, 전남대) : 4,626,000,000원×2개 병원=9,252,000천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3~'26, 분당서울대, 전북대) : 5,398,000,000원×2개 병원=10,796,000천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4~'27, 양산부산대, 충북대) : 1,000,000,000원×2개 병원=2,000,000천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25~'28, 강원대, 경상국립대) : 500,000,000원×2개 병원=1,000,000천원**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사업 : 31명×127,000,000원=3,940,000천원

자료: 교육부

5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병원 지원(2743-301)(지역인재정책관)

## 나. 검토의견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이 부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안은 2022년도에 선정된 경북대병원·전남대병원, 2023년도에 선정된 분당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2024년도에 선정된 양산부산대병원·충북대병원에 대한 계속사업비와 함께 2025년에 신규로 선정할 2개 병원(강원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23년 예산 | '24년 예산 | '25년 예산안 |
|---|---|---|---|---|
| 계속 | 칠곡경북대병원 공공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2~'26) | 1,000 | 3,916 | 5,080 |
| | 전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2~'26) | 1,000 | 1,000 | 4,172 |
| | 분당서울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3~'26) | 1,000 | 3,600 | 8,396 |
| | 전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3~'26) | 1,000 | 3,600 | 2,400 |
| | 양산부산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4~'27) | - | 500 | 1,000 |
| | 충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4~'27) | - | 500 | 1,000 |
| 신규 | 강원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5~'28) | - | - | 500 |
| | 경상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25~'28) | - | - | 500 |

자료: 교육부

그런데 각 병원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에 신규로 선정된 양산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2024년 8월 말 총사업비 심의 이후 설계용역 준비 단계에 있어 2024년도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25년 예산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중인 4개 병원 및 2024년 신규선정된 2개 병원 모두 2024년 8월 기준 실집행실적이 없어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에 선정된 전남대병원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검토에 따라 사업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황임.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 개별사업명 | 2024년 예산 | 집행액 | 집행률 | 2025년 예산안 | 사업 기간 | 집행 부진 사유 |
|---|---|---|---|---|---|---|
|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3,916 | - | - | 5,080 | 2022~ 2026 | - 인허가 완료 및 실시 설계 완료 예정 |
| 전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1,000 | - | - | 4,172 | 2022~ 2026 | - 사업계획변경 검토에 따른 집행 일시 중단 |
| 분당서울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3,600 | - | - | 8,396 | 2023~ 2026 | - 설계 용역 진행 중 |
| 전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3,600 | - | - | 2,400 | 2023~ 2026 | - 공공건축물 조성 절차 진행 중 |
| 양산부산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500 | - | - | 1,000 | 2024~ 2027 | - '24.8.28. 총사업비 심의 완료 |
| 충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 500 | - | - | 1,000 | 2024~ 2027 | - '24.8.28. 총사업비 심의 완료 |

주) 2024.8. 말 기준
자료: 교육부

따라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추진경과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7.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공유 콘텐츠 확보 노력 필요

## 가. 개 요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에듀테크 기반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를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억 2,200만원(376.6%)이 증가한 16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54]

[2025년도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 351 | 1,673 | 1,322 | 376.6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일반연구비(260-01) : 862,000천원 |
| - 가상실험실습 관리시스템 구축(1차) (347,000천원)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포털 구축 (347,000천원) |
| - 감리비 (128,000천원) |
| - 개인정보영향평가 (40,000천원)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02,000천원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1차) HW임대 (202,000천원) |
| ○ 자산취득비(430-01) : 609,000천원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1차) SW구매 (609,000천원) |

자료: 교육부

5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4134-5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 나. 검토의견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은 각 대학이 제작·보유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운영의 관건이므로, 대학과의 콘텐츠 공유 협약 등을 통해 충분한 콘텐츠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상실험실습 콘텐츠는 가상(VR)·증강(A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공계 학과 실험이나 외국어 회화 등 학습자가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학습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로서, 이 사업은 여러 대학(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실험실습 콘텐츠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임.

2024년 신규예산으로 ISP를 수립하였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61억 8,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5년 예산안에는 1차년도 구축비용 16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연차별 과제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 세부 이행 과제 | 소요예산 |
|---|---|---|
| 1차년도 (2025) | 가상실험실습 관리시스템 구축 1차 | 347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포털 구축 | 347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1차 | 811 |
| | 감리비 | 128 |
| | 개인정보영향평가 | 40 |
| | 소계 | 1,673 |
| 2차년도 (2026) | 학습분석 빅데이터 개방·공유 서비스 개발 | 479 |
| | 학습분석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서비스 개발 | 309 |
| | 가상실험실습 관리시스템 고도화1차 | 443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포털 고도화1차 | 458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제작 | 1,045 |
| | 가상실험실습 분야 학습역량 분류체계 수립 연구 | 108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2차 | 3,408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고도화 | 407 |
| | 감리비 | 229 |
| | PMO | 142 |
| | 소계 | 7,028 |
| 3차년도 (2027) | 가상실험실습 관리시스템 구축 2차 | 43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제작 3차 | 1,045 |

(단위: 백만원)

| | 세부 이행 과제 | 소요예산 |
|---|---|---|
| | 학습역량 분류체계 및 역량진단 관리 서비스 개발 | 533 |
| | 가상실험실습 관리시스템 고도화 2차 | 443 |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포털 고도화 2차 | 458 |
| | 학습역량진단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699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3차 | 3,546 |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인프라 고도화 | 407 |
| | 감리비 | 202 |
| | PMO | 106 |
| | 소계 | 7,482 |
| 총 계 | | 16,183 |

자료: 교육부

학습콘텐츠를 보유 중인 대학(기관)이 협의 등을 통해 공유플랫폼에 학습콘텐츠를 탑재해야 공유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각 대학(기관)이 제작·보유한 콘텐츠를 얼마나 다양하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2024.7. 기준) 대학들과 협약이 완료된 곳은 수도권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센터 참여대학[55]들에 불과하여 충분한 학습콘텐츠를 확보하기에 미진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여러 대학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확보 기관 현황 및 공유플랫폼 참여 의사에 관한 조사 결과]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제공 대상기관 | | | 조사 항목 | | | |
|---|---|---|---|---|---|---|---|
| | 정보시스템명/ 제공서비스명 | 기관명 | 주관부서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플랫폼 참여 의사 | 현재 활용 | 학습콘텐츠 지속운영관리 | 추진 조직 |
| 1 | 자연과학 가상현실 (VR) 프로그램 | 충북대학교 | 충북Pro 메이커센터 | ○ | ○ | ○ | ○ |
| 2 | 포스텍 메타버시티 | 포항공과 대학교 | 교육혁신 센터 | ○ | ○ | ○ | ○ |
| 3 | TU-메타버시티 | 한국공학 대학교 | 메타버시티 혁신센터 | ○ | ○ | ○ | ○ |
| 4 | VR 기반 현장실습 콘텐츠 | 한국교통 대학교 의왕캠퍼스 | 대학일자리 개발원 | ○ | ○ | ○ | ○ |

55) 한국방송통신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교육대, 한경국립대, 한국체육대

| | 가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제공 대상기관 | | | 조사 항목 | | | |
|---|---|---|---|---|---|---|---|
| | 정보시스템명/<br>제공서비스명 | 기관명 | 주관부서 | 가상실험실습<br>학습콘텐츠<br>공유플랫폼 참여 의사 | 현재<br>활용 | 학습콘텐츠<br>지속운영관리 | 추진<br>조직 |
| 5 | STEP | 한국기술<br>교육대학교 | 온라인평<br>생교육원 | ○ | ○ | ○ | ○ |
| 6 | 꿈드림공작소<br>XR체험교육 | 한국폴리텍<br>대학 | 교무기획처 | ○ | ○ | | ○ |
| 7 | HY-LIVE | 한양대학교 | 교육혁신단<br>교육혁신팀 | ○ | ○ | ○ | ○ |
| 8 | 와이어본딩<br>교육콘텐츠 개발 | 호서대학교 | 산학협력단 | | | | ○ |
| 9 | VR 해부학 프로그램 | 경희대학교<br>의과대학 | 신경생물<br>학교실 | ○ | ○ | | |
| 10 | AR/VR E-Zone | 대구<br>가톨릭대학교 | 대학혁신<br>사업단 | | ○ | | ○ |
| 11 | 실감형 교육콘텐츠 | 대구<br>사이버대학교 | 기획처<br>기획정보팀 | | ○ | ○ | ○ |
| 12 | V-Lab | 부산대학교 | 교육인증원 | ○ | ○ | | ○ |
| 13 | VR 이용한 수술교육<br>시뮬레이션 | 서울대학교<br>의과대학 | 해부학교실 | | ○ | | |
| 14 | XR 기반 반도체 교육<br>콘텐츠 | 성균관대학교 | 반도체학과<br>연구팀 | | | ○ | ○ |
| 15 | 메타버스 플랫폼 | 순천대학교 | 산학협력단 | | ○ | | ○ |
| 16 | 실감형 교육콘텐츠 | 신구대학교 | 산학협력단 | | | | ○ |
| 17 | 실감미디어를 활용한<br>교수학습 환경 구축 | 연세대학교 | 시스템<br>생물학 | | ○ | | |
| 18 | 인체해부학 테이블 및<br>플랫폼 | 제주대학교<br>의과대학 | 의과대학<br>연구팀 | | ○ | ○ | |

자료: 교육부

## 【사학진흥기금(사학지원계정)】

### <지 출>

# 18.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 의대 융자 집중으로 인한 일반 사립대 융자금액 축소 문제

## 가. 개 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및 재정여건 개선·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계획액 대비 1,490억 6,300만원(216.0%)이 증액된 2,18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56]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 69,000 | 69,000 | 218,063 | 149,063 | 216.0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
|---|
| ○ (의대 융자) ’25년 정원증원 사립의대 융자수요액 172,840백만원 × 100% = 172,840백만원 |
| ○ (의대 외 사립학교 융자) ’25년 융자사업 수요액 180,890백만원 × 25% = 45,223백만원 |

자료: 교육부

56) 사학진흥기금-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2861-300)(지역인재정책관)

##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사학진흥기금 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된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 융자 사업과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정원 증원이 계획된 사립 의대 및 부속병원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관련 자금과 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운영비 관련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임.

그런데 2025년 사학진흥기금 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된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 융자 사업도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융자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각 사업의 취지에 맞게 융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과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 사업 비교]

| 구분 |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2861-300) | 병원 필수의료 역량강화 지원 사업(4333-353) |
|---|---|---|
| 지원 대상 | ○ 정원 증원 사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 ○ 사립대학 부속병원 |
| 지원 목적 | ○ 사립학교의 교육 및 재정여건 개선을 통한 사학교육 진흥 | ○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확충을 통한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
| 지원 내용 | ○ (교육여건 개선) 교육시설 및 실험·실습용 장비·기자재 등의 개·보수, 확충 관련 자금 융자*<br>* 대학 부속병원 시설, 장비 포함<br>○ (재정여건 개선)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및 법인·학교(대학 부속병원 포함) 운영비 등 관련 자금 융자 | ○ 필수의료 분야(운영자금, 시설비, 장비비 등) 인프라 유지·확충 관련 자금 융자 |
| 이자율 | ○ 연 1.5% (고정 금리) | ○ 연 2.77% (’24.3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자료: 교육부

**둘째, 지난 10년간 사립의대 부속병원에 대한 융자실적이 연평균 255억원에 불과하고, 의대별 융자수요 조사내역과 같은 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립의대 융자수요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난 10년간 사립의대 부속병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약 2,550억원을 융자하였고 1년 평균 255억원에 불과해, 2025년 계획안의 1,728억 4,000만원 융자금액 계상의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사립의대 부속병원 융자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학교명 | 융자액 |
|---|---|---|
| 2014 | 연세대학교 | 4,378 |
| | 중앙대학교 | 8,069 |
| 2014 소계 | | 12,447 |
| 2015 | 연세대학교 | 17,514 |
| 2015 소계 | | 17,514 |
| 2016 | 동아대학교 | 9,693 |
| | 차의과학대학교 | 2,000 |
| | 한양대학교 | 4,200 |
| 2016 소계 | | 15,893 |
| 2017 | 동아대학교 | 15,000 |
| | 차의과학대학교 | 7,999 |
| 2017 소계 | | 22,999 |
| 2018 | 경희대학교 | 7,205 |
| | 대구가톨릭대학교 | 10,034 |
| | 동국대학교 | 4,400 |
| | 동아대학교 | 3,228 |
| | 원광대학교 | 2,650 |
| | 차의과학대학교 | 6,000 |
| | 한양대학교 | 5,200 |
| 2018 소계 | | 38,717 |
| 2019 | 단국대학교 | 20,000 |
| | 대구가톨릭대학교 | 4,966 |
| | 동국대학교 | 17,000 |
| | 차의과학대학교 | 9,000 |
| 2019 소계 | | 50,966 |
| 2020 | 계명대학교 | 20,000 |
| | 차의과학대학교 | 1,000 |
| | 한양대학교 | 3,652 |
| 2020 소계 | | 24,652 |
| 2021 | 단국대 | 15,300 |
| | 동국대학교 | 5,900 |
| | 원광대학교 | 3,100 |
| | 차의과학대학교 | 10,000 |
| 2021 소계 | | 34,300 |
| 2022 없음 | | |
| 2023 | 가톨릭관동대학교 | 5,007 |
| | 동국대학교 | 17,480 |
| | 연세대학교 | 15,000 |
| 2023 소계 | | 37,487 |
| 총합계 | | 254,975 |

자료: 교육부

융자수요의 조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증원이 계획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나, 의대별 수요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사립의대의 융자수요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함.

**셋째, 융자 자원이 사립의대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의대 외 일반융자 자금은 수요액의 25%로 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 의대와 비(非)의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사립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대 외 융자 지원비율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계획안은 사립의대 융자수요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의대 외의 융자수요에 대해서는 25%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립의대에 자원배분이 치중되어 비(非)의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수요액 1,726억원의 40%인 6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 갑자기 수요액의 25%로 하향하는 것은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의대와 비(非)의대 간 형평성과 사립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의대 외 융자 지원비율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신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등

## 가. 개 요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필수진료 인프라 유지·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1,200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7]

[2025년도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 - | - | 120,050 | 120,050 | 순증 |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20,000백만원 |
| - 상급종합병원 대상 융자 = 80,000백만원(4개소×최대 20,000백만원) |
| - 종합병원 대상 융자 = 40,000백만원(20개소×최대 2,000백만원)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0백만원 |
| - 사업운영비 = 27백만원 |
| - 인건비 = 23백만원(2,276천원×2명×10개월×50%) |

자료: 교육부

## 나. 검토의견

**첫째,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융자는 병원 경영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정상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7) 사학진흥기금-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융자)(4333-353)(지역인재정책관)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를 의미하며,[58] 필수진료 인프라는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 기반(의료진, 시설, 장비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59]

교육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2024.2.) 이후 마이너스통장 한도 상향, 직원 무급휴가 신청, 병동 통폐합 사례 등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며,[60] 융자된 자금은 필수의료진 인건비, 수술실 시설 확충자금, 의료장비 교체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함.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융자 자금의 용도]

| 구분 | 자금 용도 |
|---|---|
| 필수의료 운영자금 | -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필수의료 과목 진료·수술을 위한 의료진 대기 및 수술에 따른 인건비 및 병원 운영비 등 |
| 필수의료 시설자금 | -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비 및 시설 확충자금 등 |
| 필수의료 장비자금 | - 중증·응급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 추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비용 등 |

자료: 교육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기관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할 수 있겠으나, 필수의료의 붕괴는 저수가(低酬價), 의료분쟁에 따른 위험, 잔존 의료인력의 고강도 노동, 병원의 수익구조 문제[61] 등 ‘고위험-저보상-고강도-저비전’이라는 왜곡된 의료생태계 구조에 의한 것으로,[62]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병원의 경영난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음.

즉, 자금융자가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거나 역량을 강화하는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융자된 자금이 필수의료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융자는 병원 경영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58) 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별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를 필수진료과로 보고 있음.

59) 교육부 설명자료

60) 연합뉴스,「서울대병원 ‘1천억 마통’ 만들었다…병원마다 ‘비상경영’ 돌입」, 2024.3.15.

61) 예를 들어, 고난도 중증 수술은 원가 대비 가격이 낮고 CT·MRI 검사는 보상 수준이 높아 대학병원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 러시와 의료체계 왜곡을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62) 보건복지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024.2.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정상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사학진흥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례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사학진흥기금(재단)은 통상 융자원금 회수와 기금예수금(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수입 재원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융자, 행복기숙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 사학진흥기금(사학지원계정) 수입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3결산 | 2024년 계획액(A) | 2025년 계획안(B) | 증 감 | |
|---|---|---|---|---|---|
| | | | | B-A | % |
| 기타민간이자수입 | 32,790 | 28,810 | 32,561 | 3,751 | 13.0 |
| 기타재산이자수입 | 3,875 | 1,247 | 2,072 | 825 | 66.2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141 | 2,243 | 2,396 | 153 | 6.8 |
| 기타잡수입 | 1,477 | 1,229 | 1,099 | △130 | △10.6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 145,776 | 137,099 | 138,058 | 959 | 0.7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106,086 | 31,413 | 30,667 | △746 | △2.4 |
| 일반회계전입금 | - | - | 121,787 | 121,787 | 순증 |
| 기금예수금 | 98,345 | 99,193 | 235,477 | 136,284 | 137.4 |
| 총 계 | 389,490 | 301,234 | 564,117 | 262,883 | 87.3 |

자료: 교육부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자체 기금 재원이 아닌 일반회계로부터 1,217억 8,700만원을 전입 받아 추진할 예정임.

2019~2021년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에 총 8억 6,000만원이 한시적으로 편성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 재원을 전입 받아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임.

[2025년 사학진흥기금(사학지원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A)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수납률(C/B) |
|---|---|---|---|---|---|
| 2019 | 114 | - | - | - | - |
| 2020 | 300 | - | - | - | - |
| 2021 | 446 | 2.06 | 2.06 | 0.46 | 100.0 |

자료: 사학진흥재단

「국가재정법」 상 일반회계와 기금 간 전입·전출이 가능하기는 하나,[63] 기금 사업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64]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라는 사학의 한정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사업추진이 관례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3)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 ·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 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64) 2025년도 계획안에 여유자금 운용액(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이 243억 2,3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수 입>

## 20. 토지대여료: 감정재평가를 반영한 지료 수입 증액 조정 필요

### 가. 개 요

**‘토지대여료’**는 서울회관 재건축 관련 토지소유자인 공단과 사업주체인 리츠법인 간 체결한 지상권설정 계약에 따라 지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계획액과 동일한 10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65)]

[2025년도 토지대여료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토지대여료 | 10,580 | 10,580 | 10,580 | - | -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 나. 검토의견

**지상권 설정계약 상 5년 단위로 재산정하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대여료를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자산운용을 위해 나주본부, 둔산회관, 부산회관, 서울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982년에 설립되어 노후화된 서울회관을 재건축하여 2024년 5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임.

6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토지대여료(51-511)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위 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
| 대지면적 | 10,142.00㎡ (3,067.95평) |
| 연면적 | 141,668.98㎡ (42,855평) |
| 용적률 | 999.43% |
| 건물규모 | 지하6층 / 지상42층 |
| 시공사 | 삼성물산 (2020.10.1. 착공) |
| 총투자비 | 약 4,685억 원(건설비 총사업비 : 4,011억 원) |
| 사업기간 | 36년(개발기간 6년, 운영기간 30년) |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회관 재건축 사업은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REITs, 사업시행사)가 사학연금공단과 지상권 설정계약을 바탕으로 사학연금공단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30년간 임대 운영한 뒤 지상권 종료 시점에 대상 건물을 사학연금공단에 양도하는 구조임.

[서울회관 지상권 설정계약 내역]

| 구 분 | 내 용 |
|---|---|
| 계약당사자 | · 지상권설정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br>· 지상권자: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지상권설정 범위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대지면적 10,142㎡중 10,022㎡<br>(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지상권 편입면적 120㎡를 제외) |
| 설정기간 | · 개시일: 2020.9.23.<br>· 종료일: 2054.2.28.<br>- 운영개시일 (2024.2.28.)로부터 30년째 되는 날 |
| 토지임대료 | · 10,580,000,000원(적용시기: 2020.09.23.~2024.03.31.)<br>· 13,601,858,400원(적용시기: 2024.04.01.~)<br>- 5년 단위로 평가 재산정 |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그런데 지상권 설정에 따른 토지임대료를 보면, 2020년 9월 23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는 105억 8,000만원이었으나, 2024년 4월 1일부터는 약 136억 2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5년마다 토지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재산정된 토지대여료 136억 200만원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안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 Ⅰ. 개 관

## 1. 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없음.[1)]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 | - | - | - |
| 총수입 | - | - | - | - |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억원(3.5%) 증가함. 예산은 동일하게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억원(3.5%) 증가함.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103 | 106 | 3.6 | 3.5 |
| 총지출 | 103 | 106 | 3.6 | 3.5 |

문의 : 노성준 예산결산조사관 ysamy0904@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없음.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06억원으로 전년대비 3.6억원(3.5%) 증가함.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103 | 106 | 3.6 | 3.5 |
| 합 계 | 103 | 106 | 3.6 | 3.5 |

주) 총계 기준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으며[2], 주요 증액사업도 해당사항 없음.[3]

##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미래교육 토론회·워크숍 사업 비용을 증액하였으며, ②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후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지원 등 연구 수행 및 이행관리를 위해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사업 예산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5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요 교육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의 ‘국민의견수렴 용역’ 예산과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예산이 불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출>

## 1.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집행관리 철저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국민의견 수렴·조정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8.5%) 증액된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 4,773 | 4,917 | 144 | 3.0 |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 590 | 640 | 50 | 8.5 |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2억 7,500만원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용역, 참석수당 등
○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1억 4,530만원
- 국민의견수렴 용역 1억원
-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운영 4,530만원
○ 홍보지원 2억 2,000만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4)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

## 나. 검토의견

**중요 교육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견 플랫폼(舊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의 ‘국민의견수렴 용역’ 예산과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예산이 불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사업에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 2억 7,500만원,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 1억 4,530만원, ‘홍보지원’ 예산 2억 2,000만원 등 총 6억 4,03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그 중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과 동일하게 국민의견수렴 용역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더해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4,530만원[5]을 추가로 편성하였음.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안 전년대비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
| 편성 내역 | ○ 국민의견수렴 용역 100(50×2회) | ○ 국민의견수렴·조정 용역 100 (50×2회) |
| | | ○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운영 45.3<br>- 참석 수당 27 (0.2×15명×9회)<br>- 회의자료 제작 등 9 (1×9회)<br>- 임차료 5.2 (1.3×4회)<br>- 위원 등 여비 2.3 (0.05×5명×9회)<br>- 업무추진비 1.8 (0.03×15명×4회) |
| 합계 | 100 | 145.3 |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그런데 국민의견수렴 용역 및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 1억 4,530만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4년 예산에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용역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2024.9.30. 기준)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 용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5) 기존의 ‘법정회의 등 운영’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분리하여 이관함.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국민 등의 요청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교육정책 관련 국민의견수렴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6]

그러나 국회, 대통령, 국민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하면 국민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의대증원 등 최근 여러 교육적 현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민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출과 수렴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운영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음.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위원회로서,[7]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국민의견 수렴·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의견에 대해 자문·검토하기 위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마련하여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에 대하여 국민이 의견을 게시하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8]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현황을 보면, '국가교육과정 수립·

---

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 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 · 조정하기로 심의 · 의결한 경우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 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조정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요청이 게시판 설치 이후 현재(2024.9.30. 기준)까지 20건에 불과하고, 최대 동의 건수도 1,781건으로 국민의견수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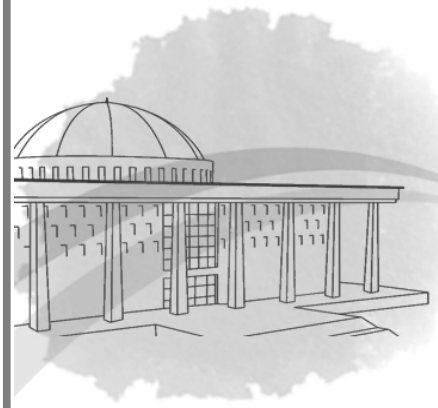
국민들의 의견표출과 동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9)]

따라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요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견 플랫폼(舊 국민의견 소통게시판)’[10)]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견수렴 용역’ 예산과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예산이 불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9)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2025년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발표되면 다양한 교육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수렴 요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10) ‘국민의견 플랫폼’은 기존의 국민의견 소통게시판을 새롭게 개편(2024.10.10.)한 것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Ⅰ. 개 관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은 9조 9,0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611억원(3.8%) 증가함. 예산은 8조 4,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06억원(4.6%)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조 4,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0.6%) 감소함.[1)]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80,628 | 84,334 | 3,706 | 4.6 |
| 기 금 | 14,853 | 14,758 | △95 | △0.6 |
| 총수입 | 95,481 | 99,092 | 3,611 | 3.8 |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은 18조 9,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54억원(5.9%) 증가함. 예산은 16조 9,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16억원(8.2%)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조 9,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2억원(△10.6%) 감소함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예 산 | 156,992 | 169,908 | 12,916 | 8.2 |
| 기 금 | 22,182 | 19,820 | △2,362 | △10.6 |
| 총지출 | 179,174 | 189,728 | 10,554 | 5.9 |

주)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 예산 6,451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은 총 10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7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3조 2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0억원(0.9%) 증가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3,768 | 3,923 | 155 | 4.1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 26 | - | △26 | 순감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103 | 120 | 18 | 17.3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 380 | 407 | 27 | 7.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 395 | 443 | 48 | 12.3 |
| 우편사업특별회계 | 54,396 | 56,381 | 1,985 | 3.6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9,408 | 57,868 | △1,541 | △2.6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10,616 | 11,059 | 443 | 4.2 |
| 합 계 | 129,091 | 130,201 | 1,110 | 0.9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3조 1,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418억원(7.1%) 증가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75,504 | 86,541 | 11,037 | 14.6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 3,560 | 4,258 | 697 | 19.6 |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 3,872 | 4,207 | 335 | 8.7 |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7,431 | 9,204 | 1,772 | 23.9 |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 479 | 1,092 | 613 | 128.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 380 | 407 | 27 | 7.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 395 | 443 | 48 | 12.3 |
| 우편사업특별회계 | 54,396 | 56,381 | 1,985 | 3.6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59,408 | 57,868 | △1,541 | △2.6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10,616 | 11,059 | 443 | 4.2 |
| 합 계 | 216,041 | 231,459 | 15,418 | 7.1 |

주 1) 총계 기준
2)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 예산 6,451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조 3,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863억원(△22.6%) 감소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원자력기금 (연구개발계정) | 2,135 | 2,135 | 2,631 | 496 | 23.2 |
| 과학기술 진흥기금 | 1,888 | 1,888 | 1,990 | 102 | 5.4 |
| 정보통신 진흥기금 | 13,797 | 13,797 | 10,110 | △3,687 | △26.7 |
| 방송통신 발전기금 | 12,527 | 12,527 | 8,753 | △3,774 | △30.1 |
| 합 계 | 30,347 | 30,347 | 23,484 | △6,863 | △22.6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조 4,316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1억원(△21.6%) 감소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원자력기금 (연구개발계정) | 2,135 | 2,135 | 2,631 | 496 | 23.2 |
| 과학기술 진흥기금 | 1,888 | 1,888 | 1,990 | 102 | 5.4 |
| 정보통신 진흥기금 | 13,797 | 13,797 | 10,110 | △3,687 | △26.7 |
| 방송통신 발전기금 | 12,527 | 12,527 | 8,753 | △3,774 | △30.1 |
| 기후대응기금 | 660 | 660 | 832 | 172 | 26.1 |
| 합 계 | 31,007 | 31,007 | 24,316 | △6,691 | △21.6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73개(4,499억 6,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 전략자산인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풀스택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7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유럽연합 다자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 지원(R&D) | (대외 비공개) |
| 2 |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R&D) | 4,500 |
| 3 |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R&D) | 6,169 |
| 4 |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고도화기술개발(R&D) | 2,400 |
| 5 |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R&D) | 1,000 |
| 6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R&D)(과기정통부) | 915 |
| 7 |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R&D)(2단계)(R&D) | 2,225 |
| 8 |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사업(R&D) | 3,000 |
| 9 |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R&D) | 7,000 |
| 10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R&D)(과기정통부) | 936 |
| 11 | K-HERO 육성・지원(R&D) | 2,882 |
| 12 |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지원(R&D) | 7,500 |
| 13 |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R&D) | 3,000 |
| 14 | 국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R&D) | 1,000 |
| 15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 37,018 |
| 16 |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R&D) | 2,000 |
| 17 |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기술개발(R&D) | 3,000 |
| 18 | 디지털혁신도전선도기술개발(R&D) | 11,590 |
| 19 |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R&D) | 2,813 |
| 20 | 온디바이스AI기반 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R&D) | 5,669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21 |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 4,500 |
| 22 | 프로그래머블미디어핵심기술개발(R&D) | 3,000 |
| 23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 20,354 |
| 24 |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 1,000 |
| 25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320 |
| 26 | 전파자원 기술기준 선도 기반 조성 | 800 |
| 27 |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 15,400 |
| 28 |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 9,800 |
| 29 | 양자정보계측 방법론 및 원천기술개발(퀀텀 메트롤로지)(R&D) | 3,510 |
| 30 | 양자컴퓨팅서비스및활용체계구축(R&D) | 5,850 |
| 31 | 차세대양자과학기술핵심기초원천연구(R&D) | 676 |
| 32 | 퀀텀(양자)플랫폼지원(R&D) | 6,800 |
| 33 |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 2,000 |
| 34 | 방사선혁신이용기반기술개발(R&D) | 1,000 |
| 35 | 극한부품시험입증지원사업(R&D) | 595 |
| 36 | 인간지향적차세대도전형AI기술개발(R&D) | 6,050 |
| 37 | 공존가능한 신뢰 AI를 위한 AI Safety 기술개발(R&D) | 7,950 |
| 38 |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R&D) | 9,000 |
| 39 | 퀀텀ICT엔지니어링기술개발(통신)(R&D) | 2,500 |
| 40 |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사업(R&D) | 7,140 |
| 41 | 한국연구재단 시설 지원(R&D) | 370 |
| 42 | 차세대광패키징기술개발사업(R&D) | 3,000 |
| 43 | 초고집적반도체용vdW소재및공정기술개발(R&D) | 4,000 |
| 44 | 리튬메탈 음극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모듈형 LEA 핵심기술개발사업(R&D) | 3,000 |
| 45 | H2GATHER(R&D) | 4,025 |
| 46 | 글로벌 C.L.E.A.N(R&D) | 4,025 |
| 47 |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 4,000 |
| 48 | AI스타펠로우십지원(R&D) | 6,000 |
| 49 |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 2,300 |
| 50 | 디지털 중심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솔루션 개발 및 확산 | 2,500 |
| 51 |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 1,250 |
| 52 |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 4,472 |
| 53 | 한국산업은행출자(AI컴퓨팅 인프라 확충) | 21,000 |
| 54 |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통합 데이터 플랫폼(정보화) | 220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55 | 한국나노기술원지원(R&D) | 2,110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56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 60,000 |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 | |
| 57 |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운영(손익계정) | 3,475 |
| 58 |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운영(자본계정) | 740 |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 | |
| 59 | 극한환경 원자력 전원공급 시스템개발(R&D) | 2,520 |
| 60 |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R&D) | 2,000 |
| 61 | 소형모듈원자로 디지털 혁신 검증·운영 기술개발(R&D) | 2,100 |
| 62 | 차세대원자력혁신생태계기반조성사업(R&D) | 1,500 |
| 63 | 해외수요기반 연구로 핵심기술 통합플랫폼 구축(R&D) | 1,000 |
| [과학기술진흥기금] | | |
| 64 | 연구성과스케일업 펀드 | 12,000 |
| [정보통신진흥기금] | | |
| 65 | 양자산업 수요연계형 실증 | 5,000 |
| 66 | AI 혁신펀드 | 45,000 |
| 67 |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 9,500 |
| 68 |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 | 6,000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
| 69 | 차세대 방송 미디어산업 선도 기반 조성 | 1,540 |
| 70 |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 298 |
| [기후대응기금] | | |
| 71 | AI기반미래기후기술개발원천연구사업(R&D) | 3,100 |
| 72 | 무탄소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 5,700 |
| 73 | 차세대CCU기술고도화(R&D) | 4,275 |
| 총지출 | | 449,968 |

주) 회계이관,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을 제외한 실질적인 신규사업 목록임.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개인기초연구(R&D)’,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R&D)’ 사업 등 총 123개임.[3)]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 538 | 2,403 | 1,865 | 346.7 |
| 2 | 국가간협력기반조성(R&D) | 23,985 | 38,070 | 14,085 | 58.7 |
| 3 | Net-zero 대응 미세먼지저감 기술개발(R&D) | 600 | 1,540 | 940 | 156.7 |
| 4 |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R&D) | 88,198 | 117,944 | 29,746 | 33.7 |
| 5 |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 1,698,247 | 1,910,849 | 212,602 | 12.5 |
| 6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 10,777 | 33,397 | 22,620 | 209.9 |
| 7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R&D) | 820 | 2,000 | 1,180 | 143.9 |
| 8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241,419 | 272,633 | 31,214 | 12.9 |
| 9 | 디지털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R&D) | 6,245 | 8,188 | 1,943 | 31.1 |
| 10 |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 304,292 | 368,372 | 64,080 | 21.1 |
| 11 |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R&D) | 2,520 | 5,493 | 2,973 | 118.0 |
| 12 |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R&D) | 6,000 | 13,000 | 7,000 | 116.7 |
| 13 |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R&D) | 1,778 | 2,333 | 555 | 31.2 |
| 14 |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R&D) | 1,225 | 3,050 | 1,825 | 149.0 |
| 15 |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개발(R&D) | 3,300 | 4,590 | 1,290 | 39.1 |
| 16 | 원천기술 국제협력 개발 사업(R&D) | 6,809 | 11,586 | 4,777 | 70.2 |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17 | 집단연구지원(R&D) | 419,698 | 430,445 | 10,747 | 2.6 |
| 18 | 차세대 반도체 장비 원천기술개발(R&D) | 2,500 | 6,125 | 3,625 | 145.0 |
| 19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R&D) | 7,312 | 9,750 | 2,438 | 33.3 |
| 20 | 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개발(R&D) | 500 | 1,500 | 1,000 | 200.0 |
| 21 |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사업(R&D) | 1,000 | 1,500 | 500 | 50.0 |
| 22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R&D) | 1,416 | 4,248 | 2,832 | 200.0 |
| 23 |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R&D) | 807 | 1,520 | 713 | 88.4 |
| 24 |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R&D) | 894 | 1,373 | 479 | 53.6 |
| 25 | 방사선기기 품질관리 및 검정 체계 고도화(R&D) | 1,050 | 1,500 | 450 | 42.9 |
| 26 | 방사선융복합산업지원(R&D) | 1,500 | 3,500 | 2,000 | 133.3 |
| 27 | 재범징후선제적감지및대응력강화(R&D) | 800 | 2,000 | 1,200 | 150.0 |
| 28 |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R&D) | 500 | 1,500 | 1,000 | 200.0 |
| 29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 | 85,418 | 95,657 | 10,239 | 12.0 |
| 30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R&D) | 4,000 | 7,167 | 3,167 | 79.2 |
| 31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설 지원(R&D) | 1,537 | 2,437 | 900 | 58.6 |
| 32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 195,226 | 278,689 | 83,463 | 42.8 |
| 33 | 국산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강화(R&D) | 2,925 | 7,510 | 4,585 | 156.8 |
| 3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 33,375 | 85,078 | 51,703 | 154.9 |
| 35 |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R&D) | 2,000 | 8,850 | 6,850 | 342.5 |
| 36 | 실험실창업지원(R&D) | 11,325 | 23,375 | 12,050 | 106.4 |
| 37 |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R&D) | 7,475 | 12,253 | 4,778 | 63.9 |
| 38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183,622 | 203,744 | 20,122 | 11.0 |
| 39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91,758 | 102,966 | 11,208 | 12.2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40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64,251 | 75,726 | 11,475 | 17.9 |
| 41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82,763 | 94,484 | 11,721 | 14.2 |
| 4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 지원(R&D) | 98,770 | 112,587 | 13,817 | 14.0 |
| 43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86,285 | 97,218 | 10,933 | 12.7 |
| 44 | 협력융합 과학기술사업화 촉진지원(R&D) | 2,000 | 5,785 | 3,785 | 189.3 |
| 45 |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 12,906 | 17,146 | 4,240 | 32.9 |
| 46 | 울산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 5,984 | 10,484 | 4,500 | 75.2 |
| 47 | 한국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 22,474 | 48,540 | 26,066 | 116.0 |
| 48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207,269 | 218,356 | 11,087 | 5.3 |
| 49 |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R&D) | 1,200 | 3,600 | 2,400 | 200.0 |
| 50 |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정보화) | 1,099 | 2,518 | 1,419 | 129.1 |
| 51 |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 3,800 | 5,757 | 1,957 | 51.5 |
| 52 |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 4,000 | 6,000 | 2,000 | 50.0 |
| 53 |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 3,500 | 5,200 | 1,700 | 48.6 |
| 54 |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개발(R&D) | 7,500 | 10,000 | 2,500 | 33.3 |
| 55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 27,767 | 41,458 | 13,691 | 49.3 |
| 56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R&D) | 2,930 | 6,460 | 3,530 | 120.5 |
| 57 | 복합지능 자율행동체 SW 핵심기술개발(R&D) | 3,000 | 6,000 | 3,000 | 100.0 |
| 58 |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 7,763 | 17,263 | 9,500 | 122.4 |
| 59 | 5G 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R&D) | 6,300 | 8,200 | 1,900 | 30.2 |
| 60 | AI기반개방형5G-A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구축운영(R&D) | 2,000 | 3,500 | 1,500 | 75.0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61 |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R&D) | 2,000 | 3,150 | 1,150 | 57.5 |
| 62 |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 21,000 | 86,958 | 65,958 | 314.1 |
| 63 | 통신용화합물반도체연구파운드리기술개발(R&D) | 7,500 | 15,335 | 7,835 | 104.5 |
| 64 | 암호이용활성화 | 720 | 3,904 | 3,184 | 442.2 |
| 65 | 오픈랜실증단지조성 | 980 | 3,925 | 2,945 | 300.5 |
| 66 | 전자서명인증(정보화) | 2,397 | 6,554 | 4,157 | 173.4 |
| 6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운영 | 2,588 | 3,460 | 872 | 33.7 |
| 68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 1,441 | 2,259 | 818 | 56.8 |
| 69 |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R&D,정보화) | 18,338 | 25,614 | 7,276 | 39.7 |
| 70 | 빅데이터기반생활전자파예측기술개발(R&D) | 930 | 1,600 | 670 | 72.0 |
| 71 | 양자공통기반기술개발(R&D) | 2,400 | 4,884 | 2,484 | 103.5 |
| 72 |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R&D) | 7,792 | 16,670 | 8,878 | 113.9 |
| 73 |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R&D) | 8,318 | 12,561 | 4,243 | 51.0 |
| 74 | 양자센서상용화기술개발(R&D) | 7,740 | 13,812 | 6,072 | 78.4 |
| 75 | 양자암호통신 산업 확산 및 차세대 기술개발(R&D) | 4,853 | 9,926 | 5,073 | 104.5 |
| 76 |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R&D) | 6,500 | 9,625 | 3,125 | 48.1 |
| 77 | 양자팹 공정기술 고도화 기반구축(R&D) | 6,000 | 10,000 | 4,000 | 66.7 |
| 78 | 총액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 329 | 461 | 132 | 40.1 |
| 79 | 총액비대상 국제협력관 기본경비 | 470 | 963 | 493 | 104.9 |
| 80 | 총액비대상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본경비 | 192 | 310 | 118 | 61.5 |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 |
| 81 | 나노·소재기술개발(R&D) | 223,048 | 300,436 | 77,388 | 34.7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82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142,460 | 154,061 | 11,601 | 8.1 |
| 83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 지원(R&D) | 83,293 | 96,119 | 12,826 | 15.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 |
| 84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R&D) | 53,000 | 69,700 | 16,700 | 31.5 |
| 85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 63,234 | 192,121 | 128,887 | 203.8 |
| 86 |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 300 | 12,000 | 11,700 | 3,900.0 |
| 87 |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 35,073 | 59,090 | 24,017 | 68.5 |
| 88 |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R&D) | 3,277 | 7,782 | 4,505 | 137.5 |
| 89 | 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 20,285 | 30,604 | 10,319 | 50.9 |
| 90 | 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사업 | 14,959 | 22,682 | 7,723 | 51.6 |
| 91 |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세종) | 1,800 | 3,200 | 1,400 | 77.8 |
| 92 |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자율) | 99,519 | 112,980 | 13,461 | 13.5 |
| 93 | 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제주) | 2,605 | 4,800 | 2,195 | 84.3 |
| 94 |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 1,350 | 3,000 | 1,650 | 122.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 | | | | |
| 95 |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 사업 | 1,367 | 4,000 | 2,633 | 192.6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 | | | | |
| 96 | 기본경비(자본계정,총액인건비 비대상) | 56 | 116 | 60 | 107.1 |
| 97 | 시설관리(자본계정) | 1,419 | 2,229 | 810 | 57.1 |
| 98 | 창의전시관운영(손익계정) | 1,900 | 3,480 | 1,580 | 83.2 |
| [우편사업특별회계] | | | | | |
| 99 | 비공무원인건비 | 238,508 | 248,910 | 10,402 | 4.4 |
| 100 | 수탁사업 | 440 | 817 | 377 | 85.7 |
| 101 | 우편기계화시설 | 14,793 | 21,390 | 6,597 | 44.6 |
| 102 | 우편차량 | 2,214 | 4,506 | 2,292 | 103.5 |
| 103 | 우표문화사업 | 5,400 | 8,335 | 2,935 | 54.4 |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 | | | | |
| 104 | 소형모듈원자로사용후핵연료발생량 저감핵연료기반기술개발(R&D) | 1,000 | 3,500 | 2,500 | 250.0 |
| 105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R&D) | 27,370 | 53,020 | 25,650 | 93.7 |
| [과학기술진흥기금] | | | | | |
| 106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 등지원 | 260 | 360 | 100 | 38.5 |
| 107 | 뉴미디어활용과학문화디지털 콘텐츠제작확산 | 1,500 | 6,230 | 4,730 | 315.3 |
| [정보통신진흥기금] | | | | | |
| 108 | ICT R&D 우수IP창출활용지원(R&D) | 340 | 687 | 347 | 102.1 |
| 109 |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R&D) | 8,000 | 12,000 | 4,000 | 50.0 |
| 110 |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확산 | 6,200 | 20,637 | 14,437 | 232.9 |
| 111 | 전파서비스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위험성의 체계적 규명(R&D) | 1,410 | 2,820 | 1,410 | 100.0 |
| 112 |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R&D) | 882 | 1,444 | 562 | 63.7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 | | |
| 113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 105,410 | 130,400 | 24,990 | 23.7 |
| 114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방발)(정보화) | 1,766 | 2,452 | 686 | 38.8 |
| 115 |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 202 | 452 | 250 | 123.8 |
| [기후대응기금] | | | | | |
| 116 |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 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 400 | 1,703 | 1,303 | 325.8 |
| 117 |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R&D) | 5,551 | 9,228 | 3,677 | 66.2 |
| 118 | 탄소자원화플랫폼화합물제조기술 개발(R&D) | 6,494 | 8,494 | 2,000 | 30.8 |
| 119 | C1가스리파이너리밸류업기술개발(R&D) | 2,000 | 6,000 | 4,000 | 200.0 |
| 120 | DACU원천기술개발(R&D) | 4,776 | 6,776 | 2,000 | 41.9 |
| 121 | H2 NEXT ROUND(R&D) | 4,300 | 6,800 | 2,500 | 58.1 |
| 122 |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R&D) | 3,400 | 10,300 | 6,900 | 202.9 |
| 123 |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개발(R&D) | 3,500 | 6,200 | 2,700 | 77.1 |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운영을 위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729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53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2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923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로 5,06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36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 1,806억원 예탁 및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703억원이 전출될 예정이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69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금 2,500억원 회수 및 이자수입 313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조 4,300억원 예탁,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조 1,056억원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850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금 1조 2,650억원 회수 및 이자수입 1,750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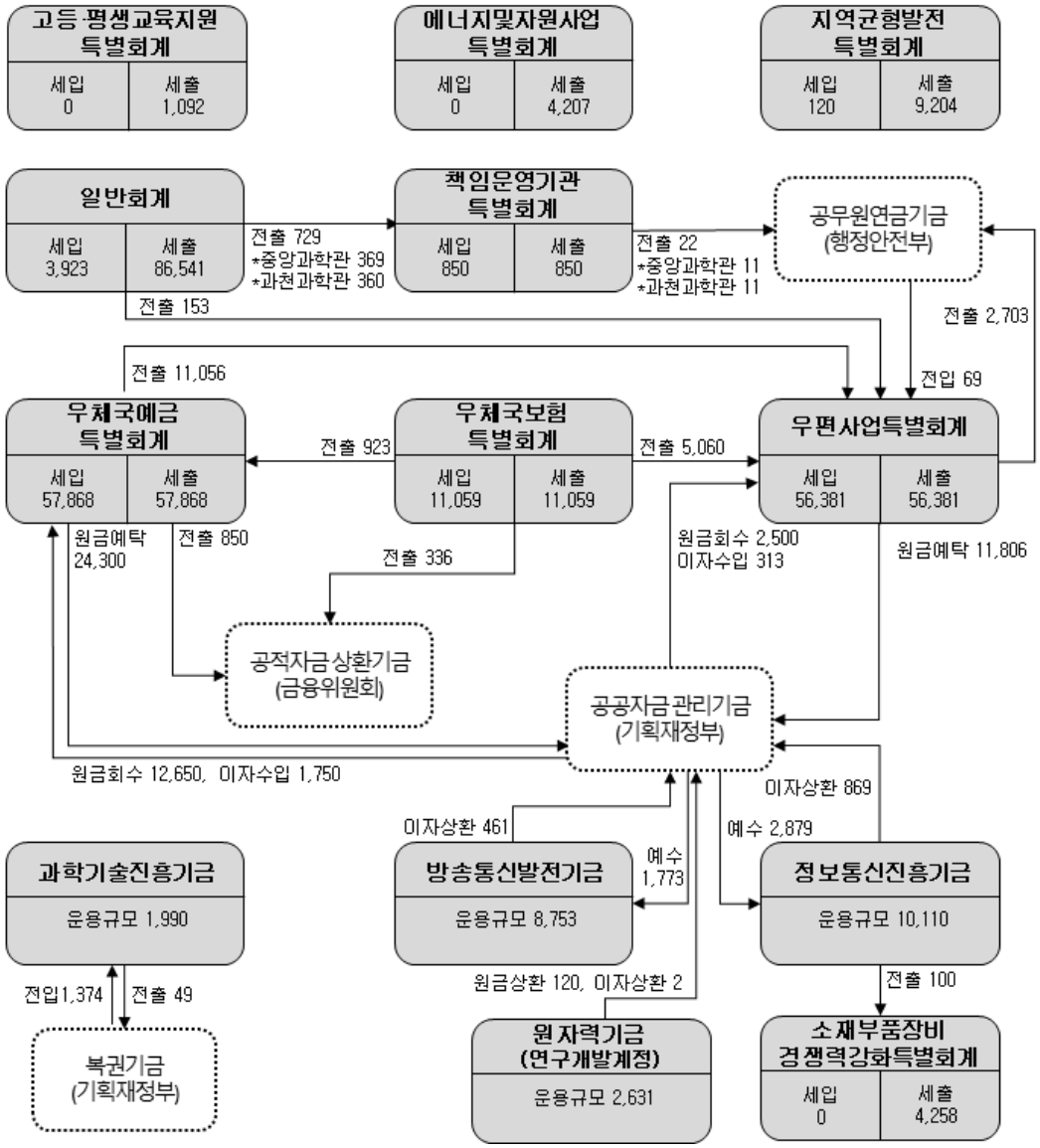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는 복권기금에 49억원이 전출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1,374억원이 전입될 예정임. 또한, 원자력기금(연구개발계정)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20억원의 원금과 2억원의 이자가 상환될 예정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61억원의 이자가 상환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773억원이 예수될 예정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869억원 이자상환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100억원 전출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879억원이 예수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지난 해부터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 개선 추진을 들 수 있음.

먼저, R&D 사업의 경우,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임.

다음으로, ICT 기금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2,819억원 감소(△14.9%)한 1조 6,060억원 편성하였음.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코로나19 등의 대응('20~'22년)을 위한 급격한 사업 지출 증가로 악화된 기금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ICT 분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일반·특별회계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서조항에 명시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 규정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R&D 과제에 투입된 국고금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R&D 사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형 R&D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전기획점검제도가 기존의 사전컨설팅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 및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글로벌 R&D 사업으로서 2024년 예산으로 6개월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0월에 대부분의 과제가 착수할 것으로 보여 다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 국

가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R&D 과제는 신속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사업수행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실험실창업지원(R&D)’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R&D 지출구조조정 후 2025년에는 구조개편 및 전략성 강화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이므로, 향후 지출구조조정 취지에 맞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다섯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은 연구자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및 연구현장의 형평성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최종적인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2025년 우편요금 인상의 불확실성, 연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저조한 집행률, 우편사업 수지의 적자 실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의 예탁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혁신펀드가 AI 분야 중에서도 도전적 사고를 가진 초기 AI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된 AI분야 특화 펀드임을 고려하여, 현재 50%로 설정되어 있는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총 괄】

## 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대상 회계연도 일치 예외 규정'의 재검토 필요

### 가. 개 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음.

①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고, ② 신규과제 중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만 직전년도 협약 준비를 전제로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③ 계속과제는 협약체결 기간이 회계연도를 도과하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반영 기간을 좁혀 회계연도 불일치를 개선해나가는 형태임.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기초연구・국제공동연구사업・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은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하여 12개월분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지침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2025년 상반기부터 3년간 지원하는 연구과제〉

| 협약기간 | | 예산반영 |
|---|---|---|
| ('25년) '25.6.~'26.5. | ⇨ | '25.6.~'26.2. (9개월) |
| ('26년) '26.6.~'27.5. | | '26.3.~'26.12. (10개월) |
| ('27년) '27.6.~'28.5. | | '27.1.~'27.12. (12개월) |
| ('28년) - | | '28.1.~'28.5. (5개월) |

○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예산안 편성시점에는 과제 착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② 초기 일시지급 항목(장비·분담금) 등 지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 투자비용을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③ 1차년도에 선정평가가 연초(3월)에 집중되어 평가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④ 국제공동연구는 회계연도 불일치로 협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통한 12개월분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단서조항에 따라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가 적용될 경우,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R&D 과제 향후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편성될 것임.

2025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되고 2027년에 종료(3년간 수행)됨을 가정할 때,[4] 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을 거쳐 2025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된다면 2025~2027년 3년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므로 당해연도 예산이 차년도 3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게 됨.

[2025년 4월 협약체결된 R&D 과제의 단서조항에 따른 향후 예산편성 방향]

| 2025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협약)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 | | ←————————2025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 | | | | | | | |
| **2026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2026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 | | | | | | | |
| **2027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 | ←————————2027년 12개월분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 | | | | | | | |

4) R&D 과제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기관 공모, 선정평가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근거하여 2025년 4월에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과제를 사례로 설정함.

| 2028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연구종료 | | | - | | | | | | | | |

## 나. 검토의견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서조항에 명시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 규정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R&D 과제에 투입된 국고금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R&D 사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임. 따라서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됨.[5)]

이에 근거할 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서조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요에서 제시한 과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판단할 때, 2025년에는 9개월분 예산만 반영하고 2026년 및 2027년 예산안은 12개월분 예산을 반영하되, 2028년에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예산편성임.

[2025년 4월 협약체결된 R&D 과제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

| 2025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협약)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 | | ←————————2025년 9개월분 예산 반영————————→ | | | | | | | | |
| **2026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6년 12개월분 예산 반영 ————————→ | | | | | | | | | | | |

5)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027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7년 12개월분 예산 반영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28년 3개월분 예산→ | | | - | | | | | | | | |

이러한 문제는 과제협약이 계획과 달리 지연되어 체결되는 사례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2024년 신규 12개월로 편성된 R&D 과제(2026년 종료)에 대하여 협약이 2024년 9월에 체결되어 8개월이나 연구개시가 지연되었으나,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2025년 예산안을 12개월로 편성한 경우가 실제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표의 스케줄에 맞추어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진행하면 되므로 2024년 예산 중 협약체결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별도의 감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2024년 9월로 협약이 지연체결 되었으나 계속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할 경우]

| 2024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협약) | 10월 | 11월 | 12월 |
| 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 | | 협약체결 지연된 기간 | | | | | ←——2024년 12개월분 예산이 | | | |
| 2025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집행되는 기간————————————————→ | | | | | | | | ←——2025년 12개월분 예산이 | | | |
| 2026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집행되는 기간————————————————→ | | | | | | | | ←——2026년 12개월분 예산이 | | | |
| 2027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집행되는 기간————————————————→연구종료 | | | | | | | | - | | |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따른 예산 집행은 상위법령 우선 원칙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 과제는 2027년 8월에 연구가 종료될 것이므로 당해 과제에 투입된 국고금(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국회의 매 회계연도(2024~2026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음.[6)]

6)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

이러한 논의 외에도 국가 R&D 사업 중 어떠한 사업을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결정되고 있어, 그로 인해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투명한 결산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동 규정에 따른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 지침은 ① 현행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② 협약체결 지연 시 R&D 과제에 투입된 국고금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③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동 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차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계획에 따른 대안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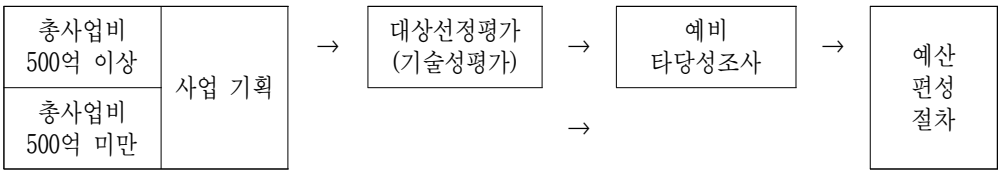
### 가. 개 요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2024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2024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하여 지속적인 보완절차를 추진 중임.

지금까지 R&D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정 기준[7]을 충족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였음.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평가’(이하 ‘기술성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만이 조사대상이 되었고,[8]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했음.

[R&D 사업 예산편성절차 이전 적절성 검증 절차]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KISTEP 연구위원 및 외부 자문단 총 12명 내외의 연구원이 1년간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세부내용 및 조사방식]

|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 |
|---|---|---|
| 담당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
| 평가기간 | 1년(1.1. ~ 12.31.) | |
| 평가인원 | KISTEP 연구위원 5명 내외 및 외부 자문단(학계 교수 및 책임연구원 등) 7명 내외 총 12명 내외 | |
| 평가 대상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
| | |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 | | 데이터 구축 및 표준화 계획의 적절성 |
| | | 전략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의 적설성 |
| | | 시설・장비 구축계획의 적절성 |
| |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 법・제도적 위험요인 |
|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
| | | 총사업비 검토 |
| | |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에 대한 검토 |
| | | 예비타당성조사 편익추정치 |
| | | 경제성 분석 종합 검토 |
| | 종합적 분석 | |
| |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 | |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도출 |
| | |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 평가결과 | AHP 평가 및 종합적 제언 | |

자료: 과학기술혁신본부 제출자료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를 통과하는데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어 R&D 과제의 적시성 있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R&D 과제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B/C가 낮음)에 대한 혁신도전형 과제가 많아 R&D의 특성과 예타 제도 간에는 근원적인 간극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음.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침을 확정하였고, 대신 1천억원 이상인 R&D 사업은 연구형, 구축형으로 구분하여 사전

기획 점검제 및 기본·추진계획을 심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원천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포함하는 연구형 R&D는 사전기획 점검제도를 도입하며, 이는 예산편성을 위한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임.

또한 연구시설장비도입, 공간조성, 연구시설 구축 및 체계개발 등을 포함하는 구축형 R&D는 사업 유형과 난이도를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른 차별적 심사가 적용될 계획이고, 단계별로 핵심사항을 심층 검토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예정임.[10)]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시행될 예정인 후속조치 방안]

| 구분 | | | 관리 방향 |
|---|---|---|---|
| 1천억원 미만 | 모든 R&D | | 예산심의만 실시 |
| 1천억원 이상 | **연구형 R&D** | | 사전기획 점검제도 도입 |
| | 시설장비구축 | **구축형 R&D** | 기본계획 심사 |
| | | |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심사 |
| | 체계개발 | |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심사 |
| 일반 건축 | | | 일반 예타(기재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기존에는 부처의 예산요구(5월) 이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타를 실시하여 추가로 요구(한도 외)하였으나,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이를 개편하여 모든 R&D 사업을 한도 내로 편성하여 요구하도록 변경할 계획임.

9) 참고로, R&D 예타 폐지 및 후속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국가재정법」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등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 의안번호 | 의안명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
| 220026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 의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대상 제외 |
| 2200273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 의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제도로 대체 |

주) 2024년 10월 2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장비도입 및 공간조성 등 난이도가 낮은 구축형 R&D와 연구시설 구축 및 체계개발 등 난이도가 높은 구축형 R&D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사업 기본계획만 심사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선행기술개발 여부를 우선 심사한 이후 사업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구분하여 심사할 것이라는 계획임.

##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형 R&D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전기획점검제도가 기존의 사전컨설팅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형 R&D 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점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사전컨설팅 제도와 차별화를 위해 당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기존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획보고서의 보완을 통해 예타를 통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전기획점검제도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규모 적정성, 기획 구체성,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예산 반영과 직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사전컨설팅제도와 사전기획점검제도의 비교]

| 구분 | 사전컨설팅 제도 | 사전기획점검제도 |
|---|---|---|
| 목적 | 원활한 예타 진행을 위해 **기획보고서의 구성 보완**<br>(주요 항목이나 근거 누락 여부)<br><br>※ 사업기획 단계에서 진행 | **사업의 필요성, 추진전략 등 구체적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사전점검**<br><br>※ 기획 완료 후 점검 단계에서 진행 |
| 절차 | 사전컨설팅(혁신본부) →<br>예타(혁신본부) →<br>통과시 예산요구(각 부처) | 사전기획점검제(혁신본부) →<br>기획보완(부처) →<br>예산요구(각 부처) |
| 검토방법 | ■(전문가) 논리 전문가(5명 이내)<br>■(기간) 2개월 이내<br>■(내용) 보고서의 구성, 예타항목의 누락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전문가) 기술, 산업, 정책 전문가(10명 이내)<br>■(기간) 5개월 이내<br>■(내용)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규모 적정성, 기획 구체성, 유사중복 검토 |
| **비고** | **예산 반영 여부와 관련 없음**<br>**※ 예타 통과사업만 예산 반영** | **예산 반영 여부와 관련 있음**<br>**※ 단, 보완 미흡 시 예산 미반영**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예타를 통과하여야 예산이 반영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사전기획점검제도로 사업 계획이 보완되면 정책적 우선순위, 재원상황, 실제 예산요구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사전기획점검제도는 사전컨설팅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정도의 실효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음.

[연구형 R&D의 예산반영 절차 변경]

| 기존 | | 변경 |
|---|---|---|
| 사전컨설팅제도 → 예비타당성조사 → 예산요구 → 예산반영 | → | 사전기획점검제도 → 예산요구 → 예산반영 |

그러나 개요에서 상술하였듯, 예비타당성조사는 KISTEP 연구위원 5명 내외 및 외부 자문단(학계 교수 및 책임연구원 등) 7명 내외의 연구원이 1년간 평가하는 반면,

사전기획점검제도는 사업별로 10명 이내의 기술, 산업, 정책분야 전문가가 약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관 부처와 상시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점검하고 보완을 요청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의 기술성평가를 통해 부적격판정을 받은 세부사업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기술성 재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2차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이나, 사전기획점검제도는 각 부처가 최초 제시한 사업 기획보고서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더욱이, 2019~2024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R&D 사업 중 사업시행 판정을 받은 사업 비중은 20% 내외이고 총사업비도 약 1/4 수준인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되지 않아야 할 사업이 다수 걸러졌다는 것을 의미함.

[예타 신청사업 수 대비 시행판정 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 예타 신청 사업 | 조사 대상 사업 (A+B) | 시행 판정 사업 (A) | 미시행 판정 사업 (B) |
|---|---|---|---|---|---|
| 2019년 | 사업수 | **83** | 31 | **18** | 11 |
| | 총사업비 | 595,924.3 | 276,256.7 | 134,203.7 | 84,679.0 |
| 2020년 | 사업수 | **74** | 37 | **16** | 20 |
| | 총사업비 | 549,967.3 | 254,785.8 | 153,205.1 | 98,460.7 |
| 2021년 | 사업수 | **60** | 23 | **9** | 14 |
| | 총사업비 | 441,505.0 | 204,760.2 | 112,967.5 | 91,792.7 |
| 2022년 | 사업수 | **44** | 16 | **9** | 6 |
| | 총사업비 | 317,365.2 | 90,918.3 | 59,801.4 | 22,580.0 |
| 2023년 | 사업수 | **56** | 12 | **8** | 1 |
| | 총사업비 | 302,570.7 | 79,410.7 | 43,587.7 | 1,800.0 |
| 2024년 | 사업수 | **21** | 1 | **0** | 0 |
| | 총사업비 | 85,464.9 | 5,269.0 | 0 | 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다 신속한 R&D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예타를 폐지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기획점검제도를 통해 일부 사업은 기획 재보완이 필요하여 예산을 미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 예타제도에 비해 검증이 다소 미흡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전기획점검제도가 기존의 사전 컨설팅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구축형 R&D 사업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축형 R&D 사업은 ① 기술개발이 필요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장비도입사업과 ② 선행기술을 확보한 이후 장기간 내실 있는 작업이 필요한 연구시설구축 및 체계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될 계획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R&D 사업의 난이도를 고려한 맞춤형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맞춤형 심사제도에 특화된 전담기관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사업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임.

심사위원회는 대형 R&D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과 실무책임자 및 사업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심사지침(안)은 법 개정 시점에 맞춰 마련 중임.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맞춤형 심사제도 개관]

| 구분 | | 심사 내용 |
|---|---|---|
| 장비도입사업 등 (난이도 下) | 검토항목 |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품질관리계획, 사업규모 등 |
| | 절차 | 사업추진계획 제출(~12월, 각 부처) → 기본계획심사 및 결과통보(약 3개월 소요, 혁신본부) → 차년도 예산요구(5월, 각 부처) |
| 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사업 등 (난이도 上) | 검토항목 | 상술한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선행기술개발 여부 추가 심사<br>※ 선행기술이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형 R&D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 |
| | 절차 | 기본계획 심사(2개월 소요, 심사위원회) → 추진계획 심사(5개월 소요, 심사위원회) → 예산요구(5월, 각 부처)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현재 진행 중인 구축형 R&D 사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R&D)’ 은 2022년부터 14년간 3조 7,234억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은 2023년부터 10년간 2조 132억원이 투입되는 등 대부분 10년 내외의 긴 사업기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규모도 막대함.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당초(2012년) 총사업비가 2,900억원이었으나 건설인허가 승인 지연 및 국내 최초 개발 기술 적용 등으로 인한 설계 보완으로 현재(2024년) 총사업비가 7,69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사업은 2024년 10월에서야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예정으로 2024년도 예산 40억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사업은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기존 계획(2023년 10월) 대비 6개월 이상 지연(2024년 5월 선정 완료)되어 2023년도 예산 290억원 중 179억원이 이월되었고, 그로 인해 2024년에도 체계종합기업과의 2차 계약이 순연되어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1,279억원 중 290억원(23.0%)만 최종집행(8월 말 기준)된 상황임.

[구축형 R&D 사업 중 체계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시]

| 세부사업명 | 총사업기간 | 총사업비 | 예타 수행기간 |
|---|---|---|---|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R&D) | 2022~2035(14년) | 3조 7,234억원 | 2020.8.~2021.6. |
| 차세대 발사체 개발(R&D) | 2023~2032(10년) | 2조 132억원 | 2022.4.~11. |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R&D) | 2022~2030(9년) | 1조 4,223억원 | 면제 |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R&D) | 2021~2029(9년) | 1조 1,397억원 | 2020.5.~2021.4. |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 2012~2027(15년) | 7,694억원 | 2010.3.~2011.2. |
|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5호) 개발(R&D) | 2025~2031(7년) | 6,008억원 | 2021.9.~2022.5.(미시행)<br>2023.7.~2024.5.(시행) |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 2024~2033(10년) | 5,303억원 | 2022.10.~2023.10. |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 2025~2030(6년) | 4,797억원 | 2023.7.~2024.7. |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R&D) | 2021~2027(7년) | 4,118억원 | 2019.6.~2020.6. |
| 차세대중형위성 개발(R&D) | 2019~2027(9년) | 3,148억원 | 2017.6.~2018.6. |

주) 초소형위성체계개발(R&D) 사업은「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한 국방관련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202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처럼 구축형 R&D 사업은 상술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가속기, 우주발사체 등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대규모 비용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이전에 충분하고 밀도 있는 검증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축형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된 기간 동안 보다 내실있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폐지 이후 사전기획점검제나 맞춤형 심사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1,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은 예산의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하고 있는 후속조치 방안을 보면, 1,000억원 이상인 R&D 사업에 대하여 사전기획 점검제도 및 기본·추진계획 심사를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만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고,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있었을 경우와 달리 500~1,000억원의 총사업비를 가진 R&D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것임.

더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될 경우, 기존에 500억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하여 그 미만으로 편성해오던 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500~1,000억원 사이의 연구개발사업은 예년에 비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기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사전기획점검제나 맞춤형 심사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1,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은 예산의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주요 R&D 사업 자문회의안 변경 범위에 대한 검토 필요

### 가. 개 요

R&D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R&D 사업과 일반 R&D 사업으로 구분되며, 주요 R&D 사업에는 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연구개발사업, 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연구개발사업, ③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④ 유사·중복, 연구시설·장비구축,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됨.[11]

이러한 주요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됨.[12]

---

1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 · 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1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 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 · 조정 내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2024년 6월 27일 자문회의 심의회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원안)을 의결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수정안)을 8월 26일 자문회의 심의회에 접수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 주요 R&D 예산 편성 절차]

| 내역 | 예산 배분 원안 의결 | 기획재정부 조정 | 예산 배분 수정안 접수 | 예산안 제출 |
|---|---|---|---|---|
| 일자 |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8월 | 2024년 8월 26일 | 2024년 9월 2일 |
| 주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기획재정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 정부 |
|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 |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7항 | | 「헌법」제54조제2항 「국가재정법」제33조 |

자료:「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보도자료를 재구성

2021~2025년 자문회의안 및 정부안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서 자문회의 심의 이후 기획재정부의 심의단계에서 수정된 비율은 1.6%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자문회의 대비 정부안에는 18개 사업이 감액(768억원), 158개 사업이 증액(3,433억원), 22개 사업이 신규(549억원) 반영되었음.

이는 기획재정부의 조정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변동된 사항임.

[최근 5년간 자문회의안 및 정부안 변동 현황]

| 연도 | 자문회의 (A) | 정부안(기재부) | | | | | |
|---|---|---|---|---|---|---|---|
| | | 감액 | 증액 | 신규 | 소계(B) | 기재부안(C) | 증감율 (B/A) |
| 2021 | 945개 사업 21조 6,492억원 | 21개 사업 △661억 | 213개 사업 7,257억 | 2개 사업 83억원 | 6,679억원 | 943개 사업 22조 3,172억 | 3.1% |
| 2022 | 1,183개 사업 23조 1,757억원 | 24개 사업 △261억 | 237개 사업 9,261억원 | 8개 사업 2,180억원 | 11,180억원 | 1,198개 사업 24조 2,937억원 | 4.8% |
| 2023 | 1,254개 사업 24조 6,601억원 | 107개 사업 △1,754억 | 99개 사업 3,530억원 | 7개 사업 210억원 | 1,986억원 | 1,259개 사업 24조 8,587억원 | 0.8% |
| 2024 | 1,158개 사업 21조 4,759억원 | 20개 사업 △2,962억원 | 84개 사업 1,257억원 | 2개 사업 12억원 | △1,693억원 | 1,161개 사업 21조 3,066억원 | △0.8% |
| **2025** | **1,184개 사업 24조 4,753억원** | **18개 사업 △768억원** | **158개 사업 3,433억원** | **22개 사업 549억원** | **3,233억원** | **1,202개 사업 24조 8,750억원** | **1.6%**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다소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거시적인 분야별 투자전략 또는 국정과제 등의 사유로 정부안 금액이 자문회의안 대비 크게 변경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8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5항에 따른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재정 지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R&D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이후에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의 의미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주요 R&D 사업 중 정부안 조정 단계에서 자문회의안 대비 2배 이상 금액이 증액 조정되거나, 전액 감액된 경우 또는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2025년 자문회의안 대비 2배 이상 증액, 전액 감액, 신규 편성된 사업]

(단위: 백만원, %)

| 부처 | 세부사업명 | 2025년 자문회의안 | 2025년 정부안 | 증감률 |
|---|---|---|---|---|
| 중기부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500 | 21,560 | 4,212.0 |
| 질병청 | 팬데믹대비mRNA백신개발지원(R&D) | 1,000 | 29,033 | 2,803.3 |
| 과기정통부 |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 500 | 15,400 | 2,980.0 |
| 과기정통부 |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 500 | 9,800 | 1,860.0 |
| 우주항공청 | 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체계종합)(R&D) | 4,000 | 11,296 | 182.4 |
| 국토부 |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기술개발 | 1,535 | 3,432 | 123.6 |
| 과기정통부 | 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R&D) | 9,500 | 20,354 | 114.3 |
| 과기정통부 | 양자암호통신산업확산및차세대기술개발(R&D) | 4,853 | 9,926 | 104.5 |

(단위: 백만원, %)

| 부처 | 세부사업명 | 2025년 자문회의안 | 2025년 정부안 | 증감률 |
|---|---|---|---|---|
| 산업부 | 원전산업글로벌시장맞춤형기술개발(R&D) | 1,002 | 2,004 | 100.0 |
| 중기부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세종) | 100 | - | 전액 감액 |
| 중기부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제주) | 100 | - | 전액 감액 |
| 복지부 | 암생존자헬스케어연구사업(R&D) | 8,885 | - | 전액 감액 |
| 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산업생태계경쟁력강화(R&D) | 500 | - | 전액 감액 |
| 과기정통부 |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 - | 1,250 | 순증 |
| 과기정통부 | 디지털트윈기반스마트시티LAB실증단지조성(R&D) | - | 864 | 순증 |
| 국토부 |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 - | 400 | 순증 |
| 농식품부 |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 - | 1,500 | 순증 |
| 방사청 | CBM작전모의모델(R&D) | - | 100 | 순증 |
| 방사청 |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R&D) | - | 500 | 순증 |
| 방사청 |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성능개량(R&D) | - | 10,318 | 순증 |
| 방사청 | 전자전기(R&D) | - | 1,052 | 순증 |
| 방사청 | 정보작전모의모델(R&D) | - | 100 | 순증 |
| 복지부 | 보건의료데이터상호운용성지원기술개발(R&D) | - | 5,700 | 순증 |
| 복지부 | 보건의료데이터통합활용기술개발(R&D) | - | 1,650 | 순증 |
| 복지부 | 유전자,RNA및후성유전체편집기술기반의유전자치료제개발사업(R&D) | - | 2,250 | 순증 |
| 복지부 | 의료인공지능특화융합인재양성사업(R&D) | - | 4,500 | 순증 |
| 복지부 |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사업(R&D) | - | 1,800 | 순증 |
| 복지부 | 치매전주기데이터수집및빅데이터통합시스템구축사업(R&D) | - | 2,625 | 순증 |
| 산업부 |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 - | 800 | 순증 |
| 산업부 |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 - | 5,000 | 순증 |
| 산업부 | 의료데이터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사업(R&D) | - | 2,800 | 순증 |
| 소방청 | 리튬기반배터리제조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 - | 2,600 | 순증 |
| 식약처 | 바이오헬스제품화규제지원사업(R&D) | - | 750 | 순증 |
| 우주청 |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 - | 5,000 | 순증 |
| 질병청 | 우선순위감염병대유행대비신속개발기술구축사업(R&D) | - | 3,375 | 순증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자문회의안 심의·의결과 정부안 편성 사이 기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거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다소 큰 변동이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안 대비 큰 변동이 있거나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이 수행하는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사업은 2024년 7~8월 2개월간의 기획연구를 통해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사업추진근거를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에 따른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 조항만 있을 뿐, 국정과제인 사유로 추진된 사업으로 보여짐.[13)]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상호운용성지원기술개발(R&D)' 사업 및 '보건의료데이터통합활용기술개발(R&D)'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바 없으며, 국정과제·거시적인 첨단바이오 전략 등에 근거하여 정부안에서 신규로 반영되었음.[14)15)]

---

13) <리튬기반배터리제조소및저장·취급시설안전을위한기술개발(R&D)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
| -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 대응기술 개발" |
| -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운영 효율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 |
| -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 -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23~2027), 현장 문제해결 중심 대응체계 구축 |
|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14) <보건의료데이터상호운용성지원기술개발(R&D) 사업추진경위>

| | |
|---|---|
| - 2013.02 | 국정과제(1-1-9-3 :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 조성 - 국가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추진, 융·복합, 정보공유 기반 조성) |
| - 2015.12 | 대통령 지시사항(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 -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 정보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 차질 없이 추진) |
| - 2022.05 |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 발표, "국정과제 25,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
| - 2024.04 |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전략(1-1. 첨단바이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디지털 바이오 - 확보된 데이터로부터 연구에 유용한 데이터셋을 도출하고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고도화 추진) |
| - 2024.04 | AI·디지털 혁신 성장 전략(의료데이터 구축·활용지원 - 제각각인 여러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동하여 의료기관,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 |

자료: 보건복지부

15) <보건의료데이터통합활용기술개발(R&D) 사업추진경위>

| | |
|---|---|
| - 2022.05 | 윤석열 정부 11대 국정과제 발표, "국정과제 25, 바이오 헬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

우주항공청의 ‘혁신형재사용발사체핵심기술(R&D)’ 사업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고 6월 4일 우주수송 분야 기업 간담회에서 산·학·연 역량 결집을 통한 재사용발사체 개발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자문회의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되었음.

상술한 사례들은 다소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거시적인 분야별 투자전략 또는 국정과제인 사유로 정부안 금액이 자문회의안 대비 크게 변경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사유’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의 ‘정부의 재정규모 조정 등’이라는 사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해 폭넓은 변경 범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자문회의가 의결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다시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재정 지출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주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크게 변동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급적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에 대해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 2023.03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전략1]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강화: 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br>- 2023.04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전략3]비용 효과적인 환자 중심 보건의료기술개발’, [전략7]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

자료: 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세 출>

## 4.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 사업일정 지연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에 따른 슈퍼컴퓨터 5호기 퇴역자원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이 편성되었음.[16]

[2025년도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 | 3,573 | 3,551 | △22 | △0.6 |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1,000 | 1,000 | - | - |

이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이전 용역비 2억 6,000만원, 인건비 1억 2,700만원 및 그 외 워크숍 등 회의개최 비용 6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KISTI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R&D)’ 사업에서 슈퍼컴퓨터 6호기가 도입되어야 진행 가능한 사업임.[17]

16) 일반회계-지식재산활용과학기술지원(4734-305))(국제협력관)

17) 2025년 예산안 111억 9,400만원(2024년 181억 8,300만원)

[2025년도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 세부계획]

| |
|---|
| ○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 1,000백만원<br>인건비x12.7백만원x10명, 시스템 구축 및 이전 용역 260백만원,<br>응용SW개발용역 390백만원(슈퍼컴 사용료x10백만원x1회, SW개발용역x300백만원x1회,SW최적화용역 x80백만원x1회),<br>교육/워크숍/워킹그룹회의 개최 140백만원(교육/훈련용역 80백만원, 워크숍x20백만원x2회,국외출장x2 백만원x10회), 전문가활용/국내출장x3.5백만원x10회, 간접비 48백만원x1회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슈퍼컴퓨터 6호기는 당초 2023년에 도입될 계획이었으나 챗GPT 등 수요 폭증과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GPU 등 핵심부품 시장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4차례 무응찰로 유찰되었고, 기획재정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SI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10월 중 종료된 이후 11월에 다시 입찰공고를 할 예정임.[18)]

[초고성능 컴퓨터 6호기 시스템 유찰 현황]

| 구분 | 기간 | 결과 |
|---|---|---|
| 1차 시스템 공고 | 2023.5.31.~7.26. | 무응찰 |
| 2차 시스템 공고 | 2023.7.27.~8.8. | 무응찰 |
| 3차 시스템 공고 | 2023.9.14.~10.26. | 무응찰 |
| 4차 시스템 공고 | 2023.10.27.~11.7. | 무응찰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슈퍼컴퓨터 6호기 공식서비스 개시가 2026년 상반기로 지연되었고 이 사업을 통한 5호기 퇴역자원의 인도네시아 이전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5년 예산안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슈퍼컴퓨터 5호기 퇴역자원을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 위한 이 사업은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지연되기 이전에는 2024년 10월부터 수행될 계획이었으나, 6호기 입찰공고가 2023년 9월에서 2024년 11월로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이 사업의 수행도 순연되었음.

변경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호기의 경우 2024년 11월에 사업공고(40일)가

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7호, 2023.12.27. 일부개정)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나가고 입찰에 성공하면, 6호기 설치기간 1년(2025.1.~2026.1) 및 기존 컴퓨터와의 연동 가능성 확인 1개월(2026.2.~) 등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및 5호기 인도네시아 이전 향후 계획]

| | |
|---|---|
| **기존 계획** | 6호기 입찰 공고 및 선정(~'23.9) → 6호기 도입 및 공식서비스 시작('24.10~)<br>→ **5호기 퇴역('24.10~)** |
| **변경 계획** | 6호기 사업 적정성 재검토('24.3~'24.9) → 6호기 입찰 공고 및 선정('24.11~)<br>→ 6호기 공식서비스 개시('26.上~) → **5호기 퇴역('26.上~)**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ISTI와 협조하여 5호기 퇴역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슈퍼컴퓨터 6호기 일정과 무관히 2025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시스템 이전 및 구축, SW 적용과 인도네시아 측의 적시 활용을 위하여 사업 1년차(2025년)에 사전 작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5호기 퇴역 일정을 6호기 도입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6호기가 도입된 이후 5호기와의 연동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이 사업을 2025년에 수행하게 되면 6호기 도입 후 실제 공식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5호기와의 연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협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른 차년도 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은 MIT(보스턴) 등 미국 선도 연구기관과의 디지털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3억 3,300만원(88.9%) 증액된 28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내역사업인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첨단바이오 글로벌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연계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원(50.0%)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 | 304,292 | 368,372 | 64,080 | 21.1 |
| | 디지털바이오육성 | 15,000 | 28,333 | 13,333 | 88.9 |
| |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 10,000 | 15,000 | 5,000 | 50.0 |

①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7월에 개시한 1개 과제에 대해서는 12개월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과제선정이 지연된 17개 과제는 10개월분 23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음.

참고로 2024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8개 신규과제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의 단가로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세부기획 과정에서 18개 과제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19) 일반회계-바이오・의료기술개발(R&D)(1138-401)(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25년도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신규) 8개×3,750×6개월/12개월 = 15,000 | ('24년 계속)<br>17개×2,235.4×10개월/12개월×73.68% = 23,333<br>('24년 계속) 1개×1,000×12개월/12개월 = 1,000 |
| **<2024.9.기준 변경된 계획>**<br>17개 과제(미선정) → 6개월 140억원<br>1개 과제(7월 과제개시)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신규 5개 과제에 대하여 40억원의 단가로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및 핀란드 등 5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5개 과제에 대하여 2024년 10월에 과제협약이 체결될 예정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신규 5개 과제에 대하여 계속과제로 9개월간 지원될 예정임.

[2025년도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신규) 5개×4,000×6개월/12개월 = 10,000 | ('24년 신규) 5개×4,000×9개월/12개월 = 15,00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첫째,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에서 협약체결이 지연된 17개 과제에 대한 2024년 연구는 2024.10.~2025.3.(6개월)까지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10개월분이 편성되었으므로 당해 편성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1개월분 연구비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의 2024년 예산은 신규과제의 연구가 6개월(2024.7.~12.) 동안 진행될 것을 가정하고 편성되었으나, 1개 과제만 2024년 7월에 개시하고 17개 과제는 2024년 10월에 협약이 체결되고 연구가 시작될 예정임.[20]

그에 따라 17개 과제에 대한 2024년 연구는 2024.10.~2025.3.까지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은 2개월 지연만 고려하여 10개월분이 편성되었으므로,

20) 과제선정 지연으로 인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50억원 중 10억원만 연구수행기관에 교부하였고, 남은 140억원은 2024.10. 이후 연구수행기관이 선정된 이후 교부할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1개월분 연구비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1)]

[2024년 10월로 협약이 지연되면서 변경된 예산집행 일정]

<table>
<tr><td colspan="12">2024년</td></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br>(협약<br>예정)</td><td>8월</td><td>9월</td><td>10월<br>(실제<br>협약)</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6">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td><td colspan="3">협약이 지연된 기간</td><td colspan="3">←2024년 6개월분 예산이</td></tr>
<tr><td colspan="12">2025년</td></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3">집행되는 기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11">←———————————— 2025년 10개월분 예산 반영 ————————————→</td></tr>
</table>

**둘째,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 및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글로벌 R&D 사업으로서 2024년 예산으로 6개월을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10월에 대부분의 과제가 착수할 것으로 보여 다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해외 국가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R&D 과제는 신속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사업수행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6개월분으로 신규과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2024년 7월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나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및 핀란드 등 5개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신규과제 연구시작 시점이 10월로 지연되었음.[22)]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과제가 수행되지 못한 3개월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을 9개월분 150억원만 편성하였음.

디지털바이오육성 사업과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모두 해외국가와 협력하여 수행되는 글로벌 R&D 사업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국가와의 협약 일정 및 상호 과제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에 6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년 하반기에 대부분의 과제가 착수될 예정으로서 다소 지연되었음.

21) 23억 3,300만원(233억 3,300만원×1개월/10개월)

22) 한국연구재단은 2024.9. 기준 2024년 예산액 100억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이처럼 해외 국가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과제는 신규 6개월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과제 준비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글로벌 R&D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해외국가와 보다 조기에 과제준비를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두 사업에 대해서도 지연된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과정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6. 개인기초연구(R&D) 사업: 협약체결 일정 및 신규과제 공고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글로벌 매칭형’** 사업은 기초연구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500만원(57.7%) 증액된 9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내내역사업인 **‘개척연구’** 사업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과제로서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내내역사업인 **‘국가아젠다’** 사업은 국가전략 방향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전략형・임무형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개인기초연구(R&D) | 1,698,247 | 1,910,849 | 212,602 | 12.5 |
| 우수연구 | 1,578,767 | 1,865,113 | 286,346 | 18.1 |
| 글로벌 매칭형 | 6,250 | 9,855 | 3,605 | 57.7 |
| 개척연구 | - | 15,000 | 15,000 | 순증 |
| 국가아젠다 | - | 40,000 | 40,000 | 순증 |

각 사업별 2025년도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글로벌 매칭형’ 사업은 2024년 신규 35개 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예산 62억 5,500만원과 2025년도 신규 20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 36억원이 편성되었고, ‘개척연구’와 ‘국가아젠다’ 사업은 각각 150개, 200개 신규과제에 대하여 12개월분 연구비가 편성되었음.

23) 일반회계-개인기초연구(R&D)(1234-301)(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25년도 우수연구 내역사업 내 신규과제의 세부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 우수연구 : 1,578,767백만원<br><br>○ 글로벌 매칭형 : 6,250백만원<br>(신규) 35개×178.6×12/12개월 = 6,250백만원 | □ 우수연구 : 1,865,113백만원<br><br>○ 글로벌 매칭형 : 9,855백만원<br>(계속) 35개×178.7×12/12개월 = 6,255백만원<br>(신규) 20개×180.0×12/12개월 = 3,600백만원<br><br>○ 개척연구 : 15,000백만원<br>(신규) 150개×100.0×12/12개월 = 15,000백만원<br><br>○ 국가아젠다 : 40,000백만원<br>(신규) 200개×200.0×12/12개월 = 40,000백만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들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거쳐 연구수행기관에 연구비가 교부되며, 연구비의 최종적인 집행(실실집행)은 연구수행기관 수준에서 이루어짐.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집행 절차]

(소관부처) 과기부 → (교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재교부) (사업수행기관) → (실집행)

## 나. 검토의견

**첫째, 글로벌매칭형 사업에서 2024년 35개 신규과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나, 2025년도 예산안은 12개월분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1차년도 연구수행기간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매칭형 사업은 2024년 35개 신규과제는 12개월분으로 편성해두어 사전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하였어야 하나, 2024년 3월에 과제공고를 실시하고 7월부터 접수과제에 대한 평가를 함에 따라 10월(영국), 11월(스웨덴), 12월(독일)부터 연구가 개시될 예정임.[24)25)]

24) 이에 따라 연구수행기관의 2024년 예산액은 과제 개시 이후부터 집행될 예정이며, 2024.9.말 기준 실실집행률은 0%임.

25) 동일 내내역사업에서 과제별로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은 10~12월로 상이하나, 이를 개별 과제별로 구분하여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가장 빠른 과제시작 시점인 10월을 기준으로 분석함.

[2024년 글로벌 매칭형 내내역사업에 있는 과제개시 일정]

| 구분 | 영국(Royal Society) | 독일(DFG) | 스웨덴(SSF) |
|---|---|---|---|
| 경과 | RS 제안('23.4),<br>과기공동위 MOC<br>체결('23.6) | DFG 총재 제안('23.4)<br>과기공동위 논의('23.9) | 한스웨덴협력사업('14),<br>SSF 2차 추진 제안('22) |
| 합의문 체결 | 한국연구재단 -<br>RS('23.6.28.) | 한국연구재단 -<br>DFG('24.3.11.) | 한국연구재단 -<br>SSF('24.2.13.) |
| 지원분야 | 과학기술 기초연구 전<br>분야 | 과학기술 기초연구 전<br>분야 | 전략기초분야<br>(12대 전략분야) |
| 과제수<br>단가/기간 | 5과제/1.2억원/3년 | 20과제/1.5억원/3년 | 10과제/2억원/3년 |
| **추진일정** | **공고(3월) → 평가(7~9월)<br>→ 개시(10월)** | **공고(3월) → 평가(7~11월)<br>→ 개시(12월)** | **공고(2월) → 평가(8~10월)<br>→ 개시(11월)** |
| 접수현황<br>(예상 선정률) | 123개 과제(4.1%) | 169개 과제(11.8%) | 127개 과제(12.7%)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과제시작 시점이 10월임을 고려하지 않고, 2024년 계속과제 35개에 대한 예산을 12개월분으로 편성하고 있어 9개월의 연구비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 중 9개월분 연구비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6)]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협력국과 공동(비용분담)으로 과제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회계 기준의 일방적인 적용이 곤란하고, ②「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서조항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사업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를 적용해 과제 기간을 12개월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2024년 예산 중 협약체결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별도의 감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27)]

26) 46억 9,100만원(62억 5,500만원×9개월/12개월)

2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일정에 대한 계획]

| 2024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협약) | 11월 | 12월 |
| 공고, 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에 소요된 기간 | | | | | | | | | ←2024년 12개월분 | | |
| 2025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예산이 집행되는 기간——————————————————→ | | | | | | | | | ←2025년 12개월분 | | |
| 2026년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예산이 집행되는 기간——————————————————→ | | | | | | | | | (이하 동일) | | |

그러나 ① 9개월분 연구비는 2025년 예산안에서 감액하는 것이어서 2024년 연구비는 별도의 변경이 없으므로 2024년에 체결한 상대국과의 합의문을 이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고,

②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 규정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28][29] 및 상위법령 우선 원칙에[30] 따라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일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③ 특히 이 과제는 연차별 협약종료 시점이 9월이므로 2024회계연도 및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사업에 집행된 연구비에 대한 매년도 국회의 결산심사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함.[31]

따라서 2024년 협약체결 시점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으로 12개월분을 편성한 금액 중 9개월분 연구비는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2][33]

---

28)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임.

29)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행정규칙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는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을 통해 규정함이 타당함.

31)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차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2) 46억 9,100만원(62억 5,500만원×9개월/12개월)

33) 본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대상 회계연도 일치 예외 규정’의 재검토 필요’** 참조

**둘째, ‘글로벌매칭형’,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사업에서 2025년도 추진되는 신규과제가 모두 12개월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제공고 및 선정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인 3개월은 연구비의 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임을 감안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연구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매칭형’,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과제의 경우 모두 12개월분으로 반영되었고, 각각 36억원, 150억원, 400억원임.

[2025년도 우수연구 내역사업 내 신규과제의 세부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5년 |
|---|
| □ 우수연구 : 1,865,113백만원<br><br>○ 글로벌 매칭형 : 9,855백만원<br>(계속) 35개×178.7×12/12개월 = 6,255백만원<br>**(신규) 20개×180.0×12/12개월 = 3,600백만원**<br><br>○ 개척연구 : 15,000백만원<br>**(신규) 150개×100.0×12/12개월 = 15,000백만원**<br><br>○ 국가아젠다 : 40,000백만원<br>**(신규) 200개×200.0×12/12개월 = 40,000백만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해 신규과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단서조항에 따른 ‘기초연구’에 해당하여, 신규과제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구사업(3월 개시)은 회계연도 일치원칙 도입 당시(’16년)부터 대학 회계연도(당해연도 3.1~차년도 2.28)와의 일치 필요성 등에 따라 12개월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왔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제공고(1월), 과제선정평가(2~3월) 및 협약체결(3월) 기간을 고려할 때, 4월에 비로소 과제연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과제공고 및 선정에 소요되는 최소기간인 3개월은 연구비의 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임을 감안할 때, 각 사업에 대하여 과제공고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연구비 예산의 조정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34)]

34) ‘글로벌매칭형’ 내내역사업의 신규과제 9억원(36억원×3개월/12개월), ‘개척연구’ 내내역사업의 신규과제 37억 5,000만원(150억원×3개월/12개월), ‘국가아젠다’ 내내역사업의 신규과제 100억원(400억원×3개월/12개월)

# 7.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활용(R&D) 사업: 해외국가와 일정 협의가 지연된 글로벌 R&D 과제의 순연 방지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소부장실증평가지원’** 사업은 미국의 NY CREATES가 보유하고 있는 300mm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시설 장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3억 1,300만원(175.1%)이 증액된 2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35)]

내역사업인 **‘인턴십 및 기술인력교류’** 사업은 IMEC(벨기에 루벤 위치)에 국내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원(△31.2%) 감액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R&D) | 2,520 | 5,493 | 2,973 | 117.9 |
| 소부장실증평가지원 | 750 | 2,063 | 1,313 | 175.1 |
| 인턴십 및 기술인력교류 | 770 | 530 | △240 | △31.2 |

소부장실증평가지원 사업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해외(NY Creates(美))[36)] 첨단시설에서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연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장비 활용비는 특정 시점에서 목돈이 지출되는 형태로 집행이 이루어짐.

또한 인턴십 및 기술인력교류 사업은 매년 학생을 신규로 선발(2024년 1기, 2025년 2기, 2026년 3기)하여 대상기관(벨기에 IMEC)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수행됨.

2024~2025년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소부장실증평가지원 사업은 2024년 10개 신규과제 대상 1억 5,000만원의 단가로 6개월간, 인턴쉽 및 기술인력교류 사업은 1개 과제 대상 15억 4,000만원의 단가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2025년에는 이

35) 일반회계(세출)-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R&D)(1139-437)(기초원천연구정책관)

36) NY Creates(美)는 IBM, Inte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첨단 시설·장비를 임대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했던 기관임.

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12개월분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반도체 글로벌 첨단팹 연계 활용(R&D) 사업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520백만원<br>가.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br>- 공동연구개발<br>· (신규) 5개 × 400 × 6개월/12개월 = 1,000백만원<br>**- 소부장실증평가지원**<br>· (신규) 10개 × 150 × 6개월/12개월 = 750백만원<br>**- 인턴쉽 및 기술인력교류**<br>· (신규) 1개 × 1,540 × 6개월/12개월 = 770백만원 |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5,493백만원<br>가. 반도체글로벌첨단팹연계활용사업<br>- 공동연구개발<br>· (계속) 5개 × 400 × 12개월/12개월 = 2,000백만원<br>· (신규) 3개 × 400 × 9개월/12개월 = 900백만원<br>**- 소부장실증평가지원**<br>· (계속) 10개 × 150 × 12개월/12개월 = 1,500백만원<br>· (신규) 5개 × 150 × 9개월/12개월 = 563백만원<br>**- 인턴쉽 및 기술인력교류**<br>· (계속) 1개 × 530 × 12개월/12개월 = 530백만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첫째, 소부장실증평가지원 사업은 과제 접수미달로 6개 과제의 선정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신속히 선정하여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부장 실증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고, 향후 NY Creates와 국내 기업의 원활한 일정 조율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2024년 9월 말 기준 10개 과제 중 4개 과제만 선정하였으며, 6개 과제는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나 과제의 접수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국내 학교, 연구소, 중견·중소 기업 등 기타 이용자들이 NY Creates의 시설·장비를 별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NY Creates의 시설·장비의 상세 스펙과 견적, 활용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상세 계획(안)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이에 따라 6개 과제는 빨라도 2024년 10월부터 과제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유사한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NY Creates와 국내 기업의 원활한 일정 조율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과제 접수가 미달하여 아직 선정되지 못한 6개 과제의 경우에도 신속히 선정하여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턴쉽 및 기술인력교류 사업은 해외기관과의 협의진행이 지연되어 2024년 12월에 비로소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 대비 지연되어 파견이 이루어지는 1기 학생의 일정으로 인해 그 이후 파견 일정도 순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9월 말 기준 파견 대상기관(벨기에 IMEC)과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과제 공고를 준비하고 있어, 실제 학생이 기관에 파견되어 2024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12월일 것으로 보임.

이는 당초 파견기관으로 NY Creates(美)를 고려하고 협의하였으나, NY Creates의 J비자(교육/연구 방문비자) 발급 불가, 체재비 이외 연구비(1만 달러) 추가 요구 등의 이유로 IMEC(벨기에)으로 파견기관을 변경 후 재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지연된 것임.

따라서 계획 대비 지연되어 파견이 이루어지는 1기 학생의 일정으로 인해 그 이후 파견 일정도 순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생(1기)과 2025년 예산안으로 지원되는 학생(2기)은 완전히 다른 대상이므로 감액 시 1기 학생의 파견이 무산될 수 있다는 입장임.

# 8. 실험실창업지원(R&D) 사업: R&D 지출구조조정 이후 회복된 과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실험실창업지원(R&D)’** 사업은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실험실·출연(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업탐색 활동, 창업교육 및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0억 5,000만원(106.4%)이 증액된 23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37)]

[2025년도 실험실창업지원(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실험실창업지원(R&D) | 11,325 | 23,375 | 12,050 | 106.4 |

2025년도 이 사업의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①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내역사업에 106억 5,000만원, ② 실험실 창업 성공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창업탐색 활동과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내역사업에 117억 2,500만원, ③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유망 첨단과학기술기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내역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실험실창업지원(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5년 예산안 |
|---|
|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23,375백만원<br><br>가.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10,650백만원)<br>· 연구실 창업준비 : 1,000백만원×7개 대학(군)×9/12개월 + 1,200백만원×6개 대학(군)×9/12개월<br>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11,725백만원)<br>·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br>▸ 창업탐색팀 지원 : 100백만원×90개팀×12/12개월 |

37) 일반회계-실험실창업지원(R&D)(4602-307)(연구성과혁신관)

| 2025년 예산안 |
| --- |
| ‣ 창업탐색팀 지원(출연(연) 연구자 등) : 120백만원×10개팀×12/12개월<br>‣ 창업문화확산비 : 525백만원×12/12개월<br>·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 400백만원 ×1개×12/12개월<br>· 과학기술일자리혁신기반지원 : 600백만원×1개×12/12개월<br>다.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1,000백만원)<br>· 글로벌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터 : 1,0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R&D 지출구조조정 후 2025년에는 구조개편 및 전략성 강화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이므로, 향후 지출구조조정 취지에 맞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2024년 R&D 예산편성 당시 정부는 국가 R&D 사업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제거하고 건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R&D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24년에 비효율적 연구비 예산 운용이라는 사유로 감액되었으나, 다시 2023년 수준으로 원복된 사례가 있는데, 실험실창업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들이 이에 해당함.

실험실창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2023년 ①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②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③ 공공기술창업 연계 확산 지원 및 ④ 연구성과활용 원스톱 창업 지원으로 총 4개였는데,

이 중 ①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②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내역사업은 2024년에 예산이 감액되었다가 2025년에 원복 조치되었고, ③ 공공기술창업 연계 확산 지원 및 ④ 연구성과활용 원스톱 창업 지원 내역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음.

### (1)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사업[38)]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 출범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142억원, 2025년에 106.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R&D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24년에 53억 2,500만원만 반영되고 2025년 예산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예산안이 원복되었음.

이는 2025년에는 기존 실험실 균등지원 체계에서 고난도 국가전략기술기반 실험실 창업에 대한 집중지원 및 타 부처 사업과 연계 강화 등이 고려된 것이고, 그에 따라 2025년도에는 지원단가 및 총 지원금액이 106억 5,000만원으로 회복되었음.

### (2)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사업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해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실험실 창업탐색팀에 지원하는 것임.

창업탐색팀을 지원하기 위한 내내역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창업탐색팀 지원’을 위해 2023년 9,400만원씩 125개 팀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나, 2024년 R&D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9,000만원씩 50개 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2025년에는 다시 1억원씩 90개 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편되었음.

한편, 2025년 지원 대상을 당초 대학원생에서 출연(연)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등 2023년 종료한 ‘공공기술창업연계확산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어 이를 위한 예산 12억원이 편성됨.

### (3) 공공기술창업 연계 확산 지원 및 연구성과활용 원스톱 창업 지원 사업

공공기술창업 연계 확산 지원 사업은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이 창업으로 단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지원 대상이 동일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내역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한 효

38) 단독형 7개 대학(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에 대해서는 10억원씩 9개월, 연합형 6개 대학군(중앙대학교, 동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에 대해서는 12억원씩 9개월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됨.

율화 필요성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 종료되었음.

또한 연구성과활용 원스톱 창업 지원 내역사업은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부처 고유 임무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2023년 종료되었음.

[2023~2025년도 실험실창업지원(R&D) 내역사업별 세부계획]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가.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10,650백만원)**<br>**(2023년 신규)**<br>· 연구실 창업준비 : 1,000백만원 × 7개 대학 × 9/12개월 + 1,200백만원 × 6개 대학(군) × 9/12개월 | 가.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5,325백만원)**<br>· 연구실 창업준비 : 375백만원 × 7개 대학(군) × 12/12개월 + 450백만원 × 6개 대학(군) × 12/12개월 | 가.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10,650백만원)**<br>· 연구실 창업준비 : 1,000백만원 × 7개 대학(군) × 9/12개월 + 1,200백만원 × 6개 대학(군) × 9/12개월 |
| 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13,780백만원)<br>**· 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br>**▸ 창업탐색팀 지원 : 94백만원 × 125개팀 × 12/12개월**<br>▸ 공공연구의 기술사업화 성과 확산 : 530백만원 × 1개 × 12/12개월<br><br>·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 500백만원 × 1개 × 12/12개월<br>· 과학기술일자리혁신기반지원 : 1,0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5,500백만원)<br>**· 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br>**▸ 창업탐색팀 지원 : 90백만원 × 50개팀 × 12/12개월**<br><br>·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 400백만원 × 1개 × 12/12개월<br>· 과학기술일자리혁신기반지원 : 6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11,725백만원)<br>**· 시장연계창업탐색지원**<br>**▸ 창업탐색팀 지원 : 100백만원 × 90개팀 × 12/12개월**<br>**▸ 창업탐색팀 지원(출연(연) 연구자 등) : 120백만원 × 10개팀 × 12/12개월**<br>▸ 창업문화확산비 : 525백만원 × 12/12개월<br><br>·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 400백만원 × 1개 × 12/12개월<br>· 과학기술일자리혁신기반지원 : 6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 다. 공공기술창업 연계 확산 지원 (4,800백만원)<br>**(2023년 신규)**<br>· 창업네트워크 구축 : 5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550백만원 × 1개 × 12/12개월<br>· 창업사업화검증 : 150백만원 × 15개팀 × 12/12개월<br>· 성장촉진 지원 : 90백만원 × 110개팀 × 12/12개월 + 6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 |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라. 연구성과활용 원스톱 창업 지원 (963백만원)<br>**(2023년 신규)**<br>· 1개 기관(AC) × 1,284백만원 × 9/12개월 | - | - |
| - | 다. (신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500백만원)<br>· 글로벌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터 : 5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다. (신규)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1,000백만원)<br>· 글로벌 스케일업 엑셀러레이터 : 1,000백만원 × 1개 × 12/12개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의 사례는 정부가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2024년 R&D 지출구조조정을 한 후 2025년 사업 개편 등 효율화를 거쳐 증액 추진하는 경우인 만큼 지출구조조정 취지에 맞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9. 한계도전R&D프로젝트(R&D) 사업: 신규과제 선정 지연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한계도전R&D프로젝트(R&D)’** 사업은 임무지향형 변혁적 기술개발을 위한 HRHR(High-Risk, High-Return)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원(17.0%) 증가한 117억원이 편성되었음.[39)]

[2025년도 한계도전R&D프로젝트(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한계도전R&D프로젝트 (R&D) | 10,000 | 11,700 | 1,700 | 17.0 |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지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이 사업을 총괄하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임.

2024년에는 신규 22개 과제에 대하여 10개월분 연구비 91억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에는 신규 3개 과제 13억원 및 2024년 과제에 대한 계속지원 연구비 95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계도전R&D프로젝트(R&D) 사업 사업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 프로그램 : 9,100백만원<br>- (신규) 12개x520x10/12개월 = 5,200백만원<br>- (신규) 10개x468x10/12개월 = 3,900백만원<br>○ 기평비 : 900백만원<br>- (신규) 1개x1,080x10/12개월 = 900백만원 | ○ 프로그램 : 10,800백만원<br>- (신규) 3개x433x12/12개월 = 1,300백만원<br>- (계속) 12개x450x12/12개월 = 5,400백만원<br>- (계속) 10개x410x12/12개월 = 4,100백만원<br>○ 기평비 : 900백만원<br>- (신규) 1개x900x12/12개월 = 900백만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일반회계-한계도전R&D프로젝트(R&D)(1158-450)(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24년 9월 말 기준 12개 과제는 2024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가 시작되었고, 10개 과제는 9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가 시작되었음.

[2024년도 한계도전R&D프로젝트(R&D) 사업 세부계획]

(단위: 백만원)

| 연번 | 선정과제명 | 2024 예산 | 협약체결일 |
|---|---|---|---|
| 1 | 양자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확장성, 양자 기능성을 갖는 광섬유 집적 양자 광소자 플랫폼 개발 | 500 | 2024.6. |
| 2 | 상온 동작 확정적 단일 광자 발생기: 표면탄성파 기반 전자-광자 변환 기술 연구 | 500 | |
| 3 | 광양자통신을 위한 상온 초고휘도 단일광자 생성 및 제어기 | 500 | |
| 4 | PFAS 대체용 생체물질의 가역적 결합 기반 윤활코팅 신소재의 기계부품 적용을 위한 실용적 개발 | 340 | |
| 5 | 바이폴라막 레독스 흐름 탈염 공정의 pH-swing을 통한 해양 이산화탄소의 제어 및 탄산나트륨 자원화 시스템 개발 | 400 | |
| 6 | 염기성 마이크로젤 기반 해양 이산화탄소 직접 광물화 기술 | 400 | |
| 7 | 딥러닝 대기-지면-식생 결합 모델 기반 단·중기 한반도 극한 폭염 예측 기술 개발 | 460 | |
| 8 | 멀티모달 초거대 기초 모델 및 범용 잠재 확산 모델 기반 극단 기후기상 예측 및 재난 대응 질의 응답 기술 개발 | 400 | |
| 9 | 소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기계학습을 통한 극단적 폭우 예측 | 400 | |
| 10 | Deep neural experimenter: 실험설계-뇌-디코더 자동정렬 학습을 이용한 작업기억 속 중앙통제 핵심 정보 디코딩 기술 | 400 | |
| 11 | 영장류 가치기억 인코딩 뇌 패턴 변조를 통한 의사결정행동 제어 | 440 | |
| 12 | 뇌 전체 기억저장 시냅스의 광유전학 조절을 통한 기억의 선택적이고 완전한 제어 | 460 | |
| 소계 | | 5,200 | - |
| 13 | 신규과제 10개 협약 체결 | 3,900 | 2024.9.말 |
| 합계 | | 9,100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계획 대비 협약이 지연되었으나 2025년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비 지원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안 중 해당 기간에 대한 연구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3개월 협약체결이 지연된 12개 신규과제 및 6개월 협약체결이 지연된 10개 신규과제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연구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22개 신규과제에 대해 10개월(2024.3.~12.)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2개 과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4.6.~2025.3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고,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2024년 9월에 협약이 체결되어 2024.9.~2025.6.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22개 과제에 대해 12개월분 예산을 반영해두었으므로 연구비 지원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0]

[2024년 10월로 협약이 지연되면서 변경된 예산집행 일정]

| | | | | | | | | | | | | |
|---|---|---|---|---|---|---|---|---|---|---|---|---|
| **12개 과제 (6월 협약 체결)** | **2024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협약 예정) | 4월 | 5월 | 6월 (실제 협약)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공고 및 과제선정 | | 협약이 지연된 기간 | | | ←——————————2024년 10개월분 예산이 | | | | | | |
| | **2025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집행되는 기간—→ | | | | | | | | | | | |
| | ←—————————————— 2025년 12개월분 예산 반영 ——————————→ | | | | | | | | | | | |
| **10개 과제 (9월 협약 체결)** | **2024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협약 예정)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실제 협약) | 10월 | 11월 | 12월 |
| | 공고 및 과제선정 | | 협약이 지연된 기간 | | | | | | ←—2024년 10개월분 예산이 | | | |
| | **2025년**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집행되는 기간——————————→ | | | | | | | | | | | |
| | ←—————————————— 2025년 12개월분 예산 반영 ——————————→ | | | | | | | | | | | |

40) 2024년 6월 체결된 12개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3개월분 13억 5,000만원(54억원×3개월/12개월), 2024년 9월 체결된 10개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분 20억 5,000만원(41억원×6개월/12개월)만큼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책임PM과 다수의 연구책임자가 심층검토하여 수립한 연차별 상세 연구계획, 마일스톤을 연구 초기에 수정하는 것은 연구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② 1단계 기간(2024~2025년)의 연구목표가 강하게 수립되어 연구비 또한 집중 투자될 필요가 있고, ③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신뢰하여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하며, ④ 혁신·도전적 연구환경이 지속되도록 2024년 예산 중 협약체결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별도의 감액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일정에 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12">2024년</th></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br>(협약)</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2">공고 및<br>연구기관 선정</td><td colspan="6">협약체결 지연된 기간</td><td colspan="4">←——2024년 10개월분 예산이</td></tr>
<tr><th colspan="12">2025년</th></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6">집행되는 기간——————————→</td><td colspan="6">←————2025년 12개월분 예산이</td></tr>
<tr><th colspan="12">2026년</th></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6">집행되는 기간——————————→</td><td colspan="6">(동일하게 2028년까지 연구비 지원)</td></tr>
</table>

그러나 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장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41][42] 및 상위법령 우선 원칙에[43] 따라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일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2024회계연도 및 당해 사업의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집행된 연구비에 대한 국회의 결산심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44]

또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단서조항이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연구의 시작이 늦추어진 과제에 대해서까지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고,

41)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임.

42)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르는 것이 적법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는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을 통해 규정함이 타당함.

44)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차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서조항과 같이 2025년도에도 협약이 지연되어 연구가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단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만이라는 이유로 차년도 예산을 12개월로 지원할 경우 2024년 연구기간과 2025년 연구기간이 겹침에 따라 연구비가 중복으로 지원되어 오히려 비효율적인 연구비 교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계획 대비 협약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여 연구비 지원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안 중 해당 기간에 대해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5]

**둘째, 2025년 신규 3개 과제에 대하여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과제공고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신규과제 예산 반영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신규 3개 과제에 대하여 12개월분 13억원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의 과제공고 절차를 살펴보면, 1월에 연구테마 및 주제도출을 시작으로 과제기획 구체화 기간이 3개월이고, 그 이후 과제 공고 및 선정평가를 통해 6월에 비로소 과제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실제 연구수행은 7월부터일 것으로 사료됨.

[한계도전R&D 과제 기획 및 공고 절차]

| 연구테마 및 주제 도출 (1월) | 의견요청서 접수 (1월) | 기술제안 토론회 개최 (2월) | 기획구체화 및 확정 (3월) | 과제 공고 (4월) | 선정평가 (6월) |
|---|---|---|---|---|---|
| 책임PM | 산학연 의견 수렴(온라인) | 현장 토론형 의견청취 | 책임PM -센터장 협의 | 과기부, 전략센터 | 과기부, 전략센터 |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46]

이 사업의 과제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년도 과제가 아님에도

45) 본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명시된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대상 회계연도 일치 예외 규정’의 재검토 필요’** 참조

4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불구하고 2025년도 신규과제의 예산이 12개월분으로 편성됨.

따라서 13억원 중 일정 금액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2024년 신규과제 선정 등 과제선정의 선례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과제공고 및 협약준비를 보다 신속히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이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인 3개월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7)]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47) 3억 2,500만원(13억원×3개월/12개월)

# 10.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협약체결 일정 및 신규과제 공고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필요

## 가. 개 요

내내내역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은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내외 산학연과 개방형으로 협력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833억원(83.3%)이 증액된 1,833억원이 편성되었음.[48)]

[2025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 195,226 | 278,689 | 83,463 | 42.8 |
| 주요사업비 | 180,545 | 263,447 | 82,902 | 45.9 |
| 융합연구사업 | 153,072 | 234,554 | 81,482 | 53.2 |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 100,000 | 183,300 | 83,300 | 83.3 |

2025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의 예산안 세부계획을 보면, 2024년 신규과제에 대한 계속 지원 연구비 7개월분 583억원과 2025년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비 12개월분 1,2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신규과제는 6월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반영된 것임.

[2025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25년 |
|---|
| **총 1,833억원**<br>○ 신규과제 지원 : 1,250억원<br>○ 계속과제 지원 : 583억원(2024년도 신규 과제가 ’24.6. 협약 체결됨에 따라, 회계연도 일치를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은 ’25.6.~’25.12. 7개월분만 반영)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 일반회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연구성과혁신관)

##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신규과제 중 1개 과제(고효율 고안전 청정수소 저장 활용 전략연구단 과제)는 재선정 절차 진행으로 인해 9월에 연구가 착수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5개월 지연만 고려하였으므로, 2025년 예산안 중 고려되지 못한 지연된 연구기간 3개월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래 표에 제시된 2024년도 신규과제 6개는 12개월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1월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나, 2024년 6월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협약이 5개월 지연되었음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7개월분만 반영하였음.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신규 6개 과제]

| 과제명 | 1차년도 예산 (2024년) | 2차년도 예산 (2025년) | 협약체결일 | 연구수행기관 |
|---|---|---|---|---|
| 시장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혁신 전략연구단 | 260억원 | 152억원 | 2024.6 | 화학연, 전기연, 기계연, 에기연 등 |
| 글로벌 TOP 유전자 세포치료 전문연구단 | 170억원 | 99억원 | 2024.6 | 생명연, 화학연, 안전성연, ETRI 등 |
| SMR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사업단 | 205억원 | 120억원 | 2024.6 | 원자력연, KISTI, ETRI 등 |
| 초거대 계산 반도체 전략연구단 | 160억원 | 93억원 | 2024.6 | KIST, ETRI, 표준연 등 |
| **고효율 고안전 청정수소 저장 활용 전략연구단** | **170억원** | **99억원** | **- (2024년 9월말 협약체결)** | **KIST, 녹색연, 화학연 등** |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기평비 | 35억원 | 20억원 | 2024.6 | - |
| 합계 | 1,000억원 | 583억원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고효율 고안전 청정수소 저장 활용 전략연구단’ 과제는 재선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타 과제와 달리 2024년 6월이 아닌 9월에 연구가 착수되었으나,[49] 2025년 예산안으로 7개월분이 반영되어 3개월의 연구비 중복이 생기는 상황임.

따라서 2025년 예산안 중 협약이 추가로 지연되어 연구비 지원의 중복이 발생하는 3개월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0]

49) 동 과제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1차년도 과제비 170억원은 2024.9.말 기준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4년 9월로 협약이 지연되면서 변경된 예산집행 일정]

<table>
<tr><th colspan="12">2024년</th></tr>
<tr><td>1월<br>(협약<br>예정)</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br>(실제<br>협약)</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8">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으로 협약이 지연된 기간</td><td colspan="4">←———2024년 12개월분 예산이</td></tr>
<tr><th colspan="12">2025년</th></tr>
<tr><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 colspan="8">집행되는 기간————————————————————→</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td><td colspan="7">←———— 2025년 7개월분 예산 반영 ————→</td></tr>
</table>

**둘째, 2025년도 예산안은 신규과제에 대하여 12개월분 1,2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과제 공고 및 선정, 평가 기간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연구비의 집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임을 감안하여, 2025년 신규 선정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선정, 평가 소요 기간에 따른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35)」에 따르면 신규과제의 경우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51]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의 세부계획에 담긴 신규과제는 12개월분 1,250억원이 편성됨.

그러나 2024년 신규과제의 사례를 보더라도 2024년 6월에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또한 1월부터 과제 공고를 하여 협약체결 준비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접수된 과제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데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2025년 신

50) 42억원(99억원×3개월/7개월)

5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계속과제 :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규과제의 경우 과제 공고 및 선정, 평가 기간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연구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2)53)]

52) 312억 5,000만원(1,250억원×3개월/12개월)

53) 참고로, 3개월은 과제선정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이며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신규과제 선정의 사례와 같이 과제선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1.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사업단 실제 운영시기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가. 개 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은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세계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풀스택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370억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4)]

[2025년도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 - | 37,018 | 37,018 | 순증 |

2025년도 이 사업의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신규과제로서 3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9개월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단 운영비는 12개월 분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 2025년 예산안 | |
|---|---|
| 예산 | 산출내역 |
| 37,018 | ○ AI반도체 데이터센터 인프라 및 HW : 10,800백만원<br>가. (신규) 10,800백만원<br>· 4개 x 3,600백만 x 9/12개월 |
| | ○ AI반도체 데이터센터 컴퓨팅SW : 17,800백만원<br>가. (신규) 17,800백만원<br>· 10개 x 2,266.7백만원 x 9/12개월 |
| | ○ AI반도체 특화 클라우드 : 7,624백만원<br>가. (신규) 7,624백만원<br>· 3개 x 3388.4백만 x 9/12개월 |
| | ○ 사업단 운영비 : 1,594백만원<br>가. (신규) 1,594백만원(12개월/12개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일반회계-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2603-320)(정보통신산업정책관)

##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규과제 공고(1월), 과제 접수(2~3월), 선정평가(3월)를 거칠 예정이며, 따라서 사업단도 과제가 선정된 이후 4월부터 운영될 것이므로, 12개월분으로 편성된 사업단 운영비 중 일부에 대한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신규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수행함.[55)]

참고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제 공고 및 선정 등 사전절차, 연구비 정산 등 사후절차와 같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K-클라우드 사업단(가칭)은 연차별 과제 추진계획 검토 및 확정, 연차별 진도 및 성과관리, 과제 간 연계,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등 전문·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므로, 양자 간 역할에는 차이가 있음.

[K-클라우드 사업단(가칭)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역할 차이]

| K-클라우드 사업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과제기획,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연차별 과제 추진계획 검토, 연차별 진도 및 성과관리, 과제 간 연계, 수요-공급기업 연계 등 사업기획 및 관리 총괄 | 과제 공고 및 선정 등 사전절차,<br>연구비 정산 등 사후절차<br>R&D 과제 관련 행정지원 역할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과제 공고(1월), 접수(2~3월) 및 선정평가를 통한 과제 선정(3월)에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과제가 선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전문적·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K-클라우드 사업단(가칭)이 출범함.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12개월분 사업단 운영비 15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업단이 운영하는 기간인 9개월분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3개월분 연구비의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6)57)]

55)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과제 공고 및 선정 등 사전절차, 연구비 정산 등 사후절차와 같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동 사업을 관리하고, K-클라우드 사업단(가칭)은 연차별 과제 추진계획 검토 및 확정, 연차별 진도 및 성과관리, 과제 간 연계,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등 전문·기술적인 부분에서 동 사업을 관리함.

56) 3억 9,800만원(15억 9,400만원×3개월/12개월)

57) 참고로, 2026년에는 2025년 사업단 출범 시기 및 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적절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사업: 사업단 지연 출범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과제 관리 필요

## 가. 개 요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차세대 네트워크(6G) 기술 및 표준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6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수행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59억 5,800만원이 증액(314.0%) 86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58)]

[2025년도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 21,000 | 86,958 | 65,958 | 314.0 |

이 사업을 통해 6G 핵심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2026년에 세계 최초 pre-6G 기술 시연 및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2028년 6G 통합 시연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 6G 무선통신 ▲ 6G 모바일 코어 ▲ 6G 유선네트워크 ▲ 6G 시스템 ▲ 6G 표준화 등 5대 분야에 대하여 총 5년(2024~2028년)간 3,731억 7,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는 5대 분야]

① 6G 무선통신
- 6G Upper-mid Band E-MIMO 시스템, 기지국 및 통신단말 핵심 부품
- 6G 커버리지 확대 기술

② 6G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 6G 모바일 코어망 아키텍처, AI-Native 자동화/최적화 기술

③ 6G 유선 네트워크
- 6G 프론트홀 광링크 및 광전송, 유무선 통합 광액세스 시스템, 네트워킹 전달망 장비 및 부품

④ 6G 시스템
- 6G 종단간 서비스 응용성능 보장, AI-Native 응용서비스 지원, 개방형 서비스 검증 플랫폼 기술

58) 일반회계 -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2132-371)(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
|---|
| ⑤ 6G 표준화<br>- 6G 유무선 핵심 표준화 기술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이 사업의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신규과제에 대한 계속 연구비 지원 745억 6,000만원 및 사업단 계속 운영비 20억 9,800만원과 신규 4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 10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4~2025년도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사업 세부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 기술개발 : 20,600백만원<br>· 신규과제: 27개 × 1,017백만원 × 9/12개월<br><br>○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 기술개발 사업단 운영 : 400백만원<br>· 신규과제: 1개 × 400백만원 × 12/12개월 | ○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 기술개발 : 84,860백만원<br>· 계속과제: 27개 × 2,761백만원 × 12/12개월 = 74,560백만원<br>· 신규과제: 4개 × 3,433백만원 × 9/12개월 = 10,300백만원<br><br>○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 기술개발 사업단 운영 : 2,098백만원<br>· 계속과제: 1개 × 2,098백만원 × 12/12개월 = 2,098백만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단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연구관리 전문기관) 내에 설치되어 이 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수행하며, 6G 기술 시연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연구관리 전문기관 외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이 수행됨.

## 나. 검토의견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사업단 출범이 2025년으로 순연되었고, 사업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규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6G 상용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사업단 출범을 통해 향후 보다 면밀히 과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사업단은 2024년 운영비 예산이 4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2024년 투입예산 13억 2,000만원에 비해 다소 적은 금액이었음.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23년 1월에 시작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완료일(8월 22일) 이후인 2023년 8월 23일에 마무리되었음.

그로 인하여 2024년에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단 설립과 사업추진체계 정립 및 운영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2025년으로 순연되었음.

한편, 2024년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체결은 사업단이 출범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2024년 4~5월 중으로 모두 완료되었음.

즉, 이들 과제에 대한 기획 및 선정평가는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 사업단'이 아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사업단이 출범한 이후 사업 기획 및 연구진행전반에 대한 밀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신규과제에 대한 협약체결일]

| 구분 | 연구수행기관명 | 과제수 | 협약체결일 |
|---|---|---|---|
| 6G 무선 | 알에프에이치아이씨 등 11개 | 11 | 4.30~5.8 |
| 6G 코어 | 엔텔스 등 3개 | 3 | 5.2~5.7 |
| 6G 유선 | HFR, 옵티코어 등 8개 | 8 | 4.30~5.7 |
| 6G 시스템 | 서울대학교 등 2개 | 2 | 5.7 |
| 6G 표준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 3 | 5.3~5.7 |
| 계 | | 27 | 4.30~5.8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이 사업단은 연 1회 6G 전략위원회, 연 2회 운영위원회, 월 1회 기술전문위원

회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과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사업단 출범이 2025년으로 순연됨에 따라 과제점검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024~2025년 사업단 운영비에 대한 세부편성(안)]

(단위: 백만원)

| 비목 | 세 목 | 예산 | | 주요내역 |
|---|---|---|---|---|
| | | 2024 | 2025(안) | |
| 직접비 | 인건비 | 200 | 1,000 | · 동사업 관리인력 인건비(총 7명 예상)<br>(사업단장(IPL), 사무국장, 5대분야 매니저 5인)<br>* 사업단 운영·역할 : **연구자 협의체, 기술전문위원(PS), 책임평가위원 운영, Pre-6G 기술시연 대응 등** |
| | 연구시설 장비비 | 10 | 100 | ·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장치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br>· 사업관리시스템/사업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
| | 연구활동비 | 190 | 800 | · Pre-6G 기술시연·6G통합기술시연 대상기술 발굴, 시연 가능성 검증 및 시연 시나리오 수립·시행 등 고유임무 수행<br>· **6G R&D 전략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술전문위원 등 사업 추진체계 운영**<br>·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중간점검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등 위원회 전문가 수당 및 회의비**<br>· 기획/평가, **진도점검** 및 업무협의 관련 국내외 여비<br>· 협약/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성과 워크숍, 성과(활용) 조사분석, 위탁정산회계법인 감사수수료<br>· 사업관리인력 PC/모니터 등 구매<br>· 동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한 제반비용 |
| | 소계(A) | 400 | 1,900 | - |
| 간접비(B) | | - | 198 | - |
| 총 계(A+B) | | 400 | 2,098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2024년 신규과제 연구에 대한 연차별 중간점검이 2025년에 계획되어 있고, 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도 크게 증액 편성되어 있으므로,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 사업단’ 이 신속히 출범하여 과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더하여, 이 사업은 2026년에 세계 최초 pre-6G 기술 시연 및 6G 국제표준특허 30% 확보, 2028년 6G 통합 시연 등 6G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과제임을 고려해 보다 철저히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세 출>

# 13. 강소특구 육성 사업: 회계연도 일치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강소특구 육성’** 사업은 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8억 6,000만원(21.7%) 증액된 27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59)]

[2025년도 강소특구육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100,332 | 106,104 | 5,772 | 5.8 |
| 강소특구육성 | 22,400 | 27,260 | 4,860 | 21.7 |

강소특구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와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을 설정하여 재정지원,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부여하는 소규모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함.

지정된 강소특구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에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등 6개가 지정되고, 2020년 8월에 경상북도 구미 금오공대 등 6개, 2022년에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대학교 등 2개로 총 14개 강소특구가 있으며, 각 기초지역자치단체의 기술핵심기관마다 특화분야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연구개발특구육성(R&D)(4632-401)(연국성과혁신관)

[2024년 10월 기준 강소특구 현황]

| 2019년 강소특구 지정(2019.8.) | | | 2020년 강소특구 지정(2020.8.) | | |
|---|---|---|---|---|---|
| 광역 | 기초<br>(기술핵심기관) | 특화분야 | 광역 | 기초<br>(기술핵심기관) | 특화분야 |
| 경기 | 안산<br>(한양대 에리카) | ICT 융복합 부품소재 | 경북 | 구미<br>(금오공대) | 스마트 제조 시스템 |
| 경남 | 김해<br>(인제대) | 의생명・의료기기 | 서울 | 홍릉<br>(KIST, 고려대, 경희대) | 디지털 헬스케어 |
| | 진주<br>(경상대) | 항공우주 부품・소재 | 울산 | 울주<br>(UNIST) | 미래형 전지 |
| | 창원<br>(한국전기연구원) |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 전남 | 나주<br>(한국전력공사) | 지능형 태양광, 에너지 저장 |
| 경북 | 포항<br>(포스텍, RIST) | 첨단 신소재 | 전북 | 군산<br>(군산대)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
| 충북 | 청주<br>(충북대) |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 충남 | 천안・아산<br>(한국자동차 연구원) | 차세대 자동차 부품 |
| 2022년 강소특구 지정(2022.5.) | | | | | |
| 인천 | 서구<br>(인천대) |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 강원 | 춘천<br>(강원대) | 바이오 의약 신소재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에는 상술한 14개 강소특구에 대하여 16억원이 지원되었고, 2025년에는 10개 강소특구에는 18억원, 4개 강소특구에는 23억 1,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2025년에는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에 대한 성과가 우수한 4개 특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8억원이 지원되는 10개 강소특구에 비해 5억 1,500만원이 많은 23억 1,500만원이 4개 강소특구에 지원될 계획임.

[2025년도 강소특구육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 강소특구 육성<br>- 계속과제(14개 강소특구×1,600백만원×12/12월) | ○ 강소특구 육성<br>- 계속과제(10개 강소특구×1,800백만원×12/12월<br>+ 4개 우수 강소특구 x 2,315백만원x12/12월)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통합 시행계획 수립부터 협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협약이 6월 또는 7월에 체결되어 과제의 종료시점이 과도하게 차년도로 넘어가는 인천 및 강원 강소특구는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공통수단 지원사업과 특화수단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강소특구별로 예산이 교부되고 과제는 단년도(12개월)를 연구기간으로 하여 수행됨.

과제수행까지 준비절차를 살펴보면, 통합 시행계획을 1월에 수립하고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토 후 특구별 시행계획 승인 및 공고가 3월에 마무리 되고, 이후 공통수단 지원사업은 6월에, 특화수단 지원사업은 3월 또는 7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1년간 진행되는 구조임.

[강소특구육성 내역사업의 과제선정 및 수행절차]

| 구분 | | 과제 수행까지 준비 절차 |
|---|---|---|
| 공통수단 지원사업 | | 통합 시행계획 수립(1월) → 지자체 심의위원회 개최(2월) → 특구별 시행계획 승인 및 공고(3월) → 통합평가(4~5월) → **협약(6월) → 연구수행(차년도 5월까지)** |
| 특화수단 지원사업 | 2019, 2020년 지정 12개 강소특구 | 통합 시행계획 수립(1월) → 지자체 심의위원회 개최(2월) → 특구별 시행계획 승인 및 공고(3월 초) → 특화수단 검토위원회(3월 중순) → **협약(3월) → 연구수행(차년도 2월까지)** |
| | 2022년 지정 2개 강소특구 | 통합 시행계획 수립(1월) → 지자체 심의위원회 개최(2월) → 특구별 시행계획 승인 및 공고(3월 초) → 특화수단 검토위원회(7월) → **협약(7월) → 연구수행(차년도 6월까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과제 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60]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직전년도 협약체결을 준비’ 할 것을 전제로 단년도 과제에 대해 12개월분 예산을 편성[61]하도록 명시한 부분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60)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으로,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및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함.

6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이처럼 협약체결이 매년도 3~7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4년도 9월 기준 연구수행기관은 372억 5,100만원의 교부현액 중 72억 8,200만원(19.5%)만 최종집행된 상황임.

[2024년 강소특구육성 내역사업 최종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전문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연구수행기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 | | | | | | |
|---|---|---|---|---|---|---|---|---|---|---|---|
| 본예산 (A) | 집행액 | 교부액 | 집행액 | 교부액 (B) | 전년도 이월액 (C) | 매칭 (D) | 교부 현액 (E= B+C+D) | 최종 집행액 (E) | 이월액 | 불용액 | 최종 집행률 (E/D) |
| 22,400 | 20,789 | 20,789 | 20,789 | 20,789 | 198 | 16,264 | 37,251 | 7,282 | (추후 결정) | (추후 결정) | 19.5 |

주) 연구수행기관 최종집행률은 2024.9월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소특구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자체 심의를 조기에 추진하고 검토 및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협약이 6월 또는 7월에 체결되어 과제의 종료시점이 과도하게 차년도로 넘어가는 인천 및 강원 강소특구는 '특화수단 검토위원회'가 7월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특구의 경우에도 통합 시행계획 수립부터 협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수행하는 등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 출>

# 14.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신규): 면밀한 수요조사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가. 개 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석, 박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건비 기본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6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62]

[2025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 - | 60,000 | 60,000 | 순증 |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의 연구비 중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는데,[63]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의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64] 이에 보다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신설되었음.

이 사업은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1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의

6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1731-301)(미래인재정책국)

6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64) 예를 들어, A 연구자 및 학생연구원이 5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고 B 연구자 및 학생연구원이 1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한 경우, 과제별 연구비 각각에 대하여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A 연구자와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이 보다 받은 인건비를 수령하게 됨.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 당해 수준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급수준의 전반적 상향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세부편성계획을 보면 36개 대학을 대상으로 1개 학교당 16억 6,700만원의 평균단가를 예상하여 총 600억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추진(안)]

□ 사업 개요
 ㅇ (목적) 이공계 대학원생 경제적 안전망 구축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ㅇ (법령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등
 ㅇ (기간 / 수행기관) '25년 ~ '33년 / 한국연구재단

□ 2025년도 계획(안)
 ㅇ (지원 대학) 기관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 ① 대학 단위 기관계정 운영, ② 소속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운용 계획 수립 必
 **ㅇ (지원 학생)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
 *** 정부 R&D·지자체 R&D·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내국인·외국인 학생 O**
 **R&D 미참여 학생 및 비전일제(part-time) 학생 X**
 *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10만원
 ㅇ (운영 체계)
  - (정부) 대학에 재정지원금 지급 및 학생인건비 운용 실태 점검
  - (대학) 대학 기관계정 필수 설치·운용(하위 학과 계정 설치·운용 방식 자율 결정),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운용 정보 통합관리
 ㅇ (실태점검)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의 유지·상승 여부, 기본 지급액 보장 여부, 지속가능한 학생인건비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점검

□ 2025년도 예산안 세부편성계획
 ㅇ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0,000백만원
 -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신규) 지원 대학 36개교 × 1,6667백만원 × 12/12개월 = 60,000 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이 사업에 대한 정부안 600억원은 연구자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및 연구현장의 형평성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최종적인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학생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 수주에 따라 받는 인건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

구체적으로 2025년의 경우 대학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지급 총액과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액을 비교해 대학별 지원 규모를 추계하고,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미만의 수급자가 해당 수준까지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참여대학 내 학생별 최저지급액 부족분 전액을 메꾸어주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0월 현재, 이 사업 예산을 보조받기를 원하는 대학들로부터의 신청 수요 및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현황 등 연구생활장려금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에 따라 지원범위가 구체화될 예정임에 따라 실제 지원하는 대학 수 및 대학당 지원 평균단가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다음으로, 추진(안)을 살펴보면 정부 R&D·지자체 R&D·민간 R&D 등 연구 활동 중인 내국인·외국인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전일제'의 시간상 개념, '연구활동 중'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및 '민간 R&D'에 대한 지원범위가 다소 구체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연구현장에서는 국가 R&D에 활발히 참여하여 인건비를 확보해 온 연구자들은 연구생활장려금 관련 재정지원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등 수주 과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처럼 사업 수혜대상 범위 및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단 2025년도 예산안은 36개의 지원대학을 기준으로 16억 6,700만원을 평균단가로 하여 총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65) 석사과정 학생을 예로 들면, 학생인건비로 10만원을 받고 있는 석사과정생은 이 제도를 통해 7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이미 학생인건비로 받고 있는 석사과정생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후자의 학생들로부터 역차별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정부안 600억원은 연구자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및 연구현장의 형평성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최종적인 계획(11~12월 예정)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편사업특별회계】

### <세 출>

# 15.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우편요금 인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예탁 규모의 적정수준으로 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2025년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상세입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잔여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97억 7,600만원(26.2%) 증액된 1조 1,80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66]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탁 | 920,775 | 1,180,551 | 259,776 | 28.2 |

2025년도 예산안 1조 1,805억 5,100만원은 2025년도 세입예상액 5조 6,381억 2,700만원에서 세출예상액 4조 4,575억 7,600만원을 뺀 금액임.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예산안 세부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2025년 |
|---|
| ○ 기금예탁금(480-03) : 1,180,551백만원<br>가. 2025년 세입(e) - 2025년 세출(e)<br>・ 2025 세입(e) : 5,638,127백만원<br>・ 2025 세출(e) : 4,457,576백만원 |

자료: 우정사업본부

66) 우편사업특별회계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811-881)(우정사업본부)

## 나. 검토의견

**2025년 우편요금 인상의 불확실성, 연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저조한 집행률, 우편사업 수지의 적자 실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의 예탁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2025년 공자기금 예탁규모를 1조 1,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차년도 우편요금 인상[67]에 따른 추가수입이 예상되어 이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임.

실제로 우정사업본부는 2025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편사업 자체수입을 2024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수입은 약 2,917억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5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수입(자체수입)]

| 구분 | 2023결산 | 2024예산 본예산(A) | 2025예산안 | | 증 감 | |
|---|---|---|---|---|---|---|
| | | | 요구 | 조정(B) | (B-A) | % |
| 43 우정사업수입 | 3,015,478 | 3,260,183 | 3,384,688 | 3,384,688 | 124,505 | 3.8 |
| 우편사업수입 (43-431) | 3,015,478 | 3,260,183 | 3,338,888 | 3,338,888 | 78,705 | 2.4 |
| 2025년 예산안 세부내역 | | | ■ 우편영업수입 : 3,047,183백만원(전년대비 5.6% 매출 감소)<br>■ 목표추가수입 : **291,705백만원(우편요금 인상 등 추가 수입)** | | | |
| 수탁영업수입 (43-435) | - | - | 45,800 | 45,800 | 45,800 | 순증 |

자료: 우정사업본부

67) 이는 2024년 기준 통상우편물요금 400~450원 수준에서 약 50원 내외를 증가시키는 것임.

<참고: 2021.9.1.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 통상우편물요금>

| 구분 | 내용 | 중량 | 보통우편요금 |
|---|---|---|---|
| 통상우편물 | 규격우편물 | 5g까지 | 400원 |
| | | 5g초과 25g까지 | 430원 |
| | | 25g초과 50g까지 | 450원 |
| | 규격외우편물 | 50g까지 | 520월 |
| | | 50g초과 1kg까지 | 50g마다 120원 가산 |
| | | 1kg초과 2kg까지 | 200g마다 120원 가산 |
| | | 2kg초과 6kg까지 | 1kg마다 400원 가산 |

자료: 우정사업본부

그러나 우편요금 인상은 2024년에도 추진하였으나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25년에도 불확실한 상황으로서 목표 추가수입이 수납되지 못한다면 2025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공자기금 예탁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한편, 2019~2023년 공자기금 예탁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만 80%를 초과하였고, 그 외 2019년에는 전액 불용하고 2020년에는 11.4%, 2023년에는 45.6%로 저조함.

2024년의 경우에도 8월 기준 800억원을 예탁하였으나 연말까지 2,200억원을 추가로 예탁하는 것 외에 별도의 예탁 계획이 없어, 최종적인 공자기금으로의 예탁은 3,000억원 내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68)]

[2019~2024년 공자기금 예탁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B) | 집행액 (C) | 집행률 (C/A) | 집행률 (C/B)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 증감액 | 추경(A) | | | | | | | |
| 2019 | 763,179 | - | 763,179 | △81,137 | 682,042 | - | - | - | - | 682,042 |
| 2020 | 301,145 | 59,249 | 360,394 | △8,500 | 351,894 | 40,000 | 11.4 | 11.4 | - | 311,894 |
| 2021 | 202,957 | - | 202,957 | | 202,957 | 180,000 | 88.7 | 88.7 | - | 22,957 |
| 2022 | 364,898 | 5,584 | 370,482 | | 370,482 | 300,000 | 81.0 | 81.0 | - | 70,482 |
| 2023 | 942,893 | - | 942,893 | | 942,893 | 430,000 | 45.6 | 45.6 | - | 512,893 |
| 2024 | 920,775 | - | 920,775 | | 920,775 | 80,000 | 8.7 | 8.7 | (추후 결정) | (추후 결정) |

주) 2024년은 8월 말 기준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또한 우편사업 수지를 고려할 때에도 2025년도 공자기금 예탁규모의 확대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편사업 수지는 코로나19여파로 2022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우편 이용이 줄고 인건비 및 유가 등 우편배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2023년 1,572억원 적자에서 2024년 1,900억원(예상), 2025년 2,000억원을 초과(예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69)]

68)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수지에 따라 3,000억원 외에 추가로 예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2024.10. 기준으로는 불확실한 상황임.

69) 2022년 25억여 통이었던 통상 우편 물량은 2023년 23억 여통, 2024년 21억여 통으로 줄어들다가 2025년 20억여 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4년간 동결된 우편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우편 적자를 예금 및 보험 등 사업 수익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에서,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은 우편사업 수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로 계상되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러한 예수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됨.

그러나 우편사업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계획 규모 대비 실제 예탁 규모가 축소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재정융자 및 국채 발행 등 거시적인 측면에 순차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2019~2024년 연례적으로 예탁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2025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편성되었으나, 차년도 우편요금 인상의 불확실성 및 우편수지 적자를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예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이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2025년 우편요금 인상의 불확실성, 연례적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저조한 집행률, 우편사업 수지의 적자 실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편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의 예탁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

### <지 출>

## 16. AI 혁신펀드 사업(신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상향조정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유망 기술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AI 기술을 접목하는 SaaS 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45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70]

[2025년도 AI 혁신펀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AI 혁신펀드 | - | - | 45,000 | 45,000 | 순증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정부 출자비율을 50%로 하여 펀드 결성 목표액을 900억원으로 설정하고, 존속기간은 8년이며, 생성형 AI,[71] AI 기반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AI 유망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하는 SaaS 기업에 약정 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AI 혁신펀드 조성(안) 주요내용]

- 펀드 조성규모 : 900억원(정부 450억원, 민간 45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 생성형 AI, AI기반 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등 AI 유망 기술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활용하는 SaaS 기업에 약정총액의 50% 이상 투자

70) 정보통신진흥기금(지출)-AI 혁신펀드(2602-334)(인공지능기반책관)

71) 생성형 AI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챗GPT, 챗봇 등이 있음.

- 존속/투자기간 : 8년/4년
- 주요 내용

| 출자예산 | 결성 목표액 | 정부 출자비율 | 선정 운용사수 |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
|---|---|---|---|---|
| 450억원 | 900억원 | 50% | 3개 | 300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에 450억원을 출자하고, 선정된 운용사 3곳은 민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하여 자펀드를 결성하여 AI 및 SaaS 혁신기업에[72] 투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됨.

[AI 혁신펀드 사업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를 접목하는 SaaS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어 펀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2024년 신규사업인 'SaaS 혁신펀드' 사업을 이 사업에 통합하여 확대·개편하려는 계획임.[73][74]

72) SaaS(Software as a Service)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를 기기에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제공 수단을 의미함.

73) <SaaS 혁신펀드의 주요내용(2024년 확정예산 기준)>

- 펀드 조성규모 : 333억원(정부 200억원, 민간 133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 SaaS 제공 또는 SaaS로 전환 중인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국내 IaaS 기반 SaaS 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8년/4년
- 주요 내용

| 출자예산 | 결성 목표액 | 정부 출자비율 | 선정 운용사수 |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
|---|---|---|---|---|
| 200억원 | 최소 333억원 이상 | 60% 이하 | 2개 | 100억원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aS 혁신펀드는 2024.4.15.~30. 운용사 2곳 모집공고를 하여 6월 26일에 현대투자파트너스와 인탑스인베스트먼트 2곳의 운용사가 선정완료 되었음. 이후 1차 결성시한(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이내)인 2024년 9월 26일까지 각각 177억원, 200억원으로 자펀드가 결성되었고, 투자기간을 4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10월 현재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SaaS 혁신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결성 현황]

| 운용사 | 자펀드 결성 금액 | 결성일 |
|---|---|---|
| 현대투자파트너스 | 177억원(정부 100억원, 민간 77억원) | 9월 25일 |
| 인탑스인베스트먼트 | 200억원(정부 100억원, 민간 100억원) | 9월 26일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검토의견

**첫째, AI 혁신펀드가 AI 분야 중에서도 도전적 사고를 가진 초기 AI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된 AI분야 특화 펀드임을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펀드 결성 시 '결성액 대비 주목적 투자의무금액 비율', 즉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펀드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또한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주된 취지가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목적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모태펀드 출자비율보다는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AI 혁신펀드는 AI 유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및 AI 기술을 접목·활용하는 SaaS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AI 분야 중에서도 도전적 사고를 가진 초기 AI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된 AI분야 특화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자비율과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50%로 동일함.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의 혁신산업펀드와 달리 AI 혁신펀드가 AI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용펀드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산업펀드는 신산업·전략산업(반도체, AI 포함) 등 아주 폭넓은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60%로서 AI 혁신펀드보다 높게

74) 2024년 SaaS 혁신펀드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200억원임.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AI 혁신펀드가 도전적 사고를 가진 유니콘 AI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양한 계정 중 투자분야가 비교적 한정되는 관광계정(관광기업 육성), 해양계정(해양 신산업), 환경계정(그린스타트업, 사업화, 스케일업), 교육계정(대학창업)의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65~80%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aaS 혁신펀드가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혁신산업펀드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중복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시 투자처를 보다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대한 운용사 3곳 모집공고를 2025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6~7월에 운용사 선정이 완료되면 9~10월 내에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

또한 의료 영상처리, 제조 공정 최적화, 품질 검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SaaS 기반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SaaS 혁신펀드가 1차 결성시한 이내에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므로, 투자 관련업계 또한 민간수요가 충분하고 시장전망도 밝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SaaS 펀드가 2024년 9월에 결성되어 10월부터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원회의 혁신산업펀드는 2024년부터 환경·AI 분야를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운용사는 우선하여 운용사로 선정하도록 하여 환경 및 AI 분야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는데,[75] 이는 AI 혁신펀드의 지원범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에 AI 혁신펀드에 대한 자펀드가 결성될 경우 SaaS 혁신펀드의 투자 현황 및 혁신산업펀드와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75)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 2024년도「혁신성장펀드」조성계획, 2024.3.6.

# 방송통신위원회

# Ⅰ. 개 관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06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2억원(△29.4%) 감소함. 예산은 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0.6%) 증가한 반면, 기금은 8,7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4억원(△30.1%) 감소함.[1)]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308 | 310 | 2 | 0.6 |
| 기 금 | 12,527 | 8,753 | △3,774 | △30.1 |
| 총수입 | 12,835 | 9,063 | △3,772 | △29.4 |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2,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0.7%) 감소함. 예산은 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2.9%) 증가한 반면, 기금은 1,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1.5%) 감소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491 | 505 | 14 | 2.9 |
| 기 금 | 2,011 | 1,980 | △31 | △1.5 |
| 총지출 | 2,503 | 2,485 | △18 | △0.7 |

## 나. 예산안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0.6%) 증가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308 | 310 | 2 | 0.6 |
| 합 계 | 308 | 310 | 2 | 0.6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원(2.9%) 증가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491 | 505 | 14 | 2.9 |
| 합 계 | 491 | 505 | 14 | 2.9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개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안은 8,7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74억원(△30.1%) 감소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방송통신발전기금 | 12,527 | 12,527 | 8,753 | △3,774 | △30.1 |
| 합 계 | 12,527 | 12,527 | 8,753 | △3,774 | △30.1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개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출계획안은 1,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1.5%) 감소함.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방송통신발전기금 | 2,011 | 2,011 | 1,980 | △31 | △1.5 |
| 합 계 | 2,011 | 2,011 | 1,980 | △31 | △1.5 |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 · 과기정통부 공동관리기금으로 수입은 통합하여 작성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2억 9,8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은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통해 생성형 AI 부작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
| 1 |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 298 |
| 총지출 | | 298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법정위원회운영’ 사업,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사업 등 총 2개임.[3)]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법정위원회운영 | 144 | 202 | 58 | 40.3 |
| [방송통신발전기금] | | | | | |
| 2 |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 202 | 452 | 250 | 123.8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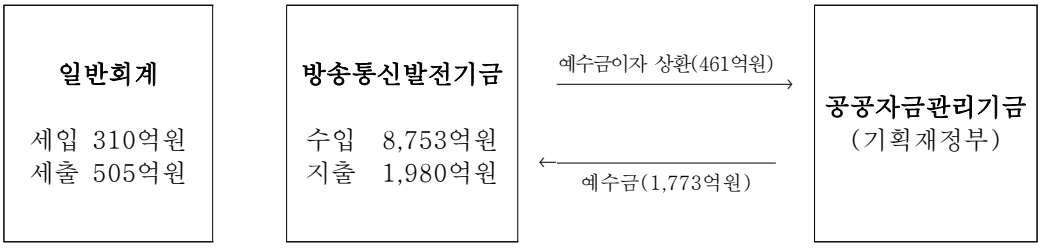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773억원을 예수 받고, 예수에 따른 이자를 461억원 상환함.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지출은 총 8,753억원임

##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제고 등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방송광고 지속성장 등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성 향상, 전국민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 UHD 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해 보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KBS-EBS 양사 간 갈등을 신속히 조율하여 UHD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따른 UHD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노후화된 UHD 방송 제작장비 교체에 연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사업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2025년에 직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10월 기준 구체적인 개최 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5,240만원이 기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2141-301)’ 사업에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5년에 지원하는 8,000만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출>

## 1.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KBS-EBS 간 갈등 해소를 통한 UHD 방송 제작장비 교체 비용의 매몰화 방지 필요

### 가. 개 요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UHD[4]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UHD 방송 제작장비의 보강·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8.5%) 감액된 1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5년도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EBS 방송인프라 개선 | 1,322 | 1,210 | △112 | △8.5 |

그러나 2025년 예산안 세부계획을 보면, UHD 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없으며, UHD 방송 제작을 위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카메라 등 방송제작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6억 5,500만원과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5억 5,500만원으로만 구성됨.

---

4) UHD(Ultra High Definition)는 초고선명도라고 불리며, 일반적인 고선명도를 의미하는 HD(High Definition)보다 선명한 초고화질 영상과 입체음향을 제공하는 방송영상을 제공함. 화면해상도에 따라 4K(3840×2160) UHD와 8K(7860×4320) UHD로 구분됨.

5) 일반회계 -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방송정책국)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민간자본보조(320-07) : 1,210,000천원<br>가. 방송제작시스템 (655,000천원)<br>· 노후 장비 제작시설 전환 및 카메라 등 제작장비 중점 투자<br>: 47개 장비×13,940천원=655,000천원<br>나. 네트워크시스템 (555,000천원)<br>· 노후 파일 기반 비선형 네트워크 장비 교체<br>: 37개 장비×15,000천원=555,000천원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KBS-EBS 양사 간 갈등을 신속히 조율하여 UHD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따른 UHD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노후화된 UHD 방송 제작장비 교체에 연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1~2022년 예산으로 UHD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는 「방송법」 제54조[6]의 '송신지원'의 범위에 대한 KBS와 EBS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7] 2024.10. 기준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의 갈등 중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UHD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음.

[2021~2022년 UHD 방송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 연도 | 구분 | 편성 내용 | 사용계획액 | 집행금액 | 집행률 |
|---|---|---|---|---|---|
| 2021 | UHD 방송 관련 디지털 송출시스템 구축 예산 | UHD 송출 SERVER SYSTEM 등 2개 장비 | 100 | - | - |
| 2022 | | WAVEFORM MONITOR 등 5개 장비 × 30백만원 | 150 | - |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6) 「방송법」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지원

7) 「방송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송신지원'에 대하여, KBS는 1,000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EBS의 UHD 송신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EBS는 비용에 무관히 모든 송신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UHD 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은 지연되고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UHD 방송제작·네트워크 시스템의 교체 작업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2020.12.)[8]에 따라 2027년까지 UHD 방송인프라 전환을 완료하고 지상파 HD 방송 종료시점까지 UHD 방송 제작환경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방송법」 제54조를 둘러싼 양사 간 이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EBS의 UHD 도입은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임.

[UHD 방송 인프라 구축 계획]

| 구분 | 2016 ~ 2020 | 2021 ~ 2024 | 2025 ~ 2027 |
|---|---|---|---|
| 목표 | ▪ 제작 기반 시설 마련 (전환율 41.1%) | ▪ 방송 제작시설 단계적 UHD 전환 (전환율 61.6%) | ▪ UHD 전환 완료 (전환율 100%) |
| 내용 | ▪ UHD 송출 시스템 구축 완료<br>▪ UHD 제작·편집·네트워크 시스템 구축<br>▪ 편성 초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야외촬영제작환경여건 마련 | ▪ UHD 제작·편집·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계속)<br>▪ UHD 콘텐츠 완성제작을 위해 스튜디오 및 종합편집실 전환(계속) | ▪ UHD 네트워크 시스템 전환 완료 (계속)<br>▪ UHD 중계차 도입<br>▪ TV 스튜디오 전환 완료<br>▪ 종합편집실 전환 완료 |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참고로, EBS는 UHD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UHD 디지털 방송 송출시스템의 도입이 지연되어 2023년까지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 110편을 UHD로는 한 편도 송출하지 못하고, 모두 HD로만 송출하고 있음.

[EBS의 연도별 UHD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내역]

(단위 : 백만원, 편)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제작비 | 926 | 2,878 | 2,391 | 1,387 | 1,255 | 750 | 1,547 | 350 | 11,484 |
| 제작편수 | 29 | 22 | 16 | 9 | 11 | 8 | 12 | 3 | 110 |
| HD 방송편수 | 29 | 22 | 16 | 9 | 11 | 8 | 12 | 3 | 110 |
| UHD 방송편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2025년 예산안에 UHD 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해 보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KBS-EBS 양사 간 갈등을 신속히 조율하여 빠른 시간 내에 UHD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따른 UHD 전환 목표를 달성하고, 노후화된 UHD 방송 제작장비 교체에 연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 과제번호 2-④ 'EBS UHD 방송 송출 지원', 주관부처 - 방통위

## 【방송통신발전기금】

### <지 출>

## 2.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실집행된 임차료 평균단가를 고려한 임차료 예산 조정 필요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은 방송통신 규제 분야 고위급 면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인프라 강화와 규제 분야 국제 현안 공조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5년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2,148 | 2,148 | 2,143 | △5 | △0.2 |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 274 | 274 | 274 | - | -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의 2025년 계획안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방송통신 국외 공무출장 차량 및 장소 임차료가 8,320만원 편성되어 있음.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목 | 보조세목 | 세부산출 내역 | 2025 계획안 |
|---|---|---|---|
| 사업운영비 | 일반수용비 | - 국외공무출장 바인더 인쇄, 국외 방문기관 기념품 구매, 방송통신 국제협력 브로셔 제작 등 | 15.7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국외출장 현지 통신비 등 | 1.7 |

9)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135-302)(기획조정관)

(단위: 백만원)

| 목 | 보조세목 | 세부산출 내역 | 2025 계획안 |
|---|---|---|---|
| | **임차료** | **- 방송통신 국외 공무출장 차량/ 장소 임차 등** | **83.2** |
| | 일반용역비 | - 방송통신국제협력 인프라강화 지원용역<br>- 인프라강화 동향조사 용역 | 95.0 |
| | 관리용역비 | - 통합 유지보수 | 2.3 |
| 여비 | 국내여비 | - 국외출장 시 지역이동을 위한 국내출장비 등 | 3.0 |
| | 국외여비 | - 방송통신 국외 공무출장 고위급 면담 지원 등 | 64.1 |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 방송통신 국외 공무출장 고위급 면담 및 간담회 등 | 9.0 |
| 계 | | | 274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나. 검토의견

**국외공무출장 시 실제 집행되는 임차료의 평균단가가 예산편성 시 사용하는 평균단가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임차료 중 일정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1,200만원(회당 평균비용)×7회(공무출장 횟수)’를 가정하여 약 8,400만원을 연례적으로 임차료로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임차료 상세 집행내역을 보면, 미국(LA)을 제외하고는 회당 차량임차 등에 소요되는 집행단가가 1,200만원 미만임.

[2023~2024년 임차료 상세 집행내역]

(단위: 원)

| 구분 | 집행내역 | 출장지 | 집행금액 | 비고 |
|---|---|---|---|---|
| 2023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공무출장 참석 차량 임차료 | 미국(LA) | 14,720,000 | 차량 |
| | MWC 2023 참관 및 방송통신 기관 면단 지원 출장 차량 임차 수수료 지급 | 스페인 | 2,508,000 | 차량 |
| | 2023년 사무용 전산기기 및 통합출력관리시스템 임차료 | - | 906,000 | 공통 |
| 소계 | | | 18,134,000 | - |
| 2024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공무출장 차량 임차료 | 미국(LA/LAS) | 20,196,000 | 차량 |
|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벨기에 공무출장 차량 임차료 | 벨기에(브뤼셀)/모로코(라밧) | 11,653,840 | 차량 |

(단위: 원)

| 구분 | 집행내역 | 출장지 | 집행금액 | 비고 |
|---|---|---|---|---|
|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 공무출장 차량 임차료 | 중국(상하이) | 3,388,000 | 차량 |
|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 공무출장 회의장 임차료 | | 462,000 | 장소 |
|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지원사업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 회의실 임차비 | - | 410,000 | 장소 |
| |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공무출장 회의실 임차료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618,081 | 장소 |
|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공무출장 차량 임차료 | | 5,317,620 | 차량 |
| | 2024년 사무용 전산기기 및 통합출력관리시스템 임차료 | - | 680,363 | 공통 |
| 소 계 | | | 42,725,904 |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코로나19 및 상임위원 미구성으로 인해 해외국가와의 원활한 공무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020년부터 연례적으로 임차료의 집행률이 저조함.

[2020~2024년 임차료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금액 | 집행액 | 집행률 |
|---|---|---|---|
| 2020년 | 84 | 2.3 | 2.8 |
| 2021년 | 84 | 1 | 1.1 |
| 2022년 | 85 | 1 | 0.9 |
| 2023년 | 84 | 18 | 21.6 |
| 2024년 9월 말 기준 | 83.2 | 42.7 | 51.4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구성 지연 등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공무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에는 상임위원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공무출장을 수행할 계획이므로 임차료 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무출장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 2회 총 1,723만원으로 평균 임차료 단가는 861만원 수준이고, 2024년 4회 총 4,164만원으로 평균 1,041만원 수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산출시 예측하고 있는 회당 평균단가 1,200만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임차료 8,400만원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는 회당 평균단가를 1,0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공무출장 횟수가 약 8.4회일 때 가능한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7회에 비해 다소 과다한 횟수로 보여짐.[10)]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평균 실제 집행단가 및 공무출장 실제 진행횟수 등에 근거하여 2025년 임차료 예산안을 일정 수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실제로 2023년은 2회, 2024년은 9월 말까지 4회의 공무출장이 이루어짐.

## 3.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안 모색 필요 등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사업은 허위정보 대응 역량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100만원(137.2%)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5년도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 1,027 | 1,027 | 653 | △374 | △36.4 |
| 허위정보 대응역량 강화 | 670 | 670 | 475 | △195 | △29.1 |
|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 59 | 59 | 140 | 81 | 137.2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2024년 OECD ‘정보 무결성’ 허브 기여금[12] 4,400만원을 지급(예정)하게 되면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정보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겨 2025년 계획안으로 반영된 것임.

2024년에는 이 사업에 OECD ‘정보 무결성’ 허브 기여금 4,400만원과 허위정보 대응 대국민 인식제고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여금 4,400만원은 9월 말 기준 미집행 상태이나 연말까지 집행예정임.

11) 방송통신발전기금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12) ‘정보 무결성’ 허브는 허위조작정보 예방과 대응에 관한 OECD 전문가 그룹으로, 허브 기여금은 한국 등 42개국 고위 관료가 참여한 2022년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간 국제협력 제안으로 만들어진 기여금임.

[허위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 및 인식제고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 | 2025년 |
|---|---|
| ○ 국제부담금(340-02) : 44,000천원<br>· 국제협력 강화 : 44,000천원×1식=44,000천원<br>○ 민간경상보조(320-01) : 15,000천원<br>· 대국민 인식제고 : 15,000천원×1식=15,000천원 | ○ 민간경상보조(320-01) : 140,000천원<br>· 국제컨퍼런스 개최 : 140,000천원×1식=140,000천원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나. 검토의견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2025년에 직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 10월 기준 컨퍼런스 개최의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최 계획이 없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방안을 신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국제협력 활동 확대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직접 개최하기 위해 정책담당자 등 연사초청, 회의장 임차료 및 행사 운영비 등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OECD가 2021~2023년까지 개최한 총 5차례 회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석한 바 없음.

[OECD 허위조작정보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 구분 | 개최 시기 | 논의 주제 | 주요 내용 |
|---|---|---|---|
| 회의 1 | 2021년 7월 | 폭로 및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는 국가별 접근 방식에서 배우기 | 다양한 정책 관점을 가진 정부 관료, 학자 및 비정부기구 대표가 모여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옵션을 모색 |
| 회의 2 | 2021년 9월 | 정책 프레임워크를 향하여 |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옵션과 도구에 대해 논의 |
| 회의 3 | 2022년 3월 | 정보 및 민주주의 포럼과 협력한 전문가 그룹 회의 |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보고 규제 관련 질문과 대응을 검토 |
| 회의 4 | 2023년 3월 | 이론에서 실제까지, 리소스 허브 출범 후의 성찰 | 정부가 정보 무결성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이니셔티브를 논의 |

| 구분 | 개최 시기 | 논의 주제 | 주요 내용 |
|---|---|---|---|
| 회의 5 | 2023년 6월 | 전문가 그룹의 첫 번째 대면 회의 | OECD 회원국과 파트너 간의 참여 촉진 및 네트워크 강화. 비정부 파트너 및 비 OECD 회원국 정부와 리소스 허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2024년 10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의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경우 영향력 있는 전문가 등 연사초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 예산안으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 비용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 초청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국제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효과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신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 컨퍼런스의 목적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당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수행할 계획임.

그러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므로 국제 컨퍼런스 개최의 필요성과 업무성격이 다소 무관한 측면이 있음.[13)]

따라서 국제 컨퍼런스의 목적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당해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 4.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신규): 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과 중복 여부 검토 필요

## 가. 개 요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은 생성형AI 서비스 이용자가 신고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2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5년도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 - | - | 298 | 298 | 순증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은 플랫폼 개발 1억원, 이용자 신고내역 확인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원 인건비 및 자료 제작비 1억 4,560만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5,240만원으로 계획됨.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298백만원
-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발: 100백만원**
- **이용자 신고내역 확인 및 정보제공: 145.6백만원**
  - 신고내역 확인 및 자료구매 : 85.6백만원
    * 책임연구원 1명×7.2백만원×9개월 = 64.8백만원
    * AI 서비스 이용료 및 자료 구매 등 = 20.8백만원
  -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 : 60백만원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52.4백만원**
    * 책임연구원 1명×7.2백만원×9개월×50% = 32.4백만원
    * 플랫폼 유지보수 비용 : 1식×20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4) 방송통신발전기금 -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3251-321)(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나. 검토의견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5,240만원이 기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2141-301)’ 사업에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5년에 지원하는 8,000만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을 이미 운영 중인 ‘와이즈유저’라는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수행할 계획임.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는 통신서비스 피해에 대한 예방 가이드, 계층별 통신서비스 교육, 통신요금 및 단말기 관련 정보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로서,

2009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구축하였으며, 2010년부터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2141-301)’ 사업[15]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우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16]

이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2141-301)’ 세부사업에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운영비 1,000만원과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2025년에 편성하였음.[17]

---

15)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내역사업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민간보조사업자로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1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17)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13억 7,600만원>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신규사업인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별도로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억원과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5,240만원을 2025년도에 신규 편성하였음.[18)]

[신규 플랫폼 개발의 구체적인 형태(빨간부분 배너 생성)]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즉, 이 사업이 신설됨으로써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비용이 기존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2141-301)' 사업과 신설되는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사업 두 세부사업 모두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지원될 예정임.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 816백만원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 20백만원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 786백만원
  ·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운영 : 10백만원**
■ 방송통신서비스 동향 조사 분석 : 60백만원
  · 이용자보호 국내외 동향 및 이슈조사 : 40백만원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20백만원
■ 이용자 피해예방 및 보호 기반 강화 : 406백만원
  ·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 운영지원 : 336백만원
  · **방송통신 이용자전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70백만원**
■ 과금검증체계 관리 및 운영 : 94백만원
  ·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및 정보제공 : 44백만원
  · 과금검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50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8) 1차년도에 시스템 구축비를 편성하고 차년도부터 유지보수 비용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배너를 생성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실시간 신고 및 접수, 민원 이력관리, 다양한 피해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의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구축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한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5,240만원이 기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2141-301)’ 사업에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025년에 지원하는 8,000만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이미 구축되어 AI-Hub에 공개된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검토

##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은 청각장애인의 신규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음성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의 음성을 자막 및 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7억원이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20,176 | 20,176 | 21,870 | 1,694 | 8.4 |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 1,700 | 1,700 | 1,700 | - | -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안 17억원은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 12억원,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고도화 2억원, 시제품 검증용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3억원으로 구성됨.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내역: (’24) 1,700백만원→ (’25) (1,700백만원)
-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 및 수어 번역 병렬 말뭉치 확대구축* 및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고도화** 비용
  * 실시간 자막에 대한 수어 번역률(BLEU 스코어) 향상을 위한 학습데이터 확대구축
  ** 음성-학습데이터 추가 구축 및 음성인식율 고도화, 앱 2종에 대한 유지보수
- (산출)
  ■ 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 : 1,200백만원
  ■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고도화 : 200백만원
  ■ 시제품 검증용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300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9) 방송통신발전기금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3132-308)(방송기반국)

이 중 고도화 예산 14억원은 자막-수어 변환 학습데이터 및 음성-자막 변환 학습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앱 2종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함.

## 나. 검토의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구축되어 AI-Hub에 공개되어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규 제작을 예상하고 편성한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고도화 예산 중 일부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2023년까지 약 700종의 데이터를 AI hub에 공개하였고, 아래 7개 데이터는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음성-자막 변환 학습데이터 사례]

| 데이터셋 명 | 유형 | 구축기관 | 구축 연도 |
|---|---|---|---|
| 자유대화 음성 (일반남녀) | 오디오, 텍스트 | NHN다이퀘스트 | 2020년 |
| 자유대화 음성 (노인남녀) | 오디오, 텍스트 | NHN다이퀘스트 | 2020년 |
| 자유대화 음성 (소아남여, 유아 등 혼합) | 오디오, 텍스트 | NHN다이퀘스트 | 2020년 |
| 한국인 대화 음성 | 오디오, 텍스트 | 솔루게이트 | 2020년 |
| 한국인 외래어 발화 | 오디오, 텍스트 | NHN다이퀘스트 | 2020년 |
| 방송 콘텐츠 대화체 음성인식 데이터 | 오디오, 텍스트 | ㈜솔트룩스 | 2021년 |
| 방송 콘텐츠 대화체 음성인식 데이터 | 오디오, 텍스트 | ㈜솔트룩스 | 2022년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및 AI-Hub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자막 변환 학습데이터는 이미 상당 수준 고도화된 상태로서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데이터 분류 및 정제작업, 검수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AI-Hub 내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며, 이를 신규 제작과 비교할 때 비용 측면에서 약 7~10% 가량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 당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타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사업과 연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이미 제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임.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AI-Hub 내 이미 공개된 학습데이터를 이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예산 중 일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자력안전위원회

# Ⅰ. 개 관

##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억원(10.8%) 증가함. 예산은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17.8%) 증가하고, 기금은 1,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원(10.8%) 증가함.[1)]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예 산 | 18 | 22 | 3 | 17.8 |
| 기 금 | 1,462 | 1,619 | 157 | 10.8 |
| 총수입 | 1,480 | 1,641 | 161 | 10.8 |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2,7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원(6.1%) 증가함. 예산은 1,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원(9.3%) 증가하고, 기금은 1,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억원(2.7%) 증가함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예 산 | 1,360 | 1,488 | 127 | 9.3 |
| 기 금 | 1,248 | 1,281 | 33 | 2.7 |
| 총지출 | 2,609 | 2,769 | 160 | 6.1 |

## 나. 예산안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17.8%) 증가함.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18 | 22 | 3 | 17.8 |
| 합 계 | 18 | 22 | 3 | 17.8 |

주) 총계 기준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억원(9.3%) 증가함.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1,360 | 1,488 | 127 | 9.3 |
| 합 계 | 1,360 | 1,488 | 127 | 9.3 |

주) 총계 기준

##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3,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원(10.8%) 증가함.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3,430 | 3,430 | 3,801 | 371 | 10.8 |
| 합 계 | 3,430 | 3,430 | 3,801 | 371 | 10.8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64억 4,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은 미래 신기술 및 안전현안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규제 현안분야 중장기 로드맵 및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건설, 운영, 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 2,925 |
| 2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 3,520 |
| 총지출 | | 6,445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사업,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사업 등 총 2개임.[3)]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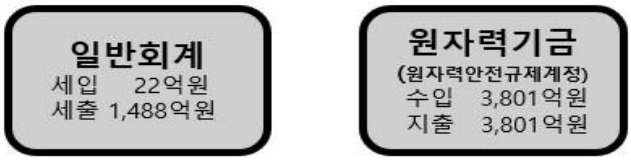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 6,780 | 11,950 | 5,170 | 76.3 |
| 2 |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 1,500 | 2,000 | 500 | 33.3 |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3.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내부 거래는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 4.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계적으로 80여종의 SMR을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혁신형 SMR 관련 규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였음. 또한,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추진하였음.

202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민간출연금’ 세입에서 과거 미납된 120억원에 대한 수납계획이 부재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LS전선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당초 협약내용 이행을 완수하도록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LS전선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과제의 성과물을 분석하는 내용인 ‘SMR 규제연구(R&D) 성과물 및 국내외 SMR 규제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 활용방안 검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과제가 아직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그 결과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수 입>

## 1. 민간출연금: LS전선과의 협의를 통해 출연 협약 이행완료 촉구 필요

### 가. 개 요

**‘민간출연금’** 은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이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LS전선이 원전 안전 및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원자력기금에 출연을 약속한 금액 1,000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기 위해 만든 수입항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원(50.0%) 증가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4)]

[2025년도 민간출연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민간출연금 | 10,000 | 10,000 | 15,000 | 5,000 | 50.0 |

주) 2023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경상북도 경주시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에 원전제어케이블을 납품하였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품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였고, 그로 인해 신고리 원전 등 원전 3기의 발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등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함에 따라 2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시공도 늦어져 전력발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

4)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민간출연금(59-594)(기획조정관)

이 사건으로 인해 LS그룹은 2014년 1월 6일 비리행위를 저지른 JS전선을 상장폐지시키고, LS전선이 원자력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체결(2017.10.30.)하였음.

동 협약서는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LS전선은 2018년 이후 2026년까지 매년 100억원 상당을 출연하는 것으로 체결됨.

[1,000억원 출연 관련 협약서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제1조(목적) | 본 협약은 LS전선이 원전 안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안전 관련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 제2조(출연계획) | ① 출연 규모 : 1천억원<br>② 출연 방법 : 2018년 100억원 출연, 이후 매년 100억원 상당 출연<br>③ 출연 기간 : 2026년까지<br>* 구체적인 출연 이행 관련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함. 단,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매년 3월말 이전까지 이행 완료하기로 함 |
| 제4조(이행방법) | 출연계획은 LS전선의 경영환경 등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통지 후 변경할 수 있음 |
| 제5조(유효기간) | 효력 발생일 : 협약체결일(2017.10.30.)<br>효력 만료일 : 협약체결일로부터 9년 간<br>단,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2024년 100억원을 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5~2026년은 150억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함으로써 총 1,000억원을 수납받겠다는 계획임.

##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 미납된 120억원에 대한 수납계획이 부재하므로, LS전선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당초 협약내용 이행을 완수하도록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LS전선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LS전선은 2020년 100억원을 전액 미납하였고[5] 2021년에는 20억을 미납함[6]에 따라,

5)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출연금을 기부금이 아닌 일시 충당부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슈를 제기하였는데, LS전선은 이 경우 회사의 차입금 증가 등으로 회사 실적이 나빠질 수 있어 출연이 어렵다는 사유로 2020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5~2026년 예산안을 각 150억원으로 편성할 경우, 120억원이 미납되어 2017년 협약 당시 LS전선이 출연하고자 하였던 1,000억원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임.

[2018~2024년 민간출연금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 계획액 | | 계획현액 | 징수결정액(B) | 수납액(C) | 수납률(C/A) | 수납률(C/B) | 미수납액 |
|---|---|---|---|---|---|---|---|---|
| | 당초 | 수정(A) | | | | | | |
| 2018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 - |
| 2019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 - |
| 2020 | 10,000 | 10,000 | 10,000 | 2,000 | - | - | - | 10,000 |
| 2021 | 10,000 | 10,000 | 10,000 | 8,000 | 8,000 | 80.0 | 100.0 | 2,000 |
| 2022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100.0 | - |
| 2023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100.0 | - |
| 2024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 | 100.0 | - |
| 2025(안) | 15,000 | - | - | - | - | - | - |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LS전선의 출연금은 자발적 출연 약속에 의한 것으로 미납 시 행정적으로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17년 당초 계획대로 2025~2026년 150억원을 계상할 경우 120억원이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의 수입에서 회계상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2024년 10월 기준 협약서 제2조(출연계획)에 따른 수납계획 변경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2025년 계획안을 150억원으로 계상할 경우 2026년 계획안에는 270억원을 계상하여야 협약에 따른 출연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나 이는 LS전선의 경영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LS전선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당초 협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수하도록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LS전선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에는 100억원을 전액 미납하였음.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LS전선의 납부금액을 80억원으로 감액 조정함.

<지 출>

## 2.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신규):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충실한 분석 필요

###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2026년 신청예정)를 위한 사전 규제 준비 및 대응 등 심・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5년도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원자력 안전규제 | 60,133 | 60,133 | 62,159 | 2,026 | 3.4 |
| 건설원전 안전규제 | 8,197 | 8,197 | 10,042 | 1,845 | 22.5 |
|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 - | - | 1,400 | 1,400 | 순증 |

주)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의 상세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① 전문분야별 i-SMR 설계특성 분석을 통한 규제전략 수립 3억 8,500만원, ② SMR 규제연구(R&D) 성과물 및 국내외 SMR 규제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 활용방안 검토 4억 7,000만원, ③ 차세대원자로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5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②의 경우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의 성과물을 분석하여 규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임.[8)]

---

7)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원자력안전규제(1702-401)(안전정책국)

8)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은 경수형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2024년 신규과제의 연구비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1억 7,000만원(76.3%) 증액된 119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음.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추진과제 | 예산 | 예산 편성내역 |
|---|---|---|
| ① 전문분야별 i-SMR 설계특성 분석을 통한 규제전략 수립 | 385 (인건비: 200, 직접비: 145, 간접비: 40) | 전문분야별 설계사 및 국내외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i-SMR의 설계특성을 분석하고 규제전략(규제요건 적용 방안 등) 수립 |
| ② SMR 규제연구(R&D) 성과물 및 국내외 SMR 규제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 활용방안 검토 | 470 (인건비: 200, 직접비: 230, 간접비: 40) | **① i-SMR 사전설계검토 등 규제연구 성과물*을 분석하여 현안 파악 및 규제 활용방안 마련**<br>***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22~) : 1단계('22~'23) 6개 과제, 2단계('24~, 진행중) 13개 과제**<br>② 미국, 캐나다의 SMR 사전인허가검토 및 인허가심사 시 수행한 질의·답변, 현안, 규제면제 사례 등 분석·검토<br>* NuScale, BWRX-300 등<br>③ 기인허가 받거나 심사 중인 소형원자로*의 규제사례 및 심사현안 등을 분석하여 차세대원자로에 적용 가능한 규제방안 검토·마련<br>* SMART, SMART100, ARA |
| ③ 차세대원자로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 545 (인건비: 200, 직접비: 305, 간접비: 40) | ① IAEA SMR 관련 활동 참여(SMR 규제자 포럼, NHSI 기술문서(TECDOC) 작성 참여 등)<br>② 미국 NRC 및 캐나다 CNSC 등 선진 원자력 규제기관 협력·회의 등 |
| 합계 | 1,400 |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과제의 성과물을 분석하는 내용인 'SMR 규제연구(R&D) 성과물 및 국내외 SMR 규제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 활용방안 검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과제가 아직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그 결과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원자로 심·검사체계 구축 사업 중 '② SMR 규제연구(R&D) 성과물 및 국내외 SMR 규제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 활용방안 검토' 과제는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사업의 성과물을 분석하는 것임.

그러나 2025년 기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사업은 2개 과제만 연구가 종료되고, 13개 과제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25년에도 신규 9개 과제가 4월

부터 수행될 예정이어서, 당해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분석하는 것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우려가 됨.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연도별 연구과제]

| 수행년도 | 2022~2023년 수행 연구과제 | 수행년도 | 2024년 착수 연구과제 |
|---|---|---|---|
| 2022~2028 | 경수형 SMR 인허가를 위한 국내 규제체계 개선(안) 개발 | 2024~2026 | 경수형 SMR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등급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 2022~2028 | 경수형 SMR 소형/모듈화 설계특성 관련 규제기술개발 | 2024~2026 | 경수형 SMR 계통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 2022~2028 | 경수형 SMR 핵비확산 규제기술 개발 및 규제체계 구축 | 2024~2026 | 경수형 SMR 사고해석 및 노심핵설계 규제검증 기반기술 개발 |
| 2022~2028 | 핵안보 측면의 경수형 SMR 규제방안 연구 | 2024~2026 | 경수형 SMR 리스크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 2022~2023 | SMR 기술개발 동향분석 및 전략수립 | 2024~2026 | 경수형 SMR 다수모듈 통합 운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기술 개발 |
| 2022~2023 | SMR 핵안보 기술 및 규제 동향 분석 | 2024~2026 | 경수형 SMR 다양성보호계통 및 계측제어 분야 규제기반기술 개발 |
| | - | 2024~2026 | NuScale 원자로에 대한 특정심사지침 분석 및 SMR 안전규제 국제조화를 위한 규제기반 구축 |
| | - | 2024~2027 | 경수형 SMR 안전조치 기술에 대한 개념설계 및 적용안 연구 |
| | - | 2024~2027 | 경수형 SMR 안전·안보연계 기반 사이버보안 사례 및 평가기술 연구 |
| 2025~ | 신규 9개 과제 수행 예정 | | |

주) 연구가 최종 종료된 과제는 음영 표시한 2개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① i-SMR은 2026년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서[9]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최소 2025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의 중간 연차보고서 등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고 있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9) 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 할 때 그 설계에 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는 인가(「원자력안전법」 제12조)를 말하며,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하여 2026년에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준설계로 인가받은 동일한 설계를 반복해 사용할 경우 심사시간 단축 등 심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2025년 9개의 과제가 신규로 수행될 예정이고, 진행 중인 13개 과제의 경우에도 7개 과제는 2026년에 종료되고, 2개 과제는 2027년에 종료되며, 4개 과제는 2028년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중간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물을 분석하는 것은 성과물의 성숙도 측면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② SMR 규제연구(R&D) 성과물 및 국내외 SMR 규제 사례 분석을 통한 규제 활용방안 검토' 과제의 예산 편성계획에 나와있는 내용 중 해외사례 및 기 인허가받은 사례를 충실히 고려하되,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의 중간 연차보고서 결과물은 보다 신중히 분석하여 본 과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

# Ⅰ. 개 관

## 1. 예산안 개요

### 가. 총수입·총지출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27일 개청 기관으로 2025년도 소관 총수입은 없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은 9,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1억원(27.0%) 증가함.[1)]

2025년도 예산안은 9,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74억원(27.5%) 증가하고, 기금 지출계획안은 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39.7%) 감소함.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예 산 | 7,540 | 9,614 | 2,074 | 27.5 |
| 기 금 | 58 | 35 | △23 | △39.7 |
| 총지출 | 7,598 | 9,649 | 2,051 | 27.0 |

주)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이 완료(2024.5.27.)된 과기정통부 6,534억원, 산업부 399억원 및 예비비 665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나. 예산안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없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9,6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9억원(39.8%) 증가함.

[2025년도 우주항공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
|---|---|---|---|---|
| | | | | (B-A)/A |
| 일반회계 | 6,875 | 9,614 | 2,739 | 39.8 |
| 합 계 | 6,875 | 9,614 | 2,739 | 39.8 |

주 1) 총계 기준
2) 2024년도 본예산 총지출 금액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이 완료(2024.5.27.)된 과기정통부 6,534억원, 산업부 399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비 665억원은 제외되었음

## 다. 기금운용계획안

우주항공청 소관 기금은 없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을 받아 지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지출계획안은 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39.7%) 감소함.

[2025년도 우주항공청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 구 분 | 2024년도 | | 2025년도 계획안 (B) | 증감 (B-A) | |
|---|---|---|---|---|---|
| | 당초 (A) | 수정 | | | (B-A)/A |
| 과학기술진흥기금 | 58 | 58 | 35 | △23 | △39.7 |
| 합 계 | 58 | 58 | 35 | △23 | △39.7 |

주) 총계 기준이며 2024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우주항공청 2025년도 예산안에는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개발’, ‘차세대 영상레이더 핵심기술 선행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총 16개(562억 2,1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개발’ 사업은 우주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인 메탄 추진제 기반의 액체로켓 엔진 핵심기술을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로 국내의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12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5년도 예산안(계획안) |
|---|---|---|
| [일반회계] | | |
| 1 | 혁신형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개발(R&D) | 5,000 |
| 2 | 차세대영상레이더핵심기술선행개발(R&D) | 2,000 |
| 3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 11,296 |
| 4 |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사업(R&D) | 5,000 |
| 5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사업(R&D) | 2,000 |
| 6 | 우주항공 정보화(정보화) | 7,308 |
| 7 |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 3,000 |
| 8 |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 200 |
| 9 |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 500 |
| 10 |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 800 |
| 11 |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 2,000 |
| 12 | Space-K BIG 프로젝트(R&D) | 1,800 |
| 13 |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R&D) | 1,900 |
| 14 | 우주환경 감시체계 운영(정보화) | 1,946 |
| 15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9,650 |
| 16 |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 1,821 |
| 총지출 | | 56,221 |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우주항공청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개발사업’ 등 총 15개임.[3)]

[2025년도 우주항공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 연번 | 세부사업명 | 2024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 2025년도 예산안 (계획안) (B) | 증감 (B-A) | (B-A)/A |
|---|---|---|---|---|---|
| [일반회계] | | | | | |
| 1 |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 1,400 | 5,600 | 4,200 | 300.0 |
| 2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 4,000 | 45,000 | 41,000 | 1,025.0 |
| 3 |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 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R&D) | 1,139 | 2,739 | 1,600 | 140.5 |
| 4 | 민간달착륙선탑재체공동연구사업(R&D) | 3,321 | 7,300 | 3,979 | 119.8 |
| 5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R&D) | 2,600 | 4,000 | 1,400 | 53.8 |
| 6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사업(R&D) | 2,500 | 12,400 | 9,900 | 396.0 |
| 7 | 우주산업클러스터삼각체제구축사업(R&D) | 10,000 | 23,000 | 13,000 | 130.0 |
| 8 |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 3,000 | 8,000 | 5,000 | 166.7 |
| 9 | 우주전파재난위험분석및대응기술개발(R&D) | 1,046 | 2,331 | 1,285 | 122.8 |
| 10 |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 25,457 | 35,043 | 9,586 | 37.7 |
| 11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R&D) | 110,106 | 150,816 | 40,710 | 37.0 |
| 12 |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 15,783 | 24,927 | 9,144 | 57.9 |
| 13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 24,000 | 42,000 | 18,000 | 75.0 |
| 14 | 터보팬항공엔진인코넬718초내열합금주단조품개발(R&D) | 3,242 | 10,679 | 7,437 | 229.4 |
| 15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 93,710 | 147,800 | 54,090 | 57.7 |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 3. 2025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우주항공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1개의 일반회계 및 1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은 없음.

[우주항공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일반회계 | 과학기술진흥기금 |
| --- | --- |
| 세출 9,614억원 | 지출 35억원 |

주) 총계 기준

## 4.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55개 세부사업 중 85.5%에 해당하는 47개가 R&D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9,262억원 중 9,085억원(98.1%)이고, 우주항공청의 주요 임무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항공’ 분야로 구분되어 2025년 예산안이 편성됨.

2025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4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금 및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수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 중 국고반납분은 2025년에 수납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과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을 세입과목으로 신설하여 일정 금액을 2025년 세입 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은 우주항공청 직접수행 예산 10억원을 제외한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예산 80억원 중 과제 공고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연구비 일정 금액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중 시스템 구축비 5억 3,000만원은 우주항공청이 IRIS(통합사업 관리시스템), Ezbaro(통합사업비 관리시스템) 외에 별도로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이 대부분 과기부, 산업부로부터 이관받은 것으로서 이미 IRIS로 관리되고 있는 점 및 IRIS로 R&D 과제관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별도의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넷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에서 ‘민간발사장,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및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협약이 2024년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실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는 2025년 4/4분기부터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수행기관 단계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Ⅱ. 사업별 검토

## 【일반회계】

### <세 입>

## 1.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과목 신설 필요

### 가. 개 요

우주항공청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음.

###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4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금 및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수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 중 국고반납분은 2025년에 수납될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과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을 세입과목으로 신설하여 일정 금액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기타 과오지급 반환금 등을 수납하는 세입과목이고,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과년도 사업비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7항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5)]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세부사업으로 2024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회계정산 위탁수수료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체받은 사업 중 2024년에 종료되는 과제들을 정산한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회수금이 2025년 연중에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금 외에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연구수행기관에 교부된 이후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수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 중 일부는 국고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2024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금 및 연구수행기관의 연구비 수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금 중 국고반납분을 수납하기 위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과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을 세입과목으로 신설하여 일정 금액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7)]

[우주항공청으로 이체된 R&D 사업에서 2025년 세입발생 예상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이체부처 | 사업지원 형태 | 기타경상이전수입 | 기타재산이자수입 |
|---|---|---|---|---|
|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스페이스챌린지(R&D) | 과기정통부 | 출연 | 10 | 6 |
|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4 |
| 차세대발사체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
2. 연구개발에 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및 활용 역량의 강화
4. 국고에 납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7) 우주항공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으로 스페이스챌린지(R&D) 사업에서 1,0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에서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등 8개 사업에서 5,980만원이 2025년에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이체부처 | 사업지원 형태 | 기타경상이전수입 | 기타재산이자수입 |
|---|---|---|---|---|
|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2 |
|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23 |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9 |
|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0.4 |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2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 지원(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한국천문연구원 시설 지원(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DNA+드론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433MHz기반드론 응용통신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13 |
|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다목적실용위성7호성능개량사업(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 |
| 스페이스이노베이션(R&D) | 과기정통부 | 출연 | - | 0.4 |
|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 산업부 | 출연 | - | - |
| 수소연료전지기반탑재중량200kg급 카고드론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 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eVTOL자율비행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 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스마트캐빈 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 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이체부처 | 사업지원 형태 | 기타경상이전수입 | 기타재산이자수입 |
|---|---|---|---|---|
|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br>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산업부 | 출연 | - | - |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예비비 | 출연, 직접수행 | - | - |
| 계 | | | 10 | 59.8 |

자료: 우주항공청

## <세 출>

# 2.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과제공고 일정을 고려한 연구비 감액조정 검토 필요 등

## 가. 개 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은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산업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우주항공 임무설정을 위한 탐색연구를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5,000만원(20.6%) 증액된 9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5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8,000 (예비비) | 9,650 | 1,650 | 20.6 |

이 사업은 출연사업으로서 2024년에는 예비비 80억원을 전액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출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건발굴 6억 5,000만원만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으로 편성하고, 그 외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예산 90억원은 일반연구비(260-01) 및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하였음.

8) 일반회계-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1343-301)(우주항공정책국)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4년 예산 | 2025년 예산안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8,000백만원<br>가. 우주수송부문 : 3건×300백만원 = 900백만원<br>나. 인공위성부문 : 5건×300백만원 = 1,500백만원<br>다. 우주탐사부문 : 9건×200백만원 = 1,800백만원<br>라. 항공혁신부문 : 6건×233백만원 = 1,400백만원<br>마. 기술 및 정책부문 : 8건×175백만원 = 1,400백만원<br>바. 안건발굴(우주위운영) : 1,000백만원<br>- (우주위 개최) 4회 × 150백만원 + (실무위 개최) 8회 × 30백만원 + (안건자체발굴) 8회 × 1건 × 20백만원 |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650백만원<br>가. 안건발굴(우주위운영) : 650백만원<br>- (우주위 개최) 3회 × 150백만원 + (실무위 개최) 4회 × 30백만원 + (안건자체발굴) 4회 × 1건 × 20백만원 |
| - | ○ 일반연구비(260-01) : 7,000백만원<br>가. 우주수송부문 : 1,500백만원<br>-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br>나. 인공위성부문 : 1,500백만원<br>-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br>다. 우주탐사부문 : 1,500백만원<br>-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br>라. 항공혁신부문 : 1,500백만원<br>- 1건×100백만원 + 2건×300백만원 + 2건×400백만원<br>마. 기술 및 정책부문 : 1,000백만원<br>- 5건×200백만원 |
| - | ○ 시험연구비(210-13) : 2,000백만원<br>가. 기술 및 정책부문 : 1,000백만원<br>- 5건×200백만원<br>나. 부문별 직접수행 : 1,000백만원<br>- 5건 × 50백만원 × 4개부문 = 1,000백만원 |

자료: 우주항공청

한편, 이 사업의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된 안건발굴은 우주항공청에 소속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일반연구비(260-01) 및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된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예산 90억원은 일반적인 R&D 과제 수행을 위한 공모절차를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선정(bottom-up)하거나 또는 우주항공청이 지정(Top-down)하여 연구가 수행됨.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구분 | 부처 | | 피출연·피보조 기관 | | 사업수행자 |
|---|---|---|---|---|---|
|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260-01, 210-13) | 우주항공청 (10억원 직접수행) | → (8,000백만원) | - | → (8,000백만원) | 공모/지정 |
| 안건발굴 (360-05) | 우주항공청 | → (650백만원) | 국가우주위원회 | - | - |

자료: 우주항공청

또한 이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이 아닌 단년도 사업으로서 매년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수행됨.

##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출연사업으로서 연구개발(R&D) 사업이고, 사업의 수행도 공모를 통해 수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문별 직접수행' 10억원을 제외한 일반연구비(260-01) 및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된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예산 80억원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이 사업이 과제 공고 절차를 거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개발(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에 소요되는 90억원을 일반연구비(260-01) 및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하였음.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된 90억원 중 부문별 직접수행 10억원을 제외한 80억원은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통해 연구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9)]

또한 시험연구비(210-13)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이고, 시험연구의 특성상 비목별 지출소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집행가능비목을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10목은 부처 및 소속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9)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46)

편성하는 비목임.[10)]

따라서 이 사업은 출연사업으로서 연구개발(R&D) 사업이고, 사업의 수행도 우주항공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아닌 공모를 통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11)] ‘부문별 직접수행’으로 편성된 10억원을 제외한 일반연구비(260-01) 및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된 80억원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예산 80억원이 2024년 10월 기준 실집행 단계에서 전액 미집행된 상황이므로 예비비에 대한 실집행률 관리 등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에 대한 2024년 실집행 실적을 보면 80억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과제공고가 8월 28일에 이루어지고 연구제안서(RFP) 검토 등 시간 소요로 인해 협약이 10월 말에 체결될 예정이기 때문임.

[2024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우주항공청 |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 연구수행기관 | | | | |
|---|---|---|---|---|---|---|---|---|
| 본예산 | 집행액 | 교부액 | 집행액 | 교부액 (B) | 실집행액 (C)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B) |
| 8,000 | 8,000 | 8,000 | - | - | - | - | - | - |

주) 2024년 10월 23일 기준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말에 개청함에 따라 9월 말 과제 접수를 완료하여, 10월 중 선정평가를 통해 25개 과제를 선정하고 10월 말에 과제협약이 체결되면, 12월까지 80억원을 전액 집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10)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29~230)

11) 이 사업에 공모가 아닌 지정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도 일부 있으나, 연구개발(R&D) 과제 중 국가가 설정하는 목표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과제를 계획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2024년 과제공고, 접수 및 선정, 협약체결 계획]

| 구분 | 공고 | 접수 및 선정 | 협약 | 선정 예상 과제수 | 금액 |
|---|---|---|---|---|---|
| 2024년 | 8월 28일 | 9월 말 | 10월 말 | 25개 | 80억원 |

자료: 우주항공청

그러나 우주항공청이 2025년 예산안에 12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으로 9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2개월(10월 말 협약체결 이후 11월 및 12월) 동안 2024년 예산 80억원을 모두 소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연구비 집행계획으로 사료됨.

특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12] 동법 제5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차년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13] 면밀한 사전준비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됨.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2025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사업에 집행한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하여 차년도 국회의 승인을 얻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셋째, 우주항공청 직접수행 예산 10억원을 제외한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예산 80억원 중 과제 공고 및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연구비 중 일정 금액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5년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신규과제 수행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안건발굴을 위해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 신규과제 수행 예산 90억원 중 우주항공청이 직접수행하는 예산은 10억원이고, 80억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함.

---

1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3) 「국가재정법」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우주항공분야 임무탐색연구에 투입 예정인 80억원 관련

이 사업은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단년도 사업으로서 2025년에 과제가 선정되고 연중 연구를 수행하며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14)]

그러나 이 사업은 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25년 1월에 곧바로 착수가능한 과제도 있고, ② 자유공모를 통해 2월에 착수하는 과제 및 ③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쳐 3월에 착수하는 과제도 있어, 80억원 전액이 1월부터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님.[15)]

따라서 자유공모를 통해 2월에 착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1개월분 연구비를,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절차를 거쳐 3월에 착수하는 과제는 2개월분 연구비를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안건발굴에 투입될 예정인 6억 5,000만원 관련

이는 국가우주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우주개발진흥, 위성정보활용)의 운영 및 안건발굴 등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국가우주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요가 있을 경우 집행될 예산임.

그러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인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에 국가우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

1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35)>

| |
|---|
|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br>○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br>- 신규과제 :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 **(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br>- 계속과제 :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025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15) 다만, 상술한 3가지 분류 각각에 대하여 8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

회의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보이므로, 이 예산은 ‘총액대상 우주항공정책국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총액대상 우주항공정책국 기본경비’ 세부사업에는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6,000만원을 이미 편성하고 있고,[16]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세부사업에서도 18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17] 국가우주위원회 및 산하 실무위원회의 안건발굴을 위한 이 사업 예산이 이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금액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8]

16) 일반회계-총액대상 우주항공정책국 기본경비(7118-202), 2024년에는 예비비 3,840만원이 편성되었음.

17) 일반회계-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1343-302), 2025년도 신규사업임.

18) 참고로, 여비를 우주항공정책국 소속 경비로 지출하고 안건발굴에 필요한 인건비는 우주항공청 내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2025년 예산안 6억 5,000만원 중 약 3억원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3.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별도의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부적절 및 임무본부 홍보비 예산의 감액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18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9)]

[2025년도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R&D) | - | 1,821 | 1,821 | 순증 |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은 2024년까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과제가 수행되었으나,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2025년부터 우주항공청이 직접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이 사업이 신설됨.[20)]

이 사업은 전문기관 평균 통합 기평비 7억 6,400만원과 2025년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기평비를 추정하여 1억 2,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홍보비 1억원 및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비 8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음.

시스템 구축비 5억 3,000만원은 IRIS(통합사업 관리시스템), Ezbaro(통합사업비 관리시스템) 이외에 우주항공청 자체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고, 회계정산 위탁수수료 8,000만원은 2024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비용이며, 장비구입비 2억 2,500만원은 과기부, 산업부로부터의 사업 이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아카이빙 스토리지 등 장비 구축 비용임.

---

19) 일반회계-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1343-302)(우주항공임무본부 임무지원단)

20)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
|---|
| ○ 시험연구비(210-13) : 886백만원<br>가. 전문기관 평균 통합기평비 :764백만원<br>나. 2025년 신규사업 소요 추정 기평비 122백만원<br><br>○ 업무추진비(240-01) :100백만원<br>가. 우주항공청 임무본부 홍보 등 100백만원<br><br>○ 일반연구비(260-01) : 610백만원<br>가. 시스템구축비 : 530백만원<br>나. 회계정산 위탁수수료 80백만원<br><br>○ 자산취득비(430-01) : 225백만원<br>가. 장비구입비: 225백만원 |

자료: 우주항공청

##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항공청은 IRIS(통합사업 관리시스템), Ezbaro(통합사업비 관리시스템) 외에 별도로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나,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이 대부분 과기부, 산업부로부터 이관받은 것으로서 이미 IRIS로 관리되고 있는 점 및 IRIS로 R&D 과제관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별도의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시스템구축비 예산은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은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며,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임.

당해 시스템 이전에는 기관별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하고, 과제공고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 등에 개별적으로 로그인 후 R&D 과제를 관리해왔으나, 각 시스템 간에는 연동이 되지 않아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연구자나 과제선정 정보 등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과제참여 제한자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에 참여[21]하는 등 과제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였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서비스 표준화 사업[22]을 통해 각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R&D 연구과제 지원시스템을 IRIS로 통합하기 위한

21) 2022회계연도 국회예산정책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석보고서 p.2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1036-500)’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임.

데이터 이관작업을 총 18단계에 걸쳐 진행을 완료하였음.

[IRIS로의 데이터 이관 절차]

| |
|---|
| ① DB분석 → ② Target DB구성·적재 → ③ 이관용 DB 수집 → ④ 소스 DB구성<br>→ ⑤ 이관 DB 매핑 → ⑥ 테이블 매핑 → ⑦ 작업이력 관리 → ⑧ 이관이슈 공유<br>→ ⑨ 이관 DB 구성 → ⑩ 이관 프로그램 개발 → ⑪ 이관 DB로 데이터 이관<br>→ ⑫ DB 검증 → ⑬ 베타 DB로 데이터 이관 → ⑭ 서비스 검증 → ⑮ 운영 DB로 데이터 이관 →<br>⑯ 검증 → ⑰ 첨부파일 이관 → ⑱ 첨부파일 검증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은 IRIS(통합사업 관리시스템), Ezbaro(통합사업비 관리시스템) 외에 별도로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R&D 과제의 종합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IRIS로 R&D 과제관리를 통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투명한 R&D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이 1개 세부사업을 제외하고[23]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미 IRIS로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스템 구축비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없이 직접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청에서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진도관리 운영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망분리로 인하여 IRIS 접속이 어려움에 따라 연구자들의 과제관리 편의성을 위해 별도의 연동시스템이 필요하므로 감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의 이체부처 현황]

| 회계 | 세부사업 | 이체부처 |
|---|---|---|
| 일반회계 |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스페이스챌린지(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차세대발사체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 과기정통부 |

23)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예비비로 편성됨

| 회계 | 세부사업 | 이체부처 |
|---|---|---|
| 일반회계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 지원(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한국천문연구원 시설 지원(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DNA+드론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433MHz기반드론 응용통신기술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다목적실용위성7호성능개량사업(R&D) | 과기정통부 |
| 과진기금 | 스페이스이노베이션(R&D) | 과기정통부 |
| 일반회계 |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수소연료전지기반탑재중량200kg급카고드론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eVTOL자율비행핵심기술및비행안정성,운용성시험평가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를 위한 소재데이터 시험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스마트캐빈 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 초내열합금 주·단조품 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 산업부 |
| 일반회계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예비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둘째, 기획평가관리비는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하는 비용으로서 임무본부 홍보비는 이 사업과 전혀 무관하므로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평가관리비는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제의 성격을 기획하고, 공고로 접수되는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평가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비용이나, 우주항공청은 임무본부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를 위한 예산 1억원을 반영하였음.

그러나 임무본부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R&D 과제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기획평가관리비와 무관하므로, 홍보비 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가. 개 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억원(130.0%)이 증액된 230억원이 편성되었음.[24]

[2025년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 10,000 | 23,000 | 13,000 | 130.0 |

이 사업은 ① 민간발사장,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④ 위성개발혁신 센터, 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 7년 간 수행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24.10. 기준 3,807억 8,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내 5개 구축사업]

| 구분 | 장소 | 구축 목적 |
|---|---|---|
| ① 민간발사장 구축 | 전라남도 고흥군 | 민간 전용 발사체 발사장, 민간 발사체 조립시험시설 등 구축 |
|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 |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시험평가 및 인증,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
|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 경상남도 진주시 | 발사환경시험(진동시험), 궤도환경시험(열진공, 열주기, 베이크아웃), 전자파환경시험 등 우주환경시험 시설 구축 |
| ④ 위성개발혁신센터구축 | 경상남도 사천시 | 기업 집적 및 스타트업 육성, 광학 탑재체 등 공용 개발·시제작 장비 및 시설 구축·운영, 산학연 협력 촉진 등 |
| 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우주 임무 중심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 |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24) 일반회계-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1333-302)(우주항공산업국)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① 민간발사장 구축 설계비 및 제경비 26억원,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구축 36억원,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00억원, ④ 위성개발혁신 센터구축 장비구축비 등 32억원, 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장비구축비 등 36억원이 편성되었음.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① 민간발사장 구축 | 설계비 및 제경비 2,000<br>(민간발사장에 대한 설계비) | 설계비 및 제경비 2,600<br>(발사체 조립시설에 대한 설계비) |
|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 1,500<br>설계비 1,125, 과제관리비 375 | 3,600<br>장비구축비 3,225, 과제관리비 375 |
|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 2,500<br>설계비 2,000, 과제관리비 500 | 10,000<br>설계비 1,750, 공사비 3,600,<br>시설부대비 3,550, 장비구축비 600,<br>과제관리비 500 |
| ④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 1,500<br>설계비 1,167, 과제관리비 333<br>* 사업단 운영비 중 5억원이 내역변경되어 반영된 것임 | 3,200<br>장비구축비 2,867, 과제관리비 333 |
| 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 2,000<br>설계비 400, 장비구축비 1,240<br>과제관리비 360 | 3,600<br>장비구축비 3,240, 과제관리비 360 |
| 사업단 운영비 | 500<br>* 기존에는 10억원이었으나,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 내역변경하여 집행예정 | - |

주) 이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확정예산 및 2025년도 정부안의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음

자료: 우주항공청

2024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사업단이 아닌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나. 검토의견

**① 민간발사장,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및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협약이 2024년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하반기부터 실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③ 우주환경시험시설과 ④ 위성개발혁신센터는 2025년 4/4분기부터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수행기관 단계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각 구축사업에 대하여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제외하고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2024년 9월에 지정하였음.[25)]

이는 2024년 상반기에 협약체결이 완료되고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의 사업 이관 및 KISTEP의 적정성 검토로 시간이 소요되어 협약예정일은 2024년 10월로 예상되고 있음.

[각 구축사업별 협약예정일과 사업수행기관]

| 구축사업명 | 사업기간 | 협약예정일 | 지정기관(사업수행기관) |
|---|---|---|---|
| ① 민간발사장 | 협약일 ~ 2030.12.31 | '24.10.14.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
|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 협약일 ~ 2027.12.31 | 지정기관 공모중('24.9.23~'24.10.17) | |
|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 협약일 ~ 2028.12.31 | '24.10.1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
| ④ 위성개발혁신센터 | 협약일 ~ 2026.12.31 | '24.10.14. | 경남테크노파크 |
|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 협약일 ~ 2028.12.31 | '24.10.7. |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 |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액 100억원은 연구수행기관 수준에서 전액 미집행된 상황이며, 2024년 예산으로 계획된 설계비는 협약 체결 이후에 실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2024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우주항공청 | | 연구수행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등 5개 기관) | | | | |
|---|---|---|---|---|---|---|
| 본예산 | 집행액 | 교부액 (B) | 실집행액 (C)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B) |
| 10,000 | 2,000 | 2,000 | - | - | - | - |

주) 2024년 10월 기준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25)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10월 17일까지 지정기관을 공모할 예정이고, 따라서 협약은 11월 중 체결될 예정임.

우선 ① 민간발사장의 경우, 발사장에 대한 설계가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2024년 예산 중 일부는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2025년 7월부터 조립시설에 대한 설계가 진행될 예정임.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는 2024년 10월 17일까지 지정기관 공모를 수행함에 따라 11월 중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고, 설계가 202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공사 및 장비도입과 함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③ 우주환경시험시설과 ④ 위성개발혁신센터는 2025년 하반기에 설계가 종료될 예정임. 따라서 그 이후에 공사 및 장비구축에 대한 계약 공고 기간을 거치고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비로소 우주환경시험시설에 대한 공사비, 시설부대비, 장비구축비 77.5억원 및 위성개발혁신센터에 대한 장비구축비 29억원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설계 및 공사·장비계약의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도 2025년 6월 설계가 종료되고, 2025년 7월부터 시설공사 및 장비구축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2024~2025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안)]

| 구축사업명 | 시점 | 사업수행내용 | 집행금액 |
|---|---|---|---|
| ① 민간발사장 | 2024.10.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 |
| | 2024.10.~2025.6. | 민간발사장에 대한 설계 기간 | 20억원 |
| | 2025.7.~ | 발사체 조립시설에 대한 설계 기간 | 26억원 |
|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 2024.11.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 |
| | 2024.11.~2025.6. | 발사장 및 센터 등 구축사업 설계기간 | 15억원 |
| | 2025.7.~ | 센터 공사 및 장비도입 | 36억원 (지방비로 공사예정) |
| ③ 우주환경시험시설 | 2024.10.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 |
| | 2024.10.~2025.9. | 우주환경시험시설 설계 기간 | 20억원(2024 설계) 17.5억원(2025 설계) 5억원(2024년 과제관리비) |
| | 2025.10.~2025.12. | 건축 및 감리업체 입찰 공고 업체 선정 후 착수금 지급 | 77.5억원(2025 공사비·시설부대비 및 장비구축비) 5억원(2025년 과제관리비) |
| | 2026.~ | 시설 공사 예정 | |
| ④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 2024.10.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 |
| | 2024.10.~2025.말 | 센터 설계 기간 | 11.7억원(2024 설계) 3.3억원(과제관리비) |

| 구축사업명 | 시점 | 사업수행내용 | 집행금액 |
|---|---|---|---|
| | 2025.10.~ | 장비 선급금 지급 | 28.7억원<br>(2025 장비구축비)<br>3.3억원(과제관리비) |
|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 2024.10.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 |
| | 2024.10.~2025.6 | 센터 설계 기간 및 장비구축 | 4억원(설계비),<br>12.4억원(장비구축비),<br>3.6억원(과제관리비) |
| | 2025.7.~ | 시설 공사 및 장비구축 예정 | 36억원<br>(2025년 장비구축비 및 과제관리비) |

주) 이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확정예산 및 2025년도 정부안의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음
자료: 우주항공청

다만, 2024년 설계 일정이 2025년에 종료되어 공사 일정이 순연되고 2024년 설계비의 실집행이 차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공사비 및 장비구축비 등이 우주항공청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는 연내 집행할 수 있을지라도,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실집행은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일정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③ 우주환경시험시설과 ④ 위성개발혁신센터구축은 설계 일정을 조정하여 2025년 6월까지 신속히 설계를 마치고 2025년 연내 전액 실집행이 가능하고, ① 민간발사장,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및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장비구축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로 전환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민간발사장, ②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및 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는 협약이 2024년 10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2025년 하반기부터 실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③ 우주환경시험시설과 ④ 위성개발혁신센터는 2025년 4/4분기부터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수행기관 단계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5.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사업: 사업 추가지연 방지 및 자문·평가·홍보관련 예산 감액조정 검토 필요

## 가. 개 요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사업은 1.8톤급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0억원(1,025.0%)이 증액된 450억원이 편성되었음.[26)]

[2025년도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4년도 본예산 (A) | 2025년도 예산안 (B) | 증감 (B-A) | (B-A)/A |
|---|---|---|---|---|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 4,000 | 45,000 | 41,000 | 1,025.0 |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간 수행되며 총사업비는 5,303억 4,000만원임. 2024년 사업을 착수하여 2028년 착륙선 설계를 완료하고, 2031년 달 연착륙 검증선을 1차 발사하여 연착륙 임수를 수행한 이후 2032년 달 착륙선을 발사하여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임.[27)]

2025년 예산안은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448억원과 자문·평가비 등 자체 회의를 위한 비용 2억원으로 구성됨.[28)]

---

26) 일반회계-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1634-301)(우주과학탐사부문장)

27) 달 연착륙 검증선은 달 착륙선 본체를 동일하게 복제 개발 후 달 표면 연착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달 착륙선은 과학기술임무 탑재체를 수송하여 달에 연착륙 후 과학기술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

28)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발 내용>

| 구성 | 개발 내용 |
|---|---|
| 시스템 및 착륙선 | ㅇ임무/항행 설계, 시스템 총조립, 연착륙 검증시험<br>ㅇ달 동력 하강/연착륙을 위한 핵심기술(항법/추진시스템 등) 개발 |
| 지상시스템 | ㅇ임무운영, 과학기술임무 자료 수신 네트워크 구축 |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44,800백만원
  • 달 착륙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 : 44,800백만원
  - 시스템: 10,000백만원
  - 착륙선 본체: 34,400백만원
  - 지상국: 400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200백만원

##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2024.10. 주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약체결 예정으로서 2024년 예산 40억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2025년 예산안 450억원 중 448억원은 2025년 하반기에서야 비로소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항공청은 현 상황에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4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2024.9.말 기준 40억원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임.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이 5월 27일에 이관되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거치지 않고 우주항공청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추진방향 점검 등의 사유로 2024년 9월 30일에 「달 탐사 관련 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달 탐사 2단계 사업 기본계획(안)」 심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2024년 달탐사2단계 사업의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 우주항공청 | | 연구수행기관 (10월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체결 예정) | | | | |
|---|---|---|---|---|---|---|
| 본예산 | 집행액 | 교부액 (B) | 최종집행액 (C) | 이월액 | 불용액 | 최종집행률 (C/B) |
| 4,000 | - | - | - | 추후 집계예정 | | - |

주) 2024.9.말 기준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한편, 우주항공청은 이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정책 지정하였으며, 협약은 10월 말에 체결될 예정임.

그로 인하여 달탐사 핵심기술 선행개발, 추진계·항법제어계에 대한 설계를 위해 편성한 2024년 예산액 40억원은 우주항공청이 주관연구기관에 전액 집행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이고, 설계 등 기초작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질 예정임.

또한 상술한 선행개발 등이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더라도, 2025년 하반기에 핵심기술, 시스템, 본체 및 지상시스템 본격개발은 하반기에 착수하게 되어, 사실상 2025년 예산안 중 시스템 등 개발에 소요될 계획인 448억원은 2025년 하반기에 실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등 대부분 예산이 2026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임.

[2024~2025년 달탐사2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안)]

| 집행시점 | 사업수행내용 | 집행금액 |
|---|---|---|
| 2024.10.말 | 주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체결 | 40억원<br>(2024년 예산액) |
| 2024.11.~2025.6. | 달 착륙선용 추진계·항법제어계, 시스템 등 핵심기술 선행개발 | |
| 2025.7.~ | 달 착륙선 핵심기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본격 개발 착수 | 448억원<br>(2025년 예산안) |

주) 2025년 예산안 중 2억원은 동 사업의 진행 중 수시로 집행예정
자료: 우주항공청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핵심기술, 시스템·본체 및 지상시스템 본격 개발이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계획이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약이 10월 말에 체결됨에 따라 순연된 일정이기 때문에 2024년을 포함하여 내년도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현 상황에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32년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달 착륙선 발사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우주항공청이 시험연구비(210-13)로 편성한 2억원 중 자문비 7,080만원과 평가비 930만원은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고 성과관련 홍보 예산 3,000만원은 비목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문비·평가비 및 성과관련 홍보 등의 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비(210-13) 2억원은 사업 진행 중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예산임.

그러나 세부편성내역을 보면,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R&D 과제에 대한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29] ① 자문비 7,080만원 및 ② 평가비 93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음.

또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210-13)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이나, ‘성과관련 홍보 등’ 목적을 위해 편성한 3,000만원은 동 비목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문비, 평가비 및 성과관련 홍보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달탐사2단계 사업 예산안 중 시험연구비 세부편성 내역]

○ 시험연구비(210-13) : 200백만원
- 종합관리협의체 정기회의(분기별) 4회×2백만원 = 8백만원
- 종합관리협의체 수시회의(필요시) 4회×1백만원 = 4백만원
- **성과관련 홍보 등 3회×10백만원 = 30백만원**
- **자문비 3회 ×23.6백만원 = 70.8백만원**
- **평가비 3회×3.1백만원 = 9.3백만원**
- 기술동향 파악 및 네트워킹 4회×11.3백만원 = 45.2백만원
- 진도점검 출장 4회×2.3백만원 = 9.2백만원
- 수시 출장 16회×1백만원 = 16백만원
- 마일스톤 회의 참여 출장 3회×2.5백만원 = 7.5백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달탐사2단계 사업은 10년 간 추진되는 국가주도의 장기사업으로서 기획평가관리비로 편성된 세부사업과 별도로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과관련 홍보 등 예산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① 종합관리협의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충분히 진도점검 및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 성과관련 홍보 예산은 시험연구비(210-13) 비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예산계획으로 보여짐.

29) 일반회계-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1343-302)(우주항공임무본부 임무지원단)